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766-14

법·제도분석

법령비교

주요국의 지식재산권법 비교 분석 : 국가별 법령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Major Countries
: Analysis on the Provis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Each Countries

2020. 12.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2020년도 기초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법·제도 분석 - 법령비교

주요국의 지식재산권법 비교 분석: 국가별 법령분석

Legal System Analysis

Comparative Analysi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Major Countries:
Analysis on the Provis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Each Countries

2020. 12.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법·제도 분석 - 법령비교 - 주요국의 지식재산권법 비교 분석: 국가별 법령분석”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 구 기 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책 임 연 구 원 : 장태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

참 여 연 구 원 : 심현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

국문 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 **(연구배경)** 지식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 및 대내외 법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증대
 - 지식재산권이 국가의 주요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다양한 국가들이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마련
 - 하지만 현재 지식재산의 논의들은 주로 IP5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 국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현실
 -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외 지식재산 법령 서비스는 지식재산 중 일부 법령만 한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국가별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IP NAVI), 세계법제정보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로앤비 등
 - 또한 우리 원에서 번역한 주요국의 지식재산 관련 법령은 각국별로 그동안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연구목적)**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 법률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
 - 국내·외 지식재산 최신 법률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후속 연구와 법 개정 등의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
 -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 정책, 연구 및 사업수행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현행 법률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 확보

제2장 주요국의 지식재산 법령 분석

- 프랑스의 지식재산 법령 분석
 - 프랑스는 지식재산권법에서 저작물, 디자인 모델, 특허발명, 기술 지식, 상표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항을 일괄적으로 규정

- 1992년 7월 3일 시행된 지식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Intellectual Protection Code*)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개정됨
- 2012년 5월 3일, 2013년 7월 8일 개정을 거쳐, 2019년 5월 31일 개정법이 현행법임
- **(특허)** 프랑스의 특허 관련 규정은 지식재산권법 제2부 산업재산권 제6권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에 규정(L611-1조 ~ L622-8조)
- **(상표)** 프랑스의 상표 관련 규정은 지식재산권법 제2부 산업재산권 제7권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디자인 및 모델에 규정(L711-1조 ~ L731-4조)
- **(디자인)** 프랑스의 디자인 관련 규정은 지식재산권법의 제2부 산업재산권 제5권 도안 및 모델에 규정(L511-1조 ~ L522-2-7조)

□ 인도의 지식재산권 법령 분석

- 인도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으로 나뉨
- **(특허법)** 인도의 현행 특허법은 1970년 특허법(*The Patent Act(Act 39 of 1970)*)을 기초로 하여, 2005년 최종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임
- **(상표법)** 인도의 상표법은 1940년 최초 제정되고, 그 후 개정을 거쳐 현재의 상표법은 1999년에 제정된 상표법(*The Trade Marks Act, 1999*)을 기초로 하여, 2010년 최종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임
- **(디자인보호법)** 인도의 디자인보호법은 1872년 제정된 「*The Patents & Designs Protection Act*」에서 디자인을 특허와 함께 통합하여 보호하다가 2000년 독립적인 디자인법(*The Design Act of 2000*)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임

□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법령 분석

- 베트남은 지식재산권법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비롯하여 저작권, 지리적 표시 등을 모두 통합하여 규정
- 동법은 2005년 제정되어 2006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2009년 6월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임

제3장 결론

- 본 연구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의 지식재산 법률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내·외 지식재산 최신 법률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후속 연구와 법 개정 등의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
 -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 정책, 연구 및 사업수행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현행 법률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제공하는 대민서비스를 실시함

- 프랑스, 인도, 베트남의 2020년 기준 최신 산업재산권법의 법령 분석 및 대국민 정보 제공 서비스 실시
 - 해외 지식재산 법령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한 최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각국의 지식재산 법령 제공을 위한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체계 구축
 - 번역시 용어의 통일성을 위하여 법률용어를 재정비하였고, 필요한 경우 번역문에 원문을 병기함
 - 지속적으로 정확한 지식재산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외 지식재산 법령 정보제공 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상위법 이외에 시행령, 시행규칙, 심사기준 등의 번역 및 분석을 통한 법령정보 DB 구축 예정

CONTENTS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 2 장	주요국의 지식재산 법령분석	9
	제1절 프랑스	11
	제2절 인도	117
	제3절 베트남	274
제 3 장	결 론	361

표 목차

표 1	지식재산 법제도 조사·분석 연구의 연혁 및 주요 내용	3
표 2	유관기관의 해외 지식재산 법령 서비스 현황	5
표 3	2019년 거래상대방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8
표 4	최근 5년간(2014-2018년) 프랑스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11
표 5	프랑스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 연평균 증가율(2014-2018년)	11
표 6	인도의 특허출원·등록 추이(2013-2018년)	117
표 7	인도에서의 상표출원·등록 추이(2013-2018년)	118
표 8	인도에서의 국가별 외국인 상표출원 현황(2013-2018년)	119
표 9	인도에서의 디자인 출원·등록 추이(2013-2018년)	119
표 10	베트남에서의 특허출원·등록 추이(2013-2018년)	275
표 11	베트남에서의 상표출원·등록 추이(2013-2018년)	276
표 12	베트남에서의 국가별 외국인 상표출원 현황(2013-2018년)	276
표 13	베트남에서의 디자인 출원·등록 추이(2013-2018년)	277

그림 목차

그림 1	KIIP의 해외 지식재산 법제도 연구 정리	5
그림 2	프랑스 지식재산권별 출원 비중(2018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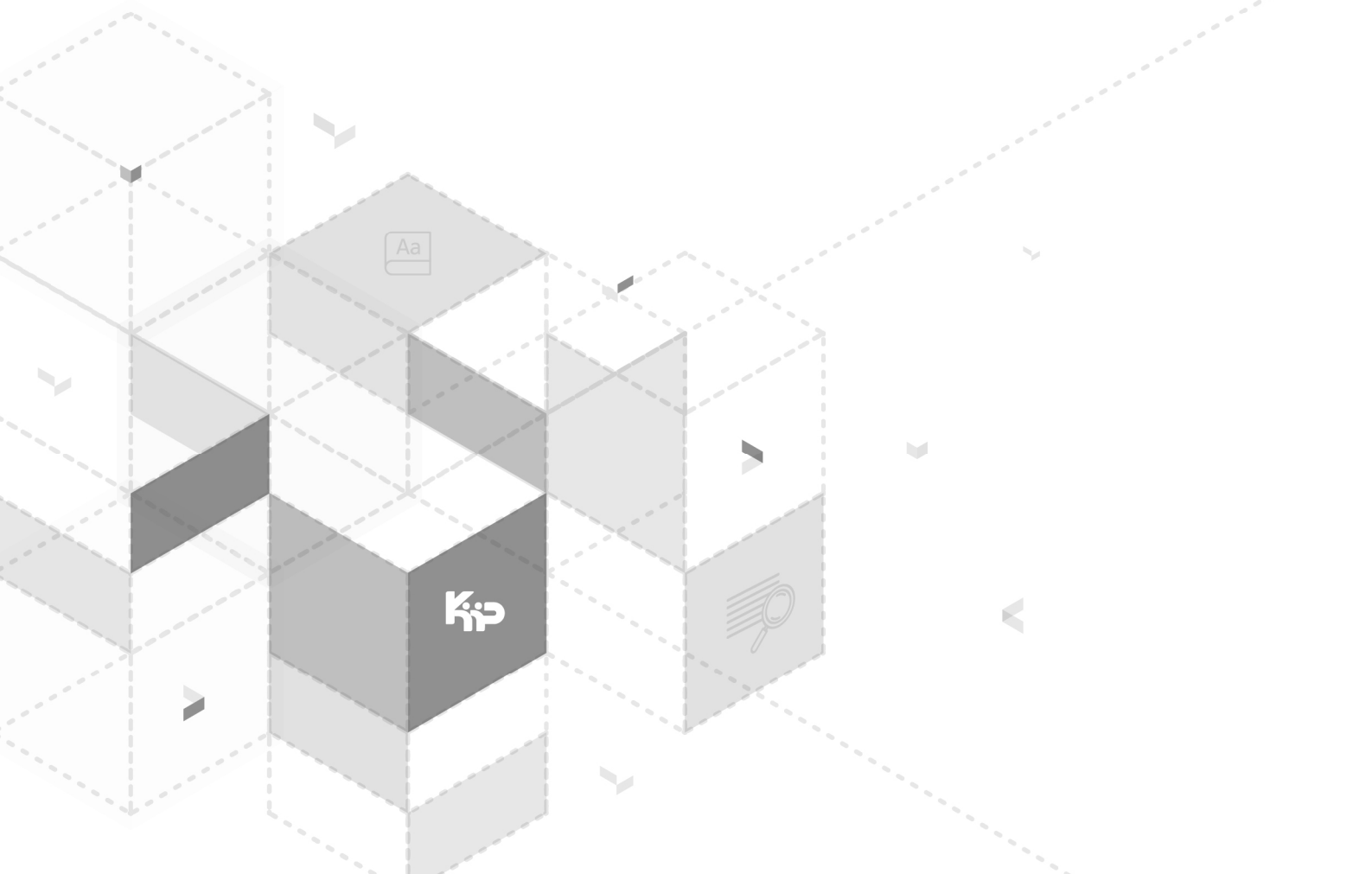
법·제도 분석 - 법령비교
주요국의 지식재산권법 비교 분석: 국가별 법령분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절

● ●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지식재산권이 국가의 주요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다양한 국가들이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현재 지식재산의 논의들은 주로 IP5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 국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현실이다.

지식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세계시장 선전 및 대내외 법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식재산 법제도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외부 환경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제도적 기반이 되는 법체계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최신 해외 지식재산 관련 법령 서비스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우리원에서 기 수행한 연구과제에서 번역한 주요국의 지식재산 관련 법령은 각국별로 그동안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우리원에서는 국내·외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조사·분석 연구를 2011년부터 수행하였으나, 연도별 조사대상 국가 및 연구 구성 내용이 다소 상이하다.

▼ 표 1 | 지식재산 법제도 조사·분석 연구의 연혁 및 주요 내용

수행년도	연구과제명	세부 과제	내용 구성 (조사 국가)
2011	해외 주요국의 IP 법제도 및 정책동향 조사·분석	특허법	주제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2012	해외 주요국의 법제도 및 정책동향 조사·분석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주제별 (한국, 일본, 미국)
2013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법제도 및 정책동향 조사·분석	특허법 상표법	주제별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
2014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경법 발명진흥법	조문별 해설서 취지, 연혁, 해설 (국내법)
2015	지식재산 법제도와 정책 동향-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경법	법률(조문대조표), 판례, 정책 (한국, 미국, 일본)
2016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경법	법률(조문대조표), 판례, 정책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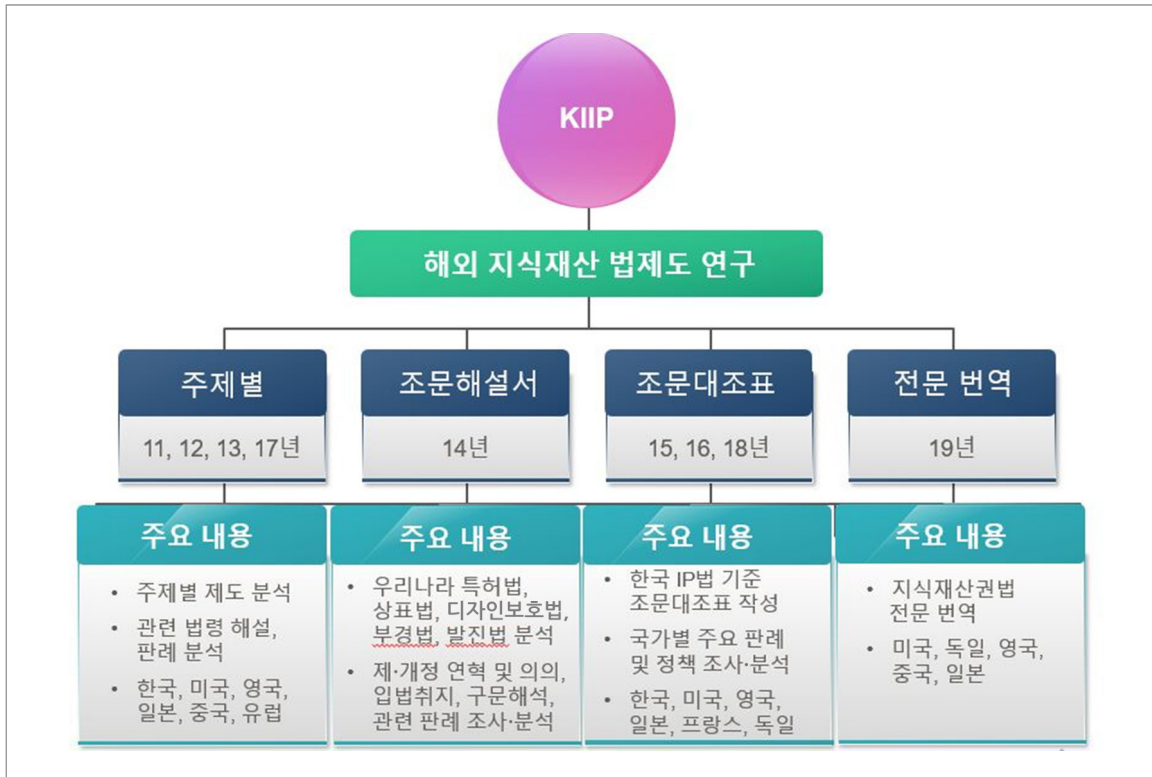
수행년도	연구과제명	세부 과제	내용 구성 (조사 국가)
2017	IP5 국가의 지식재산 출원, 심사, 등록 및 소송 세부절차 비교 분석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쟁점연구	주제별 세부절차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2018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경법	법률(조문대조표), 판례, 정책 (한국, 중국, 인도, 베트남)
2019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경법	법령분석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일본)
			쟁점 연구

주제별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2011, 2012, 2013, 2017년), 우리나라 지식재산 관련 법(특허·상표·디자인·부정경쟁)을 기준으로 주제별 제도 개요, 국가별 제도의 비교 및 차이점, 국가별 주요 논의사항(관련 법령, 해설, 주요 판례)을 비교·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2011년의 경우, 균등론, 간접침해, 무효의 항변, 특허권 남용 등의 주제에 대해 연구하였고, 2017년의 경우 지식재산 출원, 심사, 등록 및 소송 세부 절차에 대해 연구하였다.

조문별 해설서의 형태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2014년), 우리나라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 발명진흥법의 의의와 제·개정 연혁 등, 입법취지, 구문해석, 관련 판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조문대조표 등의 형태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2015, 2016, 2018년), 우리나라 지식재산 관련 법(특허·상표·디자인·부정경쟁)을 기준으로 조문대조표를 작성하여 비교·분석하였고, 국가별 주요 판례 및 관련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단, 우리나라 법조문을 기준으로 조사대상국의 관련법상 이에 상응하는 조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문대조표에서 빈칸으로 처리하였다.

▼ 그림 1 | KIIP의 해외 지식재산 법제도 연구 정리



또한 해외 지식재산 법령 제공 서비스는 'IP NAVI(한국지식재산보호원)', '세계법제정보센터(법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서 제공 중이나, 지식재산 중 일부 법령만 한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국가별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표 2 | 유관기관의 해외 지식재산 법령 서비스 현황

유관기관	법령 서비스 현황	서비스 유형
IP NAVI	미국,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국가를 한정하여 제공(개정법 미반영)	무료
세계법제정보센터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일부)번역본을 제공하여 지식재산 관련 법령의 전문 번역 서비스 미비	무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에 한정하여 제공	무료
로앤비	조약만 제공	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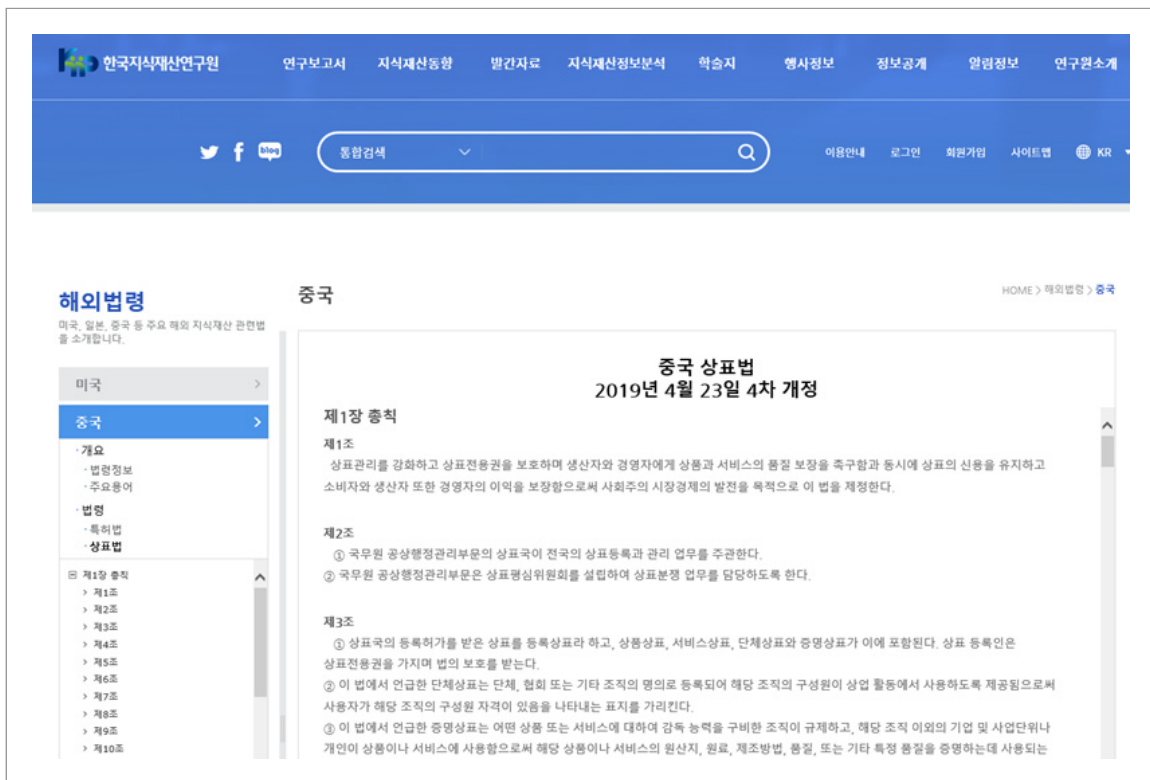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의 지식재산 법률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첫째, 국내·외 지식재산 최신 법률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후속 연구와 법 개정 등의 대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둘째,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 정책, 연구 및 사업수행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현행 법률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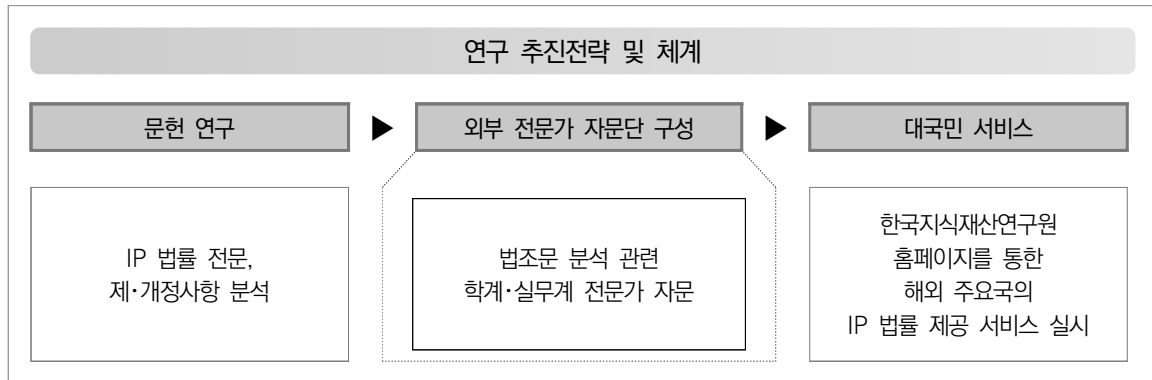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지식재산 법률정보를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분석·제공함으로써 해외 주요국의 지식 재산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산학연 등에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서비스 대상은 기업 IP 실무자, 변호사, 변리사, 정책 의사결정자, 학계, 연구계, IP에 관심 있는 일반인 또는 학생 등이다. 기초과제 연구결과물을 연구원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해외 주요국의 산업재산권 법제도 업데이트를 통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위와 같이 2019년 연구원에서는 '주요국의 지식재산권법 비교 분석 - 국가별 법령분석' 과제를 통해 미국, 독일, 영국, 중국, 일본의 지식재산권법(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의 전문 번역을 수행하고,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12월 10일부터 '해외법령소개' 파트에서 지식재산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동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국의 지식재산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이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검수한 후, 최종적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IP 법률 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한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프랑스, 베트남, 인도의 최신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권 법령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별 지식재산 법령 전문을 번역하고, 개정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신 법령 정보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자 하며, 분석대상 법률 목록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	베트남	인도
특허법	지식재산권법 (19 개정)	지식재산권법 (09 개정)	인도 특허법 (05 개정)
상표법			인도 상표법 (10 개정)
디자인법			인도 디자인법 (00 개정)

올해 분석 국가로 지정한 베트남, 인도의 경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분석결과 수입 대비 수출액이 매우 높은 지식재산 무역수지 흑자 국가이다. 또한 중국을 제외한 IP5 국가의 경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분석결과 수출 대비 수입액이 높다. 여기서 IP5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EU, 중국을 포함하나, 지식재산 무역수지 통계의 경우 EU가 아닌 개별 국가의 무역수지를 나타내고 있는 바, EU 주요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의 정보를 포함한다.

▼ 표 3 | 2019년 거래상대방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국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수출	수입	비고
미 국	-3,678.4백만 불	2,675.9백만 불	6,354.3백만 불	IP5
일 본	-776.1백만 불	483.8백만 불	1,259.9백만 불	
영 국	-493.1백만 불	1,340.3백만 불	1,833.3백만 불	
프랑스	-340.8백만 불	14.4백만 불	355.2백만 불	
독 일	-257.9백만 불	106.5백만 불	364.4백만 불	
중 국	2,013.8백만 불	2,557.1백만 불	543.3백만 불	
베트남	2,316백만 불	2,334.1백만 불	18.2백만 불	
인 도	481.3백만 불	512.1백만 불	30.8백만 불	
브라질	347.2백만 불	357백만 불	9.8백만 불	
싱가포르	237.6백만 불	3,357.7백만 불	3,120.1백만 불	
슬로바키아	211.2백만 불	211.4백만 불	0.1백만 불	
대 만	118백만 불	145.1백만 불	27.1백만 불	
러시아	90.8백만 불	97.4백만 불	6.6백만 불	
태 국	34백만 불	49.6백만 불	15.6백만 불	
아랍에미리트	19.9백만 불	38.7백만 불	18.8백만 불	
홍 콩	11.2백만 불	211.5백만 불	200.4백만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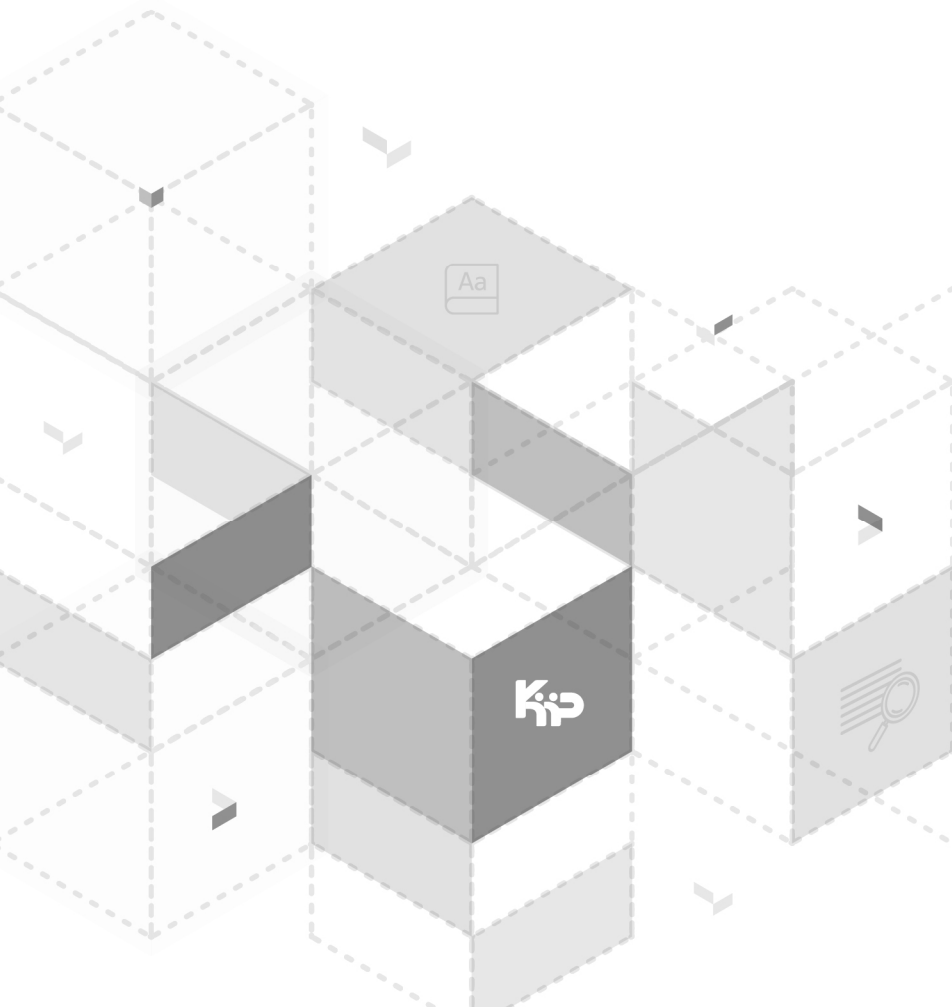
출처 : 한국은행,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주요국의 지식재산 법령분석

제1절 프랑스

제2절 인도

제3절 베트남



제1절 프랑스

1. 지식재산 환경

2018년 프랑스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총 출원 건수는 32만 8,220건으로 전년대비 9.69%가 증가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다른 지식재산권에 비해 특히 2018년 실용신안권 출원 건수가 전년대비 4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 표 4 | 최근 5년간(2014-2018년) 프랑스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단위: 건)

종류	2014	2015	2016	2017	2018
특허	16,533	16,300	16,218	16,247	16,222
실용신안	424	460	472	428	608
상표	269,837	282,993	274,201	270,412	298,895
디자인	15,517	13,997	14,751	12,132	12,495

* 출처 : WIPO statistics data base(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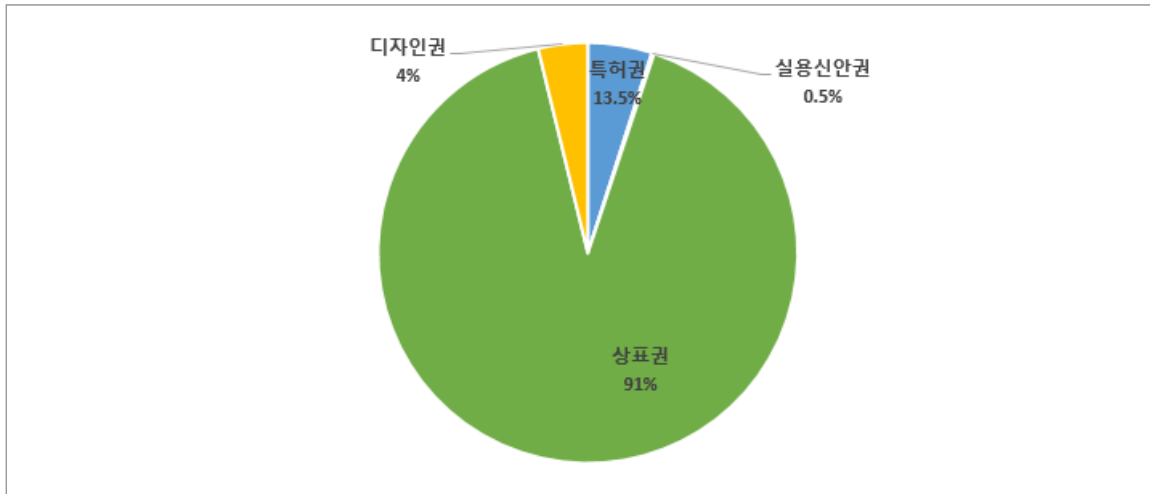
프랑스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는 연평균 1.5% 증가 추세이고, 지식재산권 중 실용신안권, 상표권은 증가 추세인 반면,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감소 추세이다.

▼ 표 5 | 프랑스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 연평균 증가율(2014-2018년)

구분	연평균 증가율(%)
특허권	-0.5%
실용신안권	9.4%
상표권	2.6%
디자인권	-5.3%

상표권 출원이 프랑스 총 지식재산권 출원의 91%를 차지하여,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중 출원 비중이 가장 높다. '18년 프랑스 상표출원 건수는 총 298,895건을 기록하였다.

▼ 그림 2 | 프랑스 지식재산권별 출원 비중(2018년)



2. 지식재산 법

프랑스의 최초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18세기 말 수립되어, 19세기, 20세기 동안 수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1992년 7월 3일 시행된 지식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 Intellectual Protection Code)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2012년 5월 3일, 2013년 7월 8일 개정을 거쳐, 2019년 5월 31일 개정법이 현행법이다. 이 법은 저작물, 디자인 모델, 특허발명, 기술 지식, 상표 및 서비스마크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특허법 규정은 지식재산권법의 제2부 산업재산권 제6권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에 규정되어 있으며, L611-1조부터 L622-8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프랑스의 상표법 규정은 지식재산권법의 제2부 산업재산권 제7권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디자인 및 모델(Marques de fabrique, de commerce ou de service et autres signes distinctifs)에 규정되어 있으며, L711-1조부터 L731-4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프랑스의 디자인법 규정은 지식재산권법의 제2부 산업재산권 제5권 도안 및 모델(Les dessins et modèles)에 규정되어 있으며, L511-1부터 L522-2-7까지 규정되어 있다.

붙임 1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제1편 보호 요건 및 방식

제1장 적용 범위

제1절 보호대상

제L.511-1조

특히 제품의 선, 윤곽, 색채, 모양, 질감 또는 재료에 의해 특징이 나타나는, 제품 또는 제품 일부의 외관은 도안 또는 모델로 보호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제품 그 자체 또는 제품 장식의 특징이 될 수 있다.

특히 하나의 합성품으로 결합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부품, 포장, 외장, 그래픽심볼 및 글 자체와 같은, 모든 공업품 또는 수공업품은 제품으로 간주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외된다.

제L.511-2조

신규하고 독자성(caractère propre)이 나타나는 도안 또는 모델만이 보호될 수 있다.

제L.511-3조

등록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에, 어떤 동일한 도안 또는 모델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도안 또는 모델은 신규한 것으로 간주된다.

도안 또는 모델은, 그 특징이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에서만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L.511-4조

도안 또는 모델이 정통한 관찰자(observateur averti)에게 불러일으키는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이, 등록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전에 공개된 다른 도안 또는 모델에 의하여 생겨난 것과 다른 경우에는, 그 도안 또는 모델은 독자성을 가진다.

고유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도안 또는 모델의 실현에 있어서 창작자에 주어진 자유도가 고려된다.

제L.511-5조

합성품 부품의 도안 및 모델은, 다음의 경우에만, 신규하고 독자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된다.

- a) 일단 합성품(produit complexe)에 합체된 이상, 유지관리, 서비스, 수리를 제외하고, 최종 사용자가 해당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부품 ;
 - b) 부품의 가시적(可視的) 특성은 그 자체로 신규성 및 독자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 대체될 수 있는 다중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은 복합품(produit composé)으로 간주된다.

제L.511-6조

도안 또는 모델은, 공고, 실시 또는 다른 모든 방법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등록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전에, 해당 분야의 통상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도안 또는 모델이 유럽 연합 내에서 활동하는 업자에게 상당히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공개된 것이 아니다.

다만, 도안 또는 모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제3자에게 공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중에 공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개가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전 12개월 이내에 행해진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 공개는 참작되지 않는다 :

- a) 도안 또는 모델이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해서 공개되었거나 또는, 그 공개가 창작자나 그 승계인이 제공한 정보나 실행 행위를 근거로 제3자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 ;
 - b) 또는,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한 남용행위의 결과로, 도안 또는 모델이 공개된 경우.
- 본 조에 규정된 12개월 기간은, 2001년 10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공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L.511-7조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도안 또는 모델은 보호되지 않는다.

제L.511-8조

다음의 것은 보호될 수 없다 :

- 1° 그 특징이 제품의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 요구된 것만으로 이루어진 제품의 외관 ;
- 2° 각각의 제품이 자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서, 접촉, 접속연결, 내·외부의 배치를 통해 다른 제품과 기계적으로 결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의 정확한 형상과 크기가 필연적으로 복제되어야만 하는 제품의 외관.

다만, 모듈 형식의 집합으로 볼 때 호환가능한 제품과 다양한 조합이나 결합을 가능케 하는 목적을 가진 도안 또는 모델은, 보호될 수 있다.

제2절 보호 이익

제L.511-9조

본 권의 규정에 의해 부여된 도안 또는 모델의 보호는 등록에 의해 취득된다. 그 보호는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에 부여된다.

등록출원인은,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보호의 수혜자로 간주된다.

제L.511-10조

도안 또는 모델이 제3자의 권리를 기만하거나 또는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도안 또는 모델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소송으로 소유권의 회복을 주장할 수 있다.

권리회복소송은 도안 또는 모델의 등록공고일로부터 또는, 도안 또는 모델의 등록 또는 취득 공고 시 악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기간 만료시로부터 5년의 시효를 가진다.

제L.511-11조

프랑스가 당사국인 국제협약의 규정을 유보조건으로 하여, 유럽공동체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 지역협정 당사국의 영토에 영업소나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그 자의 본국이 프랑스 도안 또는 모델에 대하여 상호보호주의를 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권 규정의 혜택을 누린다.

제3장 도안 및 모델의 등록

제1절 등록출원

제L.512-1조

등록출원은, 출원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재지가 파리에 있거나 프랑스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산청에 출원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이다.

출원인이 파리 이외의 프랑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재지를 가지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등록출원을 산업재산청 또는 상사법원의 서기과 또는, 상사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상사부를 담당하는 법원의 서기과에 등록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등록출원서가 법원 서기과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기과는 그 출원서를 산업재산청에 이송한다.

제L.512-2조

등록출원서는 본 권에 규정된 방식과 조건에 따라 제출된다.

등록출원서는, 출원인의 식별 및 보호를 구하는 도안 또는 모델의 복제물을 포함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수리된다.

등록출원은, 다음의 경우, 거절된다 :

- a) 정해진 방식과 조건에 따라 제출되지 않은 경우 ;
- b) 그 공고가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훼손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

거절은, 출원인으로 하여금 먼저, 경우에 따라서, 출원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서는, 선언되지 않는다.

수시로 제품의 형상 및 장식을 변경하는 산업 분야에 속하는 도안 또는 모델에 대하여, 출원은 국사원령에 의해 정해진 간이절차로 실행될 수 있다. 이러한 출원의 결과로 인한 권리 실효는, 그 출원이, 국사원령이 정하는 일반 규정에 따라, 적어도 공고 예정일 6개월 전에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 선고된다.

제L.512-3조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출원인 또는 출원명의인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초래될 수 있는 실효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

제2절 등록 무효**제L.512-4조**

도안 또는 모델의 등록은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로 선언된다 :

- a) 그 등록이 제L.511-1조 내지 제L.511-8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b) 그 명의자가 제L.511-9조에 규정된 보호의 수혜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 ;
- c) 그 도안 또는 모델이, 등록출원서 제출일 이후에,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에는 우선일 이후에, 공중에게 공개대상이 되었고, 공동체 도안 및 모델, 프랑스 도안 및 모델, 또는 프랑스를 지정한 국제 도안 및 모델의 등록에 의하여, 또는 이러한 도안 및 모델의 등록출원에 의하여 선행일자 이후 보호되고 있는, 선행 도안 또는 모델에 수반된 권리를 무시한 경우 ;
- d) 그 등록이 제3자의 저작권을 훼손하는 경우 ;
- e) 그 등록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 먼저 보호되고 있는 식별력 있는 표장의 도안 또는 모델을 사용한 경우 ;

b), c), d) 및 e)에 규정된 무효사유는 항변권이 부여된 자에 의해서만 원용(援用)될 수 있다.

검찰은, 그 무효사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직권으로 도안 또는 모델의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L.512-5조

무효사유가 도안 또는 모델의 일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등록은 수정된 형태로 유지될 수 있는데, 다만 그 형태하에서, 도안 또는 모델의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호 부여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L.512-6조

전부 또는 일부 무효를 선언하는 법원의 판결은 절대적인 효력을 가진다. 이 판결은 제L.513-3조에 언급된 국내 등록원부에 기록된다.

제3장 등록에 의해 부여된 권리**제L.513-1조**

등록은, 출원일로부터, 5년의 기간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5년의 기간은 매 5년의 기간으로 최대 2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2001년 10월 1일 이전에 출원된 도안 또는 모델은, 가능한 연장 없이도, 그 출원일로부터 25년간, 보호된다. 2001년 10월 1일 이전에, 새로운 25년의 기간에 대하여 보호가 연장된 도안 또는 모델은, 해당 기간의 만료 시까지 보호된다.

제L.513-2조

다른 법규, 특히 본 법전 제I권 및 제III권의 적용의 결과로 나타난 권리를 해치지 않는다면, 도안 또는 모델의 등록은 그 명의자에게, 권리양도 또는 실시권 양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L.513-3조

출원된 도안 또는 모델에 수반된 권리를 변경하거나 이전하는 모든 행위는, 국내 도안 및 모델 등록원부에 등록되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 전의 행위라도, 행위일 후에 권리를 취득하고, 권리취득 시에 그러한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국내 또는 국제 도안 및 모델 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실시계약의 당사자인 실시권자는, 그 자신이 입은 피해의 보상을 받기 위하여, 도안 또는 모델의 소유권자가 제기한 침해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L.513-4조

도안 또는 모델의 소유권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안 또는 모델이 화체된 제품의 제조, 제공, 거래에의 제공, 수입, 수출, 환적(換積), 사용, 또는 이러한 목적의 보유 행위는 금지된다.

제L.513-5조

도안 또는 모델의 등록에 의해 부여된 보호는, 정당한 관찰자에게 전체적으로 다른 시각적 인상을 주지 않는 모든 도안 또는 모델에 미친다.

제L.513-6조

도안 또는 모델의 등록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다음 행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 a) 비영리 목적의 사적(私的)으로 행해진 행위
- b) 실험 목적으로 행해진 행위
- c) 인용 또는 교육 목적의 복제행위로서, 그 행위가 등록 및 권리명의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공정한 거래관행에 합치하며, 도안 또는 모델의 정상적인 사용에 해가 되지 않는 경우.

제L.513-7조

도안 또는 모델의 등록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다음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 a) 일시적으로 프랑스 영토에 들어가는 다른 국적의 선박 또는 비행체 내에 설치된 장비 ;
- b) 그 선박 또는 비행체의 수리를 위해 부품 및 부속품을 프랑스에 수입할 때 또는 그 수리 시에.

제L.513-8조

도안 또는 모델의 등록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도안 또는 모델이 화체되어 있는 제품이 해당 도안 또는 모델 소유권자에 의해 또는 그의 동의를 얻어 유럽공동체 또는 유럽경제지역 내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그 도안 또는 모델이 화체되어 있는 제품에 관한 행위에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

제4장 여러 가지 규정들**제L.514-1조**

본 권의 실행조건은, 필요한 경우, 국사원령에서 정한다.

제L.514-2조

일부 산업에 특유한 행정명령조치는, 특히 산업재산청의 승인에 따른 사적(私的) 등록부의 비치를 통하여, 기업가들로 하여금 도안 또는 모델의 사용 우선권을 증명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제5장 공동체 도안 또는 모델**제L.515-1조**

공동체 도안 또는 모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 (EC) 6/2002호 이사회 규칙 제19조에 규정된 권리에 대하여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야기하는 침해를 구성한다.

제L.515-2조

제L.515-1조에 언급된 규칙의 제71조 제2호에 규정된 집행명령문은 산업재산청에 의해 압인된다.

제2편 분쟁**제1장 국내 도안 또는 모델에 관한 분쟁****제L.521-1조**

제L.513-4조 내지 제L.513-8조에 규정된 대로, 도안 또는 모델의 소유권을 해치는 모든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침해를 구성한다.

도안 또는 모델의 출원 이후 등록공고 이전의 행위는, 그 도안 또는 모델에 수반된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러나 등록출원서 사본이 어떤 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그 자의 책임은 그 통지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 설령 그 행위가 등록공고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조사되어질 수 있다.

제L.521-2조

민사 침해 소송은 도안 또는 모델의 소유권자에 의해 제기된다.

다만, 전용실시권자는, 계약에 반대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촉 이후에도 도안 또는 모델의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시허락 계약의 모든 당사자는, 그 자신이 입은 피해의 보상을 받기 위하여, 다른 당사자가 제기한 침해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L.521-3조

침해소권은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원인이 되는 최종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5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제L.521-3-1조

도안 및 모델에 관한 민사 소송 및 청구는, 이 소송 및 청구가 부정경쟁과의 부대 문제를 포함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민법전 제2059조 및 제2060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상기 규정은 중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주(主) : 2019년 5월 22일 법률 제2019-964호 제124조 III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은 동 법률의 공포일에 유효한 권리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규정은 기판력을 가진 결정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L.521-4조

침해는 모든 방법으로 입증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침해소권을 가진 모든 자는,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집행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원고가 지정한 감정인의 참석 하에, 신청에 따라 관할 민사법원이 내린 명령에 근거하여,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표본 추출과 함께 또는 표본 추출 없이 명세서 작성하도록 하거나, 또는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모든 서류에 대한 물권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명령은 침해가 없는 경우에도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서류에 대한 물권압류를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확인을 위해 침해가 의심되는 물건의 생산 및 유통에 사용되는 재료 및 기구의 물권압류 또는 상세한 설명을 명령할 수도 있다.

법원은, 침해소송이 이후에 이유 없다고 판결되거나 또는 조치들이 무효될 경우, 피고에 대한 잠재적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원고의 담보설정하에 조치의 실행을 명령할 수 있다.

원고가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민사적 방법 또는 형사적 방법에 따른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압류 전체는 압류처분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취소된다. 압류처분을 받은 자는 신청 이유를 밝힐 필요도 없고,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이다.

제L.521-4-1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모든 자의 청구에 따라,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증거조사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데, 설령 제L.722-4조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침해 압류가 사전에 명령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하다.

제L.521-5조

신청이 있는 경우, 본 편에 규정된 민사적 절차의 실질심사 또는 가치분 수소법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로, 신청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침해품의 유통망과 원산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피고 또는 침해품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또는 침해활동에 사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진 모든 자 또는, 그 제품의 생산, 제조, 유통 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정당한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이 명령되어질 수 있다.

제L.521-6조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필요한 경우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침해자로 추정된 자 또는 해당 침해자가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중개자에 대해, 권한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행위의 수행을 방지하는 것을 의도한 모든 조치를 명하도록 관할민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관할민사법원은 또 상황에 따라 해당 조치를 대신 형식으로 행해질 필요가 없는 경우, 특히 조치의 지연에 의해 원고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에 의해 긴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급속심리 신청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은 원고가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증거가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 또는 해당 침해가 급박하다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청구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침해추정 제품이 상업적 거래망에서 유통되거나 또는 진입할 수 없도록, 침해 추정행위의 계속을 금지할 수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침해금지명령을 원고의 보상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설정에 종속시킬 수도 있으며, 또는 권리서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압류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원고가 손해의 회복이 어렵다는 상황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통법에 따라 은행 계좌 및 기타 자산에 대한 동결을 포함하여, 침해자로 추정되는 자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명령할 수 있다.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산을 정하기 위해서, 법원은 은행, 재정, 회계, 상업에 관한 자료의 송부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그 피해의 존재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예납금을 허여할 수도 있다.

급속심리 또는 청원에 따른 수소법원은, 이후 침해소송이 기각 판결되거나 또는 조치들이 취

소될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는 피고의 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담보를 설정할 것을 명령하는 조치의 실행을 종속시킬 수 있다.

권리침해를 중지시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이 본안소송 개시 전에 명령되어진 경우에는, 원고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민사적 방법 또는 형사적 방법을 통해 상소하든지, 법원의 검사장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든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리고 피고는 그 신청 이유를 제시할 필요도 없이, 명령이 내려진 조치들은 취소되며, 청구될 수 있는 손해배상과는 별개이다.

제L.521-7조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법원은 명확하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 1° 침해로 인한 부정적인 경제 결과로서, 피해자가 입은 손실 및 일실이익 ;
- 2° 침해로 야기된 정신적 피해 ;
- 3° 그리고 침해자가 침해행위로부터 취한 지적, 물질적, 판촉 투자의 절약을 포함하여, 침해자가 실현한 이익.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으로 손해배상액을 같음하여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할 수도 있다. 이 금액은, 침해자가 훼손한 권리의 사용허락을 요구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 또는 수수료 금액을 상회한다. 이 금액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L.521-8조

침해에 대한 민사적 유책판결이 내려진 경우, 법원은, 피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침해품으로 인정된 제품 및, 침해제품의 창작이나 제조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자재를, 유통경로로부터 회수시키거나, 유통경로에서 완전히 제거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파기하거나 몰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특히 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신문 또는 온라인 공중매체서비스에 판결문의 전문 또는 요약문을 공고하거나 게재하는 것과 같이, 판결문의 공시에 적절한 모든 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다.

상기 두 조항에 언급된 조치는 침해자 부담 비용으로 명령되어진다.

제L.521-9조

사법 경찰관은, 제L.521-10조 제1항에 규정된 위반을 확인하자마자 즉시, 불법적으로 제조, 수입, 보유, 판매에의 제공, 인도되었거나 또는 공급된 제품 및 당해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특별히 설치된 자재 또는 도구를 압류할 수 있다.

제L.521-10조

본 권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모든 행위는, 3년의 구금형과 30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범죄가 조직적으로 행해졌거나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온라인 공중통신망 상에서 행해졌거나 또는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상품에 대한 행위일 경우에는, 그 형벌은 7년의 구금형과 75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추가적으로, 법원은 위반행위에 사용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확정적 또는 임시적으로, 폐쇄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임시적 폐쇄가, 근로계약의 파기나 중단을 야기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종업원에게 금전적 피해를 야기시킬 수도 없다. 확정적 폐쇄가 직원의 해고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해직 예고 보상금 및 해직보상금 이외에, 근로계약이 파기된 경우 노동법전 제L.122-14-4조 및 제L.122-14-5조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을 초래한다. 이러한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의 구금형 및 3,7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L.521-11조

제L.521-10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인으로서의 자연인은, 추가적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침해 판결 제품 및 위반행위를 하는데 사용되었거나 사용하고자 했던 모든 물건을 유통경로에서 제거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법원은,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몰수되었거나 유통경로에서 제거된 제품과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선고받은 자의 비용으로 파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유죄판결 받은 자의 비용으로, 형법 제131-35조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한 판결문의 게시 또는 전파를 명령할 수도 있다.

제L.521-12조

형법전 제121-2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L.521-10조 제1항에 정의된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선언된 법인은, 형법전 제131-38조에 규정된 방식의 벌금형 이외에, 동법 제131-39조에서 정하는 형벌이 부과된다.

동법 제131-39조 2°에 언급된 금지는,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행위의 실행 또는 그 실행을 계기로 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형사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선언된 법인은, 추가적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침해로 판결된 물건 및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는데 있어 사용되었거나 사용하고자 한 모든 것을 유통경로에서 제거하도록 선고받을 수 있다.

법원은,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몰수되었거나 유통경로에서 제거된 제품과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선고받은 자의 비용으로 파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L.521-13조

본 권에 의해 보장된 권리가 재차 반복하여 위반되는 경우, 또는 범죄인이 피해자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경우에는, 형벌이 2배로 부과된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추가적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상사법원, 상공회의소, 직능회의소 및 노사조정위원회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

제1장의2 유치(留置)**제L.521-14조**

현행 공동체규칙에 의해 규정된 경우와는 별개로, 세관은, 도안 또는 모델의 소유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그 권리의 근거제시가 첨부된 서면 청구에 따라, 침해라고 주장되는 상품을 그 통제권 내에 유치할 수 있다.

그 유치는 신청인과 보유자에게 즉각적으로 통지된다. 세관은 또한 이러한 조치를 법원검사장에게도 통지한다.

본 조 둘째 단락 제1문에 언급된 통지의 경우, 상품의 성질, 이미지 및 실제 또는 추정량은, 관세법전 제59조의2 규정에 저촉함에도 불구하고, 권리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통지된다. 이러한 정보는 본 조에 규정된 유치 조치의 실행에 앞서 통지될 수 있다.

제L.521-17-1조 및 제L.521-17-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를 것을 유보조건으로 하여, 유치 조치는 신청인이, 상품의 유치통지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동안의 기간 내에 또는 부패하기 쉬운 식료품의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 3일 동안의 기간 내에, 세관 또는 관할 민사법원이 정한 보전 조치기관에, 민사절차 또는 경범죄 절차로 제소되었다든지, 아니면 이후 침해소송에서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상품을 유치한 자가 지불해야 할 보상금 목적의 담보를 설정하였다든지, 아니면 법원검사장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든지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그 유치 조치는 당연 해제된다. 세관은 본 항에 규정된 근무일 기준 10일의 기간을 신청인의 정당한 정식 요청에 따라 최대 1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의 연장의 경우에는, 법원의 검사장과 상품의 보유자에게 그 사실이 통지된다.

유치 조치 또는 관할 민사법원에 의해 선고된 보전조치와 관련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되, 제L.521-18조 및 제L.521-1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넷째 단락에 언급된 소송의 개시를 위하여, 신청인은, 세관원이 지켜야 할 업무상 비밀에 관한 관세법전 제59조의2의 규정에 저촉함에도 불구하고, 세관으로부터 유치된 제품의 발송인, 수입업자, 수취인 및 유치된 제품 보유자의 이름과 주소, 유치제품의 이미지 및 수량, 원산지, 출처와 목적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단락에 언급된 유치는 다음에는 미치지 않는다 :

- 하나의 유럽공동체회원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제조되거나 자유로운 유통상태에 놓여있는 상품으로서, 관세법 제1조에 정의된 통관구역을 통과한 후에 다른 유럽공동체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어지기 위해서 시장에 제공되는 공동체 지위를 가지는 상품 ;
- 다른 유럽공동체회원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제조되거나 자유로운 유통 상태에 놓여있는 상품으로서, 관세법전 제1조에 규정된 통관구역을 통과한 이후에 비유럽공동체회원국으로 수출되어질 상품으로서 유럽공동체회원국 내에 통관상태에 놓여있는 공동체 지위를 가지는 상품.

제L.521-15조

출원된 도안 또는 모델의 소유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서면 청구가 없고, 현행 공동체규칙이 정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세관은, 그 통제권 안에서 출원 도안 및 모델 또는 전용실시권을 훼손할 수 있는 제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러한 유치는 도안 또는 모델의 출원인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즉각적으로 통지된다. 법원의 검사장에게도 이러한 조치내용이 통지된다.

본 조 둘째 단락 제1문에 언급된 통지의 경우, 상품의 성질, 이미지 및 실제 또는 추정량은, 관세법전 제59조의2 규정에 저촉함에도 불구하고,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통지된다. 이러한 정보는 본 조에 규정된 유치 조치의 실행에 앞서 통지될 수 있다.

유치 조치는, 세관이 출원된 도안 또는 모델의 소유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로부터 본 법 제 L.521-4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본 조 제2항 첫째 단락에 언급된 유치통지시로부터 근무일 기준 4일 기간 내에 신청된 신청서를 접수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해제된다.

신청서가 본 조 넷째 단락에 합치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제L.521-4조 넷째 단락에 언급된 근무일 기준 10일의 기간은 그 신청서를 세관이 접수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본 조는 부패하기 쉬운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L.521-16조

- I. 현행 공동체규칙에 규정된, 출원 도안 또는 모델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에 대한 유치가, 출원된 도안 또는 모델의 소유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소송참가가 신청되어지거나 접수되기 전에 행해진 경우, 세관원은 관세법전 제59조의2의 규정에 저촉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이러한 조치의 실행을 통지할 수 있다. 세관원은 또한 상품의 수량과 성질에 관한 정보를 상표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현행 공동체규칙에 규정된, 도안 또는 모델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에 대한 유치가, 출원된 도안 또는 모델의 소유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소송참가가 신청되어지거나 접수된 이후에 행해진 경우, 세관원은 그 소유권자 또는 전용실

시권자에게 권리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그 공동체규칙이 정하는 정보를 통지할 수 있다.

- II. 현행 공동체규칙에 규정된 유치의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출원된 도안 또는 모델의 소유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L.521-17조

제L.521-14조 및 제L.521-16조 I의 둘째 단락에 규정된 유치 기간 동안에, 출원된 도안 또는 모델의 소유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신청 또는 세관의 요청에 따라, 유치된 제품을 검사할 수 있다.

유치된 제품의 검사 시, 세관은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 출원된 도안 또는 모델의 소유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들 표본은 분석 및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만 그에게 제공될 수 있다.

제L.521-17-1조

- I. 출원 도안 또는 모델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유치가, 제 L.521-14조에 언급된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실행된 경우에는, 출원 도안 또는 모델을 훼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하는 경우, 세관원의 통제하에 폐기될 수 있다.
- 1° 신청인이, 서면으로 그리고 감정인에 의하여, 세관에, 유치통지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동안의 기간 내에 또는 부패하기 쉬운 식료품의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 3일 동안의 기간 내에, 제품의 침해성을 확인하였다 ;
 - 2° 신청인이 서면으로 세관에, 유치통지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동안의 기간 내에 또는 부패하기 쉬운 식료품의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 3일 동안의 기간 내에, 그의 책임하에, 상품의 폐기를 동의함을 확인하였다 ;
 - 3° 상품을 보유한 자가 서면으로 세관에, 유치통지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동안의 기간 내에 또는 부패하기 쉬운 식료품의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 3일 동안의 기간 내에, 상품의 폐기에 동의함을 확인하였다.
- II. 상품을 보유한 자가, I 3°에 언급한 기간 내에, 상품의 폐기에 동의함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그 폐기에 반대한다는 것도 세관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폐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III. 상품을 보유한 자가 서면으로 파기에 동의함을 확인하지 않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상품의 폐기에 동의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에는, 세관은, 유치통지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동안의 기간 내에 또는 부패하기 쉬운 식료품의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 3일 동안의 기간 내에, 즉각 제L.521-4조 넷째 단락에 언급된 조치를 한 신청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

한다. 기간 연장의 경우, 법원 검사장과 상품을 보유한 자에게도 통지된다.

본조 I에 규정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고, 신청인이 세관에 제L.521-4조 제4항에 언급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정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치 조치는 당연 해제된다.

- IV. 제L.521-14조 제3항 및 제L.521-15조에 규정된 정보 통지의 일환으로, 세관은 신청인에게 본 조에 규정된 절차의 존재를 알린다. 제L.521-14조 제6항에 규정된 정보도 본 조치의 실행을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통지될 수 있다.

제L.521-17-2조

- I. 출원 도안 또는 모델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유치가, 제L.521-14조에 언급된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실행되어진 경우에는, 소량화된 특송제품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통하여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호소하는 경우, 관세원의 통제하에, 폐기될 수 있다.
- II. 제L.521-14조 제2항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통지는, 유치실행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의 기간 내에 행해진다. 통지는 세관의 제품 폐기여부 의향 및 다음의 사항을 언급한다 :
 - 1° 제품보유자는 세관에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서 유치통지 시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의 기간을 가진다 ;
 - 2° 유치 시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동안의 기간 내에, 제품보유자가 세관에 그 파기에 동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관련 제품은 폐기될 수 있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품보유자가 침묵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자는 그 폐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세관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파기된 제품의 실제 또는 추정량 및 성질과 관련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III. 제품의 신고자 또는 보유자가 서면으로 폐기에 동의함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또는 상품의 파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경우에, 세관은, 그러한 사실을 즉각 신청인에게 알리고, 제품의 수량, 성질, 및 이미지를 통지한다.
- IV. 신청인이 제L.512-14조 넷째 단락에 언급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정당함을, 본 조 III에 규정된 통지 시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의 기간 내에, 세관에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치 조치는 당연 해제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신청인은, 관세법전 제59조의2의 규정에 저촉함에도 불구하고, 세관으로부터 유치된 제품의 발송인, 수입업자, 수취인과 보유자의 이름과 주소 및, 유치제품의 수량, 원산지, 출처와 목적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V. 본 조 I에 언급된 소량화된 특송제품의 개념은 관세청장령에 의해 정해진다.
- VI. 본 조는 부패하기 쉬운 식료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L.521-17-3조

관세법전 제59조의2 규정에 저촉함에도 불구하고, 세관에 의해 통지된 정보를 신청인이, 본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은 그 신청을 폐기하거나,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 신청의 갱신을 거절한다.

제L.521-18조

제L.521-14조 내지 제L.521-17-3조에 규정된 조치들을 선포하기 위해, 세관원은 관세법전이 그들에게 부여한 권한들을 행사한다.

제L.521-19조

국사원령은 다음의 사항을 정한다 :

- 1° 제L.521-14조 내지 제L.521-17-3조에 규정된 조치의 실행 조건 ;
- 2° 유럽연합규정이 정하고 있는, 도안 또는 모델의 침해를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의 폐기 요건 및 그 파기에 선행하는 표본 추출 요건.

제2장 공동체 도안 또는 모델에 관한 분쟁

제L.522-1조

본편 제1장 및 제1장의2는 공동체 도안 또는 모델 소유권에 대한 훼손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제L.522-2조

소송 및 청구가 도안 또는 모델에 관한 문제와 부대적으로 부정경쟁의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경우를 포함하여, 국사원령이 공동체 도안 또는 모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 이사회 규칙(EC) 제6/2002호 제80조에 규정된 소송 및 청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1심법원과 항소법원의 장소관할 및 사물관할을 결정한다.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제1편 발명특허

제1장 적용범위

제1절 총칙

제L.611-1조

모든 발명은, 그 권리자 또는 그의 승계인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는 산업재산청장에 의해 교부되는, 산업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동 권리의 부여는 제L612-21조에 규정된 법적 확산을 야기한다.

프랑스가 당사국인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본편이 적용되는 영역 이외에 그 거소 또는 영업소를 둔 외국인은, 프랑스인이 상기 외국인의 국가 내에서 상호주의에 의한 보호의 혜택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본편의 이익을 향유한다.

프랑스가 당사국인 국제협약에 반대조항이 없는 경우, 본 조의 규정은 달과 그 밖의 천체를 포함하는 대기권 밖에서의 사용과 활용에 대한 국가 활동 원칙을 정한 1967년 1월 27일 조약 제7조에 따라 천체를 포함하는 대기권 밖의 공간에서 또는 국가의 영향력이 미치는 우주공간 물체에 대해서 실현되거나 사용된 발명에 적용된다.

제L.611-2조

발명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은 다음과 같다:

- 1° 출원일로부터 20년의 존속기간 동안 부여되는, 발명특허;
- 2° 출원일로부터 10년의 존속기간 동안 부여되는, 실용신안;
- 3° 제L.611-3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특허에 첨부된 추가보호증, 동 보충보호는 첨부된 특허의 법정기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이 기일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고 동조에 언급된 시판허가교부일로부터 17년을 초과할 수 없다.

특허에 관한 이 권(卷)의 규정들은 제L.612-14조, 제L.612-15조 첫째 단락 및 제L.612-17조, 제L. 613-23조부터 제L.613-23-6조까지의 규정들을 제외하고 실용신안에도 적용된다. 이 규정들은 또한 제L.611-12조, 제L.612-1조부터 제L.612-10조까지, 제L.612-12조부터 제L.612-15조까지, 제L.612-17조, 제L.612-20조, 제L.613-1조 및 제L.613-25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추가보호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L.611-3조

의약품, 의약품을 획득하는 방법, 이 의약품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물질 또는 이러한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을 대상으로 하고 프랑스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모든 발명특허의 소유권자는, 이러한 것들이 공중보건법전 제L.601조 또는 제L.617-1조에 따라 시판허가의 대상이 되는 일반약품을 조제하는데 사용되는 경우, 특허를 부여받은 때부터, 이 권에서 정해지고 국사원령에 따라 구체화된 형식과 조건에 따라, 그 시판허가를 받은 해당 특허 부분에 대한 보충적 보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제L.611-4조 삭제

제L.611-5조

산업재산에 관한 1990년 11월 26일 법률 제90-1052호가 발효되기 이전에 출원된 추가증(Certificat d'addition)은 그 출원일에 적용되던 규칙들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발생된 권리의 행사는 본 권(卷)의 규정에 따른다.

제2절 산업재산권을 받을 권리

제L.611-6조

제L.611-1조에 언급된 산업재산권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속한다.

여러 명이 서로 독립적으로 발명을 실현한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받을 권리는 가장 앞선 출원일을 증명하는 자에게 속한다.

산업재산청장에 대한 절차에서, 출원인이 산업재산권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L.611-7조

발명자가 종업원인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더 유리한 계약조건이 없다면, 산업재산권을 받을 권리는 다음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

1. 발명임무가 종업원의 실질적인 직무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노무계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든지, 아니면 종업원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된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든지, 종업원에 의해 행해진 발명은 사용자에게 귀속한다. 사용자는, 이러한 발명을 산업재산권으로 출원하는 경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권리부여 시에, 그 발명의 창작자인 종업원에게 발명을 통지한다.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의 창작자인 종업원에 대한 추가수당 조건들은 단체협약, 도급계약 및 개별 노무계약에 의하여 결정된다.

만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수당에 관한 모든 분쟁은 제L.615-21조에 의해 설립된 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이 관할한다.

2. 기타의 모든 발명은 종업원에게 속한다. 그러나, 종업원에 의해 행해진 발명이, 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든지, 아니면 기업체의 직무범위에 속하든지, 아니면 기업체의 특유한 방법이나 기술 또는 기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의 인식이나 사용에 의해서 행해졌다면, 사용자는, 국사원령에 의해 정해진 조건과 기간에 따라서, 그의 종업원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에 수반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나 용익권을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종업원은 제L.615-21조에 의해 설립된 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이 정하는 적정금액을 받아야 한다 : 조정위원회와 법원은 발명의 산업상 및 상업상의 유용성과 서로 간의 최초출자에 따른 적정가격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 특히 사용자와 종업원에 의해서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참작한다.

3. 발명의 창작자인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발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시행규칙에 의해 정해진 형식과 기간에 따라 그 수령을 통지한다.

종업원과 사용자는 해당 발명에 관한 모든 유용한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종업원과 사용자는 이 권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행사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해칠 수 있는 모든 공개를 삼가하여야 한다.

직무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종업원과 사용자 사이의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4. 본 조의 시행 형태와 방법은 국사원령으로 정해진다.
5. 본 조의 규정은, 국사원령이 정하는 형태와 방법에 따라, 국가 공무원, 공공단체 및 기타 모든 공법상의 법인에 속한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L.611-8조

산업재산권이 발명자나 그 승계인으로부터 절취한 발명에 대해서 출원되었거나, 아니면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출원된 경우에 있어서, 그 피해자는 그 출원이나 부여된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소유권 청구소송의 시효는 산업재산권리증 교부의 공고일로부터 5년이다.

그러나, 권리의 교부 또는 취득 시 악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기간은 그 권리가 만료된 때부터 5년이 된다.

제L.611-9조

발명자는, 종업원이건 또는 아니건 간에, 특허에 발명자로서 기재된다 ; 발명자는 또한 발명자로서 기재되는 것을 반대할 수도 있다.

제3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제L.611-10조

1. 진보성 있고 산업상 이용가능한 신규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은 본 조 첫째 단락에서 의미하는 발명으로 보지 않는다 :
 - a) 발견 및 과학적인 이론과 수학적 방법 ;
 - b) 심미적인 창작물 ;
 - c) 지적활동의 수행이나 게임 또는 경제활동 분야의 계획 및 원리와 방법,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 d) 정보의 제시
3. 본 조 둘째 단락 규정은 특허출원 또는 특허가, 그 자체로서 판단하여, 그 사항들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되기만 하면, 상기 규정에 열거된 사항들에 대한 특허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제L.611-16조 내지 제L.611-19조의 규정들을 조건부로, 생물학적 물질의 전체 또는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 또는 생물학적 물질을 생산, 처리 또는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은 첫째 단락에 규정된 조건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유전자 정보를 포함하면서 생태계 내에서 스스로 번식하거나 번식되어질 수 있는 물질은 생물학적 물질로 간주된다.

제L.611-11조

발명이 종래기술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발명은 신규한 것으로 간주된다.

종래기술은 특허출원일 전에 서술이나 구술, 사용 또는 기타의 모든 수단에 의하여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놓여진 모든 것으로 구성된다.

본 조 둘째 단락에 언급된 날짜보다 앞선 출원일을 갖고 있고, 그 날짜에 또는 그 날짜 이후에 공개된 프랑스 특허출원 및 프랑스를 지정한 유럽 특허출원이나 국제출원의 제출 당시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종래기술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 단락과 셋째 단락의 규정은, 제L.611-16조에 규정된 방법들 중의 어느 한 가지 방법에 대한 실시가 종래기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제L.611-16조에 규정된 방법들의 실시에 대한 종래기술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나 구성물을 특허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키지 않는다.

둘째 단락과 셋째 단락의 규정은 또한, 제L.611-16조에 규정된 모든 방법 내에서의 모든 특정한 실시를 위한 제4항에 규정된 물질이나 구성물을 특허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키지 않는데, 다만, 이러한 실시가 종래기술에 포함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L.611-12조

최초 출원이 파리동맹 또는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파리협약에 의해 규정된 효력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이 출원에 수반된 우선권은, 그 국가가 최초의 프랑스 특허출원 또는 프랑스를 지정한 국제출원이나 유럽 특허출원을 기초로 동등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동일한 조건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

제L.611-13조

제L.611-1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는 발명이 공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 알려진 것이 특허출원일에 앞선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
- 알려진 것이 그 출원일 이후 이전(以前)특허출원의 공개로 인한 경우, 그리고 알려진 것이 아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a) 발명자 또는 그의 법적 피상속인에 대하여 명백한 남용이거나,
 - b) 발명이 발명자 또는 그의 법적 피상속인에 의해 1928년 11월 22일 파리에서 조인된 국제박람회와 관한 개정된 협약상 공식박람회 또는 공식적이라고 인정된 박람회에서 전시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러나,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명의 박람회 출품은 출원할 때에 주장되어야 하고 그 증거서류는 시행규칙이 정한 기간과 조건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제L.611-14조

당업자 입장에서, 발명이 종래기술로부터 자명하게 생겨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 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종래기술이 제L.611-11조 셋째 단락에 언급된 문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문헌들은 진보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고려되지 않는다.

제L.611-15조

발명의 대상이,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제조되거나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제L.611-16조

인체나 동물의 수술 또는 치료방법 및 인체나 동물에 적용되는 진단방법은 특허받을 수 없다. 본 규정은 이러한 방법들 중의 한 가지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산출물, 특히 물질이나 구성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L.611-17조

발명의 상업적인 활용이 인간의 존엄성,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발명의 이용이 단지 법률이나 시행규칙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만으로는 특허장애가 발생할 수 없다.

제L.611-18조

인체 구조와 성장의 여러 가지 단계에서, 인체 및 유전자 전체 또는 일부분의 배열을 포함하는 인체의 구성요소들 중의 하나의 단순한 발견은,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이 될 수 없다.

인체의 구성요소의 기능을 기술적으로 응용하는 발명만이 특허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호는 그 특정한 응용을 실현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체의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 특정한 응용은 특허출원 내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야 한다.

특히, 다음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 a) 인간 복제 방법
- b) 인간의 유전자 식별을 변화시키는 방법
- c) 인간의 태아를 산업적 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 d) 그 자체로서 채취된 유전자 전체 또는 일부분의 배열

제L.611-19조

I.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 1° 동물품종 ;
- 2° 공동체 식물신품종 보호 체계를 제정한 1994. 7. 27. 유럽이사회 규칙(CE) 제2100/94호 제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식물품종 ;
- 3° 단지 교배나 선별과 같은 오로지 자연적인 현상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인정되는, 식물 및 동물의 신품종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생물학적 방법 ;
3°의2 3°에 정의된 필수적인 생물학적 방법에 의해서 얻어진 산물 및 이러한 산물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이러한 산물에 포함되어 있는 유전적 정보
- 4° 인간이나 동물에게 상당한 의학적인 유용성이 없이 고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동물의 유전자 식별의 변형 방법 및 그러한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동물.

II. I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물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은, 그 발명의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이 정해진 식물품종이나 동물품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III. I 항의 3°의 규정은 기술적인 방법, 특히 미생물학적인 방법이나, 또는 그러한 방법에 의해 획득된 산출물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의 특허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생물학적

물질을 이용하거나 산출하는 방법 또는 이러한 물질에 대한 개입을 포함하는 모든 방법은 미생물학적인 방법으로 간주된다.

제2장 출원의 제출 및 심리

제1절 출원의 제출

제L.612-1조

특허출원은 본 장(章)에 의해 규정되고 시행규칙에 의해 구체화된 형식과 조건에 따라 제출된다.

제L.612-2조

특허출원일은 출원인이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한 날이다 :

- a) 특허를 출원한다는 표시 ;
- b) 출원인에게 연락할 수 있거나 출원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 c) 설명 본 편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세한 설명 또는 규칙이 정하는 요건 상 이전(以前)출원으로서의 반송.

제L.612-3조

두 개의 특허출원이 동일한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하여 최대 12개월의 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제출된 경우에, 그 출원인은 두 출원에 공통적인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 출원이 첫 번째 출원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두 출원 중에 어느 하나에 대해서 선행 외국출원에 수반된 우선권의 혜택을 이미 받았을 경우에 그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또한 최초 출원이 첫째 단락의 규정을 적용 받아 여러 개의 출원일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중 하나의 이전(以前)출원일이 12개월을 넘는 경우에도 그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동조의 적용으로 이전(以前)출원일의 이익을 받은 특허의 부여는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한 최초 출원에 수반되는 효력을 중단시킨다.

제L.612-4조

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할 정도로 그들 사이에 서로 연관된 복수의 발명들만을 포함할 수 있다.

전(前) 항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출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분할되어야 한다 ; 분할 출원은 출원일의 혜택과, 경우에 따라서는, 최초 출원의 우선일의 혜택을 받는다.

제L.612-5조

발명은 당업자가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하게 특허출원에 나타나 있어야 한다.

발명이 공중이 접근하지 못하는 생물학적 물질에 관한 발명이어서 당업자가 이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술될 수 없는 경우, 그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생물학적 물질이 자격을 갖춘 기관에 기탁된 경우에만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 기탁에 대한 공중의 접근 조건은 국사원령에 의해 정해진다.

제L.612-6조

청구범위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대상을 정의한다. 청구범위는 명확하고 간결하여야 하며 상세한 설명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L.612-7조

1. 이전(以前)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기를 원하는 특허출원인은 시행규칙에 의해 정해진 조건과 기간에 따라 우선권 주장 출원과 이전(以前) 출원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2. 복수의 우선권들은 그것들이 각각 다른 국가에서 기인한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주장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청구항에 대해서도 복합우선권이 주장될 수 있다. 복합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에, 우선일의 기산점 기간은 가장 앞선 우선일로부터 계산된다.
3. 특허출원에 대해 하나 또는 복수의 우선권이 주장되었을 경우에, 우선권은 그 우선권이 주장된 출원의 구성요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4. 우선권이 주장된 발명의 몇가지 구성요소들이 이전(以前)출원에 기재된 청구범위 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이전 출원서의 전체 서류들이 명확하게 상기 요소들을 나타내고 있다면 우선권이 인정되기에 충분하다.
5. 우선권 효과에 대하여, 우선일은 제L. 611-11조 둘째 단락 및 셋째 단락의 적용하는 특허출원일로 간주된다.

제2절 출원의 심리**제L.612-8조**

국방부장관은 산업재산청에서 비밀리에 특허출원의 내용을 지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L.612-9조

특허출원의 대상이 된 발명은 공개와 실시를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한 기간 동안에는 공개되지

나 자유롭게 실시될 수 없다.

그 기간 동안, 특허출원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수 없으며, 특허출원과 동일한 어떠한 사본도 허가 없이 발급될 수 없고, 제L.612-14조, 제L.612-15조 및 제L.612-21조 1°에 규정된 절차들은 개시될 수 없다.

제L.612-10조를 조건으로, 본 조 첫째 단락에 규정된 허가는 언제든지 부여될 수 있다. 허가는 특허출원일로부터 5개월의 기간이 만료되면 정당하게 얻게 된다.

본 조 첫째 단락 및 둘째 단락에 규정된 허가는 국방부장관의 의견에 따라 산업재산 담당 장관에 의해 부여된다.

제L.612-10조

제L.612-9조 둘째 단락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L.612-9조 첫째 단락에 규정된 금지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갱신 가능한 1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연장된 금지는 동일한 조건으로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다.

이 조(條)에 규정된 금지의 연장은 특허출원인이 입은 피해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준다.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보상금은 법원이 정한다. 모든 심급(審級)에서, 토의는 비공개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전(前) 항에 규정된 보상금에 대한 정정 신청은 보상액을 정한 확정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특허권자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특허권자는 그가 입은 피해가 법원의 산정액보다 크다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L.612-11조

산업재산청장은 특허출원이 제L.612-12조에 언급된 법규와 시행규칙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제L.612-12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특허출원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거절된다 :

- 1° 제L.612-1조에 규정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 2° 제L.612-4조에 따라 분할되지 않은 경우 ;
- 3° 분할출원의 대상이 원(原)출원명세서의 내용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
- 4° 제L.611-16조부터 제L.611-19조까지의 적용에 따라 명백하게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
- 5° 그 대상이 제L.611-10조 2호에 따른 발명으로 명백하게 간주될 수 없는 경우 ;
- 6° 그 상세한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제L.612-14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7° 그 대상이 제L.611-10조 1호의 의미상 특허받을 수 없는 경우 ;

8° 그 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

9° 제L.612-14조에 규정된 조사보고서를 작성 절차에서 필요시 출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의견서도 제출하지도 않고 새로운 청구범위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거절이유가 특허출원의 일부에만 관련된 경우에는, 단지 그 해당되는 청구항들만 거절된다.

특허출원이 제L.611-17조, 제L.611-18조, 제L.611-19조(I의 4°) 또는 제L.612-1조의 규정에 일부 불합치한 경우에,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해당부분 삭제는 직권으로 행해진다.

제L.612-13조

특허출원일로부터, 제L.612-14조에 규정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의 선행문헌조사가 개시된 날까지, 출원인은 새로운 청구범위를 제출할 수 있다.

새로운 청구범위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실용신안이 부여되는 날까지 실용신안 출원인에게 열려 있다.

제L.612-21조 1°의 적용에 따른 특허출원의 공개일로부터와 시행규칙에 의해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제3자는, 상기 출원의 대상인 발명에 대해 제L.611-11조 및 제L.611-14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허요건에 관하여, 서면 의견서를 산업재산청에 제출할 수 있다. 산업재산청은 이 의견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출원인은 시행규칙이 정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청구범위를 제출할 수 있다.

제L.612-14조

제L.612-15조 첫째 단락에 정해진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출원일을 부여받았다면, 그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제L.611-11조 및 제L.611-14조에 정의된 발명의 특허요건판단을 위해 참작할 수 있는 종래기술 자료들에 관한 조사보고서가 작성된다.

이 조사보고서는 시행령(décret)이 정한 조건에 따라 작성된다.

제L.612-15조

출원인은 그의 특허출원을 시행규칙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실용신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출원인은 그의 실용신안출원을 시행규칙이 정하는 조건과 기간 내에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L.612-16조

산업재산청에 대하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출원인은,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고, 그러한 기간 미준수가 특허출원 또는 청구의 거절, 특허출원 또는 특허의 취소, 기타

모든 권리의 상실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경우라면, 그의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회복청구는 장애사유가 중단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산업재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되지 않은 행위는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권리회복청구는 지켜지지 않은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만 수리될 수 있다.

권리회복청구의 이유가 유지수수료 납부 흠결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미준수 기간은 제 L.612-19조 둘째 단락에 규정된 기간까지 연장되며, 권리회복은 권리회복일에 만기된 유지수수료가 시행규칙에 정한 기간 내에 납부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산업재산청장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본 조의 규정은, 제L.612-16-1조 둘째 단락과 셋째 단락에 규정된 기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권 선언의 제출 및 보정 기간이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4조에 의해 설정된 우선권 기간, 제L.613-23조에 규정된 이의신청 기간 또는 제613-23-2조의 첫째 단락에 규정된 조사단계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L.612-16-1조

산업재산청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4조에 의해 설정된 우선권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출원인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그의 권리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우선권을 주장하는 선(先)출원 이후 1년을 경과하여 출원된 특허출원은, 우선권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렇게 되어야 된다.

제L.612-17조

제L.612-14조에 규정된 절차가 이행된 후에 특허가 부여된다.

발행된 모든 증서는 상세한 설명, 경우에 따라서 도면, 청구범위 및 특허의 경우 조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제L.612-18조

통신의 정상적인 작동이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은 중단기간 동안 산업재산청에 대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L.612-19조

모든 특허출원 또는 특허는, 늦어도 국사원령이 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연차료가 발생한다.

연차료가 전(前) 단락에 규정된 날까지 납부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연차료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같은 기간 동안의 추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유효하게 납부될 수 있다.

제L.612-20조

특허의 출원, 심사 및 교부 및 유지시 부과되는 수수료는 그 출원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에는 감면될 수 있다.

- 개인 ;
- 중소기업 ;
- 교육 또는 연구분야의 비영리 기관.

감면혜택은 간단한 신고에 의해 받는다. 허위 신고는, 대심절차를 수행한 후에, 언제든지, 제 L.411-4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내려진 산업재산청장의 결정에 의해 확인된다. 이 결정은 지불 되었어야 할 수수료 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과태료를 부가하는 것으로 하며, 해당 수입은 산업재산청에 불입된다.

본조의 적용방법은 국사원령에 의해 정해진다.

제3절 발명의 합법적 확산**제L.612-21조**

산업재산청은 국사원령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산업재산공보에의 기재, 일반인의 전문 열람, 또는 데이터뱅크의 배포 또는 정보저장매체의 배포를 통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공개를 담당한다 :

- 1° 그 출원일로부터 또는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또는 이 기간의 만료 전에 출원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모든 특허 출원서류 또는 실용신안 출원서류 ;
- 2° 보충보호증(certificat complémentaire de protection)이 부착된 특허의 경우에는 그 표시로써 보충보호증이 부착된 특허출원에 첨부하여, 또는 이미 특허출원이 공개된 경우에는 출원하자마자, 모든 추가보호증 출원서류 ;
- 3° 그 이후의 모든 절차행위 ;
- 4° 이 권리들의 부여에 관한 사항 ;
- 5° 제L.613-9조에 언급된 행위들에 관한 사항 ;
- 6° 제L.611-3조에 언급된 허가 날짜와 해당특허의 표시 사항 ;

제L.612-22조

제L.612-21조의 규정은 유럽 특허출원 및 유럽특허에 대해 적용된다.

제L.612-23조

산업재산청은, 모든 이해관계인 또는 모든 행정당국의 청구에 따라서, 제L. 611-11조 및 제

L.611-14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종래기술 요소들을 인용한 문헌평가서(avis documentaire)를 발급한다.

제3장 특허에 수반된 권리

제1절 전용실시권

제L.613-1조

제L.611-1조에 언급된 전용실시권은 특허출원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L.613-2조

특허에 의해 부여된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의해서 정해진다. 다만, 상세한 설명과 도면은 청구범위를 해석하는데 사용된다.

특허의 대상이 방법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특허가 부여하는 보호는 그 방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어진 물품들에까지 미친다.

제L.613-2-1조

유전자 배열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범위는 상세한 설명 안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특정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그 배열 부분으로 한정된다.

유전자 배열을 포함하는 특허의 부여에 의해 창출된 권리는, 그 청구범위 그 자체로 제L.611-18조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그 배열의 다른 특정한 용도를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배열을 대상으로 하는 후(後) 청구범위에 대항하여 원용될 수 없다.

제L.613-2-2조

제L.613-2-1조와 제L.611-18조 규정들을 조건으로, 유전자 정보를 포함하거나 유전자 정보로 이루어진 산출물에 대하여 특허가 부여한 보호는 그 산출물 안에 포함된 모든 물질과 그 유전적 정보가 포함된 모든 물질 및 언급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물질에 미친다.

이 보호는 종자, 식물증식물질, 묘목 또는 식물이나 식물 일부 안의 우발적인 특허유전자정보 출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L.613-2-3조

발명으로 인하여 특정 성질을 가지게 된 생물학적 물질과 관련한 특허 보호는 복제나 증식을 통해 그 생물학적 물질로부터 얻어지고 그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게 된 모든 생물학적 물질에 미친다.

발명으로 인하여 특정 성질을 가지게 된 생물학적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한 특허 보호는 그 방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얻어진 생물학적 물질 및 그 생물학적 물질로부터 복제나 증식을 통해 얻어진 다른 모든 생물학적 물질에 미친다.

발명으로 인하여 특정 성질을 가지게 된 생물학적 물질과 관련한 특허 보호는, 특허된 생물학적 물질과 독립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에 의해 그 특성을 갖추게 된 생물학적 물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발명으로 인하여 특정 성질을 가지게 된 생물학적 물질과 관련한 특허 보호는, 복제나 증식을 통하여 상기 생물학적 물질로부터 얻어진 생물학적 물질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L.613-2-4조

복제나 증식이 필연적으로 시판되어져 있는 생물학적 물질의 이용으로부터 기인하는 경우 그 얻어진 물질이 그 이후에 다른 복제나 증식에 대하여 이용되어지지 않은 이상, 제L.613-2-2와 제L.613-2-3에 규정된 보호는 유럽공동체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정 체결국의 영토상에서 특허권자에 의해 또는 그의 동의에 따라 시판된 생물학적 물질의 복제나 증식을 통해 얻어진 생물학적 물질에는 미치지 않는다.

제L.613-3조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은 금지된다 :

- a) 특허대상 물품의 제조, 제공, 판매, 사용, 수입, 수출, 환적(換積) 또는 전술한 목적을 위한 특허대상 물품의 소지 행위 ;
- b) 특허대상 방법의 사용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었다는 것을 제3자가 알고 있거나 또는 그 정황상 명백한 경우에는 프랑스 영토 내에서 그 사용을 제공하는 행위 ;
- c) 특허대상 방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획득한 물품의 제공, 판매, 사용, 수입, 수출, 환적(換積) 또는 전술한 목적을 위해 특허대상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

제L.613-4조

1.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특허 받은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에게, 프랑스 영토 내에서 그 발명의 본질적 요소와 연관된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수단을 인도하거나 인도를 제공하는 행위는 만약 그러한 수단들이 그 실시에 적합하고 그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3자가 알고 있거나 그 정황상 명백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2. 그 실시수단들이 상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제3자가 제L.613-3조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기 1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제L. 613-5조의 a), b) 및 c)에 규정된 행위를 이행한 자는, 상기 1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보지 않는다.

제L.613-5조

특허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다음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

- a) 사적인 범위 내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실시된 행위 ;
- b) 실험을 목적으로 특허 받은 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된 행위 ;
- c)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국의 조제실 내의 설비에 의해서 즉석에서 행해진 의약품 제조행위 또는 이와 같이 조제된 의약품에 관련된 행위 ;
- d) 의약품 시판 허가를 얻는 데 필요한 연구 및 시험뿐만 아니라 연구 및 시험의 실시 및 허가에 필요한 행위 ;
 - d의2) 공중보건법 제L.5122-9조에 언급된 의약품광고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
- e) 프랑스 영토에서 우주로 발사되는 물건.

제L.613-5-1조

제L.613-2-2조와 제L.613-2-3조 규정들에 대한 예외로, 특허권자에 의해 또는 그의 동의를 얻어, 농업상의 활용을 목적으로 영농가에게 식물복제 물질을 판매하거나 상업화하는 기타의 모든 행위는, 그 영농가가 자기 자신의 이용에 대하여 자신이 복제 또는 증식을 위해 그 수확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실시 조건들은 식물품종에 대한 공동체 보호제도를 설립한 1994년 7월 27일 이사회 규칙 (EC) 제2100/94호 제14조에 의해 규정된 조건들이다.

제L.613-5-2조

제L.613-2-2조와 제L.613-2-3조 규정들에 대한 예외로, 특허권자에 의해 또는 그의 동의를 얻어, 영농가에게 가축동물 또는 동물복제 물질을 판매하거나 상업화하는 기타의 모든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을 조건으로, 농업상 활용을 위해 보호받는 가축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전제로 한다. 이 허락은 그의 농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동물 또는 동물복제 물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복제를 상업적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하는 것은 제외된다.

제L.613-5-3조

제L.613-2-2조와 제L.613-2-3조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다른 식물품종을 창출해내거나, 발견하거나 또는 육성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지는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L.613-6조

특허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특허에 의해 보호를 받는 물품이 프랑스 또는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정의 당사국 영토 내에서 특허권자에 의해 또는 그의 명시적인 동의에 따라서 판매된 이후에는, 그 물품과 관련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L.613-7조

이 권(卷)이 적용되는 영토 내에서, 특허출원일 또는 우선일에 선의로 특허대상 발명을 소유하고 있던 자는, 특허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개인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조에 의해 인정된 권리는 그 권리가 속한 영업권, 기업 또는 기업의 일부분과 함께인 경우에만 이전될 수 있다.

제2절 권리의 이전 및 소멸**제L.613-8조**

특허출원 또는 특허에 수반된 권리들은 전부 또는 일부 이전될 수 있다.

그 권리들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실시권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허출원 또는 특허에 의해 부여된 권리들은 실시권자가 상기 항에 의하여 부과된 그의 실시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에 그에 대항하여 주장될 수 있다.

제L.611-8조에 규정된 경우를 조건으로, 첫째 단락에 의한 권리의 이전은 그 이전일 이전에 획득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에 의한 이전이나 실시권에 관한 행위가 무효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제L.613-9조

특허출원 또는 특허에 수반된 권리를 이전하거나 변경하는 모든 행위가,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산업재산청에 의해 관리되는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특허등록원부의 등록 전이라도, 권리를 획득할 당시에 그 행위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그 이후에 권리를 획득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08년 8월 4일 법률 제2008-776호 제133조에 의해 추가)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실시권 계약의 당사자인 실시권자는, 특허권자가 제기한 침해소송에 자신이 입은 피해보상을 구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제L.613-10조 삭제

제L.613-11조

특허의 부여로부터 3년 또는 출원일로부터 4년의 기간이 경과되면,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모든 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권자 또는 그의 승계인이 강제실시권 신청 당시 아래 규정된 조건들에 해당하는 경우 그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다 :

- a)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정의 기타 당사국 중의 하나의 영토 내에서 특허대상 발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상당한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 ;
- b) 프랑스 시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규모로 특허대상 물품을 상업화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상기 a)에 규정된 실시나 상기 b)에 규정된 상업화가 3년 이상 포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본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계무역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의 당사국 내에서 제조된 특허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그 특허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L.613-12조

강제실시권에 대한 신청은 법원에 제기한다 : 그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획득할 수 없었으며 신청인이 상당하고 실질적인 정도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증거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강제실시권은 그 실시기간, 실시범위 및 지불할 실시료 총액에 대해 정해진 조건으로 허락된다.

이 조건들은 권리자 또는 실시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제L.613-13조

강제실시권 및 재정실시권은 통상실시권이다. 이 실시권에 수반된 권리들은 그 권리들이 속한 영업권, 기업 또는 기업의 일부분과 함께인 경우에만 이전될 수 있다.

제L.613-14조

강제실시권자가 그 실시권에 허락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특허권자 및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실시권자들은 법원으로부터 그 실시권의 철회를 얻을 수 있다.

제L.613-15조

선(先)특허를 침해하는 특허권자는 선(先)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는 자신의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 상기 선(先)특허권자는 후(後)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는 후(後)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특허권자가 제3자가 권리자인 선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그 발명이 선풍특허와 비교하여 중요한 기술적인 진보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가 권리자인 특허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에게 선풍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후특허권자에게 부여된 실시권은 상기 특허와 함께인 경우에만 이전될 수 있다.

선풍특허권자는, 지방법원에 제출된 신청에 의하여, 후특허에 대한 상호 실시권의 양도를 구한다.

제L.613-12조부터 제L.613-14조까지의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다.

제L.613-15-1조

육성자가 선풍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식물신품종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거나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육성자는 식물품종이 그 특허 속에 청구된 발명과 비교하여 중요한 기술적인 진보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시권이 보호받을 식물품종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허에 대한 실시권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권이 부여될 경우, 특허권자는 공평한 조건으로, 법원에 제출된 신청에 따라, 보호받는 식물품종을 이용할 수 있는 상호 실시권 양도를 가진다.

제L.613-12조 내지 제L.613-14조의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다.

제L.613-16조

공중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특허권자와의 협의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산업재산부장관은 보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L.613-17조에 정해진 조건으로 산업재산부령에 의하여, 다음에 대하여 부여된 모든 특허가 재정실시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할 수 있다 :

- a) 의약품, 의료장치, 시험관 내의 의료진단장치, 부속 치료물질 ;
- b) 그 획득방법, 그 획득에 필요한 물질 또는 그와 같은 물질의 제조방법 ;
- c) 생체 외의 진단방법

이들 물질, 방법 또는 진단방법에 관한 특허는, 이들 물질이나 이들 방법으로부터 만들어진 물질 또는 이들 진단방법이, 충분하지 못한 물량과 품질로,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공중에게 제공되는 경우에, 또는 특허가 공중보건이익에 반하는 조건으로 실시되거나, 또는 행정적 또는 사법적 확정결정에 따라 반(反)경쟁행위라고 선고된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공중보건을 위한 재정실시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실시권이 반(反)경쟁행위의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산업재산부장관은 협의에 의한 합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제L.613-17조

특허에 대한 재정실시권의 적용을 규정한 산업재산부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자격을 갖춘 모든 자는 산업재산부장관에게 실시권의 허락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실시권은 상기 부령에 의한 특허 실시기간과 실시범위에 대해 정해진 조건에 따라 부여되며 다만, 재정실시권에 대한 실시료는 그렇지 않다.

재정실시권은 당사자들에게 부령이 통지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산업재산부장관과 공중보건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협의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실시료 총액은 법원이 정한다.

제L.613-17-1조

공중 보건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로의 수출을 위한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의 부여와 관련된 2006. 5. 17.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816/2006호에 따라 제출된 강제실시권의 신청은, 행정당국에 하여야 한다. 이 실시권은 동 규정 제10조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주어진다. 실시권 허여 명령이 실시료를 정한다.

이 실시권은 신청인 및 권리자에게 실시권 허여 명령이 통지된 날 중 가장 늦은 날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613-17-2조

특정 주요 의약품의 유럽연합 국가로의 유용(流用)을 피하기 위한 2003. 5. 26.의 이사회 규정 제953/2003호 제2조와 전술한 2006. 5. 17.의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816/2006호 제13조에 규정된 금지 규정의 모든 위반은, 본 법 제L.615-14조에 규정된 형벌을 받는 침해를 구성한다.

제L.613-18조

산업재산부장관은 제L.61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발명에 대한 소유권자에게 국가경제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로 발명을 실시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그 독촉이 1년의 기간 동안 잘 지켜지지 못하였고, 실시가 없었거나, 실시의 내용과 규모면에서 불충분하여 경제발전과 공공이익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독촉의 대상이 된 특허는, 국사원령에 따라 재정실시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산업재산부장관은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와 국가경제수요에 일치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상기에서 정한 1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허에 대한 재정실시권의 적용을 규정한 국사원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자격을 갖춘 모든 자는 산업재산부장관에게 실시권의 허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실시권은 상기 부령에 따른 실시기간과 실시범위에 관한 정해진 조건에 따라 허여되지만, 재정실시권에 대한 실시료는 그렇지 않다. 재정실시권은 당사자들에게 부령이 통지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협약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실시료 총액은 법원이 정한다.

제L.613-19조

국가는,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그 실시가 국가자신에 의해서 행해지거나 또는 국가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대상 발명에 대한 실시권을 직권으로 획득할 수 있다.

재정실시권은 국방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산업재산부령에 의해 허여된다. 이 부령은 실시료를 제외한 실시권의 조건들에 대해 규정한다.

실시권은 직권(재정)실시권을 신청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협약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실시료 총액은 법원이 정한다. 모든 심급의 법원에서,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제L.613-19-1조

반도체 기술 분야의 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의 경우, 강제실시권 또는 재정실시권은 비상업적 공공목적을 위한 실시이거나, 또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 따라 반(反)경쟁행위라고 선고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여될 수 있다.

제L.613-20조

국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명령에 의하여, 특허출원 또는 특허대상 발명의 전부나 일부를 수용할 수 있다.

협약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에 대한 보상금은 법원이 정한다. 모든 심급의 법원에서, 심리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다.

제L.613-21조

특허의 압류는 특허권자, 산업재산청 및 그 특허에 대해 권리를 소유한 자에게 통고된 재판 외의 송달행위를 통하여 집행된다 ; 특허에 부속된 권리를 그 후에 변경하는 모든 행위는 압류를 집행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한다.

압류가 무효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압류를 집행하는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압류의 유효성과 특허권의 매매를 목적으로, 법원에 상소하여야 한다.

제L.613-22조

1. 제L.612-19조에 규정된 연차료를 동조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그의 권리에 대한 효력을 상실한다.
 권리의 실효는 납부되지 않은 연차료의 만기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권리의 실효는 산업재산청장의 결정 또는 특허를 받은 자나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행 규칙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확정된다.
 그 결정은 공고되고 특허를 받은 자에게 통지된다.
2. 삭제

제L.613-23조

국사원령에 규정된 요건과 기간 내에, 제L.612-7조의 적용에 따라 부여된 모든 특허는 당해 특허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산업재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제L.613-23-1조

- 이의신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만 신청할 수 있다.
- 1° 특허의 대상이 제L.611-10조, 제L.611-11조 및 제L.611-13조부터 제L.611-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 2° 특허가 당업자가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본 발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경우 ;
 - 3° 특허의 대상이 출원서에 기재된 출원의 내용을 확장하고 있는 경우 또는, 특허가 분할출원에 근거하여 부여된 경우 그 대상이 최초 출원의 내용을 확장하고 있는 경우 ;
- 이의신청은 부여된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제L.613-23-2조

산업재산청장은 국무원령이 정하는 조건하에서 심리 단계를 포함한 대심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린다.

산업재산청장의 결정은 민사집행법전 제L. 111-3조의 6°에 정의된 판결의 효과를 가진다.

산업재산청장이 국무원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국무원령이 정하는 기간은 첫째 단락에 언급된 심리 단계의 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

제L.613-23-3조

1. 이의신청 절차 중에, 계쟁 특허의 권리자는 다음 사항들을 조건으로 특허의 청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1° 행해진 변경은 상대방이 제기한 제L.613-23-1조에 언급된 이의신청 사유 중 어느 하나에 대응해야 한다.
 - 2° 행해진 변경은 출원서에 기재된 출원의 내용을 확장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특허가 분할출원에 근거하여 부여된 경우 그 대상이 최초 출원의 내용을 확장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
 - 3° 행해진 변경은 특허에 의해 부여된 보호를 확장하지 않아야 한다 ; .
 - 4° 변경된 청구항은 제L.611-10조, 제L.611-11조, 제L.611-13조부터 제L.611-19조까지, 제L. 612-5조 및 제L.612-6조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문서작성은 국사원령에 규정된 형식적 요건에 따라야 한다.
- II. 이의신청 절차 중에, 계쟁 특허의 권리자는 발명의 설명을 수정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경우 다음의 조건에 따라 도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1° 이러한 변경은 상대방이 제기한 제L.613-23-1조 제2호에 언급된 이의신청 이유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 2° 행해진 변경은 출원서에 기재된 출원의 내용을 확장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특허가 분할출원에 근거하여 부여된 경우 그 대상이 최초 출원의 내용을 확장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제L.613-23-4조

산업재산청장이 상대방이 제기한 제L.613-23-1조에 언급된 사유 중 하나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특허는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

- 1° 전체 또는 일부 취소 ;
- 2° 제L.613-23-3조에 규정된 절차 중에 권리자가 행한 변경을 고려하여 수정된 형태로의 유지. 산업재산청장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특허는 교부된 그대로 유지된다.

제L.613-23-5조

이의신청의 각 당사자는 산업재산청장이 이의신청 비용 분담에 대하여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형평의 요구 및 산업재산담당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L.613-23-6조

취소결정은 절대적인 효력을 가진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효력은 출원일로 소급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특허를 일부 취소할 경우, 특허권자가 이 결정을 준수하기 위해 특허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결정은 산업재산청에 환송된다. 그러나 이 요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경우에만 수리될 수 있다.

산업재산청장은 일부 취소 결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특허변경출원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L.613-24조

특허권자는 언제든지, 특허의 전부 또는 특허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청구항을 포기할 수 있다.

포기 또는 감축의 신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산업재산청에 제출한다.

산업재산청장은 신청서가 전항에서 언급한 시행규칙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그러나 법원에 소 또는 반소로 제기된 특허무효청구에 따라 요구된 것이 아닌 한, 이의신청이 먼저 제기되었고 이의신청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가능했던 당시에 제출된 특허감축 신청은 불수리된다.

마찬가지로, 특허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날짜에 특허감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산업재산청은 감축절차를 종결한다. 다만 법원에 소 또는 반소로 제기된 특허무효청구에 따라 감축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포기 또는 감축의 효력은 특허출원일로 소급한다.

동조의 규정은 제L.613-25조 및 제L.614-12조에 따라 행해진 감축에 적용된다.

국무원령은 본 조의 시행조건을 명시한다.

제L.613-25조

특허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법원에 결정에 따라 무효로 선언된다 :

- a) 특허대상이 제L.611-10조, 제L.611-11조 및 제L.611-13부터 제L.611-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 b) 특허가 당업자로 하여금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하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경우 ;
- c) 특허대상이 출원서가 제출되었던 당시의 출원내용을 넘어서 확장된 경우, 또는 특허가 분할출원을 기초로 하여 부여된 경우에 있어서 그 대상이 제출 당시의 최초 출원내용을 넘어서 확장된 경우 ;
- d) 감축 또는 이의신청 이후, 특허 보호 범위가 확장된 경우.

무효사유가 특허의 일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무효는 해당 청구항들을 감축하는 형식으로 선언된다.

특허 무효소송에서, 특허권자는 청구범위를 보정하여 특허를 감축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감축된 특허는 제기된 무효소송의 대상이 된다.

동일 심급에서, 지연 또는 남용적 방법으로 자신의 특허에 대하여 수차례의 감축을 행한 당사

자에게는, 손해배상과 상관없이 최대 3,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L.613-26조

검사는 직권으로 발명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L.613-27조

발명특허에 대한 무효결정은 제3자의 이익제기가 없는 한 절대적인 효력을 갖는다. 1969년 1월 1일 이전에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는, 무효는 판결주문에 의해 지정된 특허의 부분들에 적용된다.

최종판결은 특허등록원부에 등재될 수 있도록 산업재산청장에게 통지된다.

판결이 하나의 청구항을 부분적으로 무효시키는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따라 보정된 청구항작성문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특허권자를 산업재산청으로 환송한다. 산업재산청장은 지식재산권법 제L.411-4조에 따라 지정된 항소법원들 중 어느 하나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유보조건으로 하여, 판결의 불합치함을 이유로 보정된 청구항을 거절할 수 있다.

제L.613-28조

추가보호증은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무효이다 :

- 추가보호증이 부착된 특허가 무효인 경우 ;
- 추가보호증이 부착된 특허가 판매허가를 받은 해당부분의 전체에 대해 무효인 경우 ;
- 해당 시판허가가 무효인 경우 ;
- 추가보호증이 제L.611-3조의 규정들을 위반하여 부여된 경우.

추가보호증이 부착된 특허가 단지 판매허가를 받은 해당부분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된 경우에는, 추가보호증은 이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가 된다.

제3절 특허의 공유

제L.613-29조

특허출원 또는 특허의 공유는 다음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 a) 각각의 공유자는, 그 발명을 개인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실시권을 양도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들에게 공평하게 보상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 자신을 위하여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협의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 보상액은 법원이 정한다.
- b) 각각의 공유자는 단독으로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침해소송을 제기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소환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 그 통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침해소송에 대한 선고가 유예된다.

- c) 각각의 공유자는, 그 발명을 개인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실시권을 양도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들에게 공평하게 보상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 자신을 위하여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양도할 수 있다. 협의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 보상액은 법원이 정한다.
- 그러나, 실시권 양도 계약서 초안은 지분가격을 정한 양도제의를 첨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 그 통지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유자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실시권을 허락하기를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을 획득하는 조건으로, 실시권의 양도를 반대할 수 있다.
- 전(前)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가격은 법원이 정한다. 당사자들은 판결이 통지된 날로부터 또는, 항소를 한 경우에는 항소판결이 통지된 날로부터 1개월의 기간 내에, 지불될 수 있는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실시권의 양도 또는 공유자 지분의 매입을 포기할 수 있다 ; 그 비용은 포기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d) 전용실시권은 공유자 전원이 합의하거나 또는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만 허여될 수 있다.
- e) 각각의 공유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공유자들은 양도 계약서 초안 통지로부터 3개월의 기간 동안 선매권을 가진다. 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 가격은 법원이 정한다. 당사자들은 판결통지로부터 또는, 항소를 한 경우에는, 항소판결이 통지로부터 1개월의 기간 내에, 지불될 수 있는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공유자 지분의 매매를 포기할 수 있다 ; 그 비용은 포기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L.613-30조

민법전 제815조와 이하 규정, 제1873-1조와 이하 규정 및 제883조와 이하 규정들은 특허출원 또는 특허의 공유에 대해 적용될 수 없다.

제L.613-31조

특허출원 또는 특허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다는 것을 통보할 수 있다. 특허등록원부에 그 지분의 포기가 등록된 때로부터 또는 특허출원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업재산청에 그 지분의 포기를 통지한 때로부터 상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들에 대한 모든 의무가 면제된다. 다른 공유자들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에 관한 권리의 비율에 따라 포기된 지분을 분할한다.

제L.613-32조

제L.613-29조 내지 제L.613-31조의 규정들은 반대 조항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유자들은 언제든지 공유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해 저축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국제협약의 적용

제1절 유럽특허

제L.614-1조

이 절은 1973년 10월 5일 뮌헨에서 체결된 협약(이하 '뮌헨협약'이라 한다)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Paragraphe 1 : 유럽 특허출원의 제출

제L.614-2조

모든 유럽 특허출원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명시된 방법에 따라, 산업재산청 본청이나, 필요하다면, 그 지역사무소에 제출될 수 있다.

유럽 특허출원은, 그 출원인이 프랑스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고 프랑스에서 전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았을 경우, 산업재산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L.614-3조

국방부장관은 산업재산청으로 제출된 유럽 특허출원 내용을 산업재산청에서 비밀리에 검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제L.614-4조

산업재산청에 제출된 유럽 특허출원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은 알려지는 것과 실시를 위해 허가를 받지 못한 기간 동안에는 알려질 수도 없고 자유롭게 실시될 수도 없다.

이 기간 동안 특허 출원서는 공중에게 열람될 수 없다 ;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 출원서와 동일한 어떠한 사본도 발급될 수 없다.

본 조 첫째 단락 및 둘째 단락에 규정된 허가는 국방부장관의 의견에 따라 산업재산부장관에 의해 부여된다.

첫째 단락에 규정된 허가는 언제든지 부여될 수 있다. 제L.614-5조 첫째 단락의 규정을 유보 조건으로, 출원시부터 4개월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4개월의 기간이 만료되면 합법적으로 허가가 주어진다.

제L.614-5조

제L.614-4조 마지막 항에 언급된 기간들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동 조에 규정된 금지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갱신 가능한 1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출원서는 유럽특허청으로 발송되지 않는다. 연장된 금지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금지 연장의 경우, 본 법전 제L.612-10조 둘째 단락과 셋째 단락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제L.614-6조

유럽 특허출원은 ‘뮌헨협약’ 제135-1(a)조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프랑스 특허출원으로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인은 시행규칙에 정해진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프랑스 특허출원은 거절된다.

출원변경 이전에 조사보고서가 작성된 경우, 그 조사보고서는 제L.612-14조에 규정된 조사보고서를 갈음한다.

Paragraphe 2 : 프랑스에서의 유럽특허 효력

제L.614-7조

‘뮌헨협약’에 의해 설립된 유럽특허청의 절차언어로 작성된 유럽특허 또는 유럽 특허출원서의 본문은 유효한 본문이다.

유럽특허와 관련한 소송에 있어서 그 본문이 프랑스어로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특허권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침해자로 추정되는 자의 요청 또는 관할 법원의 요청에 따라 그 특허의 프랑스어로 된 완전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L.614-8조

유럽 특허출원의 공개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절차언어가 프랑스어가 아닌 경우에는, 산업재산청이 ‘뮌헨협약’ 제78조 첫째 단락 e)에 규정된 요약서를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공개한다.

제L.614-9조

본 법전 제L.613-3조 내지 제L.613-7조, 제L.615-4조 및 제L.615-5조에 정의된 권리들은 ‘뮌헨협약’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유럽 특허출원이 공개된 날로부터 행사될 수 있다.

공개가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로 행해진 경우에는, 전(前) 단락에 언급된 권리들은, 출원인의 청구에 의해, 국사원령이 정한 조건에 따라서, 프랑스어로 작성된 청구범위의 번역문이 산업재산청에 의해 공개된 날로부터, 또는 침해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행사될 수 있다.

제L.614-10조

무효소송의 경우와 제L.614-7조 첫째 단락의 경우를 제외하고, 프랑스어로 작성된 번역문이

제L.614-7조 둘째 단락 또는 제L.614-9조 둘째 단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제출된 경우에는, 유럽 특허출원 또는 유럽 특허출원의 번역문에서 부여하는 보호범위가 유럽 특허출원 또는 유럽 특허출원이 제출되었던 언어로 작성된 상기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범위에 비해 더 좁은 보호범위를 부여하는 경우에만 그 번역문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에 의해 언제든지 정정된 번역문이 제출될 수 있다. 그러나 청구범위의 정정 번역문은 제L.614-9조 둘째 단락에 규정된 조건들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선의로 발명을 실시하기 시작한 자 또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실질적이고 상당한 준비를 한 자는, 그 실시가 최초의 번역문으로 작성된 특허출원 또는 특허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정정된 번역문이 효력을 발생한 때부터, 무상으로 그의 기업체 내에서 또는 그 기업의 필요를 위해서 그 실시를 계속할 수 있다.

제L.614-11조

유럽 특허출원 또는 유럽특허에 수반된 권리들을 이전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들은 유럽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L.614-12조

유럽특허에 대한 무효는, 프랑스와 관련하여서는, '민헌협약' 제138조 첫째 단락에 규정된 사유들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선언된다.

무효사유들이 특허에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경우, 무효는 해당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형식으로 선언된다.

같은 심급에서, 지연 또는 남용적 방법으로 자신의 특허에 대하여 수차례 감축을 행한 당사자에게는, 손해배상과 상관없이, 최대 3,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L.614-13조

프랑스 특허가, 동일한 발명자 또는 그의 승계인에게 동일한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가지고 있는 유럽특허가 부여되었던 발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그 프랑스 특허는, 유럽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았으면 이의신청의 제기를 위해 규정된 기간이 만료된 날짜에, 아니면 유럽특허가 유지되기로 결정되었다면 이의절차가 종료된 날짜에, 그 효력발생이 정지된다.

그러나, 프랑스 특허가, 경우에 따라서, 전(前) 단락에 정해진 날짜들 중의 어느 하나보다 그 이후의 날짜에 부여된 경우에는, 그 특허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유럽특허가 그 이후에 소멸되거나 무효된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L.614-14조

동일한 발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일한 발명자나 그의 승계인에게 속하는 동일한 출원일 또는 동일한 우선일을 갖고 있는 프랑스 특허출원 및 프랑스 특허, 그리고 유럽 특허출원 및 유럽특허는, 공통부분에 대해 각각 달리 이전, 저당, 담보 또는 실시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무효이다.

제L.613-9조 규정의 예외로, 프랑스 특허출원이나 프랑스 특허에 수반된 권리들의 이전이나 변경은, 유럽 특허출원이나 유럽특허에 수반된 권리들의 동일한 이전이나 동일한 변경이 유럽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프랑스 특허등록부의 등록에 의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프랑스 특허출원이나 특허 및 유럽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은 각각 달리하여 이전될 수 없다.

제L.614-15조

동일한 우선일을 갖고 있고 동일한 발명자에 의해 출원되었거나, 동일한 발명자 또는 그의 승계인에게 부여된 유럽특허와 동일한 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프랑스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을 제소 받은 법원은 프랑스 특허가 제L.614-13조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 효력발생이 정지되는 날까지 또는 유럽 특허출원이 거절, 취하 또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유럽특허가 취소되는 날까지 판결을 유예한다.

침해소송이 프랑스 특허만을 기초로 하여 개시된 경우에는, 출원인은 소송의 재개로 프랑스 특허가 효력발생이 정지된 날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공통부분에 관해 프랑스 특허를 대신하여 유럽특허를 이용하여 소송을 속행할 수 있다.

침해소송이 동시에 프랑스 특허와 유럽특허를 기초로 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민사상의 배상이 병과될 수 없다.

침해소송이 두 특허들 중에 단지 어느 하나에만 기초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른 특허에 기초한 새로운 소송이 동일한 청구인에 의해 동일한 피고인을 대상으로 제기될 수 없다.

제L.614-16조

국사원령은 본 절의 적용방법 특히 '민헨협약' 제137-2조 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2절 국제출원

제L.614-17조

본 절은 1970년 6월 19일에 워싱턴에서 체결된 특허에 관한 협력조약(이하 '워싱턴조약'이라 한다)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Paragraphe 1 : 국제출원의 제출

제L.614-18조

프랑스에 그의 주소나 영업소를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해 작성된 발명의 보호를 위한 국제출원은, 선(先)출원에 대한 우선권이 프랑스에서 주장되지 않았을 때에는, 산업재산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산업재산청은 워싱턴 조약의 제2조 XV와 제10조에서 의미하고 있는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제L.614-19조

국방부장관은 산업재산청에 제출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출원 내용을 비밀리에 산업재산청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제L.614-20조

산업재산청에 제출된 국제출원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발명은 공표와 실시를 위한 허가가 주어지지 못한 기간 동안에는 공표될 수도 없고 자유롭게 실시될 수도 없다.

이 기간 동안 특허 출원서는 공중에게 열람될 수 없다 ; 허가 없이는, 특허 출원서와 동일한 어떠한 사본도 발급될 수 없다.

본 조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에 규정된 허가는 국방부장관의 의견에 따라 산업재산부장관에 의해 부여된다.

첫째 단락에 규정된 허가는 언제든지 부여될 수 있다. 제L.614-21조 첫째 단락 규정을 유보 조건으로, 출원으로부터 5개월의 기간 또는,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3개월의 기간이 만료되면 합법적으로 허가가 주어진다.

제L.614-21조

제L.614-20의 마지막 항에 언급된 두 기간들 중에 어느 하나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동 조에 규정된 금지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갱신 가능한 1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서는 워싱턴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사무국으로 이송되지 않는다. 연장된 금지는 언

제든지 해제될 수 있다.

금지를 연장한 경우에는, 제L.612-10조 둘째 단락, 셋째 단락 및 제4항의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다.

제L.614-22조

출원인이 프랑스에 그의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 산업재산청이 ‘워싱턴조약’의 다른 체약국의 국내관청을 대신하여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또는 산업재산청이 상기 조약에 의해 설립된 동맹의 의회에 의해 수리관청으로서 지정되었을 때에는, 제L.614-19조, 제L.614-20조 및 제L.614-21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제L.614-23조

국사원령은 본 절 규정의 적용 방법을 정한다. 특히 국제출원의 접수 요건, 제출된 출원서의 언어, 산업재산청에 의해 징수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른바 수수료의 산정 및 외국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는 출원인의 대리에 관한 조건들을 정한다.

Paragraphe 2 : 프랑스에서의 국제출원의 효력

제L.614-24조

워싱턴 조약의 적용에 의해 작성된 발명의 보호를 위한 국제출원에서 프랑스를 지정하거나 선택한 경우에, 그 출원은 ‘뮌헨협약’의 규정을 적용받는 유럽특허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3절 공동체특허

제L.614-25조

이 절은 1975년 12월 15일에 룩셈부르크에서 체결된 공동체 시장을 위한 유럽특허에 관한 조약(공동체 특허에 관한 조약)(이하에서 ‘룩셈부르크조약’이라 한다)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이 절은 ‘룩셈부르크조약’과 동일한 날짜에 발효된다.

제L.614-26조

제L.614-7조 내지 제L.614-14조(첫째 단락 및 둘째 단락)은 유럽 특허출원이 ‘유럽경제공동체’에 속한 하나의 국가를 지정한 경우로서, 부여된 특허가 공동체 특허인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제L.614-27조

공동체 특허출원 공개 후 3개월 이내에 그리고 절차언어가 프랑스어가 아닌 경우, 산업재산청은 '민헨협약' 제78조 첫째 단락 e)에 규정된 요약서의 프랑스어 번역 및 공개를 보장한다.

제L.614-28조

제L.614-26조에 언급된 특허출원 및 특허에 대해, 제L.614-15조와 제L.615-1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L.614-13조의 준거(準據)는 '룩셈부르크조약'의 제80조 첫째 단락의 준거로 대체한다.

제L.614-29조

'유럽경제공동체'에 속하는 어느 한 국가를 지정한 유럽 특허출원 또는 그 출원의 결과로 인한 공동체 특허의 이전, 저당, 질권 설정 또는 실시권의 이전은, 합법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동일한 발명자나 그의 승계인에게 속하는 동일한 출원일 또는 동일한 우선일을 갖는 프랑스 특허출원 또는 프랑스 특허의 공통부분에 대한 동일한 이전, 저당, 담보 설정 또는 동일한 실시권의 이전을 수반한다.

이와 동일한 조건에 따라, 프랑스 특허출원 또는 프랑스 특허는, 무효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럽경제공동체'에 속하는 어느 한 국가를 지정한 유럽 특허출원 또는 그 출원의 결과로 인한 공동체 특허와 별개로 이전, 저당, 담보 설정 또는 실시권 이전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L.613-20조의 예외로, 프랑스 특허 또는 프랑스 특허출원에 수반된 이러한 권리들의 이전이나 변경은 '유럽경제공동체'에 속하는 어느 한 국가를 지정한 유럽 특허출원 또는 이 출원의 결과로 인한 공동체 특허에 수반된 권리의 동일한 이전이나 변경이, 그 사안에 따라, 유럽 특허등록부 또는 공동체 특허등록부에 등록된 경우에만 국내 특허등록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L.614-30조

'룩셈부르크조약' 제86조 첫째 단락의 적용에 따라, 특허부여 신청서가 출원인이 공동체 특허를 획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L.614-26조와 제L.614-29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제L.614-13조는 적용될 수 없다.

제4절 최종 규정

제L.614-31조

프랑스인들은, 1883년 3월 20일 파리에서 서명된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과, 동 조약을 수정했거나 수정할 협정, 추가증서 및 부속협정의 규정들이, 프랑스에서 산업재산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들을 보호하는데 있어 프랑스 법에 비해 더 유리할 경우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규정들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 편의 어떠한 규정도 프랑스인들로부터 전(前)항에서 그들에게 인정한 권리를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제4의2장 유치(留置)

제L.614-32조

유럽연합규칙에 규정된 경우 이외에, 세관은, 특허권자 또는 특허에 수반한 보충보호권자, 또는 특허된 발명 또는 보충적 실시권의 대상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동반한 서면요청에 따라,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품을 그 통제권 내에 유치할 수 있다.

그 유치는 신청인과 보유자에게 즉각적으로 통지된다. 세관은 또한 이러한 조치를 법원의 검사장에게도 통지한다.

본 조 둘째 단락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통지의 경우, 상품의 본질, 이미지 및 실제 또는 추정량은 특허권자 또는 특허에 수반한 보충보호권자, 또는 특허된 발명 또는 보충적 실시권의 대상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통지된다. 이는 관세법전 제59조의2규정에 대한 예외이다. 이러한 통지들은 본 조에 규정된 유치 조치의 실행에 앞서 통지될 수 있다.

본 법 제L.614-36조 및 제L.614-3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를 것을 전제로, 유치 조치는 신청인이, 상품의 유치통지로부터 일할 수 있는 10일 동안의 기간 내에 또는 부패하기 쉬운 식료품의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3일 동안의 기간 내에, 세관 또는 관할 민사법원이 정한 보전조치기관에, 민사절차 또는 경범죄 절차로 상소되었다든지, 아니면 이후 침해소송에서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상품을 유치한 자가 지불해야 할 보상금 목적의 담보를 설정하였다든지, 아니면 법원의 검사장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든지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그 유치 조치는 당연 해제된다.

세관은 본 항에 규정된 일할 수 있는 10일의 기간을 신청인의 정당한 정식 요청에 따라 최대 1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의 연장의 경우에는, 법원의 검사장과 물품의 보유자에게 통지된다.

유치 조치 또는 관할 민사법원에 의해 신고된 보전조치와 관련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본 조 제4항에서 언급한 소송의 개시를 목적으로, 신청인은, 관세법전 제59조의2조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 세관으로부터 유치된 물품의 발송인, 수입업자, 수취인 및 유치된 물품의 신고자 또는 그 물품 보유자의 성명과 주소, 유치물품의 이미지 및 수량, 원산지, 출처와 목적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 조 첫째 단락에 언급된 유치는 다음의 상품에는 미치지 않는다 :

- 1° 하나의 유럽연합회원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제조되거나 자유로운 유통상태에 놓여있는 상품으로서, 관세법전 제1조에 정의된 관세구역을 통과한 후에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어지기 위해서 시장에 제공되는 공동체 지위를 가지는 상품 ;
- 2° 다른 유럽연합회원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제조되거나 자유로운 유통상태에 놓여있는 물품으로서, 관세법전 제1조에 정의된 관세구역을 통과한 이후에 비유럽공동체회원국으로 수출 되어질 상품으로서 유럽연합회원국 내에 통관상태에 놓여 있는 공동체 지위를 가지는 상품.

제L.614-33조

특허권자 또는 특허에 수반한 보충적보호권자, 또는 특허된 발명 또는 보충적 실시권의 대상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서면 신청이 없고, 유럽연합규정이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세관은 그 통제권 내에 특허 또는 보충적실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품을 유치할 수 있다.

그 유치는 특허권자 또는 특허에 수반한 보충적보호권자, 특허된 발명 또는 보충적실시권의 대상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즉각적으로 통지된다. 세관은 또한 이러한 조치를 법원의 검사장에게도 통지한다.

본 조 둘째 단락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통지의 경우, 상품의 본질, 이미지 및 실제 또는 추정량은 특허권자 또는 특허에 수반한 보충적보호권자, 또는 특허된 발명 또는 보충적 실시권의 대상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통지된다. 이는 관세법전 제59조의2 규정에 대한 예외이다. 이러한 통지들은 본 조에 규정된 조치의 실행에 앞서 통지될 수 있다.

유치 조치는, 만일 세관이 특허권자 또는 특허에 수반한 보충적보호권자, 또는 특허된 발명 또는 보충적 실시권의 대상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부터, 본 조 둘째 단락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유치의 통지로부터 일할 수 있는 4일의 기간 내에, 본 법전 제L.614-32조에 규정된 신청서를 받지 않았다면 해제된다.

신청서가 본 조 제4항에 따라 수리된 경우에는, 제L.614-32조 제4항에 언급된 일할 수 있는 10일의 기간은, 세관이 그 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본 조는 부패하기 쉬운 상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L.614-34조

- I. 유럽연합규정에 규정되어 있고 특허 또는 보충적 실시권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에 대한 유치가, 특허권자 또는 특허에 수반한 보충적 보호권자, 또는 특허된 발명 또는 보충적실시권의 대상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신청이 제출되었거나 접수되기 전에 실행되어진 경우에는, 세관원은, 관세법 제59조의2에 대한 예외로, 그 권리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유치 조치의 실행을 통지할 수 있다. 세관원은 또한 상품의 수량과 성질에 관한 정보를 통지할 수 있다.
- 유럽연합규정에 규정되어 있고 특허 또는 보충적 실시권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에 대한 유치가, 특허권자 또는 특허에 수반한 보충적 보호권자, 또는 특허된 발명 또는 보충적실시권의 대상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신청이 접수된 후에 실행되어진 경우에는, 세관원은 마찬가지로 그 권리자 및 그 자격권자에게 유럽연합규정에서 정하고 있고 권리의 위반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통지할 수 있다.
- II. 상기 I에 언급된 유치의 실행에 의해 발생한 비용은 특허권자 또는 특허에 수반한 보충적 보호권자, 또는 특허된 발명 또는 보충적실시권의 대상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L.614-35조

제L.614-32조 및 제L.614-34조 I의 둘째 단락에 언급된 유치의 기간 동안, 특허권자 또는 특허에 수반한 보충적 보호권자, 또는 특허된 발명 또는 보충적 실시권의 대상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세관의 요청 또는 자신의 신청으로, 유치된 상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제L.614-36조

- I. 특허, 보충적보호권 또는 보충적실시권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에 대한 유치가, 제L.614-32조에 언급된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실행되어진 경우에는, 특허, 보충적보호권 또는 보충적실시권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은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하는 경우, 세관원의 통제하에 파기될 수 있다.
- 1° 신청인이 서면으로 그리고 감정인에 의하여 세관에, 유치통지로부터 일할 수 있는 10일 동안의 기간 내에 또는 부패하기 쉬운 식료품의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3일 동안의 기간 내에, 상품의 침해성을 확인하였다 ;
 - 2° 신청인이 서면으로 세관에, 유치통지로부터 일할 수 있는 10일 동안의 기간 내에 또는 부패하기 쉬운 식료품의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3일 동안의 기간 내에, 그의 책임하에, 상품의 파기를 동의함을 확인하였다 ;
 - 3° 상품을 보유한 자가 서면으로 세관에, 유치통지로부터 일할 수 있는 10일 동안의 기간

내에 또는 부패하기 쉬운 식료품의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3일 동안의 기간 내에, 상품의 파기에 동의함을 확인하였다.

- II. 상품을 보유한 자가, I.3°에 언급한 기간 내에, 상품의 파기에 동의함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그 파기에 반대한다는 것도 세관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파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III. 상품을 보유한 자가 서면으로 파기에 동의함을 확인하지 않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상품의 파기에 동의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에는, 세관은, 유치통지로부터 일할 수 있는 10일 동안의 기간 내에 또는 부패하기 쉬운 식료품의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3일 동안의 기간 내에, 즉각 제L.614-32조 제4항에 언급된 조치를 한 신청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한다. 기간 연장의 경우, 법원의 검사장과 상품을 보유한 자에게도 통지된다.
동조 I에 규정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고, 신청인이 세관에 제L.614-32조 제4항에 언급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정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치 조치는 해제된다.
- IV. 제L.614-32조 셋째 단락 및 제L.614-33조에 규정된 정보 통지의 일환으로, 세관은 신청인에게 본 조에 규정된 절차의 존재를 알린다. 제L.614-32조 제6항에 규정된 정보도 또한 본 조치의 실행을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통지될 수 있다.

제L.614-37조

관세법전 제59조의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 목적으로, 신청인이 세관이 신청인에게 통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관은 그 신청을 폐지하거나, 중지시키거나 또는 갱신을 거절한다.

제L.614-38조

제L.614-32조 내지 제L.614-35조에 규정된 조치들을 선포하기 위해, 세관원은 관세법전이 그들에게 부여한 권한들을 행사한다.

제L.614-39조

국사원령은 다음의 사항을 정한다 :

- 1° 제L.614-32조 내지 제L.614-37조에 규정된 조치의 실행 조건 ;
- 2° 특히, 현행 유럽연합규정이 정하고 있는 보충적보호권 또는 보충적실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품의 파기 조건 및 그 파기에 선행하는 표본 추출 조건.

제5장 소송

제1절 민사소송

제L.615-1조

제L.613-3조 내지 제L.613-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특허권자의 권리를 훼손한 모든 경우는 침해를 구성한다.

침해는 그 행위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부과한다.

그러나, 침해물품에 대해 제공, 시판, 실시하거나 실시 또는 시판을 목적으로 한 소지는 그러한 행위들이 침해물품의 제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행해졌을 경우, 그러한 행위에 대한 사정을 알고 행해졌을 경우에만 그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제L.615-2조

침해소송은 특허권자에 의해 수행된다.

그러나, 전용실시권자는, 실시권 계약상에 반대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에게 침해소송을 제기하도록 독촉을 한 후에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침해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특허 받은 자는 전(前) 항에 따라 실시권자에 의해 개시된 침해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제L.613-11조, 제L.613-15조, 제L.613-17조, 제L.613-17-1조 및 제L.613-19조에 언급된 강제실시권자 또는 재정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게 침해소송을 제기하도록 독촉한 후에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침해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모든 실시권자는 그가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특허권자가 개시한 침해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제L.615-3조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모든 자는, 침해자로 추정되는 자 또는 그가 사용하는 서비스를 매개해 주는 자에 대하여, 계쟁 침해행위의 계속을 방지하거나 또는, 특허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즉각적인 침해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가 명령으로 내려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벌금강제로, 관할 민사법원에 급속심리(가처분)로 제소할 수 있다. 관할 민사법원은 또한, 조치들이 대심(對審) 형식으로 정해질 필요가 없는 정황, 특히 조치의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야기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모든 긴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급속심리 또는 신청에 따른 수소법원은, 원고가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증거요소들을 통해 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침해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경우에만, 신청된 조치들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침해추정 물품이 상업적 거래망에서 유통되거나 또는 진입할 수 없도록, 침해로 추정되는 행위의 계속을 금지할 수 있고, 또는 침해행위의 금지를 특허받은 자에게 있을 수도 있는 보상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설정에 종속시킬수도 있으며, 또는 상표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압류 또는 제3자에게로의 인도를 명령할 수도 있다.

원고가 손해의 회복이 어렵다는 상황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통법에 따라 은행 계좌 및 기타 자산에 대한 동결을 포함하여 침해자로 추정되는 자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명령할 수 있다. 압류 대상 자산을 결정하기 위해서, 법원은 은행자료, 재정자료, 회계자료, 상업자료의 송부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그 피해의 존재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예납금을 허여할 수도 있다.

급속심리 또는 청원에 따른 수소법원은, 이후 침해소송이 기각 판결되거나 또는 조치들이 무효될 경우, 조치실행명령을 피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만일의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담보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에 종속시킬 수 있다.

권리침해를 중단시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이 실체소송 개시 전에 명령된 경우에는, 원고는, 시행규칙에서 정해진 기일 내에, 민사적 방법 또는 형사적 방법을 통해 상소하든지, 법원의 검사장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든지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리고 피고는 그 신청 이유를 제시할 필요도 없이, 청구될 수 있는 손해와는 별도로, 명령이 내려진 조치들은 무효로 된다.

제L.615-4조

제L.613-1조 규정의 예외로, 특허출원이 제L.612-21조에 의하여 공개된 날 또는 그 출원서 원본과 동일한 사본이 제3자에게 통지된 날 이전(以前)에 이루어진 행위는 특허에 수반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 항에 의한 날짜와 특허부여에 대한 공표일 사이에 :

- 1° 청구범위가 그 날짜들 중의 첫 번째 날짜 이후에 확장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그 특허는 대항할 수 있고 ;
- 2° 특허가 미생물의 이용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미생물이 일반인에게 사용 가능하도록 놓여진 날로부터만 그 특허는 대항할 수 있다.

특허출원에 근거한 침해소송을 제소 받은 법원은 특허가 부여될 때까지 판결을 유예한다.

제L.615-5조

침해는 모든 수단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모든 자는,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모든 집행관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인이 지정한 감정인이 참석한 가운데, 청원에 따른 관할 민사법원의 명령에 근거하여, 침해로 주장된 물품이나 방법에 대하여 표본 추출과 함께 또는 표본 추출 없이 상세한 명세목록을 작성하게 하거나, 침해로 주장된 물품이나 방법 및 그와 관련된 모든 서류에 대한 물권 압류를 하게 할 권리를 가진다. 이와 같은 것들이 없는 경우, 명령은 침해로 주장된 물품이나 방법과 관련된 모든 서류에 대한 물권 압류를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입증 목적을 위해, 침해로 생각되는 방법의 실행 또는 침해로 생각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유통에 사용된 도구의 물권 압류 또는 명세목록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이후 침해소송에서 기각 판결되거나 또는 압류가 취소될 경우, 조치실행명령을 피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만일의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담보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에 종속시킬 수 있다.

신청인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 내에, 민사 또는 형사 절차에 의하여, 상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세목록을 포함한 압류 전체는, 압류처분을 받은 자의 요청에 의하여, 취소되며, 이 경우 압류처분을 받은 자는 그 요청의 근거 이유를 제시할 필요도 없고, 청구될 수 있는 손해배상과는 별개이다.

제L.615-5-1조

특허가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에게 동일한 제품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이 특허받은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모든 동일 제품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특허를 받은 방법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

- a) 특허를 받은 방법에 의해 생산한 제품이 신규하거나 ;
 - b) 특허권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떠한 방법이 사용되었는지를 밝힐 수 없어서 동일 제품이 특허를 받은 방법에 의해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큰 경우.
- 반증이 있는 경우,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피고의 정당 이익이 참작된다.

제L.615-5-1-1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모든 자의 신청에 따라, 설령 제L.615-5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사전에 침해압류가 명령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증거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제L.615-5-1-2조

신청이 있는 경우, 본 편에 규정된 민사적 절차의 실질심사 또는 가처분 수소법원은, 필요한 경우 강제로,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한 물품 또는 방법의 유통망과 원산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피

고 또는 침해 물품을 점유하고 있거나 소위 침해활동이라고 일컬어지는 데 사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밝혀진 모든 자, 또는 이러한 물품의 생산, 제조 또는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러한 방법의 실행에 관여되었다고 알려진 모든 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은, 합법적 장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명령되어 질 수 있다.

제L.615-6조

실용신안 출원에 대하여 제기된 침해소송에서, 원고는 제L.612-14에 규정된 조사보고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작성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L.615-7조

손해배상액을 정하기 위해서, 법원은 아래 사항을 분명하게 고려한다 :

- 1° 침해로 인한 부정적 경제적 결과, 일실이익과 피해당사자가 입은 손실
- 2° 피해 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 3° 그리고 침해자가 침해로부터 얻은 지적, 물질적, 판매촉진을 위해 투자되어야 할 금액의 경제적 실현을 포함하여, 침해자가 얻은 수익.

다만 법원은, 대안의 방법으로 또는 피해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손해배상액으로 일정금액을 승인할 수도 있다. 그 금액은 만일 침해자가 침해한 권리의 실시에 대한 허가를 요구하였을 경우 지불했어야 할 실시료를 상회한다. 그 금액은 피해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L.615-7-1조

침해에 대한 민사적 판결의 경우, 법원은, 피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침해품으로 인정된 물품 및, 침해물품의 창작이나 제조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자재를, 유통경로로부터 리콜시키거나, 유통경로에서 완전히 제거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파기하거나 또는 몰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특히 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신문 또는 온라인 공중매체 서비스에 판결문의 전문 또는 요약문을 공고하거나 게재하는 것과 같이, 판결문의 공고에 적절한 모든 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다.

상기 첫째 단락 및 둘째 단락에 언급된 조치는 침해자의 비용으로 명령되어진다.

제L.615-8조

본 절에 규정된 침해소송은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원인이 되는 최종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5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제L.615-8-1조

특허무효소송은 어떤 시효기간에도 걸리지 않는다.

제L.615-9조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의 영토상에서 산업적인 실시 또는 이를 위한 실질적이고 상당한 준비를 입증하는 자는, 특허권자에게 그 실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지하고 그 실시에 비추어 그의 권리의 대항력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할 수 있다.

상기인이 그에게 행해진 답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특허권자가 3개월 이내에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는 그 실시가 상기 항에 의한 상세한 설명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특허 무효소송 및 장래의 침해소송과는 별도로, 특허가 당해 실시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리도록 법원으로 특허권자를 소환할 수 있다.

제L.615-10조

특허출원 또는 특허대상 발명이 실시권이 허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나 국가의 납품업자, 하청업자 및 하청주문권자에 의하여, 국방상 필요에 의해 실시되었을 경우에, 민사소송은 법원 평의부가 관장한다. 법원은 그 실시에 대한 금지나 중지 또는 제L.615-3조와 제L.615-7조에 규정된 몰수를 명령할 수 없다.

감정 또는 제L.615-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물권압류를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명세목록 작성 명령이 재판장에 의해 내려진 경우에, 연구 또는 제조 계약서가 국방비밀 분류를 포함하고 있다면, 법원 소속 관리는 압류, 명세목록 작성 및 기업체의 기록과 문서에 대한 조사를 연기하여야 한다.

이는 연구나 제조가 부대 건물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법원장은, 권리 소유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자에 의해 그리고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만 집행될 수 있는, 감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L.615-4조의 규정은, 그 출원이 제L.612-9조와 제L.612-10조에 규정된 금지상태에 놓여 있는 동안에는, 동 조에 정의된 조건들에 따라 실시된 특허출원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실시는 동 조에 정의된 책임을 그 실시자에게 당연히 지우도록 한다.

제L.615-11조 삭제**제2절 형사소송****제L.615-12조**

특허권자 또는 특허 출원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자는 누구라도 7,500 유로의 벌금형

에 처해진다.

제L.615-13조

국가 안보에 대한 피해에 관하여 규정된 보다 무거운 처벌과는 별도로, 그 기한이 끝나면, 제 L.612-9조 및 제L.612-10조에 규정된 금지사항 중 하나를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누구든지 4,500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그 위반으로 인해 국방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1년부터 5년까지의 구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제L.615-14조

1. 제L.613-3조부터 제L.613-6조까지에 정의된 바와 같이, 특허권자의 권리들을 고의로 침해하는 자는 3년의 구금형과 30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 범죄행위가 조직적으로 행해졌거나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온라인 공중통신망상에서 행해졌거나 또는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상품에 대한 행위일 경우에, 그 형벌은 7년의 구금형과 75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2. 기한 도과로 폐기된 조항임.

제L.615-14-1조

제L.615-14조에 정의된 위반행위를 재차 반복하는 경우 또는 그 범죄자가 피해 당사자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있어왔던 경우에는 2배로 가중하여 처벌한다.

범죄자는 또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상사재판소, 상공회의소, 직업회의소 및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제L.615-14-2조

제L.615-14조에 규정된 범죄행위의 자연인으로서의 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침해한 것으로 판결된 대상물품 및 범죄에 사용되거나 사용하고자 한 모든 물건을 유통경로에서 제거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법원은, 모든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선고받은 자의 비용으로, 몰수되거나 유통경로에서 제거된 물건과 물품의 파기, 또는 피해 당사자에게로의 인도를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선고받은 자의 비용으로, 형법 제131-35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유죄판결의 전파 또는 판결문의 게재를 명령할 수 있다.

제L.615-14-3조

형법 제121-2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L.615-14조에서 정의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선고된 법인은, 형법 제131-38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벌금에 추가하여, 동법 제131-39조에 규정된 처벌을 받는다.

동법 제131-39조 2°에 언급된 금지는 범죄행위 수행 중 또는 수행 시의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추가적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선고된 법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침해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및 범죄에 사용되거나 사용하고자 한 모든 물품을 모든 유통경로에서 제거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모든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선고받은 자의 비용으로, 몰수되거나 유통경로에서 제거된 물건과 물품의 파기 또는, 피해 당사자에게로의 인도를 명령할 수 있다.

제L.615-15조

국가 안보의 피해에 관하여 규정된 더 과중한 처벌과는 별도로, 그 기한이 끝나면, 제L.614-18조, 제L.614-20조 및 제L.614-21조 첫째 단락에 규정된 의무나 금지를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누구라도 6,000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 위반이 국방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추가로, 5년의 구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제L.615-16조

국가 안보의 피해에 관하여 규정된 더 과중한 처벌과는 별도로, 그 기한이 끝나면, 제L.614-2조 둘째 단락, 제L.614-4조 및 제L.614-5조 첫째 단락에 규정된 의무나 금지를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누구라도 6,000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 위반이 국방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추가로, 5년의 구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제3절 관할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L.615-17조

제L.611-7조에 규정된 경우를 포함하여 특허발명에 관계된 민사소송 및 청구 또한 이러한 청구 및 소송이 부정경쟁과 병합된 사안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전속관할이다. 다만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산업재산담당장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 항의 규정은 민법전 제2059조 및 제2060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 중재 요청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첫째 단락에 언급된 법원만이 본 법전 제L.614-13조에 규정된 조건 안에서 프랑스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L.615-18조 삭제

제L.615-19조 삭제

제L.615-20조

본 편의 규정과 관련한 소송이나 항변을 제기 받은 법원은 직권으로든, 아니면 당사자들 중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서든, 소송의 준비절차부터 절차의 진행 및 공판에의 참석을 위해, 상담역을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 상담역은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제L.615-21조

당사자 중 일방이 요청하면, 제L.611-7조의 적용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노사 동수의 대표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게 맡겨진다. 조정위원회의 의장은 사법부의 재판관이 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의 표가 결정권을 지닌다.

이 위원회는 산업재산권청 내에 설치되며 제소 후 6개월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한다. 조정안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자 중 일방이 평의부를 가진 관할 법원에 제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안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것으로 본다. 이 합의는 가장 부지런한 당사자의 간단한 요청에 따른 해당 법원장의 명령으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다.

당사자들은 스스로 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고, 그들이 선정한 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 지정한 감정인을 참석하게 할 수도 있다.

제L.611-7조 마지막 항에 규정된 자들에 대한 특별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본 조의 적용방법들은 직능단체 및 관련조합의 의견 청취 후에 국사원령에 의해 정해진다.

제L.615-22조

국사원령은 본 편의 시행방법을 정한다.

제2편 기술적 사상의 보호

제1장 제조비밀

제L.621-1조

제조비밀 위반을 제재하는 형벌은 아래의 노동법전 제L.1227-1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L.1227-1조 : 기업체의 장이나 기업체에 고용된 종업원이 제조 비법을 누설하거나 또는 누설을 시도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과 30,000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원은 또한, 추가 형벌로서,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형법전 제131-26조에 규정된 시민권,

민법상의 권리 및 가족권의 박탈을 선고할 수도 있다.

제2장 반도체 제품

제1절 출원

제L.622-1조

창작자의 지적인 노력을 표현하고 있는 반도체 제품의 최종 또는 중간 단계의 배치설계는, 그것이 통상적이 아닌 한은, 본 장에 의해 규정된 보호를 부여하는 출원대상이 될 수 있다.

배치설계가 어느 장소에서든지 최초의 상업적인 이용의 대상이 된 후 2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또는 배치설계가 이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초로 고정되거나 코드화된 이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출원될 수 없다.

본 조에 규정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출원은 무효이다.

제L.622-2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장에 의한 혜택을 받는다 :

- a) 세계무역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의 당사국 국민 또는 그 당사국 내에 주소나 실질적이고 상당한 산업적 또는 상업적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발명자 및 그의 권리 승계인 ;
- b) 상기의 국적, 거주지, 영업소에 관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는 자로서, 본 장에 의한 보호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유럽경제공동체’ 또는 유럽경제공간 전체에 대해 독점적인 허락을 받은 배치설계를 하나의 회원국 또는 다른 당사국 내에서 세계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

상기 단락에 규정된 자들이 아닌 자들은 그들이 국민이거나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와의 상호주의의 확인을 조건으로 본 장에 의한 혜택을 받는다.

제L.622-3조

출원권은 발명자 또는 그의 권리 승계인에게 속한다.

발명자 또는 그의 권리 승계인의 권리들을 침해하여 출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청구 소송의 시효는 출원공개로부터 5년이다.

제L.622-4조

산업재산청장은 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 후에 출원을 등록시킨다. 공개는 국사원령에 의해 정해진 조건들에 따라 행해진다.

제2절 출원에 수반된 권리들

제L.622-5조

제3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

- 보호를 받고 있는 배치설계를 복제하는 행위 ;
- 이러한 복제품 또는 그 복제품을 내장한 반도체 제품을 상업적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보유, 환적, 이용 또는 수입하는 행위.

이러한 금지는 다음의 행위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

- 평가, 분석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하는 행위 ;
- 이러한 분석이나 평가로부터, 본 장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별개의 배치설계를 창작하는 행위.

상기의 금지는 선의로 반도체 제품을 획득한 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획득한 제품을 계속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 항들에 규정된 금지에 대한 모든 위반은 행위자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침해를 구성한다.

제L.622-6조

이전 조문에 규정된 금지는 출원일, 또는 최초의 상업적인 이용이 앞서는 경우에는,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금지는 이후 10년 동안 등록권리자에게 부여된다.

그러나, 배치설계가 최초로 고정되거나 코드화된 날로부터 15년 동안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배치설계와 관련한 모든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L.622-7조

제L.411-4조, 제L.411-5조, 제L.612-11조, 제L.613-8조, 제L.613-9조, 제L.613-19조, 제L.615-2조, 제L.615-3조, 제L.615-5조, 제L.615-5-1-1조, 제L.615-5-2조, 제L.615-7조, 제L.615-7-1조, 제L.615-8조, L.615-8-1조, 제L.615-10조 및 제L.615-17조들은 다음에 정하는 조건과 방식에 따라 적용된다 :

- 본 장에 언급된 산업재산청장의 결정에 따른다 ;
- 배치설계 등록에 수반된 권리들은 이전, 담보 제공 또는 압류될 수 있다 ;
- 본 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해결된다.

제L.622-8조

본 권 제1편 제4의2장은 본 장에 적용될 수 있다.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제조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제1편 제조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제1장 상표의 구성요소

제L.711-1조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표는 어떤 자연인 또는 법인의 상품 및 서비스를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의 상품 및 서비스와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표장이다.

이 표장은 모든 사람이 권리자에게 부여된 보호 대상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상표등록부에 표현될 수 있어야만 한다.

제L.711-2조

다음의 것들은 유효하게 등록될 수 없다. 그리고 설령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선언될 수 있다.

1. 제L.711-1조의 의미상 상표를 구성할 수 없는 표장 ;
2. 식별력이 결여된 상표 ;
3. 상거래에 있어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을 가리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요소 또는 표시로만 구성된 상표, 특히 재화의 종, 품질, 수량, 용도, 가치, 지리적 출처 및 재화의 생산 시기 또는 서비스 제공 시기 ;
4. 일상 언어 또는 공정하고 지속적인 상거래 관행상 관용화된 요소 또는 표시로만 구성된 상표 ;
5. 기술적 결과를 얻거나 상품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상품의 성질 그 자체상 요구되는 상품의 형태 또는 그 밖의 특성으로만 구성된 표장 ;
6. 관할 당국의 허가가 없는 경우,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배제되는 상표 ;
7. 공공질서에 위배되거나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표;
8. 공중을 기만한 성질의 상표, 특히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
9. 원산지 명칭 및 지리적표시 그리고 와인 및 전통인증특산품에 대한 전통적 표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 법령, 유럽연합법규 및 프랑스 또는 유럽연합이 당사자인 국제협약에 따라 등록이 배제되는 상표 ;
10. 식물품종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본 법전 제6권, 유럽연합법규 또는 프랑스 또는 유럽연합이 당사자인 국제협약에 따라 등록된 선행 식물품종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 또는 동일

하거나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종의 식품품종에 관한 것으로서 필수 요소들을 복제하고 있는 상표 ;

11. 출원인이 악의로 출원한 상표.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상표의 경우에는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다.

제L.711-3조

I. 프랑스에서 유효한 선행 권리를 침해하는 상표, 특히 다음의 것들은 정당하게 등록될 수 없다. 그리고 설령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선언될 수 있다.

1. 선행 상표

- a) 상표가 선행 상표와 동일하고 해당상표의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가 선행 상표가 보호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경우 ;
- b) 상표가 선행 상표와 동일하고 해당상표의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가 선행 상표가 보호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있어서, 공중의 마음에 선행 상표와의 연관성 위험을 포함한 혼동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

2. 후행 상표가 선행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해당 상표의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가 선행 상표의 등록 또는 출원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또는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으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는 후행 상표의 사용이 선행 상표가 가진 명성이나 식별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또는 선행 상표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있어서의, 선행등록상표 또는 프랑스에서 명성을 얻거나 유럽연합 상표의 경우 EU에서 명성을 얻었을 때 나중에 등록될 수 있는 상표의 출원 ;

3. 공중의 마음에 혼동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의 공식명칭 ;

4. 공중의 마음에 혼동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그 범위가 지역적인 것이 아닌 상호, 상업장 소표시 또는 도메인이름 ;

5. 제L.722-1조 또는 후속 등록 및 명세서의 승인에 따른 지리적표시 출원에 언급된 등록 지리적표시 ;

6. 저작권 ;

7. 보호된 디자인으로 인한 권리

8. 제3자의 인격, 특히 그의 성, 가명 또는 그의 이미지에 대한 권리 ;

9.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이미지 또는 명성 ;

10. 공중의 마음에 혼동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공단체의 이름.

II. I.-1의 선행 상표는 다음을 의미한다.

1. 프랑스 등록 상표, 유럽연합 상표 또는 프랑스에서 유효한 국제 등록의 대상이 된 상표 ;

2. 후행 등록을 유보조건으로 하는 제1호에 언급된 상표등록 출원 ;

3.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6조에서 말하는 널리 알려진 상표.

등록 상표의 우선순위는 등록 일자에 따라 판단한다. 필요한 경우, 제L.717-6조에 따른 유럽 연합 상표로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는 선행성 또는 우선권 주장을 고려한다.

III.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의 당사국 내에서 보호되는 상표권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등록출원을 행한 상표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그 전개과정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한 유효하게 등록될 수 없다. 그리고 설령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선언될 수 있다.

제L.711-4조

선행 권리, 특히 다음의 것들을 침해하는 표장은 상표로 채택될 수 없다. :

- a) 선(先)등록상표 또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6조의2에 따른 널리 알려진 상표 ;
- b) 공중의 마음에 혼동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의 공식명칭 ;
- c) 공중의 마음에 혼동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알려진 상호(商號) 또는 상업장소 표시 ;
- d) 보호되는 원산지 명칭 또는 지리적 출처표시 ;
- e) 저작권 ;
- f) 보호받는 디자인에 따른 권리 ;
- g) 제3자의 인격권, 특히 그의 성(姓), 가명 또는 이미지 ;
- h)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이미지 또는 명성.

제2장 상표권의 취득

제L.712-1조

상표의 소유권은 등록에 의하여 얻어진다. 상표는 공유될 수 있다.

등록은 그 출원일로부터 무기한으로 갱신이 가능한 10년 동안의 효력을 가진다.

제L.712-2조

등록출원은 국사원령이 정하고 본 편에 규정된 방식 및 조건에 따라 제출되고 공고된다. 출원일로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등록출원은 특히 상표의 표현, 등록을 요구하는 지정 상품 및 서비스의 열거, 출원인의 신원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출원 수수료 납부 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L.712-2-1조

모든 지방자치단체 또는 모든 지자체간 협력 공공기관은, 그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등록출원이 제출되는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산업재산청으로 하여금 경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코르시카 지방의회, 지역공동체 및 도의회는, 지리적 관할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등록출원이 제출되는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산업재산청으로 하여금 경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L.712-3조

등록출원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누구나 산업재산청장에게 제L.712-7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등록출원이 거절되어야만 하는 사유를 명시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용규정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누구나 산업재산청장에게 제L.715-4조 및 제L.715-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출원이 거절되어야만 하는 사유를 명시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주의사항 : 2019년 11월 13일 제2019-1169호 법규명령 제15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제L.712-3조는, 동 법규명령에 따른 작성문서 내에서, 동 법규명령의 시행법규 발효 일로부터 그리고 늦어도 2019년 12월 15일부터는 등록출원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에 적용된다.

제L.712-4조

등록출원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프랑스에서 유효한 아래 선행권 중 하나에 대하여 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출원에 대하여 산업재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L.71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선행 상표
2. 제L.71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지(周知)의 선행 상표
3. 공중의 마음에 혼동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의 공식명칭 ;
4. 공중의 마음에 혼동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그 범위가 지역적인 것이 아닌 상호, 상업장소 표시 또는 도메인이름 ;
5. 제L.722-1조에 따른 등록 지리적표시 또는 후속 등록 및 명세서의 승인을 유보조건으로 하는 지리적표시의 출원 ;
6.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이미지 또는 명성 ;
7. 공중의 마음에 혼동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공단체의 이름.

이의신청은 또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당사국에서 보호되고 있는 상표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제L.711-3조 제3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기될 수 있다.

제L.712-4-1조

아래의 자는 제L.712-4조에 규정된 하나 또는 수 개의 권리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는 동일한 권리자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

1. 제L.712-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선행 상표권자 ;
2.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제L.712-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선행등록상표의 전용 사용권자 ;
3. 제L.712-4조 제3호에 규정된 회사의 공식명칭에 근거한 모든 법인 ;
4. 제L.712-4조 제4호에 규정된 도메인네임 소유자 ;
5. 제L.712-4조 제4호에 따라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상호 또는 그러한 활동이 전개되는 장소를 가리키는 상업장소표시에 근거한 모든 자 ;
6. 제L.712-4조 제5호에 따라 관련 지리적표시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있는 특히 이를 관리 또는 방어할 권한이 있는 모든 자 ;
7. 지리적표시가 그들의 명칭을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L.712-4조 제5호의 자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조 제6호의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8. 그 명칭하에 활동이나 서비스를 영위하는 제L.712-4조 제7호에 따른 모든 공법인 ;
9. 제L.711-3조 제3항에 따라 허락 없이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이름으로 출원된 상표의 권리자.

제L.712-5조

산업재산청장은 국사원령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심리 절차를 포함한 대심절차 후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평결한다.

산업재산청장이 이러한 심리절차의 종결일로부터 기산하는 동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결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제L.712-5-1조

5년 이상 등록된 선행등록상표를 이유로 제기된 이의신청은 등록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이의신청인이 아래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된다.

1. 제L.714-5조 또는 유럽 연합 상표의 경우 2017년 6월 14일 EU규정 제2017/1001호 제18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의신청이 제기된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쟁등록출원상표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 5년 동안 선행 상표가 진정사용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
2.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의신청 조사에 있어서, 선행 상표는 진정사용이 입증되거나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등록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L.712-6조

제3자의 권리를 기만하거나,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등록이 신청되었던 경우에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자는 소송으로 자신의 소유권 회복을 주장할 수 있다. 출원인이 악의가 없는 한, 권리회복소송의 시효는 등록출원공고 시로부터 5년이다.

제L.712-6-1조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의 당사국 내에서 보호되는 상표가 프랑스에서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상표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이름으로 등록된 경우, 상표권자는 아래 사항을 할 수 있다.

1. 자신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상표 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표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다.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자신의 전개과정을 정당화하는 경우 상기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L.712-7조

산업재산청장은 아래의 경우 등록출원을 거절한다.

1. 등록출원이 제L.712-2조에 규정된 요건들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2. 상표가 제L.711-2조 제1호, 제5호 내지 제10호에 열거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3. 출원일 이전에 행한 사용의 결과로 상표가 식별력을 획득했음을 출원인이 입증하지 않는 한, 상표가 제L.711-2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식별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
4. 제L.712-4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

거절이유가 출원 일부에 대하여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된다.

제L.712-8조

출원인은, 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그 등록이 외국에서의 상표 보호를 이유로 불가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상표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이후에 인용되는 경우, 등록 결정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소된다.

제L.712-9조

표장의 변경 또는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확장이 없다면, 상표등록은 갱신될 수 있다. 갱신은 국사원령이 정한 조건과 기간에 따라 행해지고 공고된다.

갱신은 제L.711-2조, 제L.715-4조 및 제L.715-9조, 제L.712-4조에 규정된 이의신청 절차 규정의 검증 대상이 아니다.

새로운 10년의 기간은 이전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기산 한다.

모든 표장의 변경 또는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의 확장은 신규출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제L.712-10조

제L.712-2조에 언급된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기간 미준수가 본인의 의사, 과실, 태만에 기인한 장애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님을 정당화한 출원인은, 국사원령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초래될 수 있었던 실효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

제L.712-11조

프랑스가 당사국인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국내에 주소를 정하거나 거주하지도 아니하는 외국인은, 그가 상표를 정상적으로 출원하였다는 것 또는 주소지 국가 또는 영업소재지 국가에서 상표등록을 획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들 국가가 프랑스 상표에 대하여 상호 보호주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본 권 규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L.712-12조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4조에 규정된 우선권은 사전에 외국에 출원된 모든 상표에 미친다.

프랑스가 당사국인 국제협약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우선권은 프랑스 상표출원 시 그 나라에서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른다.

제L.712-13조

노동조합은 노동법전 제L.2134-1조 및 제L.2134-2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자신의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

제L.712-14조

본 장에 언급된 결정은 제L.411-4조 및 제L.411-5조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산업재산청장이 결정한다.

제3장 등록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

제L.713-1조

상표등록은 그 명의인에게 그가 지정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의 소유권을 부여한다. 이 권리는 상표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행사된다.

제L.713-2조

권리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영업에서의 사용이 금지된다.

1. 등록상표의 것과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 ;
2. 공중의 마음에 선행 상표와의 연관성 위험을 포함한 혼동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제L.713-3조

상표권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지(周知)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등록상표의 것과 동일, 유사 또는 비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영업상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상표의 명성이나 식별력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또는 주지상표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이러한 표장의 사용은 금지된다.

제L.713-3-1조

제L.713-2조 및 제L.713-3조에 따라 특히 아래와 같은 행위나 사용은 금지된다.

1.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에의 표장 부착 ;
2. 상품의 제공, 상품의 시중 판매 또는 표장 하에서 이러한 목적을 위한 상품의 소지, 또는 표장 하에서의 서비스 제공 또는 공여 ;
3. 표장 하에서의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 ;
4. 상호 또는 공식 회사명칭으로서 또는 상호 또는 공식 회사명칭의 일부로서의 표장 사용 ;
5. 거래서류 및 광고에서의 표장 사용 ;
6. 소비자법전 제L.122-1조 내지 제L.122-7조의 규정을 위반한 비교광고에서의 표장 사용 ;
7. 정상적으로 부착된 상표의 제거 또는 수정.

“양식, 방식, 체계, 모방, 장르, 방법”과 같은 단어를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 및 사용은 금지된다.

제L.713-3-2조

제L.716-4-4조의 적용을 조건으로, 영업상 자유롭게 유통되지 않는 상품에 대하여, 포장을 포함한 이러한 상품이 제3국에서 왔고 상표권자의 승인 없이 이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 또는 주요 외관상 구별되지 않는 표장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상 자유롭게 유통되지 않는 상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L.713-3-3조

제L.713-2조 내지 제L.713-3-1조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영업상 포장, 라벨, 표시, 보안 또는 인증 장치, 또는 기타 그 밖에 상표가 부착되는 모든 매체에 대한 사용으로 인해 권리 침해의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아래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1. 상기 규정에 언급된 매체에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부착하는 행위 ;
2. 이러한 목적의 제공 또는 시중 판매, 동일 매체의 수입 또는 수출 ;

제L.713-3-4조

인쇄된 형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사전, 백과사전 또는 이와 유사한 레퍼런스 저작물에서의 상표의 복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를 구성한다는 인상을 주는 경우에, 상표권자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 출판인은 즉각적으로 늦어도 다음 판(版) 출판시에는 저작물이 등록상표를 인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준다.

제L.713-4조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권리자가 상표를 유럽 연합 또는 유럽 경제 지역에서 시장에 출시한 상품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상표권을 이유로 해당 상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

그러나 이후에 행해진 상품 상태의 수정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그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한다면, 모든 신규 사업화 행위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상표권자에 남아 있다.

제L.713-5조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6조의2에 따른 널리 알려진 상표의 권리자가 허가하지 않은 아래의 표장을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영업상 사용하는 것은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행위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부과한다.

1. 널리 알려진 상표의 것과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상표와 동일한 표장 ;
2. 상표와 표장 간의 연관성 위험을 포함한 혼동 위험이 공중의 마음에 존재하는 경우, 널리 알려진 상표의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상표와 동

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

3. 표장의 사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의 명성이나 식별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또는 피해를 주는 경우, 널리 알려진 상표의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또는 비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제L.713-6조

- I. 상표는 권리자로 하여금 제3자가 아래의 표장들을 공정한 상관행에 따라 영업상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1. 제3자가 자연인인 경우 자신의 성 또는 주소 ;
 2. 식별력이 결여되었거나 또는 종류, 품질, 수량, 용도, 가치, 지리적 출처, 상품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시기, 또는 그 밖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과 관련된 표장이나 표시 ;
 3. 상표권자의 것으로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정하거나 언급하는 상표, 특히 이러한 사용이 액세서리 또는 부품으로서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용도를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
- II. 사용이 등록출원일에 선행하고 사용이 인정되는 지역의 한계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상표권자는 제3자가 영업상 지역적 범위의 상호, 상업장소표시 또는 도메인이름을 영업상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

제4장 상표권의 이전 및 상실

제L.714-1조

상표에 수반된 권리들은 이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하는 자에 상관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있다. 권리의 양도는 비록 그것이 일부 양도라도 지역적 제한을 포함할 수는 없다.

계약의무의 이행을 포함한 기업의 전부 이전은 상표에 관한 권리의 양도를 내포한다. 다만, 이와 다른 약정이 있거나 또는 이러한 정황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표에 수반된 권리들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특히 담보물이 될 수도 있다.

상표에 수반된 권리는 지역별로 또는 지정상품 및 서비스별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인 사용권 설정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상표권은, 기간, 등록에 포함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표현양식, 사용권이 설정된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상표가 부착될 수 있는 지역, 또는 사용권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관련한 사용권의 제한 중 하나를 위반하는 사용권자에 대해 원용(援用)될 수 있다.

상표에 수반된 권리는 강제집행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양도 및 상표에 수반된 권리에 대한 담보설정을 포함한 물권설정은 서면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

본 조의 규정들은 상표등록출원에도 적용된다.

제L.714-2조

등록출원인 또는 등록권자는 상표가 적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출원 또는 그 등록의 효력을 포기할 수 있다.

제L.714-3조

상표가 제L.711-2조, 제L.711-3조, 제L.715-4조 및 제L.715-9조에 열거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표등록은 제L.411-4조에 따른 법원 또는 산업재산청장의 결정으로 무효 선언된다.

제L.714-4조

제L.714-5조, 제L.714-6조, 제L.715조 및 제L.715-10조의 적용에 있어 상표권자의 권리는 법원 또는 산업재산청장의 결정에 의해 취소 선언된다.

제L.714-5조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동안 계속하여, 등록상표를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진정 사용해오지 않았다면, 그 권리는 실효된다. 동 기간은 기산점은 국사원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등록일의 가장 빠른 시점으로 한다.

첫 번째 단락에 따른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다.

1. 상표권자의 동의에 따른 사용 ;
2. 단체상표 또는 증명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의 사용 ;
3. 상표가 사용된 형태로 권리자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식별력을 왜곡하지 않는 변형된 형태로, 권리자가 또는 그의 동의를 얻어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
4. 수출 전용으로 권리자가 또는 그의 동의를 얻어 상품 또는 포장에 상표를 부착하는 것.

제L.714-6조

상표권자는 아래의 경우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한다.

- a) 거래에 있어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관용화 ;
- b)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것, 특히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품질 및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제L.714-7조

상표에 수반된 권리의 모든 이전 또는 변경 사항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

표등록원부에 등재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등록 전이라도, 행위일 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권리취득 시에 그러한 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국내 또는 국제 상표등록원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용권 계약의 당사자인 사용권자는,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상표권자가 제기한 침해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L.714-8조

1949년 8월 12일 제네바 협정 3번째 추가 의정서의 엠블럼을 복제하거나 모방한 상표권자는, 추가 식별 표장 또는 그 엠블럼 명칭의 채택과 관련하여, 다음의 조건에 따라 계속하여 자신의 권리를 활용할 수 있다. 즉 그 권리는 2005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된 것이어야 하고 또한 그러한 사용이 제네바 협정 및 1977년 추가 의정서의 보호를 받는 무력충돌 기간에 활용되지 않았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5장 증명상표 및 단체상표

제1절 증명상표

제L.715-1조

증명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원할 때 지정된 상표로, 재료, 제조 방법 또는 서비스 방법, 품질, 정밀성 또는 기타 특성이 증명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별하는 상표이다.

본 권의 조항들은 이 절에 명시된 특별 조항들을 조건부로 증명상표에도 적용된다.

제L.715-2조

공법인을 포함하여 모든 자연인 및 법인은 증명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 다만, 증명된 것과 동일한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계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명상표등록출원서 제출에는 사용규정이 수반된다. 사용규정의 모든 후속 수정은 산업재산청에 통보된다.

국사원령은 본 조의 적용 조건을 명시한다.

제L.715-3조

증명상표는 제L.715-2조의 첫 번째 단락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만 양도되거나 이전될 수 있다.

제L.715-4조

제L.712-7조 및 제L.714-3조 각각에 규정된 거절이유 또는 무효사유 외에, 증명상표가 제L.715-3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사용규정이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등록이 거절되거나 설령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선언될 수 있다.

또한 증명상표가 특성 또는 의미에 대하여 공중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히 증명상표로서 표시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등록이 거절되거나 설령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선언될 수 있다.

제L.715-5조

제L.714-5조 및 제L.714-6조에 규정된 취소 사유 외에, 증명상표권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의 권리가 실효된다.

1. 권리자가 더 이상 제L.715-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2. 권리자가 사용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상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3. 권한이 있는 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증명상표가 제L.715-4조 두 번째 단락의 의미에 따른 공중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
4. 사용규정의 수정으로 인해 제L.715-1조 및 제L.715-2조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제2절 단체상표**제L.715-6조**

단체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원할 때 지정된 상표로, 사용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된 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한 상표이다.

본 권의 조항들은 이 절에 명시된 특별 조항들을 조건부로 증명상표에도 적용된다.

제L.715-7조

모든 공법인은 물론, 제조업자, 생산업자, 서비스업자 및 상인을 대표하는 법인격을 가진 모든 협회나 단체는 단체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단체상표등록출원서 제출에는 사용규정이 수반된다. 사용규정의 모든 후속 수정은 산업재산청에 통보된다.

국사원령은 본 조의 적용 조건을 명시한다.

제L.715-8조

증명상표는 제L.715-7조의 첫 번째 단락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만 양도되거나 이전될 수 있다.

제L.715-9조

제L.712-7조 및 제L. 714-3조 각각에 규정된 거절이유 또는 무효사유 외에, 단체상표가 제L.715-6조 내지 제L.715-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사용규정이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등록이 거절되거나 실령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선언 될 수 있다.

또한 단체상표가 특성 또는 의미에 대하여 공중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히 단체상표로서 표시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등록이 거절되거나 실령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선언 될 수 있다.

제L.715-10조

제L.714-5조 및 제L.714-6조에 규정된 취소 사유 외에, 단체상표권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의 권리가 실효된다.

1. 권리자가 사용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상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2. 권한이 있는 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상표가 제L.715-4조 두 번째 단락의 의미에 따른 공중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
3. 사용규정의 수정으로 인해 제L.715-6조 및 제L.715-7조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제6장 분쟁**제1절 상표의 무효 및 취소 분쟁****1. 무효 및 취소에 관한 행정절차의 일반 규정****제L.716-1조**

산업재산청에 제기된 상표의 무효 또는 취소에 대한 신청서는 국사원령이 정하는 방식과 조건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산업재산청장은 국사원령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심리 단계를 포함한 대심 절차가 끝난 후에 무효 또는 취소 신청에 대하여 평결한다.

산업재산청장의 결정은 민사집행법전 제L.111-3조 제6호에 따른 판결의 효력을 가진다.

무효 또는 취소 주장은 산업재산청장이 국사원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결하지 않으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기간은 대심 절차의 종료일로부터 시작한다.

제L.716-1-1조

승소한 자의 요청에 따라, 산업재산청장은 산업재산담당장관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패소한 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2. 상표의 무효

제L.716-2조

- I. 제L.711-2조, 제L.715-4조 및 제L.715-9조를 이유로 하는 상표의 무효 주장은 모든 자연인과 법인이 산업재산청에 제기한다. 모든 이해관계인은 이러한 주장을 규칙이 정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 II. 제L.711-3조를 이유로 하는 상표의 무효 주장은 선행 상표권자만이 산업재산청 및 규칙이 정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선행 상표권자는 특히 아래의 자를 말한다.
 1. 제L.711-3조의 I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선행 상표권자 ;
 2.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제L.711-3조의 I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선행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 ;
 3. 제L.711-3조의 I의 제3호에 규정된 회사의 공식명칭을 이유로 행하는 모든 법인 ;
 4. 제L.711-3조의 I의 제4호에 규정된 도메인이름 보유자 ;
 5. 활동을 수행하는 상호 또는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를 나타내는 상업장소표시에 근거하여 제L.711-3조의 I의 제4호의 자격으로 행하는 모든 자 ;
 6. 제L.711-3조의 I의 제5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제L.722-1조에 규정된 지리적표시로 발생하는 권리, 특히 지리적표시의 관리 또는 방어를 수행하도록 허가된 모든 자 ;
 7. 제L.711-3조의 I의 제9호에 규정된 권리를 이유로, 또는 제L.722-1조에 규정된 지리적표시의 침해를 이유로 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8. 공법인 또는 그의 부서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하는 이름에 근거하여 제L.711-3조의 I의 제10호에 따라 행하는 모든 공법인 ;
 9. 제L.711-3조의 III에 근거하여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당사국에서 보호되는 상표권자.

제L.716-2-1조

무효선언 요청은 해당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관계될 수 있다.

무효선언 요청은 하나 또는 수 개의 사유를 기반으로 할 수 있다. 그러한 사유가 동일한 권리자에 대한 것일 경우, 그러한 요청은 수 개의 선행권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

제L.716-2-2조

무효 결정은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

무효 사유가 상표등록의 일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부만 무효가 된다.

제L.716-2-3조

아래의 경우 불수리된다.

1. 무효 주장일에 5년 이상 등록된 선행 상표의 권리자가 제기한 무효 주장은, 후행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수리된다.

a) 제L.714-5조에 규정된 조건 또는 유럽연합 상표의 경우 2017년 6월 14일의 제 2017/1001/호 (EU)규정 제18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무효 주장에 원용되는 등록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선행 상표가 무효 주장일 이전 5년 동안 진정사용되었다는 사실 ;

b)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2. 후행 상표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에 5년 이상 등록된 선행 상표의 권리자가 제기한 무효 주장은, 후행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수리된다.

a) 제L.714-5조에 규정된 조건 또는 유럽연합 상표의 경우 2017년 6월 14일의 제 2017/1001/호 (EU)규정 제18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무효 주장에 원용되는 등록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선행 상표가 후행 상표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 5년 동안 진정사용되었다는 사실 ;

b)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무효 주장을 검토함에 있어, 선행 상표는 진정사용이 입증되거나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등록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L.716-2-4조

아래의 경우 불수리된다.

1. 선행등록상표권자가, 후행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후행 상표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에, 선행 상표가 식별력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선행 상표에 대하여

제기된 무효주장은 불수리된다. 이 경우 제L711-2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이유로 취소될 수도 있다.

2. 선행등록상표권자가, 후행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후행 상표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에, 원용된 선행 상표가 공중의 마음에 혼동 위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식별력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제L.711-3조의 I의 제1호 b)를 이유로 하는 무효주장은 불수리된다. 이 경우 제L711-2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이유로 취소될 수도 있다.
3. 선행등록상표권자가, 후행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후행 상표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에, 원용된 선행 상표가 본조에서 말하는 명성을 획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제L.711-3조의 I의 제2호를 이유로 하는 무효주장은 불수리된다.

제L.716-2-5조

제쟁 상표권자가 무효주장일 전에 제쟁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제L.711-2조의 제2호, 제3호, 제4호를 이유로 제기된 무효주장은 기각된다.

제L.716-2-6조

제L.716-2-7조 및 제L.716-2-8조를 제외한 상표의 무효주장 또는 무효소송은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L.716-2-7조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제6조의2에 따른 널리 알려진 상표의 권리자가 제기한 무효주장이나 무효소송은 등록일로부터 5년의 시효를 가진다. 다만 등록이 악의로 출원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L.716-2-8조

선행 상표권자가 후행 상표의 사용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5년 동안 묵인한 경우에는, 제L.7113-3조를 이유로 하는 후행 상표의 무효 주장은 상표의 사용이 용인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더 이상 수리될 수 없다. 다만 후행 상표의 등록이 악의로 출원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표의 실효

제L.716-3-1조

사용에 대한 입증 부담은 실효 대상 상표의 권리자가 부담한다. 입증은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절 침해 분쟁

제L.716-4조

상표권에 대한 훼손(atteinte)은 그 행위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침해(contrefaçon)를 구성한다. 제L.713-2조 내지 제L.713-3조, 그리고 제L.713-4조 제2항에 규정된 금지행위의 위반은 상표권에 수반된 권리의 훼손을 구성한다.

제L.716-4-1조

상표등록출원공고 이전의 행위는 그 상표에 수반된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러나 침해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등록출원서 사본을 통지한 이후의 행위는 이를 확인하여 소추할 수 있다. 수소법원은 등록공고 시까지 판결을 연기한다.

제L.716-4-2조

민사적 침해소송은 상표권자 또는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권리자의 동의에 따른 사용권자가 제기한다. 다만, 전용사용권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최고 이후에 침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증명상표 또는 단체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사용 규정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침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증명상표 또는 단체상표권자는 사용 권한이 있는 자들을 대신하여 상표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그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권 계약의 모든 당사자는 자신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다른 당사자가 제기한 침해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증명상표 또는 단체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모든 자는 자신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권리자가 제기한 침해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침해소권은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원인이 되는 최종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5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제L.716-4-3조

피고의 요청에 따라, 상표권자가 아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모든 침해의 소는 불수리된다.

1. 주장에 원용된 등록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L.714-5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침해가 주장된 날 이전 5년 동안 상표가 진정사용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
2. 또는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

제L.716-4-4조

등록상표가 침해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등록상표권자가 최종 목적지 국가에서 상품의 시증판매를 금지할 권리가 없음을 제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또는 신고자가 입증한다면, 2013년 6월 12일 제608/2013호 EU 규정에 따라 제L.713-3-2조의 규정을 근거로 상표권자가 제기한 모든 소송은 불수리 된다.

제L.716-4-5조

후행 상표에 대하여 선행 상표권자가 제기한 모든 침해소송은 아래의 경우 불수리 된다.

1. 후행 상표가 악의로 출원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행 상표권자가 후행 상표의 사용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5년 동안 묵인한 경우로서 사용이 묵인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기된 침해소송의 경우 ;
2. 후생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선행 상표에 근거한 침해소송의 원고가 제L.716-2-3조 또는 제L.716-2-4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제L.716-4-6조

침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모든 자는, 소유권에 의해 부여된 모든 권리에 대한 임박한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또는 침해행위의 속행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명령되어지도록, 필요한 경우 벌금강제하에, 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침해자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중개자를 상대로 관할 민사법원에 급속심리(가처분)를 신청할 수 있다. 관할 민사법원은 또한 신청에 따라 모든 긴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가 대심(對審) 형식으로 취해질 필요가 없는 경우 특히 지연으로 인해 원고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러하다. 신청에 따른 또는 급속심리 신청에 따른 수소법원은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해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신청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잠재적 보상을 보장할 수 있는 담보설정하에 침해로 주장된 행위의 계속을 금지하거나, 또는 침해 의심 물품이 상업적 거래망에 진입하거나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유권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을 압류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로의 인도를 명령할 수 있다. 신청자가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상황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통법에 따라 은행 계좌 및 기타 자산에 대한 동결을 포함하여, 침해자로 의심되는 자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보존압류(가압류)를 명령할 수 있다.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산을 정함에 있어, 법원은 은행, 재정, 회계, 상업에 관한 자료의 송부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그 피해의 존재가 심각하게 의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공탁금을 부과

할 수도 있다.

급속심리 신청 또는 신청에 따른 수소법원은, 침해소송이 이후에 이유 없다고 판결되거나 또는 조치들이 무효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에 대한 잠재적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원고의 담보설정 하에 조치의 실행을 명령할 수 있다.

본안소송 개시 전에 침해를 중단시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이 명해진 경우, 원고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민사적 방법 또는 형사적 방법을 통해 상소하든지 법원의 검사장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든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리고 피고는 그 신청 이유를 밝힐 필요도 없이, 명령이 내려진 조치들은 손해배상 청구와 상관없이 취소된다.

제L.716-4-7조

침해는 모든 방법으로 입증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침해소권을 가진 모든 자는,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집행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원고가 지정한 감정인의 참석 하에, 신청에 따라 관할 민사법원이 내린 명령에 근거하여,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표본 추출과 함께 또는 표본 추출 없이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또는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모든 서류에 대한 물권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명령은 침해가 없는 경우에도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서류에 대한 물권압류를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확인을 위해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의 제조 및 유통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재료 및 기구의 물권압류 또는 상세한 설명을 명령할 수도 있다.

법원은, 침해소송이 이후에 이유 없다고 판결되거나 또는 조치들이 무효될 경우, 피고에 대한 잠재적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원고의 담보설정하에 조치의 실행을 명령할 수 있다.

원고가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민사적 방법 또는 형사적 방법에 따른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압류 전체는 압류처분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취소된다. 압류처분을 받은 자는 신청 이유를 밝힐 필요도 없고, 청구될 수 있는 손해배상과는 별개이다.

제L.716-4-8조

법원은, 법령 제L.716-4-7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침해압류(saisie-contrefaçon)가 사전에 명령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또는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모든 자의 청구에 따라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증거조사(mesures d'instruction)를 명령할 수 있다.

제L.716-4-9조

신청이 있는 경우, 본 편(titre)에 규정된 민사적 절차의 본안소송 또는 급속심리 수소법원은, 필요한 경우 벌금강제하에, 원고의 권리를 훼손하는 침해 의심 상품의 유통망과 원산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피고 또는 침해 의심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자, 또는 침해가 의심되는 활동에 사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이러한 상품의 생산, 제조, 유통 및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정당한 장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출이 명령될 수 있다.

제L.716-4-10조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아래 사항을 분명하게 고려한다.

1. 상실이익 및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포함하는 침해에 따른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
2.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
3. 그리고 침해자가 침해행위로부터 얻은 지적, 물질적 그리고 판촉상의 투자 절약분을 포함하여 침해자가 실현한 이익.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그리고 대안적 조치로서, 일시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금액은 침해자가 침해한 권리에 대하여 사용권을 요청한 경우에 지불해야만 하는 로열티 또는 권리액 보다는 크다. 이 금액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L.716-4-11조

민사적 침해 판결이 내려진 경우, 법원은 피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침해품으로 인정된 상품 및 그 생산 또는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 및 용구를 유통망에서 수거하여 제거하거나, 폐기 또는 몰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판결의 홍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 특히 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신문이나 온라인 통신 서비스상에서의 판결 게시 또는 판결문 전체 또는 일부 발췌와 같은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상기 두 규정에 언급된 조치는 침해자의 비용으로 명령내려진다.

제3절 관할 규정

제L.716-5조

I. 아래의 사항들은 산업재산청에만 제기할 수 있다.

1. 제L.711-2조, 제L.711-3조 I의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 그리고 제10호, 동조 III, 제L.715-4조 및 제L.715-9조에 열거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유만을 근거로 하는 무효 주장 ;
2. 제L.714-5조, 제L.714-6조, 제L.715-5조 및 제L.715-10조에 근거한 취소 주장.

II. 부정경쟁 부대 소송의 문제를 포함하여, I에 언급된 것 이외에 상표와 관련한 다른 민사소송 및 주장은 규정이 정하는 지방대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전 단락에서 언급한 법원은 또한 아래의 경우에도 전속관할로 한다.

1. 당사자가 제I의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장을 법원의 관할과 관련한 다른 주장에 과 부대하여 주(主) 소송 또는 반소로 제기한 경우, 특히 제L.716-4조, 제L.716-4-6조, 제L.716-4-7조 및 제L.716-4-9조에 근거하여, 또는 부정경쟁소송의 경우에 있어서 ;
2. 상표권 침해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내려진 유예적 조치 또는 잠정적 또는 보존적 조치 중 하나가 본안소송 개시에 앞서 집행되는 동안, 제I의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III. 국사원령은 본 조의 적용 요건을 명시한다.

제L.716-6조

민법전 제2059조 및 제2060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제L.716-5조의 규정은 중재를 막지 않는다.

제6의2장 통관보류 및 형사적 조치

제1절 통관보류

제L.716-8조

실정 공동체규칙에 규정된 경우와는 별도로, 세관은, 등록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서면 신청 및 그 권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에 따라,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품을 그 통제권 내에 유치할 수 있다.

그 유치는 신청인과 소지자에게 즉각 통지된다. 세관은 또한 이러한 조치를 법원 검사장에게도 통지한다.

본 조 둘째 단락의 제1문에 규정된 통지의 경우, 관세법전 제59조의2에 대한 예외로서, 권리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상품의 성질, 이미지 및 실제량 또는 추정량이 통지된다. 이러한 정보는 본 조에 규정된 유치 조치의 실행에 앞서 통지될 수 있다.

제L.716-8-4조 및 제L.716-8-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것을 유보로 하여, 상품 유치 통지 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또는 부패하기 쉬운 식품의 경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유치 신청인이, 관할 민사법원이 결정한 보전조치를 세관에 정당화하지 않거나 또는 민사 또는 경범죄로 제소하지 않거나, 이후 침해소송에서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상품 소지자에게 지불

될 보상 목적의 담보를 설정하지 않거나, 또는 법원 검사장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유치는 당연 철회된다. 세관은 본 항에 규정된 10일의 기간을 신청인의 정식 요청에 따라 근무일 기준 최대 1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 기간 연장의 경우, 법원의 검사장과 상품의 소지자에게 통지된다.

유치 및 관할 민사법원에 의해 선고된 보전조치와 관련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되, 제 L.716-8-4조 및 제 L.716-8-5조에 규정된 절차에 대해서는 유보한다.

4번째 단락에 규정된 사법 소송의 개시를 위해, 관세법전 제59조의2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 신청인은 세관으로부터 유치된 물품의 발송인, 수입업자, 유치된 물품의 수령인 및 유치된 물품 소지자의 이름과 주소, 유치물품의 이미지와 수량, 원산지, 출처와 목적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유치는 아래의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

- 유럽연합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제조되었거나 또는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는 상품으로서, 관세법전 제1조에 규정된 통관구역을 통과한 후에 다른 유럽연합회원국 시장에서의 합법적 판매에 제공되는 공동체 상품 ;
- 유럽연합회원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제조되었거나 또는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는 상품으로서, 관세법전 제1조에 규정된 통관지역을 통과한 후에 비유럽연합회원국으로 수출되어질 상품으로서 유럽연합회원국 내의 통관상태에 놓여있는 공동체 상품.

제L.716-8-1조

실정 공동체규칙이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서면 청구가 없으면, 세관은 등록상표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품을 그 통제권 내에 유치할 수 있다.

이 유치는 등록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즉각 통지된다. 법원 검사장에게도 이러한 조치내용이 통지된다.

본 조 둘째 단락 제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 경우, 관세법전 제59조의2규정에 대한 예외로, 권리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상품의 성질, 이미지 및 실제량 또는 추정량이 통지된다. 이들 정보는 본 조에 규정된 유치의 실행에 앞서 통지될 수 있다.

세관이 등록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로부터 본 법전 본 조 둘째 단락 제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의 통지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4일 이내에 제출된 제L.716-8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받지 않은 경우, 유치 조치는 당연 철회된다.

본 조 제4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제L.716-8조 넷째 단락에 규정된 근무일 기준 10일의 기간은 세관이 그 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본 조는 부패하기 쉬운 상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L.716-8-2조

I. 실정 공동체규칙의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에 대한 유치가 등록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소송참가 신청 제출 또는 접수 이전에 행해진 경우, 관세법전 제59조의2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 세관원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이러한 조치의 실행을 통지할 수 있다. 세관원은 또한 상품의 수량과 특성에 관한 정보를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실정 공동체규칙의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에 대한 유치가 등록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소송참가 신청 접수 이후에 행해진 경우, 관세법전 제59조의2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 세관원은 공동체 규정이 정하고 있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권리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통지할 수도 있다.

II. 실정 공동체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유치의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등록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L.716-8-3조

제L.716-8조 및 제L.716-8-2조 I의 둘째 단락에 규정된 유치 기간 동안, 등록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스스로의 요청 또는 세관의 요청에 따라, 유치된 상품을 검사할 수 있다.

유치된 상품의 검사 시, 세관은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 등록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요청에 따라, 이들 표본은 분석 및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만 그에게 제공될 수 있다.

제L.716-8-4조

I. 등록상표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에 대한 유치가, 제L.716-8조에 언급된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실행된 경우,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은 아래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관세원의 통제하에 폐기될 수 있다.

1. 유치 통지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또는 부패하기 쉬운 식품의 경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신청인이 유치 상품의 침해성을 서면으로 그리고 감정인을 통하여 세관에 확인하였다. ;
2. 유치통지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또는 부패하기 쉬운 식품의 경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그의 책임 하에, 상품의 폐기를 동의함을 확인하였다. ;
3. 유치통지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또는 부패하기 쉬운 식품의 경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상품 소지자가 서면으로 세관에 상품의 폐기에 동의함을 확인하였다.

- II. 상품 소지자가, I의 제3호에 규정된 기간 내에, 상품의 폐기에 동의함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그 폐기에 반대한다는 것을 세관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폐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III. 상품 소지자가 서면으로 폐기에 동의함을 확인하지 않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상품의 폐기에 동의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세관은, 유치통지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또는 부패하기 쉬운 식품의 경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제L.716-8조 넷째 단락에 언급된 조치를 취한 신청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즉각 통지한다. 기간 연장의 경우, 법원 검사장과 상품 소지자에게 통지한다.
본조 I에 규정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신청인이 세관에 제L.716-8조 넷째 단락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하여 정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유치 조치는 당연 철회된다.
- IV. 제L.716-8조 셋째 단락 및 제L.716-8-1조에 규정된 정보 통지 차원에서, 세관은 신청인에게 본 조에 규정된 절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통지한다. 제L.716-8조 여섯째 단락에 규정된 정보도 또한 본 조치의 실행을 위해 신청인에게 통지될 수 있다.

제L.716-8-5조

- I. 제L.716-8조에 규정된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등록상표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에 대한 유치가 실행된 경우,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소량 운송상품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통하여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호소하는 경우, 세관원의 통제하에 폐기될 수 있다.
- II. 제L.716-8조 둘째 단락 제1문에 규정된 통지는 유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행해진다. 통지는 상품 폐기 여부에 대한 세관의 의향 및 아래의 사항을 언급한다.
 - 1. 상품 소지자는 세관에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서 유치통지시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의 기간을 가진다. ;
 - 2. 유치 시로부터 근무일 10일 동안의 기간 내에, 상품소지자가 세관에 그 폐기에 동의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상품은 폐기될 수 있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품소지자가 침묵하고 있는 경우, 소지자는 그 폐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세관은 폐기된 상품의 실제량 또는 추정량 및 상품의 특성과 관련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III. 신고자 또는 상품 소지자가 서면으로 폐기에 동의함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또는 상품의 폐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그러한 사실을 즉각 신청인에게 알리고, 물품의 수량, 특성 및 이미지를 통지한다.
- IV. 본 조 III에 규정된 통지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의 기간 내에, 신청인이 제L.716-8조 넷

째 단락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정당함을 세관에 증명하지 못한 경우, 유치 조치는 당연 철회된다.

이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관세법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 신청인은 세관으로부터 유치 물품의 발송인, 수입업자, 수취인 및 소지자의 이름과 주소, 유치 상품의 수량, 원산지, 출처와 목적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V. 동조 I에 규정된 소량 운송품의 개념은 관세청장령이 정한다.

VI. 동조는 부패하기 쉬운 식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L.716-8-6조

관세법전 제59조의2 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세관에 의해 통지된 정보를 신청인이 본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관은 그 신청을 폐지, 정지 또는 갱신거절 한다.

제L.716-8-7조

제L.716-8조 내지 제L.716-8-3조에 규정된 조치들을 선포하기 위해, 세관원은 관세법전이 그들에게 부여한 권한들을 행사한다.

제L.716-8-8조

국사원령은 아래의 사항을 정한다.

1. 제L.716-8조 내지 제L.716-8-6조에 규정된 조치의 적용 요건 ;
2. 유럽연합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등록상표의 침해를 구성할 수 있는 상품의 폐기 요건 및 그 폐기에 선행하는 표본 추출 요건.

제2절 형사적 조치

제L.716-8-9조

제L.716-9조 및 제L.716-10조에 규정된 위반 확인 시, 사법 경찰관은 불법적으로 제조, 수입, 소지, 판매, 인도 또는 공급된 상품 그리고 당해 불법 행위의 목적으로 특별히 설치된 설비에 대한 압류 조치를 행할 수 있다.

제L.716-9조

침해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공급하거나, 판매에 제공하거나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아래의 행위를 한 자는 4년의 구금형과 40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 a) 침해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하거나, 또는 환적(換積)하는 행위 ;
- b) 침해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산업적으로 생산하는 행위 ;
- c) a)와 b)에 규정된 행위의 위탁을 위해 지시나 명령하는 행위.

본 조에 규정된 범죄가 조직적으로 행해졌거나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온라인 공중통신망에서 행해졌거나 또는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상품에 대한 행위일 경우, 7년의 구금형과 75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L.716-10조

아래의 행위를 한 자는 3년의 구금형과 30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 a) 침해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보유하고 있는 행위 ;
- b) 침해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에 제공하는 행위 ;
- c) 등록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 및 그 등록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상표, 단체상표 또는 단체증명상표를 복제, 모방, 사용, 부착, 제거, 변경하는 행위. 본 c)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 위반행위는, 사회보장법전 제L.161-38조에 규정된 모범사례규칙에 따라, 처방자가 그렇게 결정하고, 처방지원 컴퓨터프로그램이 국제공통명칭으로 처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d) 의도적으로 지정 상품 이외의 다른 상품을 인도하거나 지정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공중보건법전 제L.5125-23조에 규정에 따라 약사가 대체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d)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

a) 내지 d)에 규정된 범죄가 조직적으로 행해졌거나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온라인 공중통신망에서 행해졌거나 또는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상품에 대한 행위일 경우, 7년의 구금형과 75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L.716-11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든지 같은 형벌에 처한다.

- a) 고의로 출원서에 첨부된 사용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조건하에서 등록 단체상표 또는 증명상표를 사용하는 자 ;
- b) 부적법하게 단체상표 또는 증명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고의로 판매하거나 판매에 제공하는 자 ;

본 조의 규정은 노동법전 제1권 제2부 제4장 제3절에 규정된 조합상표에 적용된다.

제L.716-11-1조

제L.716-9조 및 제L.716-10조에 규정된 처벌 이외에, 법원은 위반행위에 사용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확정적 또는 임시적으로, 폐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임시적 폐쇄가, 근로계약의 파기나 중단을 야기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종업원에게 금전적 피해를 야기시킬 수 없다. 확정적 폐쇄가 직원의 해고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해직 예고 보상금 및 해직보상금 이외에, 근로계약이 파기된 경우 노동법 제L.1235-2조 내지 제L.1235-5조 및 제L.1235-11조 내지 제L.1235-13조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을 초래한다. 이러한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구금형 및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L.716-11-2조

형법전 제121-2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L.716-9조 내지 제L.716-11조에 정의된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선언된 법인은, 형법 제131-38조에 규정된 방식의 벌금형 이외에, 동법 제131-39조에서 정하는 형벌에 처한다.

동법 제131-39조 제2호에 규정된 금지는,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행위의 실행 또는 그 실행을 계기로 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형사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선언된 법인은, 추가적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침해로 판결된 물건 및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는데 있어 사용되었거나 사용하고자 한 모든 것을 유통경로에서 제거하도록 선고받을 수 있다.

법원은,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몰수되었거나 유통경로에서 제거된 물건과 물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선고받은 자의 비용으로 파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L.716-12조

제L.716-9조 내지 제L.716-11조에 정의된 위반행위가 재차 반복되는 경우, 또는 범죄인이 피해자와 계약관계에 있었거나 또는 있는 경우에는, 형벌은 2배로 부과된다.

잘못을 저지른 자는, 추가적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상사법원, 상공회의소, 직능회의소 및 노사조정위원회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

제L.716-13조

제L.716-9조 및 제L.716-10조가 규정하는 범죄(délits) 중 하나를 저지른 자연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침해로 판결된 물건 및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는데 있어 사용되었거나 사용하고자 한 모든 것을 유통경로에서 제거하도록 선고받을 수 있다.

법원은,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몰수되었거나 유통경로에서 제거된 물건과 물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선고받은 자의 비용으로 파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신고받은 자의 비용으로, 형법전 제131-35조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한 판결문의 게시 또는 배포를 명령할 수도 있다.

제7장 유럽연합상표

제L.717-1조

유럽연합상표에 관한 2017년 6월 14일 EU규정 제2017/1001호 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5조에 규정된 금지사항의 위반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야기하는 침해를 구성한다.

주의사항 : 2019년 11월 13일 제2019-1169호 법규명령(오르도낭스) 제15조 제1항에 따라, 동 법규명령에 따른 규정들은 동 법규명령의 시행법규(데크레) 발효일에 그리고 늦어도 2019년 12월 15일에는 발효된다.

제L.717-2조

제L.716-4-10조, 제L.716-4-11조, 그리고 제L.716-8조 내지 제L.716-13조의 규정은 유럽연합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적용된다.

제L.717-3조 삭제

제L.717-4조

국사원령은, 상표에 관한 쟁점과 동시에 그 부대쟁점으로서 디자인 또는 부정경쟁에 관한 쟁점을 다루는 소송을 포함하여, 2017년 6월 14일 EU규정 제2017/1001호 제124조에 규정된 소송 및 청구에 대한 전속관할권을 가지는 1심법원과 항소법원의 장소관할 및 사물관할을 정한다.

제L.717-5조

유럽연합상표의 출원 또는 유럽연합상표는 2017년 6월 14일 EU규정 제2017/1001호 제139조에 규정된 경우에만 국내상표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상표출원은 제L.711-2조, 제L.711-2-2조 및 제L.712-4조의 규정,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제L.715-1조 내지 제L.715-4조 또는 제L.715-6조 내지 제L.715-9조를 만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거절된다. 본 단락의 적용 요건은 국사원령이 정한다.

프랑스에서 먼저 등록된 상표의 선행권이 유럽연합상표를 위해 주장된 경우, 전 단락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L.717-6조

2017년 6월 14일 EU규정 제2017/1001호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프랑스 지정 국제등록상표 또는 프랑스 국내등록 상표는 제L.711-3조 I의 따른 대항력 있는 선행성을 가진다.

프랑스에서 먼저 등록된 상표가 갱신되지 않았거나 또는 포기된 경우, 그 상표의 선행성이 유럽연합상표의 이름으로 주장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 상표의 무효 또는 권리의 실효가 선언되어 지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실효는, 그 실효가 포기일 또는 등록만료일에 발생한 경우에만, 본 조의 적용에 따라 선언될 수 있다.

제L.717-7조

2017년 6월 14일 EU규정 제2017/1001호 제110조에 규정된 집행문(formule exécutoire)은 산업재산청에 의해 수수료를 결정하는 유럽연합산업재산청의 모든 확정 결정에 첨부된다.

제2편 지리적표시**제1장 일반규정****제1절 원산지 명칭****제L.721-1조**

원산지 명칭 결정에 관한 규칙은 이하에 설명되는 소비자법전 제L.115-1조에 의해 정해진다.

“제L.115-1조 :

국가, 지방 또는 지역의 명칭으로서, 그곳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을 지정하는 데 사용되고, 그 상품의 품질 또는 특성이, 자연적 요인과 인적 요인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기인하는 경우, 그 명칭은 원산지 명칭을 구성한다.”

제2절 산업품 및 수공업품을 보호하는 지리적표시**제L.721-2조**

지리적 영역 또는 특정장소의 명칭으로서, 그곳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 임산물, 식료품, 해산물 이외의 상품을 지정하는 데 사용되고, 특정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그 지리적 원산지에서 기인할 수 있는 경우, 그 명칭은 지리적표시를 구성한다. 절단, 추출 또는 제조와 같은, 그 상품의 생산 또는 가공 조건은 제L.411-4조에 따라 취해진 결정에 의해 승인된 명세서를 준수한다.

제L.721-3조

명세서의 승인 또는 변경 신청은, 해당업자를 대표하는, 제L.721-4조에 규정된 방어·관리기관이 산업재산청에 제출한다.

승인의 결정은 다음의 행위 이후에 내려진다 :

- 1° 방어·관리기관 내부에서의 명세서 내용 및 업자 대표성 확인 ;
- 2° 실행방법이 시행령으로 정해진, 공적조사의 실행 ;
- 3° (아래 단체의) 자문 :
 - a) 지방자치단체
 - b) 이해관계 있는 직능단체
 - c) 국립원산지·품질관리원장, 제L.721-2조에 규정된 지리적표시 명칭이, 국립원산지·품질관리원이 심리 중이거나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농지·해양어업법전이 규정하고 있는 보호원산지 명칭 또는 보호지리적표시와 혼동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
 - d) 소비자법전 제4권에 규정된 특정승인을 획득한 공인 수요자협회.

제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은 호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명세서의 승인 또는 변경 신청을 심리하는 경우에, 국립원산지·품질관리원은, 요구명세서에 서술된 생산 또는 변경의 작업 및 장소 또는 영역의 구역이, 해당상품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영역 또는 지리적표시와 관련된 특정 장소에서 기인할 수 있는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승인의 결정은 지리적표시의 혜택을 받는 상품의 방어 및 관리 기관의 인정에 해당한다. 해당 명세서에 부수된 이 결정은, 산업재산공보에 공고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요구명세서 변경사항도 산업재산공보에 공고된다. 산업재산공보의 공보정보는 관보에 견해의 형태로 공고된다.

명세서 승인에 대한 산업재산청 납부 수수료는 제L.721-4조에 규정된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L.721-4조

지리적표시의 혜택을 받는 상품의 방어 및 관리는, 법인격을 갖춘 민간기관이 담당한다.

동 기관은 다수 상품의 방어 및 관리를 담당한다.

지리적표시를 고려하고 있는 각각의 상품에 대하여, 기관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규칙은 해당업자들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1항에 언급된 기관이 담당하는 방어 및 관리임무는, 그러한 임무가 업자들의 단체권 방어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다른 자격과는 별개로 실행된다.

제L.721-5조

신청하는 모든 업자는, 승인된 명세서를 준수하는 한, 방어 및 관리 기관의 정당한 회원이다.

업자가, 해당 지리적표시의 방어 및 관리기관의 회원이고, 요구명세서에 표시되어 있는 업자 목록 또는 현실화된 업자목록상에 등록되어 있으며, 제L.721-6조 5°에 따라 산업재산공보에 공고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리적표시를 이용할 수 있다.

본 절의 적용에 대하여는, 업자가 지리적표시 요구명세서에 따라 생산 또는 가공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지정한다.

제L.721-6조

방어 및 관리기관은, 지역, 지역적 전통, 노하우 및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부터 기인하는 상품에 대한 가치증진과 보존의 공익적 임무에 기여한다.

방어와 관리가 보증되는 지리적표시의 혜택을 받는 각각의 상품에 대하여, 기관은 :

- 1° 명세서안을 작성하여 산업재산청의 승인에 회부하고, 업자들에게 적용한다 ;
- 2° 명세서의 모든 변경안을 산업재산청에 회부한다 ;
- 3° 제L.721-9조에 언급된 기관에 의한 업자들의 통제작용이 요구명세서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실행되는지를 확인하고, 산업재산청에 수행한 통제결과 및 적용한 시정조치를 통지한다 ;
- 4° 조직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규정안에서 업자들의 대표성을 확인한다 ;
- 5° 업자목록을 업데이트하여, 그것을 산업재산공보에 공고하는 산업재산청에 전달한다 ;
- 6° 독촉 이후에도, 명세서를 준수하지 않고 3°에 언급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모든 업자를 배제하며, 제L.721-9조에 언급된 인증기관에 의해 인증이 수여되지 않았거나 또는 중지되었거나 또는 철회된 모든 업자를 배제한다 ;
- 7° 지리적표시 및 해당 분야의 통계자료, 상품 및 노하우에 대한 방어, 보호 및 가치증대에 관한 소송에 참여한다.

제L.721-7조

지리적표시의 명세서는 다음의 사항을 분명히 한다 :

- 1° 지리적표시의 이름 ;
- 2° 해당 상품 ;
- 3° 지리적 영역 또는 관련 특정 장소의 경계 ;
- 4° 해당 상품이 가지고 있으며, 그 지리적 영역 또는 특정 장소로부터 본질적으로 기인할 수 있는 품질, 명성, 전통적 노하우 또는 그 밖의 특성 및 상품과 지리적 영역 또는 관련 특정 장소 간의 관련성을 증명하는 요소들 ;

- 5° 4°에 언급된 특성을 보증하는 활동 및 지리적 영역 또는 특정 장소에서 행해져야만 하는 생산 또는 가공 활동의 생성, 생산 및 가공 절차의 설명
- 6° 방어 및 관리기관의 정체성, 지위, 최초 대표업자 목록 및 업자들의 재정적 참여 방식 ;
- 7° 감독 주기와 방식, 감독의 실현 및 자금조달방식을 담당하는 제L.721-9조에 언급된 기관의 유형. 방식은 특히 상품의 감독사항 및 명찰부착의 특정 요소를 포함한다 ;
- 8° 명세서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업자들이 충족해야만 하는 확인적 의무 또는 등록부 유지 의무 ;
- 9° 명세서 미준수의 경우, 업자들의 제명 및 독촉의 방식 ;
- 10° 방어 및 관리 기관의 예비적 자금조달 ;
- 11° 명찰부착의 특정 요소 ;
- 12° 경우에 따라서는, 방어 및 관리기관 내에서 재규합된 업자들이 정하는 사회적 및 환경적 약속.

제L.721-8조

- I. 본 법전 제L.722-1조 및 소비자법전 제L.115-16조와는 별개로, 등록된 명칭은 다음 사항으로부터 보호된다 :
 - 1° 그 상품이 그 명칭으로 등록된 상품과 유사한 경우 또는 그 사용이 보호되는 명칭의 명성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등록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상품에 대한 등록 명칭의 모든 직·간접적인 상업적 사용 ;
 - 2° 설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었거나, 또는 보호되는 명칭이 번역되었거나 또는 “타입, 방식, 모양, 모방”과 같은 표현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수반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모든 도용, 모방, 또는 환기 ;
 - 3° 포장, 광고, 또는 해당상품 관련자료에 나타난 상품의 출처, 원산지, 본질적인 성질 또는 품질에 대한 다른 모든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시 및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용기의 포장에 대한 사용 ;
 - 4°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모든 행위 ;
 지리적표시 자체 내에 보통명칭으로 간주되는 상품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칭의 사용은 본 I의 1° 또는 2°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II. 본 절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그 요구명세서가 승인된 지리적표시는, 총칭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공공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제L.721-9조

업자들에 의한 요구명세서 준수는, 합치성 평가기관에 의해 감독되어지는데, 그 기관은 조사

기관이 될 수도 있고, 2008년 8월 4일 제2008-776호 경제현대화에 관한 법률 제137조에 언급된 국립승인기관 또는 그 감독영역을 보호하는 다자간 상호인정 협정에 조인하고 신임에 대한 유럽 협력 회원국으로서 다른 유럽연합회원국의 국립승인기관이 교부하는 신임장을 받은 증명기관이 될 수도 있다.

조사기관은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방어 및 관리 기관에 제출하면, 그 기관은 위반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증명기관은 증명의 수여, 유지 또는 확장 및 위반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방어 및 관리기관은, 업자가 본 법 제L.721-6조 3°에 언급된 시정조치를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감독을 행하기 위하여, 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비용으로, 본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감독기관에 제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산업재산청은, 요약명세서에 규정된 업자의 감독기능이 합치성 평가기관에 의해 실행되었는지의 여부 및 요약명세서에 규정된 업자의 시정조치와 독촉 및 제외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방어 및 관리기관의 독촉 이후에, 감독이 행해지지 않았거나 또는 시정조치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재산청은 요약명세서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승인 취소 결정은 산업재산공보에 공고된다. 산업재산공보상의 정보는 관보에 의견의 형태로 공고된다.

제L.721-10조

본 절의 시행방법은 국사원령에 의해 정해진다.

제2장 분쟁

제1절 민사소송

제L.722-1조

유럽연합법 또는 국내법률이 수여하는 보호를 위반한 모든 지리적표시의 침해는 그 행위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침해를 구성한다.

본 장의 적용을 위하여, “지리적표시”는 다음을 의미한다 :

- a) 소비자법전 제L.115조-1조에 규정된 원산지 명칭 ;
- b) 제L.721-2조에 정의된 지리적표시 ;
- c) 유럽연합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산지 명칭과 지리적표시 ;

그 표현이 지리적표시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생산, 제공, 판매, 판매에의 제공, 수입, 수출, 환적, 사용 또는 이러한 목적의 물건 보유는 금지된다.

제L.722-2조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은, 해당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진 모든 자 또는 법률이 지리적표시의 방어 임무를 부여한 모든 기관에 의하여, 행해진다.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자는 다른 당사자가 제기한 침해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L.722-3조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자는, 침해자로 추정되는 자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개자에 대하여, 계쟁 침해행위의 계속을 방지하거나 또는 지리적표시의 급박한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명령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벌금강제로, 관할 민사법원에 가처분 제소할 수 있다. 관할 민사법원은 또한, 조치들이 대심(對審) 형식으로 정해질 필요가 없는 정황, 특히 조치의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야기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모든 긴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급속심리 또는 신청에 따른 수소법원은, 원고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증거요소들을 통해 지리적표시가 훼손되고 있다거나 또는 그러한 훼손이 급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에만 신청된 조치들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침해추정 물품이 상업적 거래망에서 유통되거나 또는 진입할 수 없도록, 계쟁 침해행위의 계속을 금지할 수 있고, 침해금지명령을 원고의 잠재적 보상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설정에 종속시킬 수도 있으며, 계쟁 침해상품을 압류하거나 제3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원고가 손해의 회복이 어렵다는 상황을 입증하는 경우에, 법원은, 보통법에 따라 은행 계좌 및 기타 자산에 대한 동결을 포함하여, 침해자로 추정되는 자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명령할 수 있다.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산을 정하기 위해서, 법원은 은행, 재정, 회계, 상업자료의 송부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그 피해의 존재에 대하여 심각하게 이문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에게 예납금을 허용할 수도 있다.

급속심리 또는 신청에 따른 수소법원은, 이후 침해소송이 기각 판결되거나 또는 조치들이 무효될 경우에는, 조치실행명령을 피고가 받을 수 있는 만일의 보상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담보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에 종속시킬 수 있다.

침해를 중단시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이 본안소송 개시 전에 명령되어진 경우에, 원고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민사적 방법 또는 형사적 방법을 통해 상소하든지, 법원의 검사장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든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리고 피고는 그 신청 이유를 제시할 필요도 없이, 명령이 내려진 조치들은, 청구될 수 있는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취소된다.

제L.722-4조

침해는 모든 방법에 의해 입증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절에 따라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모든 자는,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모든 집행관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인이 지정한 감정인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에 따른 관할 민사법원의 명령에 근거하여, 침해로 주장된 물건에 대한 견본 추출과 함께 또는 견본 추출 없이 상세한 설명을 작성하게 하거나, 침해로 주장된 물건 및 그와 관련된 모든 서류에 대한 물권압류를 하게 할 권리를 가진다. 이와 같은 것들이 없는 경우, 명령은 침해로 주장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서류에 대한 물권 압류 절차를 정당하게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동일한 입증 목적을 위해, 침해로 추정되는 물건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데 사용된 물품 및 도구의 물권압류 또는 상세한 설명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이후 침해소송에서 기각 판결되거나 또는 압류취소 결정이 될 경우에는, 피고가 받을 수 있는 만일의 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담보를 설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실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 내에, 민사 또는 형사 절차에 의하여, 상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명을 포함한 압류 전체는, 압류처분을 받은 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경우 압류처분을 받은 자는 그 요청의 근거이유를 제시할 필요도 없고, 청구될 수 있는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취소된다.

제L.722-4-1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모든 자의 청구에 따라,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증거조사를 명령할 수 있는데, 설명 제L.722-4조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침해 압류가 사전에 명령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하다.

제L.722-5조

신청이 있는 경우, 본 장에 규정된 민사적 절차의 실질심사 또는 가처분 수소법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강제로, 신청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침해품의 유통망과 원산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피고 또는 침해품을 점유하고 있거나 침해활동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진 모든 자 또는, 이러한 상품의 생산, 제조, 유통 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이 명령되어질 수 있다.

제L.722-6조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법원은 명확하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 1° 침해로 인한 부정적인 경제 결과로서, 피해자가 입은 손실 및 일실이익 ;
- 2° 침해로 야기된 정신적 피해 ;
- 3° 그리고 침해자가 침해행위로부터 취한 지적, 물질적, 판촉 투자의 절약을 포함하여, 침해자가 실현한 이익.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배상을 같음하여 일정 금액의 지급을 할당할 수도 있다. 이 금액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L.722-7조

침해에 대한 민사적 유책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법원은, 피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침해로 인정된 물품 및, 침해의 창작이나 제조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자재를, 유통경로로부터 리콜시키거나(rappelés), 유통경로에서 완전히 제거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파기하거나 또는 몰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특히 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신문 또는 온라인 공중매체서비스에 판결문의 전문 또는 요약문을 공고하거나 게재하는 것과 같이, 판결문의 공고에 적절한 모든 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다.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조치는 침해자 비용 부담으로 명령되어진다.

제L.722-8조

지리적표시에 관한 민사소송 및 청구는, 이러한 소송과 청구가 부정경쟁의 부대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민법전 제2059조 및 제2060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상기 규정은 중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제2절 유치

제L.722-9조

유럽연합규정에 규정된 경우와는 별도로, 세관은,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지리적표시 방호 기관의 서면 신청 및 그 권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에 따라,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품을 그 통제권하에 유치할 수 있다.

그 유치는 신청인과 소지자에게 즉각 통지된다. 세관은 또한 이러한 조치를 법원 검사장에게도 통지한다.

본 조 둘째 단락의 제1문에 규정된 통지의 경우, 관세법전 제59조의2에 대한 예외로서,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지리적표시 방호 기관에게 상품의 성질, 이미지 및 실제량 또는 추정량이 통지된다. 이러한 정보는 본 조에 규정된 유치 조치의 실행에 앞서 통

지될 수 있다.

제L.722-8-13조 및 제L.722-14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를 것을 유보로 하여, 상품 유치 통지 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또는 부패하기 쉬운 식품의 경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유치 신청인이, 관할 민사법원이 결정한 보전조치를 세관에 정당화하지 않거나 또는 민사 또는 경범죄로 제소하지 않거나, 이후 침해소송에서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상품 소지자에게 지불될 보상 목적의 담보를 설정하지 않거나, 또는 법원 검사장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유치는 당연 철회된다. 세관은 본 항에 규정된 10일의 기간을 신청인의 정식 요청에 따라 근무일 기준 최대 1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 기간 연장의 경우, 법원의 검사장과 상품의 소지자에게 통지된다.

유치 또는 관할 민사법원에 의해 선고된 보전조치와 관련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본 조 4번째 단락에 규정된 사법 소송의 개시를 위해, 관세법전 제59조의2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 신청인은 세관으로부터 유치된 물품의 발송인, 수입업자, 유치된 물품의 수령인 및 유치된 물품 소지자의 이름과 주소, 유치물품의 이미지와 수량, 원산지, 출처와 목적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 조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유치는 아래의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

1. 유럽연합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제조되었거나 또는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는 상품으로서, 관세법전 제1조에 규정된 통관구역을 통과한 후에 다른 유럽연합회원국 시장에서의 합법적 판매에 제공되는 공동체 상품 ;
2. 유럽연합회원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제조되었거나 또는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는 상품으로서, 관세법전 제1조에 규정된 통관지역을 통과한 후에 비유럽연합회원국으로 수출되어질 상품으로서 유럽연합회원국 내의 통관상태에 놓여있는 공동체 상품.

제L.722-10조

실정 공동체규칙이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지리적표시 방호 기관의 서면 청구가 없으면, 세관은 등록상표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품을 그 통제권 내에 유치할 수 있다.

이 유치는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지리적표시 방호 기관에게 즉각 통지된다. 법원 검사장에게도 이러한 조치내용이 통지된다.

본 조 둘째 단락 제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 경우, 관세법전(code des douanes) 제59조의2규정에 대한 예외로,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지리적표시 방호 기관에게 상품의 성질, 이미지 및 실제량 또는 추정량이 통지된다. 이들 정보는 본 조에 규정된 유치의 실행에 앞서 통지될 수 있다.

본 법전 본 조 둘째 단락 제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의 통지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4일 이

내에 세관이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지리적표시 방호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제L.722-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받지 않은 경우, 유치 조치는 당연 철회된다.

본 조 제4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제L.722-9조 넷째 단락에 규정된 근무일 기준 10일의 기간은 세관이 그 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본 조는 부패하기 쉬운 상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L.722-11조

- I. 유럽연합 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지리적표시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에 대한 유치가,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지리적표시 방호 기관의 소송참가 신청 제출 또는 접수 이전에 행해진 경우, 관세법전 제59조의2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 세관원은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지리적표시 방호 기관에게 이러한 조치의 실행을 통지할 수 있다. 세관원은 또한 상품의 수량과 특성에 관한 정보를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지리적표시 방호 기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유럽연합 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지리적표시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에 대한 유치가,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지리적표시 방호 기관의 소송참가 신청 접수 이후에 행해진 경우, 관세법전 제59조의2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 세관원은 동 규정이 정하고 있는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지리적표시 방호 기관에게 권리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통지할 수도 있다.

- II. 실정 공동체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유치의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지리적표시 방호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L.722-12조

제L.722-9조 및 제L.722-11조 I의 둘째 단락에 규정된 유치 기간 동안,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지리적표시 방호 기관은, 자기의 요청 또는 세관의 요청에 따라, 유치된 상품을 검사할 수 있다.

유치된 상품의 검사 시, 세관은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지리적표시 방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들 표본은 분석 및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만 그에게 제공될 수 있다.

제L.722-13조

- I. 지리적표시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에 대한 유치가, 제L.722-9조에 언급된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실행된 경우, 지리적표시를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은

아래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관세원의 통제하에 폐기될 수 있다.

1. 유치 통지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또는 부패하기 쉬운 식품의 경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신청인이 유치 상품의 침해성을 서면으로 그리고 감정인을 통하여 세관에 확인하였다. ;
 2. 유치통지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또는 부패하기 쉬운 식품의 경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그의 책임 하에, 상품의 폐기를 동의함을 확인하였다. ;
 3. 유치통지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또는 부패하기 쉬운 식품의 경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상품 소지자가 서면으로 세관에 상품의 폐기에 동의함을 확인하였다.
- II. 상품 소지자가, I의 제3호에 규정된 기간 내에, 상품의 폐기에 동의함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그 폐기에 반대한다는 것을 세관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폐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III. 상품 소지자가 서면으로 폐기에 동의함을 확인하지 않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상품의 폐기에 동의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세관은, 유치통지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또는 부패하기 쉬운 식품의 경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제L.716-8조 넷째 단락에 언급된 조치를 취한 신청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즉각 통지한다. 기간 연장의 경우, 법원 검사장과 상품 소지자에게 통지한다.
- 본조 I에 규정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신청인이 세관에 제L.722-9조 넷째 단락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하여 정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유치 조치는 당연 철회된다.
- IV. 제L.722-9조 셋째 단락 및 제L.722-10조에 규정된 정보 통지 차원에서, 세관은 신청인에게 본 조에 규정된 절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통지한다. 제L.722-9조 여섯째 단락에 규정된 정보도 또한 본 조치의 실행을 위해 신청인에게 통지될 수 있다.

제L.722-14조

- I. 제L.722-9조에 규정된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지리적표시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에 대한 유치가 실행된 경우, 지리적표시를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소량 운송상품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통하여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호소하는 경우, 세관의 통제하에 폐기될 수 있다.
- II. 제L.722-9조 둘째 단락 제1문에 규정된 통지는 유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행해진다. 통지는 상품 폐기 여부에 대한 세관의 의향 및 아래의 사항을 언급한다.
 1. 상품 소지자는 세관에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서 유치통지 시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의 기간을 가진다. ;
 2. 유치시로부터 근무일 10일 동안의 기간 내에, 상품소지자가 세관에 그 폐기에 동의한

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상품은 폐기될 수 있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품소지자가 침묵하고 있는 경우, 소지자는 그 폐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세관은 폐기된 상품의 실제량 또는 추정량 및 상품의 특성과 관련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III. 신고자 또는 상품 소지자가 서면으로 폐기에 동의함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또는 상품의 폐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그러한 사실을 즉각 신청인에게 알리고, 물품의 수량, 특성 및 이미지를 통지한다.

IV. 본 조 III에 규정된 통지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의 기간 내에, 신청인이 제L.722-9조 넷째 단락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정당함을 세관에 증명하지 못한 경우, 유치 조치는 당연 철회된다.

이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59조의2조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 신청인은 세관으로부터 유치 물품의 발송인, 수입업자, 수취인 및 소지자의 이름과 주소, 유치 상품의 수량, 원산지, 출처와 목적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V. 본 조 I에 규정된 소량 운송품의 개념은 관세청장령이 정한다.

VI. 본 조는 부패하기 쉬운 식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L.722-15조

관세법전 제59조의2 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세관에 의해 통지된 정보를 신청인이 본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관은 그 신청을 폐지, 정지 또는 갱신거절 한다.

제L.722-16조

제L.722-9조 내지 제L.722-12조에 규정된 조치들을 신고하기 위해, 세관원은 관세법전이 그들에게 부여한 권한들을 행사한다.

제L.722-17조

국사원령은 아래의 사항을 정한다.

1. 제L.722-9조 내지 제L.722-15조에 규정된 조치의 적용 요건 ;
2. 실정 유럽연합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지리적표시의 침해를 구성할 수 있는 상품의 폐기 요건 및 그 폐기에 선행하는 표본 추출 요건.

제3편 공공서비스 관련 표시

제L.731-1조

본 장은, 주택의 설비 및 건축 영역에 있어서의 수리, 보수 및 관리 용역과 관련한 거래관행 및 광고에, 그 매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적용될 수 있다.

제L.731-2조

본 장에 언급된 광고 및 서류상에서,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도안, 연락처, 참고사항 또는 그 밖에 다른 식별력 있는 표장의 모든 사용은, 해당 기관의 사전 허가에 따른다.

첫째 단락에 규정된 허가는 :

1. 공표를 위한 매체에 사본의 사전제출 없이는 교부될 수 없다. ;
2. 1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유효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갱신 가능하다. ;
3. 공익을 이유로 한다.

허가를 부여한 기관은, 상기 조건들 중 어느 하나가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L.731-3조

제L.731-2조에 대한 모든 위반은, 10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과태료(amende administrative)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소비자법전 제5권 제2편 제2장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경쟁 및 소비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부과한다.

제L.731-4조

본 장의 위반은, 소비자법전 제L.511-6조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동법 제L.511-3조 및 제L.511-21조에 규정된 직원이 조사하고 확인한다.

제2절 인도

1. 지식재산 환경

인도는 2016년부터 지식재산 정책·전략을 국가 발전계획에 통합시켜 추진하면서, 산업정책 진흥위원회(DIPP)를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로 두고 지식재산 제도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2016년에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방향성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¹⁾ 정책 목표로서 ① 지식재산 창출 촉진, ② 지식재산 상업화 촉진, ③ 지식재산 행정 현대화 등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는 공공·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IP R&D 실사, 지식재산 평가·거래 플랫폼 구축, 특허심사 역량 강화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다만, 전산시스템 효율화, 심사관 증원 등 지식재산 행정 현대화를 위한 조치²⁾ 이외에는 아직 지식재산 창출 촉진을 위한 다른 구체적 후속조치가 충분히 수립·추진되지는 못하였다.

▼ 표 6 | 인도의 특허출원·등록 추이(2013-2018년)

(단위: 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최근 5년)
특허 출원	내국인	10,669	12,040	12,579	13,199	14,961	16,289	7.908%
	외국인	32,362	30,814	33,079	31,858	31,621	33,766	2.425%
	소 계	43,031	42,854	45,658	45,057	46,582	50,055	4.017%
특허 등록	내국인	594	720	822	1,115	1,712	2,311	34.586%
	외국인	2,783	5,433	5,200	7,133	10,675	11,597	22.794%
	소 계	3,377	6,153	6,022	8,248	12,387	13,908	24.324%

인도에서 특허출원·등록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02%, 24.32% 증가율을 나타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에는 출원 50,055건, 등록 13,908건을 기록하였다.³⁾ 인도에서 특허출원·등록은 특히 2016~2017년에 급증했는데, 이는 인도 특허상표청의 전산시스템이 정착되면서⁴⁾ 특허심사

1) 인도 상무부는 2016년 5월 발표한 국가 지식재산권 정책(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에서 지식재산 정책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로서 ①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② 지식재산 창출 촉진, ③ 지식재산 제도 개선, ④ 지식재산 행정 현대화, ⑤ 지식재산권 상업화 수익 창출, ⑥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및 집행 강화, ⑦ 지식재산 인적자원 개발의 7가지 세부내용을 제시함. 인도 상무부, 국가 지식재산권 정책(2016), 세부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dipp.gov.in/sites/default/files/national-IPR-Policy2016-14October2020.pdf>.

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 인도(2018), p.66.

3)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 www3.wipo.int/ipstats/keyindex.htm (11월 19일 최종방문).

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⁵⁾ 내국인 출원 규모를 기준으로, 인도의 특허 활동은 2018년 세계 9위에 해당하는 것으로⁶⁾ 지식재산권 인식 향상, 해외기업 진출 확대 등에 따라 특허 활동이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 표 7 | 인도에서의 상표출원·등록 추이(2013-2018년)

(단위: 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최근 5년)
상표 출원	내국인	183,172	200,144	250,586	264,662	242,483	297,751	11.038%
	외국인	25,665	37,586	39,141	48,785	41,090	44,947	5.597%
	소계	208,837	237,730	289,727	313,447	283,573	342,698	10.345%
	해외출원	21,815	37,106	32,905	29,713	29,654	35,690	-0.217%
상표 등록	내국인	52,117	45,720	53,520	158,415	287,139	306,469	75.260%
	외국인	9,858	24,502	32,784	43,502	52,613	53,324	22.197%
	소계	61,975	70,222	86,304	201,917	339,752	359,793	57.756%
	해외등록	19,468	24,259	26,552	24,448	26,192	27,115	3.046%

인도에서 상표출원·등록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35%, 57.76% 증가율을 나타내 급증하는 추세이며, 2018년엔 출원 342,698건, 등록 359,793건을 기록하였다.⁷⁾ 인도에서 상표출원·등록 건수는 특허, 디자인 등 다른 산업재산권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특허와 다르게 내국인 비중이 외국인보다 매우 높아서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인도에서는 2015년 이래 매년 28만 건 이상 상표가 출원되어 상표 활동이 매우 활발하며, 상표 등록도 2016년에 195.99% 급증한 이후 2년 연속 매년 약 34만 건을 기록하였다. 인도에서 상표출원·등록이 증가한 이유는 인도 특허상표청의 전산시스템 개선 이외에도 ① 인도 시장의 확대 및 브랜드 가치 증가, ② 위조상품 증가에 따른 상표권 보호 필요성, ③ 특허와 달리 기술적 창작이 필요하지 않은 창작 용이성 등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⁸⁾

내외국인 출원 규모를 기준으로, 인도의 상표 활동은 2018년 세계 6위에 해당하는 것으로⁹⁾ 브랜드 가치 인식 제고, 해외기업 진출 확대에 따라 인도에서 상표 활동이 점증할 전망이다. 한편, 인도 국내출원인이 타국에서 상표를 출원·등록하는 해외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4) 인도는 2007년에 지식재산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공표하고 2012년 11월에 지식재산권 전자 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함. KOTRA,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인도 정부의 노력"(2019년 6월 24일).

5)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 인도(2018), pp.65-66.

6)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 2019(2019), p.9.

7)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 www3.wipo.int/ipstats/keyindex.htm (11월 19일 최종방문).

8)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 인도(2018), pp.66-67.

9)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 2019(2019), p.96.

▼ 표 8 | 인도에서의 국가별 외국인 상표출원 현황(2013~2018년)

(단위: 건)

국 가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최근 5년)
미 국	6,264	7,579	7,762	11,765	7,930	8,696	7.762%
중 국	1,109	2,509	2,532	5,408	4,959	6,027	31.934%
독 일	2,738	5,004	4,936	5,602	5,348	5,140	0.928%
한 국	506	555	1,005	493	508	1,186	41.661%

2018년 기준, 인도에서 외국인 상표출원 건수는 미국이 8,6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국 6,027건, 독일 5,140건 등의 순이었으며, 우리나라는 1,186건을 출원하였다.¹⁰⁾ 2018년 기준, 인도에서 전체 상표출원 중에 우리나라의 출원은 약 0.35%를 차지했으며, 우리 기업들의 진출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 인도 상표출원도 2018년에 133.47% 급증하였다.¹¹⁾

▼ 표 9 | 인도에서의 디자인 출원·등록 추이(2013~2018년)

(단위: 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최근 5년)	
디자인 출원	내국인	5,182	6,168	6,829	6,753	7,534	8,928	9.918%
	외국인	3,315	3,141	3,461	3,920	3,583	3,704	4.558%
	소계	8,497	9,309	10,290	10,673	11,117	12,632	8.012%
	해외출원	1,824	1,853	2,428	1,129	2,840	6,283	62.578%
디자인 등록	내국인	4,156	4,179	4,801	4,901	6,622	5,422	8.490%
	외국인	2,819	2,878	2,660	2,430	3,566	2,776	2.093%
	소계	6,975	7,057	7,461	7,331	10,188	8,198	5.855%
	해외등록	1,821	1,805	2,198	1,030	2,492	6,512	67.973%

인도의 디자인 출원·등록은 최근 5년간 연평균 8.01%, 5.86% 증가율을 나타내 점증하는 추세이며, 2018년엔 출원 12,632건, 등록 8,198건을 기록하였다.¹²⁾ 인도에서 디자인 출원·등록 건수는 상표 등 다른 산업재산권에 비해서 아직 적은 편이며, 상표와 마찬가지로 내국인 비중이 외국출원인보다 높아서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인도에서는 2017년에 디자인 등록이 38.97% 증가하는 등 최근 디자인 활동이 늘고 있는데, 얼마 전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에서 디자인이 쟁점이 되는 등 디자인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자동차, 정보통신 등 기업들을 중심으로 디자인 출원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인도

10)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 2019(2019), p.96.

11)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 www3.wipo.int/ipstats/keyindex.htm (11월 23일 최종방문).12)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 www3.wipo.int/ipstats/keyindex.htm (11월 19일 최종방문).

내국인이 타국에서 디자인을 출원·등록하는 해외출원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디자인 해외 출원·등록은 2017~2018년에 각각 120%, 140% 이상 급증하였다.

2. 지식재산 법

인도는 영국 1852년 특허법에 기초하여 발명의 보호에 관한 「1856년 제6법률(Act VI of 1856)」을 최초로 제정하였다. 이는 새로운 발명을 장려하는 한편, 발명을 공개하여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영국 특허법에 기초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체계는 영미법계의 그것과 유사하다. 이후 동 법률은 「1859년 제 15법률(Act XV of 1859)」로 개정되면서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만 배타적 독점권을 수여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후로 인도 특허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그중 주요사항이 포함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872년 특허·디자인보호법(The Patents & Designs Protection Act of 1872)」으로 개정되면서 발명과 디자인을 통합하여 보호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약 30년간 유지되다가 1911년 영국 특허법 개정에 따라 「1911년 인도 특허·디자인법(Indian Patents and Designs Act of 1911)」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1911년 법을 통해 특허등록부가 최초로 도입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우선권의 보장, 비밀특허, 추가특허, 특허경정권, 특허 존속기간 연장(14년→16년) 등 조항이 추가되었다. 1950년 법률 개정을 통해 강제실시조항이 도입되었으며, 1999년 개정을 통해 물질발명(의약품, 농약 등)의 특허부적격성을 규정하였고, 2005년 최종 개정되었다. 특허법의 개정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1970년 이후 특허시행규칙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오늘날의 특허제도를 구축하였다.

인도는 1940년에 처음으로 상표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Common Law에 의해서 상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였다. 그 이후에 1940년 11월 3일에 상표법을 최초로 제정하였고, 1942년 1월 6일에 동법이 시행됨으로써 상표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서 다루게 되었다.

1943년 개정 시에 특허청의 일부로서 존재하던 상표사무국을 별도의 기관으로서 분리하여 특허사무국과 상표사무국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1958년에 상표법(Trade Marks Act, 1940)은 새로운 상표법(Trade & Merchandise Marks Act, 1958)으로 개정되었으며, 동 개정법이 1959년 11월 25일에 발효되면서 상표에 관하여는 동법을 따르게 되었다.

그 뒤에 인도의 상표법은 1999년에 이르러 새로운 상표법('The Trade Marks Act, 1999)으로 다시 개정되었고, 동 법률은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에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또한 인도는 2002년에는 상표법 시행 규칙(The Trade Marks Rules)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서 파리 조약 및 TRIPS 협정 등을 고려하여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상표법을 운영하면서

2013년에는 마드리드 협약에도 가입하였다.

2010년 9월에 일부 개정된 인도의 제3차 개정 상표법은 총 13장, 15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상표의 등록출원과 심사, 상표권 존속기간, 상표권의 효력 및 사용, 등록상표의 양도, 침해 구제 절차 등 상표권의 창출·보호·집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 상표법 시행규칙은 2010년과 2013년에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인도는 1872년 ‘The Patents & Designs Protection Act’를 제정하여 디자인을 특허와 함께 통합하여 보호하다가, 2000년 ‘The Design Act of 2000’으로 독립적인 디자인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하위 규칙(‘The Designs Rules(Amendment 2008)’에서 보완해주고 있다.

붙임 1 인도 특허법

[인도 특허법] 2005년 4월 4일 법률 제15호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약칭, 적용 영역 및 시행)

- (1) 동법은 1970년 특허법이라고 칭한다.
- (2) 동법은 인도의 전 영역에 적용한다.
- (3) 동법은 중앙정부가 관보 고시에 지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법의 각각 다른 규정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시행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의 동법의 시행은 해당 규정에 대한 시행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제2조 (정의 및 해석)

- (1) 동법에 대해서는 문맥상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 (a) '심판부'란 제116조에 말하는 심판부를 말한다.
 - (ab) '양수인'이란 양수인의 양수인 및 고인이 된 양수인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며, 어떤 사람의 양수인이란 해당 법정대리인의 양수인 또는 그 사람의 양수인을 포함한다.
 - (aba) '부다페스트 조약'이란 1977년 4월 28일에 부다페스트에서 작성되어 수시로 개정되고 수정된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 기탁의 국제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을 말한다.
 - (ac) 발명에 관해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란 발명이 산업에서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b) '청장'이란 제73조에 말하는 특허(디자인상표)청장을 말한다.
 - (c) '조약 출원'이란 제135조에 의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 (d) '조약국'이란 제133조에서 조약국이라고 하는 국가 또는 국가군, 국가 동맹 또는 정부간 기관의 구성국인 국가를 말한다.
 - (e) '지방법원'이란 1908년 민사소송법(1908년 법률 제5호)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 (f) '배타적 라이선스'란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 대해서 또는 실시권자 및 그 사람으로부터 수권된 사람에 대해서, 다른 모든 사람(특허권자를 포함)을 제외하고 특허 발명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라이선스를 말하며, 배타적 실시권자란 이 취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 (g) [삭제]

- (h) '정부계 기업'이란
- (i) 정부의 각 부처에 의해
 - (ii) 국법, 지역법, 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며, 정부에 의해 소유 또는 관리되고 있는 것에 의해
 - (iii) 1956년 회사법(1956년 법률 제1호) 제617조에 규정된 국유 회사에 의해, 또는
 - (iv) 정부에 의해 전부 또는 대부분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에 의해
- 운영되는 산업 기업체를 말한다.
- (i) 주 또는 직할지에 관해서 '고등법원'이란 그 주 또는 직할지에 영역 관할권을 가지는 고등법원을 말한다.
 - (ia) '국제 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특허출원을 말한다.
- (j) '발명'이란 진보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진 신규의 제품 또는 방법을 말한다.
- (ja) '진보성'이란 현존하는 지식과 비교해 기술적 진보를 포함하거나 경제적 의의를 가지거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가지는 발명의 특징으로, 그 발명이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자명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k) '법정대리인'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권을 법률상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 (l) '신규 발명'이란 완전한 명세서에 의한 특허출원일 전에 인도 또는 다른 나라에서 어떠한 서류에 공개에 의해 예측되지 않거나 또는 실시되지 않은 어떠한 발명 또는 기술, 즉 주제가 공용되지 않거나 기술수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지 않는 발명 또는 기술을 말한다.
- (la) '이의부'란 제25조(3)에 근거해 편성된 이의부를 말한다.
- (m) '특허'란 동법에 근거해 발명에 대해 부여되는 특허를 말한다.
- (n) '특허대리인'이란 동법에 근거해 실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o) '특허물품' 및 '특허 방법'이란 각각 실제로 유효한 특허의 대상인 물품 또는 방법을 말한다.
- (oa) '특허 협력 조약'이란 1970년 6월 19일에 워싱턴에서 작성되어 때때로 개정되고 수정된 특허협력조약을 말한다.
- (p) '특허권자'란 특허권의 피부여자 또는 소유자로서 실제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q) '추가 특허'란 제54조에 따라 부여된 특허를 말한다.
- (r) '특허청'이란 제74조에 말하는 특허청을 말한다.
- (s) '사람'이란 정부를 포함한다.
- (t) '이해관계인'이란 해당 발명에 관련된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있어서 연구에 종사하거나 촉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ta) '의약 물질'이란 1 또는 2 이상의 진보성을 포함한 어떠한 신규 실재물을 말한다.

- (u) '소정의'란 다음에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A) 고등법원의 절차에 관해서는 해당 고등법원의 규칙
 - (B) 심판부의 절차에 관해서는 심판부의 규칙
 - (C) 기타의 경우는 동법에 근거해 제정된 규칙
 - (v) '소정의 방법'이란 소정의 수수료 납부를 포함한다.
 - (w) '우선일'이란 제11조에 의해서 거기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 (x) '등록부'란 제67조에 말하는 특허등록부를 말한다.
 - (y) '진정한 최초의 발명자'에는 인도에 발명을 최초로 수입한 사람 또는 인도 국외로부터 발명을 최초로 전달받은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 (2) 동법에서는 문맥상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 (a) '청장'은 제73조에 따라 청장의 직무를 이행하는 간부 직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 (b) '특허청'은 특허청의 각 지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제2장 특허되지 않는 발명

제3조 (발명이 아닌 것)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동법의 취지에 해당하는 발명이 아니다.

- (a) 사소한 발명 또는 확립된 자연법칙에 명확하게 반하는 사항을 클레임하는 발명
- (b) 주되거나 의도된 용도 또는 상업적 실시가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사람, 동물,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발명
- (c) 과학적 원리의 단순한 발견, 추상적 이론의 형성 또는 현존하는 생물 혹은 미생물 물질의 발견
- (d) 기존의 물질에 대하여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단순한 발견에 있어서 해당 물질의 기존 물질의 효능이 증대하지 않는 것, 기존 물질의 신규한 특성 혹은 신규 용도의 단순한 발견, 기존 지식의 방법, 기계 혹은 장치의 단순한 용도의 단순한 발견. 단, 기존 지식의 방법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거나 적어도 하나의 새로운 반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원자력에 관한 발명은 불특히 대상)

1962년 원자력법(1962년 법률 제33호) 제20조(1)에 해당하는 원자력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5조 (제조방법 또는 공정에 한해 특허되는 발명) [삭제]

제3장 특허출원

제6조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

- (1) 제134조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의 사람 중 누구든지 발명의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 (a) 발명의 최초의 진정한 발명자인 취지를 주장하는 사람
 - (b) 해당 출원을 할 권리에 대하여 발명의 최초의 진정한 발명자인 취지를 주장하는 자의 양수인인 사람
 - (c) 사망 직전에 해당 출원을 할 권리가 있던 고인(故人)에 대한 법정대리인
- (2) (1)에 기초한 출원에 대해서는 동항에 말하는 사람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누군가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출원 양식)

- (1) 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소정의 양식에 따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A)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인도를 체약국(締約國)으로 지정한 각 국제특허출원은 인도 특허청장에게 제출된 경우 동법에 기초하여 출원으로 본다.
 - (1B) (1A)에서의 출원 및 지정 관청 또는 선택 관청으로서의 특허청에 의해 처리되는 완전명세서의 제출일은 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해 부여되는 국제출원일로 한다.
- (2) 출원이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권의 이전에 의해서 행해질 때는 출원과 함께 또는 출원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출원권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동조에 기초한 각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이 해당 발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최초의 진정한 발명자인 취지를 주장하는 사람을 지명하여야 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출원인 또는 출원인 중 1인이 아닌 때에는 해당 출원에는 그렇게 지명된 사람이 최초의 진정한 발명자라고 믿는 취지의 출원인의 선언을 포함하여야 한다.
- (4) 각 해당 출원(조약 출원이 아니거나 인도를 체약국으로 지정한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출원이 아닌 것)에는 가명세서 또는 완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외국 출원에 관한 정보 및 서약서)

- (1) 동법에 기초한 특허출원인이 인도 이외의 어떤 나라에서도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단독으로 혹은 다른 여러 명과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또는 자신이 아는 한 해당 출원이 몇 명을 통해서 혹은 그 사람으로부터 권원을 취득한 몇 명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인은 자기의 출원과 함께 또는 그 후 청장이 허가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a) 해당 출원의 상세 사항을 기재한 진술서
 - (b) 전호에서의 진술서 제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인도 이외의 다른 나라로 한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관한 다른 출원(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인도에서 특허부여일까지 전호에 기초하여 필요하게 되는 명세를 서면으로 수시로 청장에게 계속 통지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 (2) 인도에 특허출원 후 그것에 대한 특허부여 또는 특허부여가 거절되기까지 언제라도 청장은 인도 이외의 나라에 있어서 출원의 처리에 관한 소정의 명세를 제출하는 것을 출원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원인은 자기에게 입수 가능한 정보를 소정의 기간 내에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가명세서 및 완전명세서)

- (1) 특허출원(조약 출원이 아니거나 인도를 체약국으로 지정한 특허협력조약에 기초한 출원이 아닌 것)에 가명세서를 첨부한 때에는 완전명세서를 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본다.
- (2) 동일 출원인의 명의로 2 이상의 출원에 가명세서가 첨부되고 해당 발명이 동일하거나 하나의 발명이 다른 발명을 변경한 것이고 해당 발명 전체가 단일 발명을 구성하는 것이며 하나의 특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청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청장은 해당 가명세서 전체에 대해 하나의 완전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1)에 규정된 기간은 최초의 가명세서 제출일부터 기산한다.
- (3) 특허출원(조약 출원이 아니거나 인도를 체약국으로 지정한 특허협력조약에 기초한 출원이 아닌 것)에 완전명세서라고 주장하는 명세서가 첨부되고 있는 경우에는 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언제라도 출원인으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청구가 있을 때 청장은 동법의 적용상 해당 명세서를 가명세서로서 취급해야 할 취지를 지시하고 그것에 응하여 해당 출원을 처리할 수 있다.
- (4) 가명세서 또는 제3항에 기초한 지시에 의해서 가명세서로서 취급되는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에 대해 완전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특허부여 전에 언제라도 출원인으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장은 해당 가명세서를 취소하고 해당 출원일을 완전명세서의 제출일까지 후일자로 할 수 있다.

제10조 (명세서 내용)

- (1) 가명세서 또는 완전명세서인지를 불문하고, 각 명세서는 발명을 기재하고 두서에 발명에 관한 주제를 충분히 표시하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동법에 기초하여 동 건에 대해 제정된 규칙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가명세서 또는 완전명세

서인지를 불문하고 해당 명세서의 이해를 위해서 도면을 제출할 수 있고, 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제출된 어떠한 도면도 청장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명세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취지에 따라서 동법에서 명세서에 언급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3) 어떤 특정의 사건에 대하여, 발명을 설명하는 것 또는 발명을 구성한다고 주장되는 것의 모형 또는 견본에 의해서 출원을 보충해야 한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요구하는 모형 또는 견본을 출원이 특허부여를 위해 정비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모형 또는 견본은 명세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 각 완전명세서에 대해서는

- (a) 발명 그 자체, 그 작용 또는 용도와 그 실시의 방법을 충분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 (b) 출원인이 알고 있으며, 그 출원인이 그 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발명을 실시하는 최선의 방법을 개시하며,
- (c) 보호를 청구하는 발명의 범위를 정하는 1 또는 2 이상의 클레임으로 완결하고,
- (d) 발명에 관한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요약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 (i) 청장은 제3자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요약물 보정할 수 있으며,
- (ii) 출원인이 (a) 및 (b)를 만족하는 방법으로 기술할 수 없는 생물학적 물질을 명세서에 기재하고 있고 해당 물질이 공중에에서 입수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출원은 부다페스트 조약에 기초한 국제 기탁 당국에 해당 물질을 기탁하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의해 완비된 것으로 한다. 즉,
 - (A) 해당 물질을 인도에 있어 특허출원일 이전에 기탁하고, 그것에 대한 언급을 소정의 기간 내에 명세서에 기재할 것
 - (B) 해당 물질을 정확하게 특정하거나 표시하는데 필요한 모든 이용 가능한 특성이 명세서에 포함되고, 그것에는 기탁 기관의 명칭 및 주소, 해당 기관에 해당 물질의 기탁 일자 및 번호를 포함할 것
 - (C) 해당 물질을 분양받는 것이 인도에 있어 특허출원일 후 또는 우선권 주장의 경우 우선일 후에 한하여 기탁기관에서 가능할 것
 - (D) 발명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명세서에서 생물학적 물질의 출처 및 지리적 원산지를 공개할 것

(4A) 인도를 계약국으로 지정하는 국제출원의 경우, 출원서와 함께 제출된 명칭, 설명, 도면, 요약 및 클레임은 동법의 적용상 완전명세서로 본다.

(5) 완전명세서의 1 또는 2 이상의 클레임은 단일의 발명 또는 단일의 발명 개념을 구성하는 일군의 발명과 관련되어야 하고, 명확하고 간결하며,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을 적정하게 기초로

하여야 한다.

- (6) 해당 발명의 발명자인 것에 관한 선언서는 소정의 경우에 완전명세서의 제출과 함께 또는 해당 명세서의 제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7) 동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가명세서 후 제출되는 완전명세서는 가명세서 중에 기재된 발명의 개량 또는 추가에 대한 클레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출원인이 제6조의 규정에 기초해 별개의 특허출원을 할 권리를 가지는 개량 또는 추가에 대한 클레임도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 (완전명세서의 우선권 주장)

- (1) 완전명세서의 각 클레임에 대해서는 우선일이 있어야 한다.
- (2) 완전명세서가 다음의 것을 첨부한 단일 출원에 대해 제출되고, 그 클레임이 (a) 또는 (b)에서 말하는 명세서 중 기재된 사항을 적정하게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클레임의 우선일은 관계명세서의 제출일로 한다.
 - (a) 가명세서 또는
 - (b) 제9조 (3)에 기초해 지시에 의해 가명세서로서 취급되는 명세서
- (3) (2)의 명세서를 첨부한 2 이상의 출원에 대해 완전명세서가 제출되거나 이것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고, 그 클레임이
 - (a) 이 명세서 중 하나에 개시된 사항을 적정하게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클레임의 우선일은 해당 명세서를 첨부하여 출원한 날이고,
 - (b) 하나의 명세서에 일부 및 다른 하나의 명세서 중 다른 일부에 개시된 사항을 적정하게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클레임의 우선일은 후일자를 가지는 명세서를 첨부한 출원일로 한다.
- (3A) 인도에 있어서 선출원을 기초로 하는 완전명세서가 해당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되고, 그 클레임이 해당 출원에 개시된 사항을 적정하게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클레임의 우선일은 해당 사항이 최초로 개시된 해당 출원의 출원일로 한다.
- (4) 완전명세서가 제16조(1)에 근거하여 새롭게 된 출원에 대해 제출되고, 그 클레임이 가명세서인가 완전명세서인가를 불문하고 먼저 제출된 명세서에 개시된 사항을 적정하게 기초로 할 때는, 해당 클레임의 우선일은 해당 사항이 최초로 개시된 명세서의 제출일로 한다.
- (5) 동항의 규정을 제외한 동조의 전기 각 규정에 기초하여 완전명세서의 클레임이 2 이상의 우선일을 갖는 경우, 해당 클레임의 우선일은 이러한 일자 가운데 최우선일로 한다.
- (6) (2), (3), (3A), (4) 및 (5)가 적용되지 않는 어떠한 경우에도 클레임의 우선일은 제137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완전명세서의 제출일로 한다.
- (7) 동조에 있어 출원일 또는 완전명세서의 제출일이란 제9조 또는 제17조에 기초하여 후일(後

日)자를 부여하거나 제16조에 기초해 전일자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러한 후일자 또는 전일자를 말한다.

- (8) 특허의 완전명세서 중의 클레임은 다음의 이유만으로 무효로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a) 해당 클레임의 우선일 이후에 해당 클레임 중에서 클레임된 것에 한하여, 발명의 공개 또는 실시, 또는
 - (b) 최초로 기재된 클레임 중에서 클레임된 것에 한하여, 동일 또는 후의 우선일을 가지는 클레임 중에서 클레임된 발명에 대한 다른 특허의 부여

제4장 출원공개 및 심사

제11A조 (출원공개)

- (1)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출원은 소정의 기간 중에는 공중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2) 출원인은 소정의 방법에 의해 (1)에 기초한 소정의 기간의 만료 전에 언제라도 자신의 출원을 공개하도록 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3)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청장은 신속하게 해당 출원을 공개하여야 한다.
- (3) 각 특허출원은 (1)에 기초한 규정의 기간 만료 시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되어야 한다.
 - (a) 해당 출원에 대해 제35조에 기초해 비밀유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 (b) 해당 출원이 제9조(1)에 기초해 포기된 경우, 또는
 - (c) (1)에 기초한 규정의 기간의 3개월 전에 취하된 경우
- (4) 비밀유지명령이 출원에 대해 제35조에 기초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출원은 (1)에 기초한 규정의 기간 만료 후 또는 해당 비밀유지명령이 실효된 때 중 후일(後日)에 공개해야 한다.
- (5) 동조에 기초한 각 출원공개는 해당 출원을 특정하는 출원일, 출원번호, 출원인의 명칭 및 주소 등의 상세 사항과 요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6) 동조에 근거하는 특허출원의 공개 시에는,
 - (a) 기탁 기관은 명세서에 기재된 생물학적 소재를 공중이 입수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 (b) 특허청은 소정의 수수료의 납부에 의해 해당 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있는 경우)을 공중이 입수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7) 특허출원의 공개일 이후 해당 출원의 특허부여일까지 출원인은 해당 발명의 특허가 출원의 공개일에 부여된 것으로서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원인은 특허가 부여될 때까지는 침해 절차를 제기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또한, 2005년 1월 1일 전에 제5조(2)에 기초한 출원에 관련

되는 특허권자의 권리는 특허부여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2)에 기초한 출원에 대해 특허가 부여된 후 특허 소유자는 해당 특허에 의해 보호된 관계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며, 2005년 1월 1일 전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특허부여일에 해당 관계 제품을 계속하여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부터 적정한 실시료를 받는 권리를 가지지만,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침해소송을 일절 제기할 수 없다.

제11B조 (심사청구)

- (1) 어떤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출원인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이 소정의 기간 내에 소정의 방법에 의해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 (2) [삭제]
 - (3) 2005년 1월 1일 전에 제5조(2)에 기초하여 출원된 특허의 클레임에 관한 출원의 경우, 출원인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이 소정의 방법에 의해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 (4) 출원인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이 (1) 또는 (3)에 규정된 기간 내에 특허출원의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출원은 출원인에 의해 취하한 것으로 본다.
- 다만,
- (i) 출원인은 자기가 한 출원에 대해서는 소정의 방법에 의해 청구하고, 출원 후 특허부여 전에는 언제라도 출원을 취하할 수 있고,
 - (ii) 비밀유지명령이 제35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일로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2조 (출원심사)

- (1) 제11B조(1) 또는 (3)에 기초하여 소정의 방법에 의해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청구를 한 경우, 청장이 출원서, 명세서 및 기타 관련 서류는 심사관에게 신속하게 위임하여 다음의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a) 출원서, 명세서 및 기타 관련 서류가 동법 및 동법에 기초해 제정된 규칙의 규정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 (b) 해당 출원에 대해 동법에 기초한 특허부여에 대해 어떠한 적법한 거절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c) 제13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조사의 결과 및
 - (d) 그 외 소정의 사항
- (2) (1)에 기초한 출원서, 명세서 및 기타 관련 서류에 대해 위탁받은 심사관은 소정의 기간 내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선 공개 또는 선 클레임에 의한 선발명에 대한 조사)

- (1) 제12조에 기초해 특허출원을 위탁받은 심사관은 완전명세서의 어떤 클레임 중에 클레임된 해당 발명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여야 한다.
 - (a) 해당 발명이 인도에서 출원된 특허출원이며 1912년 1월 1일 이후의 출원일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제출된 어떠한 명세서에 있어서 해당 출원인의 완전명세서의 제출일 전에 공개된 것에 의해 예측되었는지 여부
 - (b) 해당 발명이 해당 출원인의 완전명세서의 제출일 후에 공개된 다른 완전명세서에 있어서 인도에서 출원되고, 상기의 일자 또는 상기의 일자 보다 전에 우선일을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 제출된 클레임 중에 클레임되었는지 여부
- (2) 심사관은 완전명세서의 어느 클레임 중에 클레임된 해당 발명이 해당 출원인의 완전명세서의 제출 전에 인도 또는 다른 지역에서 (1)에서 말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서류의 공개에 의해서 예측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조사를 하여야 한다.
- (3) 완전명세서가 특허부여 전에 동법의 규정에 기초해 보정된 경우, 해당 보정 후의 명세서에 대해서 원 명세서와 동일하게 심사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 (4) 제12조 및 동조에 의해 필요한 심사 및 조사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유효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어떠한 해당 심사, 조사, 보고 또는 그 결과로 생기는 다른 절차를 이유로 또는 이와 관련한 책임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 또는 어떠한 간부 직원도 일절 부담하지 않는다.

제14조 (심사관의 보고의 청장에 의한 취급)

특허출원에 대해 청장이 수령한 심사관의 보고가 출원인에게 불리하거나 동법 혹은 동법에 기초해 제정된 규칙의 규정을 준수함에 있어서 출원서, 명세서 또는 기타 서류의 보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청장은 이하 규정에 따라 해당 출원의 처분에 착수하기 전에 거절의 이유를 가능한 한 조기에 해당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해당 출원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청문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 (출원 거절 또는 보정을 명하는 등의 청장의 권한)

청장은 출원서, 명세서 혹은 거기에 첨부된 다른 서류가 동법 또는 동법에 근거해 제정된 규칙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납득한 경우, 출원을 거절할 수 있거나 출원을 처리하기 전에 출원서, 명세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 기타 서류를 자기가 납득하도록 보정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보정을 게을리한 때에는 해당 출원을 거절할 수 있다.

제16조 (출원 분할에 관한 명령을 발하는 청장의 권한)

- (1) 동법에 기초해 특허출원을 한 사람은 특허부여 전이라도 출원인이 희망하는 한 또는 완전명

세서의 클레임이 2 이상의 발명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에 의해 청장이 제기한 거절이유를 제거하기 위해서, 최초의 출원에 대해 이미 제출된 가명세서 또는 완전명세서에 공개된 발명에 대해서 새로운 출원을 할 수 있다.

- (2) (1)에 기초한 새로운 출원에는 완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완전명세서에는 최초 출원에 대해 제출된 완전명세서에 실질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은 어떤 사항도 일절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 (3) 청장은 원(原)출원 또는 새로운 출원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출된 완전명세서에 관하여 이들 완전명세서의 어느 것에도 다른 완전명세서에 클레임되어 있는 어느 하나의 사항의 클레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출원 일자에 관한 명령을 하는 청장의 권한)

- (1) 제9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청장은 동법에 기초한 출원 후에 특허부여 전에는 언제라도 소정의 방법으로 출원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출원을 해당 청구에서 지정한 날까지 후일자로 하며 그 청구에 따라 해당 출원을 처리한다. 다만, 어떠한 출원도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 또는 동항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6개월보다 늦은 날까지 동항에 기초하여 후일자로 할 수 없다.
- (2) 출원서, 명세서(도면을 포함) 혹은 기타 관련 서류가 제15조에 기초하여 보정을 요구받은 경우, 청장의 지시가 있는 한 해당 출원서, 명세서 혹은 기타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요구가 준수된 날 또는 출원서, 명세서 혹은 기타 관련 서류가 반환된 때에는 해당 요구의 준수 후 그것을 다시 제출한 날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선발명이 있는 경우 청장의 권한)

- (1) 완전명세서의 클레임 중에 클레임된 범위에 있어서 발명이 제13조(1)(a) 또는 (2)에서의 방법에 따라 예측된 것이라고 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청장은 출원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다음과 같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a) 출원인이 자기의 완전명세서의 클레임 우선일이 관련 서류의 공개일 이전임을 청장이 납득하도록 분명히 하거나
 - (b) 출원인이 자기의 완전명세서를 청장이 납득하도록 보정하는 경우
- (2) 발명이 제13조(1)(b)에 말하는 어느 다른 완전명세서의 클레임 중에 클레임되고 있다고 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청장은 이하에 포함되는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다른 명세서에 대한 언급을 해당 출원인의 완전명세서 중에 공중에 대한 고시의 형식으로 삽입해야 함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a) 출원인이 자기의 클레임의 우선일이 다른 명세서의 클레임의 우선일 이전임을 청장이 납

득하도록 분명히 하는 경우

(b) 완전명세서를 청장이 납득하도록 보정하는 경우

(3) 제13조에 기초한 조사 또는 그 외의 결과

(a) 출원인의 완전명세서의 클레임 중에 클레임된 발명이, 제13조(1)(a)에서 말하는 어떠한 다른 완전명세서에서 클레임되고 있는 경우

(b) 해당 다른 완전명세서가 해당 출원인의 클레임 우선일 이후에 공개된 것을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인의 클레임의 우선일이 해당 명세서의 클레임의 우선일 이전인 것을 청장이 납득하도록 분명히 하지 않는 한, (2)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출원인의 완전명세서의 제출일 이후에 공개된 명세서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당 명세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4) [삭제]

제19조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청장의 권한)

(1) 동법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사의 결과,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이 어느 다른 특허의 클레임을 침해하는 실질적인 위험을 범하지 않고 실시할 수 없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청장은 해당 다른 특허에 대한 언급을 해당 출원인의 완전명세서 중에 공중에 대한 고시의 형식으로 삽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출원인이 해당 다른 특허의 클레임의 유효성을 다투는 적절한 이유가 있음을 청장이 납득하도록 분명히 하는 경우

(b) 해당 완전명세서를 청장이 납득하도록 보정하는 경우

(2) 해당 다른 특허에 대한 언급이 (1)에 기초한 지시에 따라 완전명세서에 삽입된 후에 다음의 사항이 있는 경우, 청장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다른 특허에 대한 언급을 삭제할 수 있다.

(a) 해당 다른 특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는 경우

(b) 해당 다른 특허의 명세서가 관련 클레임의 삭제에 의해 보정되는 경우

(c) 해당 다른 특허의 관련된 클레임이 무효 또는 해당 출원인의 발명의 어떠한 실시에도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또는 청장에 대한 절차에서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출원인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발표하는 청장 권한)

(1) 특허부여 전에는 언제라도 소정의 방법에 따르는 청구가 있는 경우, 특허출원인 혹은 특허출원인 중 1인에 의한 서면에 의한 이전 혹은 계약에 의해서 또는 법률의 적용에 의해서 해당 청구인이 특허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특허 혹은 그것에 대한 출원인의 권리 또는 해당 특허 혹은 해당 권리의 불가분의 지분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청장이 납득한

때에는 청장은 동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청구인의 명의 또는 경우에 따라 모든 청구인 및 해당 출원인 혹은 다른 1 혹은 2 이상의 공동 출원인의 명의로 출원을 처리해야 할 뜻을 지시할 수 있다.

- (2) 위의 지시는 특허에 대해서 다른 공동출원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공동 출원인 중 한 명에 의해 이루어진 이전 또는 계약에 따라서 발해서는 아니 된다.
- (3) 위의 지시는 발명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어떠한 이전 또는 계약에 의해서 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a) 해당 발명이 그 중 특허출원번호를 인용함에 따라 특정되고
 - (b) 이전 또는 계약을 한 사람에게 의해서 해당 이전 또는 계약이 해당 출원에 관한 발명이라는 취지의 확인서가 청장에게 제출되고
 - (c) 해당 발명에 관한 청구인의 권리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 (d) 청장이 출원 처리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5)에 기초해 출원을 처리해야 할 방법을 규제하기 위해 지시를 하는 경우
- (4) 2 이상의 공동출원인 중 한 명이 특허권 부여 전에 사망한 경우, 그 1 또는 2 이상의 유족에 의해 고인 대신 청구가 이루어지고, 고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청장은 해당 출원을 해당 유족만의 명의로 처리해야 할 취지를 지시할 수 있다.
- (5) 출원 절차를 밟을지 여부 또는 어떤 방법으로 출원 절차를 밟을지에 대해서 공동 특허출원인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경우, 청장은 어느 당사자로부터 소정의 방법에 의한 신청에 있고, 모든 당사자에게 청문을 받을 기회를 준 후에 당사자의 1 또는 2 이상의 명의로 출원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해당 출원을 수행해야 할 방법을 규제하기 위하여 또는 경우에 따라 쌍방의 목적을 위하여 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1조 (출원을 특허부여 상태로 하는 기간)

- (1)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청장이 출원서, 완전명세서 또는 그와 기타 관련 서류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통지를 출원인에게 송부한 날로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출원인이 해당 출원에 대하여 완전명세서와 관련된 사항인지 혹은 그 외의 사항인지를 불문하고 동법에 의해 또는 동법에 기초하여 출원인에게 부과된 모든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이것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2) (1)에 기초한 소정의 기간의 만료 시에,
 - (a) 고등법원에의 상소가 주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 (b) 추가 특허출원의 경우, 고등법원에의 상소가 해당 출원 혹은 주발명의 특허출원의 어느 하나에 대해 계속 중인 경우, 청장의 요건을 준수해야 할 기간에 대해서는 (1)에 기초한 소정의 기간 만료 전에 출원인이 한 신청에 기초하여 고등법원이 결정하는 날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3) (2)에서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하지 않는 동안은, 청장은 (1)에 규정된 소정의 기간을 자기가 결정하는 부가 기간의 만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상소가 앞의 부가 기간 내에 제기되고 고등법원이 청장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기간 연장을 허가했을 때에는, 해당 고등법원의 허가한 기간 내에 해당 요건을 준수할 수 있다.

제22조-제24조 삭제

제5A장 배타적 판매권 삭제

제24A조-제24F조 삭제

제5장 특허부여에 대한 이의 절차

제25조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 (1) 특허출원이 공개되었으나 특허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다음의 이유에 의해 특허부여에 대한 이의를 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a) 특허출원인 또는 그 전권리자가 해당 발명이나 그 일부를 이해관계인 또는 그 전권리자로부터 부정하게 지득한 경우
 - (b) 완전명세서의 클레임 중에 클레임되고 있는 발명이 해당 클레임의 우선일 전에 다음에 열거된 것에 의하여 공개된 경우
 - (i) 인도에서 1912년 1월 1일 이후에 진행된 특허출원에 대해 제출된 어느 명세서 중에, 또는
 - (ii) 인도 또는 그 외의 영역에 있는 어떤 다른 서류 중에 공개되어 있던 것. 다만, (ii)에 규정의 이유는 해당 공개가 제29조(2) 또는 (3)에 의해 발명의 선발명을 구성하지 않을 때에는 유효하지 아니하다.
 - (c) 완전명세서의 클레임 중에 클레임된 발명이 해당 출원인의 클레임의 우선일 이후에 공개된 완전명세서의 클레임 중에 클레임되고, 인도에서 특허출원에 대해 제출되어 그 클레임에 대해 우선일이 해당 출원인의 클레임의 우선일보다 앞인 경우
 - (d) 완전명세서의 클레임 중에 클레임된 발명이 해당 클레임의 우선일 전 인도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지거나 공공연하게 실시된 것
 - (e) 완전명세서의 클레임 중에 클레임된 발명이 (b)에서 말하듯이 공개된 사항 또는 출원인의 클레임 우선일 전에 인도에서 이루어진 실시에 비추어 자명하고, 명확하게 아무런 진보성을 포함하지 않은 것

- (f) 완전명세서의 클레임의 주제가 동법의 취지에서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거나 동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일 것
 - (g) 완전명세서에 발명 또는 그것을 실시하는 방법이 충분하고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것
 - (h) 출원인이 청장에게 제8조에 의해서 요구되는 정보를 개시하지 않거나 어떤 중요한 명세서 사항에 대해 자기가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
 - (i) 조약 출원의 경우, 출원인 또는 그 전권리자가 조약국에서 행한 최초의 발명보호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지 않았던 것
 - (j) 완전명세서가 해당 발명에 사용된 생물학적 재료의 출처 또는 지리적 원산지에 대하여 개시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고 있는 것
 - (k) 완전명세서의 클레임 중에 클레임된 발명이 인도 그 외의 지역사회 내에 있고 구두에 의한 것인지를, 그 외의 수단인지를 불문하고 입수 가능한 지식에 비추어 예측되는 것
다만, 위의 사항 이외의 이유에 의한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고, 청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문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청문하고 소정의 방법에 의해 소정의 기간 내에 소정의 진술을 처리하여야 한다.
- (2) 특허부여 후 특허부여의 공고일로부터 1년간의 만료 전에는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다음의 이유에 의해 소정의 방법으로 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즉,
- (a) 특허권자 또는 그 전권리자가 해당 발명 혹은 그 일부를 이해관계인 또는 전권리자로부터 부정하게 지득한 것
 - (b) 완전명세서의 클레임 중에 클레임되고 있는 발명이 해당 클레임의 우선일 전에
 - (i) 인도에서 1912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특허출원에 대해 제출된 어느 명세서 중에 또는
 - (ii) 인도 또는 그 외의 영역에서 어떠한 다른 서류 중에
 공개되고 있던 것
 다만, (ii)에 규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공개가 제29조(2) 또는 (3)에 의해 발명의 선발명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유효하지 않는다.
 - (c) 완전명세서의 클레임 중에 클레임된 발명이 해당 특허권자의 클레임의 우선일 이후에 공개된 완전명세서의 클레임 중에 클레임되어 있고 인도에 특허출원된 것이며, 그 클레임에 대한 우선일이 해당 특허권자의 클레임의 우선일보다 앞인 것
 - (d) 완전명세서의 클레임 중에 클레임된 발명이, 해당 클레임의 우선일 전 인도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지거나 공공연하게 실시된 것
 - (e) 완전명세서의 클레임 중에 클레임된 발명이 (b)에서처럼 공개된 사항 또는 해당 클레임의 우선일 전에 인도에서 이루어진 실시에 비추어보면 자명하고, 명확하게 아무런 진보성을 포함하지 않을 것

- (f) 완전명세서의 클레임의 주제가 동법의 취지에서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거나 동법에 기초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일 것
 - (g) 완전명세서에 발명 또는 그것을 실시하는 방법이 충분하고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을 것
 - (h) 특허권자가 청장에게 제8조에 의해서 요구된 정보를 개시하지 않거나 어떤 중요한 명세서 사항에 대해 자기가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
 - (i) 조약 출원에 의해 부여된 특허의 경우 특허권자 또는 그 전권리자가 조약국 또는 인도에서 행한 최초의 발명보호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던 것
 - (j) 완전명세서가 해당 발명에 사용된 생물학적 재료의 출처 또는 지리적 원산지에 대하여 개시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고 있는 것
 - (k) 완전명세서의 클레임 중에 클레임된 발명이 인도 그 외의 지역사회 내에서 구두에 의한 것인지를 그 외인지를 불문하고 입수 가능한 지식에 비추어 예측된 것
- 다만, 상기 이외의 이유에 의한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3) (a) 해당 이의신청이 (2)에 기초해 적법하게 된 때에는 청장은 특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b) 해당 이의신청의 수령 시에 청장은 서면에 의한 명령에 의해 청장이 결정하는 간부 직원으로 구성된 이의부라 칭하는 부(部)를 편성하여 심사 및 청장에게 동 부의 권고를 제출하기 위하여 관계서류와 함께 해당 이의신청을 동 부에 회부한다.
 - (c) (b)에 기초해 편성된 각 이의부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 (4) 이의부의 권고의 수령 시, 특허권자 및 이의신청인에게 청문을 받을 기회를 준 후, 청장은 특허의 유지, 보정 또는 취소 중 어느 하나라고 하여야 하는 취지를 명령한다.
 - (5) (2)(d) 또는 (e)에서의 이유와 관련되는 (4)에 기초한 명령을 내리는 동안, 청장은 어떤 사적 서류 또는 비밀 테스트나 비밀 사용도 일절 참작해서는 아니된다.
 - (6) 청장이 (4)에 기초하여 특허에 대해 명세서 또는 다른 서류를 보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취지의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특허는 보정되어야 한다.

제26조 (「지득(知得)」의 경우에 청장은 특허를 이의신청인의 특허로 취급 가능)

- (1) 동법에 기초한 어떤 이의 절차에서도,
 - (a) 청장이 완전명세서의 클레임 중에 클레임된 발명이 제25조(2)(a) 규정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인으로부터 지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이유에 의해 해당 특허를 취소할 때에는, 청장은 소정의 방법으로 행해진 해당 이의신청인의 청구에 근거하여 해당 특허를 해당 이의신청인의 명의로 보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지시할 수 있다.
 - (b) 청장이 완전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가 이의신청인으로부터 그와 같이 지득되었다고 판단한 때에는, 청장은 발명의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 해당 명세서를 보정하도록 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 (2) 이의신청인이 (1)(b)에 말하는 완전명세서의 보정을 요구하는 청장의 명령일 전에 자기로부터 지득하였다고 주장되는 발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실시하고 해당 출원이 실제로 계속 중인 경우, 청장은 그 자로부터 지득되었다고 인정되는 발명에 관련되는 한 해당 출원서 및 명세서에 대하여 완전명세서의 클레임의 우선일과 관련된 동법의 적용상 대응하는 해당 서류가 앞의 출원인에 의해서 제출된 날 또는 제출된 것으로 보는 날에 제출된 것으로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목적에서는 이의신청인의 출원은 동법에 기초한 특허출원으로 취급된다.

제27조 이의신청 없는 특허의 거절 [삭제]

제28조 (특허증에의 발명자의 게재)

- (1) 동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가 있는 경우, 청장이
- (a) 해당 청구에 관련된 자 또는 해당 청구를 한 자가 특허출원과 관련된 발명 또는 해당 발명의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발명자일 것, 및
 - (b) 해당 특허출원은 그 자가 해당 발명자인 것의 직접적인 결과일 것에 대해 납득한 때에는, 청장은 동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자를 해당 출원에 대해 교부된 특허증, 완전명세서 및 특허등록부에 발명자로서 게재시킨다.
- 다만, 몇 명을 동조에 기초한 발명자로서 게재하는 것은 특허에 기초한 어떤 권리도 부여하지 않고 훼손하지 아니한다.
- (2) 몇 명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발명자로서 게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에 대해서는, 소정의 방법에 의해 특허출원인 또는 (발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출원인 또는 출원인 중 1이 아닌 경우는) 해당 출원인 및 그 자가 할 수 있다.
- (3) 누군가 ((2)에 기초한 해당 출원에 대해 행하여진 청구와 관련된 자 이외의 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발명자로서 게재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자는 그 건에 대해 소정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 (4) 동조의 상기 각 규정에 근거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특허부여 전에 하여야 한다.
- (5) [삭제]
- (6) 청구가 (3)에 의하여 된 때에는, 청장은 각 특허출원인(청구인이 아닌 자) 및 그 외 청장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다. 또 청장은 (2) 또는 (3)에 의하여 이루어진 청구에 관한 결정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청구와 관련된 자 또는 그것을 청구한 자 및 (3)에 근거한 청구의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의 통지를 받은 자를 청문하여야 한다.

- (7) 누구든지 동조에 의해서 발명자로서 기재된 경우, 그 자에 대해서 그렇게 기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주장하는 다른 누구든지 언제라도 그 취지의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청장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몇 명에 대해서도 필요한 때에는 청문한 후에 해당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그러한 때에는 청장은 명세서 및 등록부를 그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

제6장 선발명

제29조 (선공개에 의한 선발명)

- (1) 완전명세서 중에 클레임된 발명에 대해서는 해당 발명이 인도에서 된 특허출원으로 1912년 1월 1일 전의 일자를 가진 것에 대하여 제출된 명세서에 의하여 공개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측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이하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완전명세서 중에 클레임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자 또는 출원인이 다음의 사항을 증명한 때에는 해당 발명이 해당 명세서의 관계 클레임의 우선 일 전에 공개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측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a) 공개된 사항이 특허권자 혹은 출원인 또는 (이러한 자 자신이 최초의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전권원자(前權原者)로부터 취득되고 그 자 또는 그 전권원자(前權原者)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공개된 것 및
- (b) 특허권자 혹은 출원인 또는 그 전권원자(前權原者)가 특허출원일 전 또는 조약 출원의 경우 조약국에서의 보호출원일 전에 해당 공개의 사실을 안 경우에, 해당 출원 또는 경우에 따라 해당 조약국에서의 출원이 그 후 적절하게 실시가능한 정도로 신속하게 이루어졌을 것 다만, 동항은 적절한 시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특허권자, 출원인 혹은 그 전권원자(前權原者)에 의하거나 특허권자, 출원인 혹은 그 전권원자(前權原者)의 동의를 받은 그 밖의 자에 의하여 해당 클레임의 우선일 전에 인도에서 업으로 실시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완전명세서가 최초의 진정한 발명자 또는 그 자로부터 권원을 취득한 자에 의해서 된 특허출원에 대해서 제출된 때에는, 해당 명세서 중에 클레임된 발명에 대해서는 동일 발명에 관한 어느 다른 특허출원으로 그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행해진 것이 있는 것만을 이유로 또는 해당 다른 출원일 후에 해당 발명이 그 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해당 다른 출원에 관한 출원인에 의해서 또는 해당 출원인에 의한 발명의 어떤 공개의 결과로서 어느 다른 사람에게 의하여 실시 혹은 공개된 것만을 이유로서는 예측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0조 (정부에의 선(先) 전달에 의한 선발명)

완전명세서 중에 클레임된 발명에 대해서는 해당 발명 혹은 그 가치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 혹은 정부에 의해 위임된 자에게 해당 발명을 전달한 것만을 이유로 하거나 해당 전달의 결과로 조사 목적을 위해 행해진 어떤 사항만을 이유로는 예측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1조 (공공의 전시 등에 의한 선발명)

완전명세서 중에 클레임된 발명에 대해서는 다음의 이유만으로는 예측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a) 중앙정부가 관보 고시에 의하여 동조의 규정이 미치는 것으로 한 산업박람회 혹은 그 외 박람회에서 최초의 진정한 발명자 혹은 그 자로부터 권원을 취득한 자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해당 발명의 전시 또는 그 개최 장소에서 해당 박람회를 목적으로 그 자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그 실시,
- (b) 전기 박람회에서 해당 발명의 전시 또는 실시의 결과로서의 해당 발명의 설명의 공개
- (c) 해당 발명이 해당 박람회에서 전시 혹은 실시된 후 및 해당 박람회의 기간 중에 최초의 진정한 발명자 또는 그 자로부터 권원을 취득한 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누구든지 행하는 해당 발명의 실시, 또는
- (d) 최초의 진정한 발명자가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기재되거나 그 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학회의 회보에 공표한 해당 발명의 설명

다만, 위의 사항은 해당 특허출원이 최초의 진정한 발명자 또는 그 자로부터 권원을 취득한 자에 의해서 해당 박람회의 개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논문의 발표 혹은 공표 후 12개월 이내에 된 경우에 한한다.

제32조 (공공의 실시에 의한 선발명)

완전명세서 중에 클레임된 발명에 대해서는 해당 명세서의 관계 클레임의 우선일 전 1년 이내에 해당 발명이 다음의 자에 의해서 인도에서 공공연하게 실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예측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a) 특허권자 혹은 출원인 또는 그 전권원자(前權原者), 또는
 - (b) 특허권자 혹은 출원인 또는 그 전권원자(前權原者)로부터의 동의를 얻은 다른 사람
- 다만, 해당 실시가 적절한 시험 목적을 위해서만 행해졌고, 해당 목적의 실시가 공공연하게 되어야 함이 해당 발명의 내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33조 (가명세서 후 실시 및 공개에 의한 선발명)

- (1) 완전명세서가 가명세서를 첨부한 출원에 대해 제출 혹은 처리되거나 출원과 함께 제출된 완전명세서가 제9조(3)에 근거하는 지시에 의해 가명세서로서 취급될 때에는 동법의 어떤 규정

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해당 가명세서 또는 가명세서로서 전술한 바와 같이 취급되는 명세서에 기재된 어떠한 사항도 해당 명세서 제출일 후에 인도에서 실시되거나 인도 혹은 그 외의 영역에서 공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의 부여를 거절하거나 특허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없다.

- (2) 완전명세서가 조약 출원에 대해 제출된 때에는, 동법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해당 조약 출원의 기초가 된 조약국에서의 보호출원에 개시된 어떠한 사항이 해당 보호출원일 후에 언제든지 인도에서 실시되거나 인도 혹은 그 외의 영역에서 공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의 부여를 거절하거나 특허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없다.

제34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상황만의 경우에 인정되지 않는 선발명)
동법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제29조, 제30조, 제31조 또는 제32조에 의해 명세서 중에 클레임된 발명의 선발명을 구성하지 않는 어떠한 상황만을 이유로서는 특허의 부여를 거절하거나 특허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없다.

제7장 발명의 비밀유지규정

제35조 (국방 목적에 관한 발명에 대한 비밀유지 지시)

- (1) 동법의 시행 전후를 불문하고 된 특허출원에 대해서 청장은 발명이 중앙정부로부터 국방 목적에 관한 것으로서 자기에 통지된 부류에 속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 또는 해당 발명이 그러한 목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발명에 관한 정보의 공개 또는 해당 정보의 전달을 금지 혹은 제한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 (2) 청장은 (1)에서의 지시를 한 때에는, 중앙정부에 해당 출원 및 지시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또 중앙정부는 해당 통지의 수령에 의해 해당 발명의 공개가 인도의 국방에 유해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 해당 발명의 공개가 유해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 청장은 해당 지시를 취소하고 출원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3) (1)의 규정을 해치지 아니하고, 청장이 (1)에 기초한 지시를 하지 않은 발명이 국방목적에 관한 것이라고 중앙정부에서 인정한 때에는, 중앙정부는 특허의 부여 전에 언제라도 그 취지를 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동항의 규정은 해당 발명이 중앙정부로부터 통지된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적용되고, 그에 따라 청장은 자기가 한 지시에 대해 중앙정부에 통지한다.

제36조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비밀유지 지시)

- (1) 제35조에 근거한 지시와 관련되는 발명이 계속해서 국방목적에 관한 것인지에 대하여 6개월마다 또는 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중앙정부가 재검토하여야 하고, 해당 재검토에 의해 중앙정부가 해당 발명의 공개가 인도의 국방에 유해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외국 출원인에 의한 출원의 경우에 해당 발명이 인도 이외에서 공개되었다고 판명된 때에는 중앙정부는 즉시 지시를 취소하도록 청장에게 통지하고 청장은 그에 따라 자기가 이전에 한 지시를 취소하여야 한다.
- (2) (1)에 근거한 각 재검토 결과는 소정의 방법에 의해 소정의 기간 내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비밀유지 지시의 결과)

- (1) 제35조에 근거하는 지시가 출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한,
 - (a) 청장은 특허부여를 거절하는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 (b) 동법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의 명령에 대해서 어떠한 심판 청구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출원 절차는 지시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특허부여의 단계까지는 수행할 수 있지만, 특허부여를 위해 정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출원 및 명세서는 공개되지 않고 해당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부여도 되지 아니한다.
- (2) 제35조에 근거한 지시와 관련된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에 대해 제출된 완전명세서가 해당 지시의 효력존속기간 중에 특허부여를 위해 정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a) 해당 지시의 효력 존속기간 중에 해당 발명의 실시가 정부에 의해서 혹은 정부의 대리로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발명에 대해서 특허가 부여된 것으로서 해당 실시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 (b) 특허출원인이 해당 지시의 효력존속을 이유로 궁박상태에 있다고 중앙정부에서 인정할 때에는, 중앙정부는 해당 발명의 신규성, 유용성 및 그 계획된 목적과 그 밖의 관련 상황을 감안하여 중앙정부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있는 경우)을 위자료로 해당 출원인에게 지급 요청할 수 있다.
- (3) 제35조에 근거한 지시와 관련된 출원에 대해서 특허가 부여된 때에는, 그러한 지시의 효력이 존속한 어떠한 기간에 대해서도 갱신수수료의 납부를 일절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8조 (비밀유지 지시의 취소 및 기간의 연장)

청장이 제35조에 근거한 지시를 취소한 때에는, 특허출원에 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할 기간을 정하는 동법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부과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있는 경우)에 따라 해당 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출원에 관하여 동법에 의하거나 이에 기초하여 행할 것을 요구받거나 인정된 사항을 행하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 (거주자에 대한 사전 허가 없는 인도 국외에서의 특허출원 금지)

- (1) 인도에 거주하는 누구든지, 소정의 방법에 의해 신청하고 청장에 의해 또는 청장의 대리에 의하여 교부된 허가서의 권한에 의한 것 외에는, 발명에 대해 인도 국외에서 특허부여의 출원을 하거나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a) 동일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인도 국외에서 출원 6주 이상 전에 인도에서 이루어진 경우, 및
 - (b) 인도에서의 출원에 관해서 제35조(1)에 따른 지시가 없거나 해당 지시가 모두 취소된 경우
- (2) 청장은 소정의 기간 내에 각 해당 출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발명이 국방목적 또는 원자력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청장은 중앙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동조는 보호를 구하는 출원이 인도 국외 거주자에 의하여 인도 이외의 국가에서 최초로 출원된 발명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0조 (제35조 또는 제39조 위반의 책임)

제20장의 규정을 해치는 일 없이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해 제35조에 근거하여 청장이 행한 비밀유지에 관한 지시를 위반한 때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인도 국외에서 특허부여의 출원을 하거나 출원하게 한 때에는, 동법에 근거하는 특허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보고 부여된 특허(있는 경우)는 제64조에 근거해서 취소된 것으로 한다.

제41조 (청장 및 중앙정부 명령의 종국성)

비밀유지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청장의 모든 명령 및 이 장에 근거하는 중앙정부의 모든 명령은 종국적인 것이고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어느 법원에서도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2조 (중앙정부에의 공개에 관한 예외)

동법의 어떤 규정도 이 장에 근거하여 명령을 내릴지 여부 또는 그러한 명령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출원서 혹은 명세서를 심사하게 할 목적으로 특허출원 또는 그것에 대하여 제출된 명세서에 관한 정보의 청장에 의한 중앙정부로의 공개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장 특허부여 및 그에 의해 부여될 권리

제43조 (특허부여)

- (1) 특허출원이 특허부여를 위해 정비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 (a) 출원에 대해서 청장이 동법에 따라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거절하지 않았거나,
 - (b) 출원이 동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발견되지 않았는지,
 의 어느 하나인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출원인 또는 공동 출원의 경우는 공동 출원인에 대해서 해당 특허청의 공인을 한 특허증이 부여되고 특허부여일이 등록부에 기록된다.
- (2) 특허부여 시, 청장은 해당 특허가 부여된 사실을 공고하고 출원서, 명세서 및 그것에 관한 다른 서류를 공중의 열람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44조 (사망한 출원인에게 교부한 특허증의 정정)

청장은 동법에 근거하는 출원에 대해 특허증이 교부된 후 언제라도, 그 특허증의 교부 전에 특허가 부여된 자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또는 법인의 경우 소멸하고 있었음을 납득한 때에는, 그 자의 명칭을 특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자의 명칭으로 변경함으로써 특허증을 정정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특허증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효력을 항상 가진 것으로 본다.

제45조 (특허증의 일자)

- (1) 동법의 다른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각 특허증은 특허출원의 제출일을 그 일자로 하여야 한다.
- (2) 각 특허증의 일자는 등록부에 기록한다.
- (3) 동조의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원 공개일 전에 범해진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소송 또는 그 외의 절차도 제기하거나 소추할 수 없다.

제46조 (특허증의 양식, 범위 및 효력)

- (1) 각 특허증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 인도의 전 영역에 걸쳐 효력을 가진다.
- (2) 특허는 1 발명마다 부여한다. 다만, 누구도 소송 또는 그 밖의 절차에서 2 이상의 발명에 대해서 특허가 부여된 것을 이유로 그 특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7조 (일정한 조건에 따르는 특허부여)

동법에 기초한 특허의 부여는 다음의 조건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1) 특허부여의 대상인 기계, 기구 혹은 그 외의 물품 또는 특허부여의 대상인 방법의 사용에 의해서 제조된 물품은 정부에 의해 혹은 그 대리인에 의해 오직 자기 사용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제조할 수 있다.

- (2) 특허부여의 대상인 방법은 정부 또는 그 대리로서 오직 자기 사용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3) 특허부여의 대상인 기계, 기구 혹은 그 외의 물품 또는 특허부여의 대상인 방법의 사용에 의해서 제조된 물품은 누구든지 연수생의 교육활동을 포함한 이나 연구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특허부여의 대상인 방법은 누구든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 (4) 의약품에 관한 특허의 경우,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로지 자기 사용의 목적으로 또는 정부에 의해서 혹은 그 대리로서 유지되고 있는 약국, 병원 혹은 그 외의 의료 기관 또는 다른 약국, 병원 혹은 의료기관으로서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고려하여 본건에 대해 관보 고시로 지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배포할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수입할 수 있다.

제48조 (특허권자의 권리)

동법의 다른 규정 및 제47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동법에 근거해 부여된 특허는 특허권자에게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 (a) 특허의 주제가 제품인 경우, 그 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3자가 인도에서 해당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의 신청,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배타권
- (b) 특허의 주제가 방법인 경우, 그 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3자가 인도에서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및 인도에서 그 방법에 의해 직접 얻은 제품을 사용, 판매 신청, 판매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배타권

제49조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인도에 들어가는 외국선박 등에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 여부)

- (1) 외국에서 등록된 선박 혹은 항공기 또는 통상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육상차량이 인도(그 영해를 포함)에 일시적 혹은 우발적으로 들어간 때에 한하여, 발명에 대한 특허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다음과 같이 해당 발명의 실시에 의해서는 침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a) 선상에서, 그리고 그 현실의 필요를 위한 해당 발명이 실시되는 한, 선체 또는 기계, 선구, 장치 혹은 그 외의 부속품에 있어서 해당 발명의 실시 또는 경우에 따라,
 - (b) 항공기 혹은 육상 차량의 구조 혹은 조작 또는 그 부속품에 있어서 해당 발명의 실시
- (2) 동조에 대해서는 인도에 통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선박, 항공기 또는 육상 차량으로 외국 의 항내 혹은 영해 내, 그 밖에 해당 외국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동안 발명의 실시에 관해서 동등한 권리를 자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부여하지 않는 해당 외국에 통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선박, 항공기 또는 육상 차량에 대해서는 동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 (특허 공유자의 권리)

- (1) 2 이상의 자에게 특허가 부여된 경우, 별도의 유효한 합의가 없는 한, 이들 각자는 특허에 있

어서 균등하고 불가분의 지분을 가진다.

- (2) 동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2 이상의 자가 특허의 피부여자 또는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유효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자 각자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제48조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권원을 가진다.
- (3) 동조 및 제51조의 규정과 현재 효력을 가지는 합의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2 이상의 자가 특허의 피부여자 또는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을 때에는, 공유자 각자는 다른 사람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에 라이선스를 허락하거나 해당 특허의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 (4) 특허의 피부여자 또는 소유자로서 등록된 2 이상의 자 중 1인이 특허물품을 판매한 때에는 그 구입자 또는 그 자를 통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해당 물품이 단일의 특허권자에 의해서 판매된 것으로 해당 물품을 취급할 수 있다.
- (5) 동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동산의 소유권 및 계승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의 원칙은 특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또는 (2)의 어떠한 규정도 수탁자 사이 혹은 고인의 법정대리인 사이에 있어서의 상호 권리의무 또는 그러한 자로서의 권리의무에 대해서 일절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6) 동조의 어떠한 규정도 동법 시행 전에 설정된 특허의 부분적 이해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에 대해서 일절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1조 (공유자에게 지시하는 청장 권한)

- (1) 2 이상의 자가 특허의 피부여자 또는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들 중 누군가에 의해서 청장에게 소정의 방법으로 신청을 한 때에는, 청장은 해당 신청에 따라 특허 혹은 그에 대한 어떠한 권리의 매각 혹은 임대, 특허에 기초한 라이선스의 허락 또는 그에 관한 제50조에 기초한 어떠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서 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 (2) 특허의 피부여자 또는 소유자로서 등록된 사람 중 누구든지 동조에 근거하는 지시의 실시를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증서를 작성하거나 어떠한 다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등록된 다른 자로부터 그렇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에 의한 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실행하는 것을 게을리 했을 때에는, 청장은 해당 다른 사람이 청장에게 소정의 방법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해태자의 명의로, 그 대리로서 해당 증서를 작성하거나 해당 행위를 하는 권한을 누군가에게 부여하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 (3) 동조에 기초한 신청에 대해 지시를 내리기 전에 청장은 다음의 자에게 청문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 (a) (1)에 기초한 신청의 경우, 특허의 피부여자 또는 소유자로서 등록된 다른 1 또는 2 이상

의 자

(b) (2)에 기초한 신청의 경우, 해당 해태자

- (4) 동조에 기초한 어떠한 지지도 수탁자 사이 혹은 고인의 법정대리인 사이의 상호 권리의무 또는 그러한 자로서의 권리의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거나 특허의 피부여자 혹은 소유자로서 등록된 자 사이의 계약 조건에 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52조 (사기로 타인이 특허를 취득했을 경우의 최초의 진정한 발명자에게의 특허부여)

- (1) 특허에 대해서 해당 특허가 부정하게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취득되었다는 이유에 의해 제64조에 근거하여 취소된 경우 또는 취소의 청구에서 심판부 또는 법원이 해당 특허를 취소하는 대신, 클레임에 포함되는 발명이 신청인으로부터 지득한 것임을 인정한 결과로서 해당 클레임의 삭제에 의해 완전명세서를 보정하여야 하는 취지를 지시한 때에는, 심판부 또는 법원은 동일 소송에서 발하는 명령으로써, 심판부 또는 법원이 특허권자에 의해서 부정하게 지득 되었다고 인정한 발명의 전부 혹은 일부 또는 보정에 의해서 삭제되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삭제되는 해당 특허를 대신하여 해당 신청인에 대한 부여를 허가할 수 있다.
- (2) 위의 어떠한 명령이 내려진 경우, 청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방법에 의한 청구에 의해
- (i) 심판부 또는 법원이 특허의 전부를 부여할 것을 허가한 경우, 삭제된 특허와 동일한 일자 및 번호를 가지는 새로운 특허를
 - (ii) 심판부 또는 법원이 특허의 일부만을 부여할 것을 허가한 때에는, 삭제된 특허와 동일한 일자 및 소정의 방법에 따르는 번호를 가지는 새로운 특허로 해당 부분과 관련되는 것을 그 사람에게 부여한다.
- 다만, 청장은 그러한 특허부여의 조건으로 해당 특허를 부여해야 할 발명의 해당 부분을 청장이 납득하도록 기재하고, 청구하는 새로운 완전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취지를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 (3) 동조에 근거해 부여된 특허에 대하여 해당 특허가 실제로 부여된 날 전에 범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송도 일절 제기할 수 없다.

제53조 (특허 존속기간)

- (1) 동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2002년 특허(개정)법 시행 후에 부여된 각 특허의 존속기간 및 해당 시행일에 동법에 의하여 만료되지 않았거나 효력을 잃지 않은 각 특허의 존속기간은 특허의 출원일로부터 20년간으로 한다.
- (2) 특허는 동조 또는 동법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갱신수수료가 소정의 기간 내 또는 소정의 연장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을 때에는 갱신수수료의 납부와 관련되는 소정의 기간의 만료시에 효력을 잃는다.

(3) [삭제]

- (4) 실제로 유효한 다른 법률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갱신수수료의 불납에 의한 특허의 실효 또는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 시에는 상기 특허에 포함되는 주제는 일절 보호받을 수 없다.

제9장 추가 특허

제54조 (추가 특허)

- (1) 동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특허출원을 위해서 제출된 완전명세서에 기재 혹은 개시된 발명(동법에서는 이하 ‘주발명’이라고 함)의 개량 또는 변경에 관한 특허출원이 되고, 그 출원인이 또 해당 주발명의 특허출원을 하거나 그와 관련된 특허권자인 경우, 해당 출원인이 그 취지를 청구할 때에는 청장은 해당 개량 또는 변경에 대한 특허를 추가 특허로서 부여할 수 있다.
- (2) 동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발명의 개량 또는 변경인 발명이 독립된 특허의 대상이며 해당 발명의 특허권자가 주발명의 특허권자인 경우, 해당 특허권자가 그 취지를 청구할 때에는 청장은 명령으로 해당 개량 또는 변경과 관련된 특허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특허와 동일한 일자를 가지는 해당 개량 또는 변경과 관련된 추가 특허를 해당 특허권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 (3) 특허는 추가 특허로서는 그 출원일이 주발명에 관한 출원일과 같은 날 또는 그 후가 아닌 한, 부여되지 않는다.
- (4) 추가 특허증은 주발명의 특허증의 교부 전에는 부여되지 아니한다.

제55조 (추가 특허의 존속기간)

- (1) 추가 특허는 주발명에 관한 특허의 존속기간 또는 그 잔존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부여되고, 해당 기간 중 및 해당 주발명에 관한 특허의 실효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주발명에 관한 특허가 동법에 근거하여 취소된 때에는, 법원 또는 경우에 따라 청장은 소정의 방법에 의해 특허권자로부터의 청구가 있을 때, 추가 특허는 주발명의 특허 존속기간 중 잔존기간에 대하여 독립 특허가 되는 취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에 따라 해당 특허는 독립 특허로서 유효하게 존속한다.
- (2) 추가 특허에 대해서는 갱신수수료의 납부는 일절 필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가 특허가 (1)에 근거하여 독립 특허가 된 때에는, 이후에 대해서는, 해당 추가 특허가 처음부터 독립 특허로서 부여된 것과 같은 수수료를 같은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 (추가 특허의 효력)

- (1) 완전명세서에서 클레임된 발명이 다음의 어떠한 공개 또는 실시에 비추어 진보성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가 특허의 부여에 대해서 거절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추가 특허로 부여된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되지 아니한다.
 - (a) 추가 특허에 관한 완전명세서에 기재된 주발명 또는
 - (b) 주발명의 특허에 대한 추가 특허 또는 해당 추가 특허의 출원에 관한 완전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주발명의 개량 또는 변경
 또한 추가 특허의 효력에 대해서는 발명을 독립 특허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에 의해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 (2) 의의(疑義)를 불식하기 위해서 추가 특허의 출원에 대해 제출된 완전명세서에 대해 클레임된 발명의 신규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발명을 기재한 완전명세서 또한 참작하여야 함을 동항에 의해서 선언한다.

제10장 특허출원서 및 명세서의 보정**제57조 (청장에 대한 특허출원서 및 명세서의 보정 또는 관련 자료)**

- (1) 제59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청장은 동조에 근거한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로 부터의 소정의 방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으로 특허출원서 혹은 완전명세서 또는 이들과 관련되는 다른 서류를 정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허침해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특허취소절차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때에는,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개시가 해당 정정신청서의 제출 전후를 불문하고, 동조에 근거하는 특허출원서 혹은 명세서 또는 그와 관련된 다른 서류의 정정신청을 허가하거나 거절하는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동조에 근거하는 특허출원서 혹은 완전명세서 또는 그와 관련된 서류의 각 정정허가신청서에는 그 제안된 정정의 내용을 명시하고 해당 신청 이유의 충분한 명세를 기재하여야 한다.
- (3) 동조에 근거하는 특허출원서 혹은 완전명세서 또는 그와 관련된 서류에 관해서 특허부여 후에 된 정정허가신청 및 제안된 정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고할 수 있다.
- (4) (3)에 근거하는 신청의 공고가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그 공고 후 소정의 기간 내에 그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청장에게 할 수 있다. 위의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청장은 동조에 근거한 청구를 한 사람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사람 및 이의신청인에게 사건의 결정 전에 청문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 (5) 동조에 근거한 완전명세서의 정정에 대해서는 클레임의 우선일의 정정을 하는 것 또는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 (6) 동조의 규정은 특허부여 전에 내려진 청장의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자기의 명세서 또는 그것에 관한 서류를 정정하는 특허출원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

제58조 (심판부 또는 고등법원에 대한 명세서의 정정)

- (1) 특허의 취소소송이 심판부 또는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심판부 또는 경우에 따라 고등법원은 제59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특허권자에 대해서 심판부 또는 고등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해, 또한 비용, 공고 및 그 외의 조건에 따라 그 사람의 완전명세서를 정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으며, 특허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판부 또는 고등법원이 특허무효의 결정을 하는 경우 심판부 또는 고등법원은 특허를 취소하는 대신 동조에 근거해 해당 명세서의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
- (2) 심판부 또는 고등법원에 동조에 근거한 명령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은 그 취지를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청장은 출두하여 청문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한편, 심판부 또는 고등법원이 지시하는 경우 출두하여야 한다.
- (3) 특허권자에 대해서 명세서의 정정을 허가하는 심판부 또는 고등법원의 모든 명령서의 사본에 대해서는 심판부 또는 고등법원이 청장에게 이것을 송달하고 청장은 그것의 수령에 의해 등록부에 그 취지의 기록 및 그에 관한 언급을 하게 한다.

제59조 (특허출원서 또는 명세서의 정정에 관한 보칙)

- (1) 특허출원서나 완전명세서 또는 그와 관련된 서류의 보정에 대해서는 권리의 부분 포기, 정정 혹은 해명 외의 방법에 의해 정정을 해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정정은 사실의 삽입 이외의 목적에서는 모두 인정받지 못한다. 또 완전명세서의 어떠한 정정에 대해서도 그 효과로서 정정 후의 명세서가 정정 전의 명세서에 있어 실질적으로 개시하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은 사항을 클레임하거나 기재하게 될 때 또는 정정 후의 명세서의 클레임이 정정 전의 명세서의 클레임의 범위 내에 완전하게 포함되지 않을 때에는 일절 허가되지 않는다.
- (2) 특허부여일 후에 청장 또는 경우에 따라서 심판부 혹은 고등법원이 해당 명세서 또는 그와 관련된 다른 서류의 어떠한 정정을 인정한 경우에는,
 - (a) 해당 정정은 모든 목적으로 해당 명세서 및 그와 관련된 다른 서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 (b) 해당 명세서 또는 그와 관련된 다른 서류가 정정된 사실은 신속하게 공고하고,
 - (c)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정정청구의 권리에 대해서는 사기를 이유로 하는 것 외에는 의문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 (3) 정정된 명세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최초로 수리된 명세서를 참조할 수 있다.

제11장 실효한 특허의 회복

제60조 (실효한 특허의 회복 신청)

- (1) 특허가 제53조에 근거한 소정의 기간 내 또는 제142조(4)에 근거하여 허가된 기간 내에 어떠한 갱신수수료의 납부도 없었다는 이유에 의해서 실효한 경우에는,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의 법정대리인 및 해당 특허가 2 이상의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장의 허가를 얻어 다른 공유권리자와 함께 하지 않고 공유자 중 1 또는 2 이상의 사람이 해당 특허의 실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특허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 (2) [삭제]
- (3) 동조에 근거한 특허의 회복 신청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 상황에 대한 충분히 기재하고, 소정의 방법으로 증명된 진술을 포함하여야 하고, 청장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 (실효한 특허의 회복 신청의 처분에 관한 절차)

- (1) 회복신청인이 희망하거나 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신청인을 청문한 후, 해당 갱신수수료의 불납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및 해당 신청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부당한 지체도 없었다는 점을 청장이 납득했을 때에는, 청장은 소정의 방법으로 해당 신청을 공고하여야 한다. 또, 소정의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다음의 이유 중 하나 또는 모두를 근거로 해당 신청에 대한 이의를 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다. 즉,
 - (a) 해당 갱신수수료의 불납이 고의인 점, 또는
 - (b) 해당 신청을 하는 데에 부당한 지체가 있었던 점
- (2) 전기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청장은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건을 결정하기 전에 그 사람 및 이의신청인에 대해서 청문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전기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었을 때 또는 이의신청이 있을 때, 청장의 결정이 신청인에게 유리한 것일 때에는, 청장은 불납된 갱신수수료 및 소정의 추가 수수료의 납부에 의해, 해당 특허 및 신청서에서 지정된 추가특허로서 해당 특허의 소멸과 함께 실효한 것을 회복하여야 한다.
- (4) 청장은 특허를 회복하는 조건으로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법의 규정에 근거해 등록부에 기록해야 할 어떠한 서류 또는 사항으로 미등록된 것을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2조 (회복한 실효특허와 관련된 특허권자의 권리)

- (1) 특허가 회복되었을 때에는, 특허권자의 권리는 소정의 규정 및 그 외의 규정으로 특허가 실효한 날과 이 장에 근거하는 특허회복신청의 공고일 사이에 해당 특허 발명의 실시를 개시하였거나 이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계약 혹은 그 외의 방법으로 명확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보호하거나 그 사람에게 보상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 (2) 특허가 실효된 날과 특허회복신청의 공고일 사이에 행해진 특허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송 혹은 그 외의 절차도 일절 제기하거나 소추할 수 없다.

제12장 특허의 포기 및 취소

제63조 (특허의 포기)

- (1) 특허권자는 청장에게 소정의 방법에 의한 신청에 의해 언제라도 자기의 특허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 해당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청장은 소정의 방법에 의해 해당 신청을 공고하고, 해당 특허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등록부에 명칭이 기재되고 있는 특허권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3)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해당 공고 후 소정의 기간 내에 해당 포기에 대한 이의를 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청장은 특허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4) 청장은 원하는 경우 특허권자 및 이의신청인을 청문한 후에 해당 특허가 정당하게 포기할 수 있다고 납득했을 때에는 해당 신청을 수리하고 명령에 의해서 해당 특허를 취소한다.

제64조 (특허의 취소)

- (1) 동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의 부여가 동법 시행 전후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인 혹은 중앙정부의 제기에 근거해 심판부가 또는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의 반소에 근거해 고등법원이, 다음에 열거된 이유에 의해서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 즉,
- (a) 완전명세서의 클레임 중에 클레임 되고 있는 발명이 인도에서 부여된 다른 특허의 완전명세서에 포함된 앞선 우선일을 가지는 유효한 클레임 중에 기재되어 있었던 경우
- (b) 특허가 동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출원할 권원이 없는 사람에 의한 출원에 근거하여 부여된 경우
- (c) 특허가 신청인 또는 전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정하게 취득된 것인 경우
- (d) 완전명세서의 어떠한 클레임의 주제가 동법의 취지에 해당하는 발명이 아닌 경우
- (e) 완전명세서의 클레임 중에 클레임 되어 있는 발명이 해당 클레임의 우선일 전에 인도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지거나 공공연하게 실시되고 있었던 것 또는 인도 혹은 그 외의 영역에서 제13조에 말하는 몇 가지 서류에 공개되어 있던 것을 감안하여 신규하지 않는 경우
- (f) 완전명세서의 클레임 중에 클레임 되고 있는 발명이 해당 클레임의 우선일 전에 인도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지거나 공공연하게 실시되고 있던 것 또는 인도 혹은 그 외의 영역에서

공개되고 있던 것을 감안하여 자명하거나 진보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 (g) 완전명세서의 클레임 중에 클레임 되고 있는 발명이 유용하지 않은 경우
 - (h) 완전명세서가 발명 및 그것을 실시해야 할 방법을 충분하고 명료하게 기재하고 있지 않는 것. 즉, 완전명세서에 있어서 발명 실시 방법의 기재 또는 그 지시가 그 자체로 인도에서 해당 발명에 관한 기술 분야에서 숙련되고 그 평균적 지식을 가지는 사람에게 해당 발명을 실시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것 또는 완전명세서가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져 있고 그 보호를 청구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발명의 실시방법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i) 완전명세서의 클레임의 범위가 충분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것 또는 완전명세서의 클레임이 해당 명세서에 개시된 사항에 명료하게 근거하지 않은 경우
 - (j) 특허가 허위의 착상 또는 표현에 근거해 취득된 경우
 - (k) 완전명세서의 클레임의 주제가 동법에 근거한 특허성이 결여된 경우
 - (l) 완전명세서의 클레임 중에 클레임 되고 있는 발명이 해당 클레임의 우선일 전에, (3)에서 말하는 것 외에, 인도에서 비밀로 실시되고 있던 것
 - (m) 특허출원인이 청장에게 제8조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를 개시하지 않았거나 어떠한 중요한 명세서에 있어서 그 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
 - (n) 특허출원인이 제35조에 따라 내려진 비밀유지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제39조를 위반하여 인도 외에서 특허부여 출원을 하거나 하게 한 것
 - (o) 제57조 또는 제58조에 근거한 완전명세서의 정정 허가를 사기에 의하여 취득한 것
 - (p) 완전명세서가 발명에 사용되는 생물학적 재료의 출처 또는 지리적 원산지를 개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하고 있는 것
 - (q) 완전명세서의 클레임 중에 클레임되고 있는 한 발명이 인도 또는 그 외의 영역에 있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입수 가능한 구두 그 외의 지식에 비추어 예측된 것
- (2) (1)(e) 및 (f)의 적용상,
- (a) 사적 서류 또는 비밀의 사용(試用) 혹은 비밀의 실시에 대해서는 이를 일절 참작하지 않으며,
 - (b) 특허가 방법과 관련되거나 기재 혹은 클레임된 방법에 의해 제조된 제품과 관련되는 경우, 해당 방법에 따라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을 인도로 수입하는 것은 해당 수입이 단지 적절한 시험 또는 실험의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일에 해당 발명이 인도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지거나 공공연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3) (1)(l)의 적용상, 다음에 열거된 발명의 실시에 대해서는 일절 참작하지 않는다.
- (a) 오직 적절한 시험 또는 실험 목적을 위한 것,
 - (b) 특허출원인 또는 그 전권원자(前權原者)가 정부, 정부의 인가를 받은 사람, 또는 정부계 기업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발명을 전달 또는 개시한 결과로서 정부, 정부의 인가를

- 받은 사람 또는 정부계 기업에 의한, 또는
- (c) 특허출원인 또는 그 전권원자(前權原者)가 발명을 전달 또는 개시한 결과 발생하는, 그 외의 사람에 의한 발명의 실시이며, 특허출원인 또는 그 전권원자의 동의 혹은 묵인을 얻지 않은 것
- (4) (1)의 규정을 해치지 않고, 특허권자가 제99조의 취지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건부로 중앙정부의 목적을 위해서 특허발명을 제조, 사용 또는 이용하는 것의 중앙정부의 요청에 대하여 적절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것을 고등법원이 납득할 때에는, 고등법원은 중앙정부의 청구에 의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 (5) 동조에 근거한 특허의 취소청구의 통지는 등록부의 기록으로부터 특허권자라고 인정되는 사람 및 해당 특허에 대한 지분 혹은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람에게 송달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의 사람에게는 통지를 송달할 필요가 없다.

제65조 (원자력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한 특허의 취소 또는 완전명세서의 정정)

- (1) 특허에 대하여 1962년 원자력법(1962년 33호) 제20조(1)에 근거해 일절 특허로 할 수 없는 원자력에 관한 발명에 관한 것임을 특허부여 후 언제든지 중앙정부가 납득한 때에는, 중앙정부는 해당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를 청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그것에 근거해 청장은 그 취지를 특허권자 및 등록부에 해당 특허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그 명칭이 등록되어 있는 그 외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청문 받을 기회를 준 후에, 해당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 (2) (1)에 근거한 절차에 대하여, 청장은 해당 특허를 취소하는 대신, 청장이 필요로 하는 방법에 의해 완전명세서를 정정하는 것을 특허권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제66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허의 취소)

특허 또는 특허를 행사하는 양태가 국가에 있어서 유해하거나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중앙정부가 인정한 경우, 중앙정부는 특허권자에 대해서 청문 받을 기회를 준 후에, 관보에 그 취지의 선언을 고시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해당 특허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3장 특허 등록부

제67조 (특허 등록부 및 이에 기재해야 할 내용)

- (1) 특허청에 특허 등록부를 갖추고, 여기에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a) 특허 피부여자의 명칭 및 주소
- (b) 특허의 이전, 연장 및 취소에 대한 고지 및

- (c) 특허의 효력 또는 그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소정의 사항의 명세
- (2) 신탁의 신고에 대해서는, 명시적,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지를 불문하고, 등록부에 등록해서는 아니되고, 청장은 해당 신고에 의해서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 (3) 중앙 정부의 감독 및 지도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특허등록부는 청장의 관리 하에 놓여진다.
- (4) (1)의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안전보호조치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청장이 특허 등록부 또는 그 일부를 컴퓨터용 플로피 디스크, 디스켓 또는 다른 전자 형식으로 보관하는 것은 적법하다.
- (5) 1872년 인도 증거법(1872년 1호)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 또는 동 건에 대해 청장에 의해 적법하게 수권된 간부 직원의 수중에 있는 정보(正本)으로 증명된 특허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모든 법적 절차에 있어서 증거로 채택된다.
- (6) 등록부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컴퓨터용 플로피 디스크, 디스켓 또는 다른 전자 형식으로 보관되어 있는 경우,
- (a) 동법에 있어서 등록부에의 기입이란, 컴퓨터용 플로피 디스크, 디스켓 또는 다른 전자 형식으로 보관되고 있는 명세의 기록을 말하는 것을 포함하고, 등록부 또는 등록부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b) 동법에 있어서 명세가 등록되거나 기입되어 있다는 것은, 컴퓨터용 플로피 디스크, 디스켓 또는 다른 전자 형식으로의 등록부 또는 등록부의 일부를 포함한 명세의 기록을 보관이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또
- (c) 동법에 있어서 등록부의 경정이라는 것은, 컴퓨터용 플로피 디스크, 디스켓 또는 다른 전자 형식으로 보관되고 등록부 또는 등록부의 일부를 구성하는 명세 기록의 경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제68조 (서면으로 적법하게 체결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전 등)

특허 혹은 그 지분에 대한 이전, 양도저당권, 라이선스 또는 그 외 특허에 대한 어떠한 권리의 설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서면에 의한 것이고, 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가 그러한 사람의 권리의무를 규제하는 모든 조건을 기재한 서류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적법하게 체결되어 있지 않은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69조 (양도, 이전 등의 등록)

- (1) 누구든지 양도, 이전 혹은 법의 적용에 의해서 특허 혹은 특허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양도저당권자, 실시권자 혹은 그 외의 특허에 대해 어떠한 다른 권리를 취득했을 때에는, 그 자는 청장에게 자신의 권원 또는 경우에 따라 권리의 통지를 등록부에 등록해야 할 취지를 소정의 방법에 의해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2) (1)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양도에 의해 특허 혹은 특허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양도저당권, 라이선스 혹은 그 외의 증서에 의해 특허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 의한 권원 등록의 신청에 대해서는 이전인, 양도저당권 설정자, 라이선서 또는 경우에 따라 해당 증서의 상대방 당사자가 소정의 방법에 의해 이것을 할 수 있다.
- (3) 누군가의 권원 등록 신청이 동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경우, 청장은 청장이 납득하는 권원의 증거에 근거로,
- (a) 그 자가 특허 또는 특허 지분의 취득 권원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특허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서 등록부에 등록하고 해당 증서의 명세 혹은 권원 취득의 원인이 된 명세도 기입하여야 하고,
- (b) 그 자가 특허에 대해 기타 어떠한 권리의 취득의 권원이 있을 때에는, 그 자의 권리의 통지에 대해서 그것을 설정하는 증서의 명세(있는 경우)와 함께 기입하여야 한다.
- 다만, 이전, 양도저당권, 라이선스, 이전, 법의 적용 혹은 그 외 어떠한 거래에 의해 그 자에게 특허 또는 특허의 지분 혹은 권리가 유효하게 부여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에는, 청장은 해당 당사자의 권리가 관할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할 때까지 (a) 또는 경우에 따라 (b)에 근거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 (4) 특허 또는 그것에 기초를 두는 어떠한 라이선스에 대한 권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계약서, 라이선스 허락서 및 그 외의 서류에 대해 소정의 방법에 의한 인증 등본 및 주제에 관해 규정된 것이 있는 그 외의 서류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특허청의 보관을 위해서 소정의 방법으로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특허에 근거해 허락된 라이선스의 경우에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장은, 법원의 명령에 근거한 것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라이선스의 조건을 개시하지 않는 것을 보증하는 조치를 취한다.
- (5) (1)에 근거하는 신청 또는 등록부 경정의 신청 외의 목적으로, (3)에 근거하여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았던 서류에 대해서는 청장 또는 법원은 이것을 누군가의 특허 또는 그 지분 혹은 권리와 관련되는 권원의 증거라고 인정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청장 또는 법원이 서면에 의해 기록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특별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 (등록된 피부여자 또는 소유자의 특허를 처분하는 권한)

특허의 공유권에 관한 동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등록부에 통지의 등록이 있는 그 외의 자에게 귀속할 권리에 따르는 것 역시 조건으로서, 특허의 피부여자 또는 소유자로서 등록된 1 또는 2 이상의 사람은 특허를 이전하고, 특허에 근거하는 라이선스를 허락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이것을 처분하고, 해당 이전, 라이선스, 그 외의 처분의 대가에 대한 유효한 영수증을 발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특허에 관한 형평법상의 권리는 다른 어떠한 동산과 같게 집행할 수 있다.

제71조 (심판부에 의한 등록부의 경정)

- (1) 심판부는 다음에 열거된 것에 의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등록부의 기재에 대해 자기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등록, 변경 또는 삭제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a) 어떤 기재의 등록부로부터의 결여 혹은 탈루
 - (b) 충분한 이유 없이 등록부에 기재된 사항
 - (c) 등록부에 부정하게 잔존하고 있는 어떤 기재, 또는
 - (d) 등록부에 된 기재에 있어서의 오기 혹은 하자
- (2) 동조에 근거하는 절차에 있어서, 심판부는 등록부의 경정에 관련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 또는 편의라고 인정하는 어떠한 의문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 (3) 동조에 근거하는 심판부로의 어떠한 신청의 통지에 대해서는 청장에게도 소정의 방법으로 이것을 하여야 하며, 청장은 해당 신청에 관해서 출두해 청문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심판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출두하여야 한다.
- (4) 동조에 근거하는 심판부의 등록부 경정에 대한 어떤 명령에 대해서도, 해당 경정 통지를 소정의 방법으로 청장에게 송달할 것을 지시하고, 청장은 해당 통지의 수령에 의해 등록부를 그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

제72조 (열람에 제공할 등록부)

- (1) 동법의 규정 및 그에 근거하여 제정된 어떠한 규칙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등록부는 모든 편리한 시간에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고, 등록부의 어떠한 기재에 관해서 특허청의 공인을 날인한 인증 등본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요구하는 누구에 대해서도 소정의 수수료의 납부가 있었던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한다.
- (2) 등록부는 동법에 의해 또는 동법에 근거해 그것에 기재하는 것을 필요로 하거나 인정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일응의 증거로 한다.
- (3) 명세의 기록이 컴퓨터용 플로피 디스크, 디스켓 또는 다른 전자 형식으로 보관되고 있는 경우에, 공중이 해당 컴퓨터용 플로피 디스크, 디스켓 또는 다른 전자 형식에 액세스하거나 해당 명세 기록의 출력을 열람할 수 있을 때에는 (1) 및 (2)는 준수된 것으로 본다.

제14장 특허청 및 그 설치**제73조 (청장 및 그 외의 간부 직원)**

- (1) 1999년 상표법(1999년 47호) 제3조(1)에 근거해 임명된 특허디자인상표 청장은 동법의 적용상 특허 청장으로 한다.

- (2) 동법의 적용상, 중앙정부는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인원수의 심사관 및 그 외의 간부 직원을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직명을 붙여 임명할 수 있다.
- (3) 동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2)에 근거해 임명된 간부 직원은 청장의 감독지휘 하에 청장이 수시로 서면에 의한 일반 또는 특별한 명령에 의해 이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동법에 근거하는 청장의 직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4) (3)의 일반규정을 해하는 일 없이, 청장은 서면에 의한 명령에 의해, 그것에 기재한 이유에 의해 (2)에 근거해 임명된 간부 직원의 계속 중인 어떠한 사항을 철회하고, 해당 사항을 청장 자신이 처음부터 또는 철회한 단계로부터 처리하거나, 그것을 (2)에 근거해 임명되는 다른 간부 직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간부 직원은 위탁명령서에 기재된 특별 지시에 따라 해당 사항을 처음부터 또는 위탁 단계로부터 처분할 수 있다.

제74조 (특허청 및 지청)

- (1) 동법의 적용상 특허청이라고 칭하는 관청을 설치한다.
- (2) 중앙정부는 관보 고시에 의해 특허청의 명칭을 지정한다.
- (3) 특허청의 본청은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장소에 두고, 특허 등록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장소에 특허청의 지청을 둘 수 있다.
- (4) 특허청에는 그 공인을 갖춘다.

제75조 (특허의 권리 또는 이해에 관한 특허청 직원에 대한 제한)

특허청의 전체 간부 직원 및 일반직원은, 그 임명 기간 중에는,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청이 부여한 특허에 관한 어떤 권리 혹은 이해도 직접적인지 또는 간접적인지를 불문하고 취득 또는 입수할 수 없다.

제76조 (간부 직원 및 일반 직원에 의한 정보 등의 제공 금지)

특허청의 간부 직원 또는 일반 직원은, 동법에 의하거나 또는 중앙정부 혹은 심판부 혹은 청장의 서면에 의한 지시에 근거하거나, 법원의 명령에 의해 필요하거나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것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a) 동법에 근거하여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b) 동법에 근거하여 특허청에 제출이 필요하거나 허가된 서류의 작성 또는 그 작성을 보조하는 것, 또는
- (c) 특허청에 보관되어 있는 기록을 조사하는 것

제15장 청장의 권한 일반

제77조 (민사 법원의 일정한 권한을 가지는 청장)

- (1) 본건에 대해 제정된 어떠한 규칙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청장은 동법에 근거해 청장에게 귀속된 어떠한 절차에 있어서도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1908년 민사소송법(1908년 법률 제5호)에 근거하는 소송을 심리하는 민사 법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a) 누군가를 소환하고 출석을 강제하며, 그 자를 선서 후 심문하는 것
 - (b) 서류의 개시 및 제출을 요구하는 것
 - (c) 선서 진술서의 형식으로의 증거를 수령하는 것
 - (d) 증인 심문 또는 서류 심사의 촉탁서를 발급하는 것
 - (e) 비용액을 재정하는 것
 - (f) 소정의 기간 내에 소정의 방법으로 된 신청에 의하여 자기의 결정을 심사하는 것
 - (g) 소정의 기간 내에 소정의 방법으로 된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에 내려진 명령을 파기하는 것
 - (h) 그 외 소정의 사항을 하는 것
- (2) 청장이 (1)에 근거하여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재정한 비용액에 대한 명령은 민사 법원의 명령으로서 집행할 수 있다.

제78조 (오기 등을 정정하는 청장 권한)

- (1) 출원서 혹은 완전명세서 또는 거기에 관계되는 다른 서류의 정정에 관한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을 해치는 일 없이, 또한 제4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청장은 특허증, 해당 출원에 대해 제출된 명세서 혹은 그 외의 서류 혹은 출원서에 있는 오기 또는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있어서의 오기에 대해서 이것을 동조의 규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 (2) 동조에 따르는 정정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이해관계인의 서면에 의한 청구에 의해서 또는 이러한 청구 없이 할 수 있다.
- (3) 청장이 동조에 근거하는 청구 외의 이유로 앞의 정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권자 또는 경우에 따라 특허출원인 및 그 외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통지하고 해당 정정을 하기 전에 청문을 받을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아니 된다.
- (4) 특허증 또는 특허출원 또는 해당 출원에 대해 제출된 어떠한 서류에 있어서 오기의 정정 청구가 동조에 근거해 이루어졌고, 해당 정정이 해당 청구와 관련한 서류의 의미 또는 범위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며,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 사람에 대한 통지 없이 정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청장은 해당 제안된 정정의 내용에 대한 통지를 소정의 방법에 의해 공고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령하여야 한다.

(5) 전기 공고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청장에 대해서 해당 청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청장은 해당 청구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자 및 이의신청인에 대해서 사건을 결정하기 전에 청문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9조 (입증 방법 및 그에 관한 청장 권한)

본건에 대해 제정된 규칙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청장이 계속하는 동법에 근거한 어떠한 절차에 있어서는 청장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증거의 제출에 대해서는 선서 진술서에 의한다. 다만, 청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장은 선서 진술서에 의한 증거 대신에 혹은 그에 더하여 구두 증거를 채택하거나 다른 당사자에게도 그 자의 선서 진술서의 내용에 관해서 반대 심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80조 (청장에 의한 재량권의 행사)

동법에 근거하여 절차 당사자를 청장이 청문해야 할 취지 또는 해당 당사자에 대해서 청문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할 취지를 정한 동법의 규정을 해치는 일 없이, 청장은 어떠한 특허출원인 또는 명세서 정정의 신청인(소정의 기간 내에 청구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해서 동법에 따라 또는 그에 기초를 두고 부여된 청장의 어떠한 재량권을 그 자에게 불리하게 행사하기 전에 청문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청문을 희망하는 당사자는 해당 절차에 대해 지정된 기한의 만료 전 적어도 10일 전에 청장에 대해서 해당 청문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제81조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청장에 의한 처분)

동법의 규정 또는 동법에 근거해 제정된 규칙에 근거하여 청장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때에는, 동법의 어떤 규정도 해당 기간 연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하는 것 또는 그 자를 청문해야 한다는 것을 청장에 대해서 명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또 해당 기간 연장을 인정하는 청장의 명령에 대해서도 불복 신청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장 특허의 실시, 강제라이선스 및 취소

제82조 ('특허물품' 및 '특허권자'의 정의)

이 장에서 문맥상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a) '특허물품'이란, 특허 방법에 의해 제조된 어떠한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 (b) '특허권자'란, 배타적 실시권자를 포함한다.

제83조 (특허 발명의 실시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

동법의 다른 규정을 해치는 일 없이, 이 장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다음의 일반 원칙을 참작해야 한다.

- (a) 특허는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 및 해당 발명이 인도에서 상업적 규모로, 부당한 지연 없이 적절하게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실시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부여되는 것인 것
- (b) 특허는 특허권자에게 특허물품의 수입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여되는 것이 아닌 것
- (c) 특허권의 보호 및 집행은 기술 혁신의 추진, 기술의 이전 및 보급, 기술적 지식에 대한, 사회적 및 경제적 복지에 이바지하는 방법에 의한 생산자 및 사용자의 상호 이득 및 권리 의무의 균형에 공헌하는 것
- (d) 부여된 특허는 공중의 위생 및 영양물 섭취의 보호를 저해하지 않고, 특히 인도의 사회·경제적 및 기술적 발전에 따라 지극히 중요한 분야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 (e) 부여된 특허는 중앙정부가 공중위생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일절 금지하지 않을 것
- (f) 특허권은 특허권자 또는 그 자로부터 특허의 권원 또는 이해를 얻은 자가 이것을 남용하지 않고, 특허권자 또는 그 자로부터 특허의 권원 또는 이해를 얻은 자는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하거나 기술의 국제적 이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관행에 의지하지 않을 것
- (g) 특허는 특허 발명의 혜택을 적정하게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여되는 것인 것

제84조 (강제 라이선스)

- (1) 특허부여 일로부터 3년의 기간 만료 후에는,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다음의 어떠한 이유에 의해 강제 라이선스의 허락을 구하는 신청을 청장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즉,
 - (a) 특허 발명에 관한 공중의 적절한 수요가 충족되지 않은 것
 - (b) 특허 발명이 적정하게 공중이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것
 - (c) 특허 발명이 인도 영역 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
- (2) 동조에 근거한 신청은 이미 해당 특허에 근거한 라이선스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 특허 발명에 관한 공중의 적절한 수요가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것 또는 특허 발명이 인도 영역 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 또는 특허 발명이 적정하게 적당한 가격으로 공중이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것을 누구든지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인지 혹은 그 외인지를 불문하고, 그 자에 의한 승인의 의사 표시를 이유로 또는 관련된 라이선스를 수락한 것을 이유로 이것을 금지할 수 없다.

- (3) (1)에 근거하는 각 신청서는 신청인의 이해관계의 내용, 소정의 상세 사항 및 해당 신청의 기 초인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 (4) 특허 발명에 관한 공중의 적절한 수요가 충족되지 않은 것 또는 특허 발명이 인도 영역 내에 서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 또는 특허 발명이 적절하게 공중에 있어서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것 을 청장이 납득한 때에는, 자기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허락할 수 있다.
- (5) 청장은 라이선스를 허락해야 한다는 취지를 지시할 때에는, 그에 따라 제88조 규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6) 동조에 근거해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i) 해당 발명의 내용, 특허증 날인일로부터 경과한 기간 및 해당 특허권자 또는 어느 실시권 자가 해당 발명의 완전 이용을 위해서 이미 취한 조치
 - (ii) 해당 발명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신청인의 능력
 - (iii) 해당 신청이 인용된 경우, 해당 신청인의 자본 제공 및 해당 발명 실시에 따른 위험을 부 담하는 능력
 - (iv) 출원인이 적절한 조건으로 특허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여부 및 해당 노력이 청장이 적절하다고 보는 기간 내에 성공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사항
다만, 본호는 국가적 긴급사태 혹은 다른 초긴급 상황의 경우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 혹은 특허권자에 의해 채용된 반경쟁적 관행의 이유의 입증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만, 청장은 해당 신청 후에 생기는 사항에 대해서 참작할 필요가 없다.
- (7) 본장의 적용상,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공중의 적절한 수요는 충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 (a) 적절한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허락하는 것을 특허권자가 거절했다는 이유에 의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i) 인도에서 현존하는 상업 혹은 공업, 그 발전, 어떠한 새로운 상업 혹은 공업의 확립 또 는 인도에서 상업 또는 공업에 종사하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계층의 사람의 상업 혹 은 공업이 저해되는 경우
 - (ii) 특허물품의 수요가 충분한 정도까지 또는 적절한 조건으로 충족되지 않은 경우
 - (iii) 인도에서 제조된 특허물품의 수출 시장이 실제로 공급받고 있지 않거나 개발되지 않 은 경우 또는
 - (iv) 인도에서의 상업 활동의 확립 또는 발전이 저해되는 경우
 - (b) 해당 특허에 근거한 라이선스 허락에 대해 또는 특허물품 혹은 특허 방법의 구입, 임차 혹은 사용에 대해서 특허권자가 부과한 조건을 이유로 인도에 있어 특허에 의해서 보호되 지 않은 물건의 제조, 사용 혹은 판매 또는 어떠한 상업 혹은 공업의 확립 혹은 발전이 저해되는 경우

- (c) 특허권자가 배타적 그랜트백(Grantback),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신청의 억제 또는 강제적 포괄 라이선스 허락을 규정하기 위해 특허에 근거한 라이선스 허락에 대해서 조건을 부과한 경우
- (d) 특허 발명이 인도에서 상업 규모로 충분할 정도까지 실제로 실시되고 있지 않거나 적절하게 실행 가능한 극한까지 실제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 (e) 인도에서 상업 규모로의 특허 발명의 실시가 다음 사람에 의한 외국으로부터의 특허물품의 수입에 의해 실제로 억제 또는 저해되고 있는 경우. 즉,
 - (i) 특허권자 또는 그 자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한 자
 - (ii) 특허권자로부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구입한 자 또는
 - (iii) 그 외의 자로서 특허권자로부터 침해소송을 실제로 제기 받지 않았거나 제기된 적이 없는 자

제85조 (불실시에 대한 청장에 의한 특허의 취소)

- (1) 특허에 관해서 강제 라이선스가 허락되었을 때에는, 중앙정부 또는 이해관계인은 최초의 강제 라이선스 허락 명령일로부터 2년의 기간 만료 후에는 특허 발명이 인도 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 또는 특허 발명에 관한 공중의 적절한 수요가 충족되지 않은 것 또는 해당 특허 발명이 적절히 적당한 가격으로 공중에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당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명령을 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2) (1)에 근거한 각 신청서에는 소정의 명세 및 해당 신청의 기초로 하고 있는 사실 및 중앙정부 이외에 의한 신청의 경우는 해당 신청인의 이해 내용도 기재해야 한다.
- (3) 청장은 특허 발명에 관한 공중의 적절한 수요가 충족되지 않은 것 또는 특허 발명이 인도에서 실시되지 않은 것 또는 해당 특허 발명이 적절히 적당한 가격으로 공중에 의해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납득할 때에는, 해당 특허를 취소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4) (1)에 근거한 각 신청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청장에게 제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을 내린다.

제86조 (일정한 경우에 강제 라이선스 등의 신청을 연기하는 청장 권한)

- (1) 특허 발명이 인도 내에서 실시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또는 제84조(7)(d)에 기재된 이유에 의해, 제84조 또는 경우에 따라 제85조에 근거한 신청이 이루어지고, 특허증 날인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이 해당 발명을 상업 규모로 충분할 정도까지 실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또는 해당 발명을 적절히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실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불충분했던 것을 청장이 납득한 때에는, 청장은 해당 발명의 실시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며 총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까지 해당 신청에 대한 청문을 명령에 의해 연기할 수 있다. 다만, 특허 발

명이 해당 신청일 전에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실시할 수 없었던 이유가 주법 혹은 연방법 또는 그에 근거해 제정된 규칙 혹은 규제에 의하거나 인도 내에서 해당 발명의 실시에 대한 것인지 또는 특허물품의 처분 또는 특허 방법 혹은 특허 플랜트, 기계 혹은 장치의 사용에 의해서 제조된 물품의 처분에 대한 조건 외에 정부의 어떠한 명령에 의한 것에 대해 특허권자가 증명한 때에는, 동항에 근거해 명령된 연기 기간에 대해서 해당 법률, 규칙 혹은 규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해당 발명의 실시가 방해된 기간으로서 해당 신청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 만료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 (2) (1)에 근거한 규정에 의한 연기는 특허권자가 인도 내에서 상업적 규모이면서 충분한 정도까지의 해당 발명의 실시에 착수하기 위해 신속하고 충분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을 청장이 납득하지 않는 한 일절 명령하지 않는다.

제87조 (제84조 및 제85조에 의한 신청 처리 절차)

- (1) 청장이 제84조 또는 제85조에 근거하는 신청의 심사 시 명령을 발표하는 것에 대한 일응의 증거가 되는 사건이 입증되었던 것에 납득하는 경우, 청장은 신청서의 사본을 특허권자 및 등록부로부터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특허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그 외의 사람에게 송달해야 할 취지를 신청인에게 지시하고, 해당 신청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2) 특허권자 또는 그 외의 자로서 해당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혹은 청장이(소정의 기간 만료 전후를 불문하고 행해진) 신청에 근거해 허가하는 부가 기간 내에, 청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3) 이의신청서에는 해당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4) 적법하게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청장은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건을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 및 이의신청인에 대해서 청문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8조 (강제 라이선스 허락에 대한 청장 권한)

- (1) 청장이 제84조에 근거해서 된 신청에 근거해, 특허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 물건의 제조, 사용 또는 판매가 특허에 근거하는 라이선스의 허락 또는 특허물품 혹은 특허 방법의 구입, 임차 혹은 사용 시 특허권자가 부당한 조건을 이유로 저해되고 있는 것을 납득한 경우, 청장은 동조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신청인의 고객에 대해서도 해당 특허에 근거하는 라이선스를 허락해야 하는 취지를 특허권자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다.
- (2) 제84조에 근거한 신청이 실제로 특허에 근거한 라이선스의 소유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청장은, 청장이 신청인에게 라이선스를 허락해야 하는 취지의 명령을 내릴 때에는, 현존하는 라이선스를 취소해야 하는 취지 또는 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 대해서 라

이전스의 허락을 구하는 명령을 발표하는 대신 현존하는 라이선스를 변경해야 하는 취지를 명령할 수 있다.

- (3) 동일한 특허권자가 2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특허 중 있는 것에 대해서만 공중의 적절한 수요가 충족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강제 라이선스의 신청인이 증명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은 해당 특허권자가 보유하는 다른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해당 특허에 근거해 그 자에게 허락된 라이선스를 효율적 또는 충분히 행사할 수 없는 것을 청장이 납득한 때 및 그들 특허가 해당 다른 특허에 관해서 막대한 경제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수반할 때에는, 청장은 제84조에 근거해 허락된 라이선스와 관련되는 1 또는 2 이상의 특허를 해당 실시권자가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해당 다른 특허와 관련되는 라이선스도 허락해야 하는 취지를 명령에 의해 지시할 수 있다.
- (4) 청장이 라이선스의 조건을 재정했을 경우, 실시권자는 12개월 이상 상업적 규모로 발명을 실시한 후에는 언제라도, 재정된 조건이 당초의 예상보다 부담이 무거운 일 및 그 결과 실시권자가 해당 발명을 손실 없이는 실시할 수 없는 것을 이유로 청장에 대해서 해당 조건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신청은 1회에 한해 접수된다.

제89조 (강제 라이선스 허락의 일반 목적)

제84조에 근거한 신청에 대한 청장의 권한에 대해서는 다음의 일반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이것을 행사한다. 즉,

- (a) 특허 발명이 인도에서 상업적 규모로, 부당한 지연 없이 적절히 실행 가능한 극한까지 실시될 것
- (b) 특허의 보호 하에 현재 인도에서 특허 발명을 실시 또는 개발하고 있는 어느 사람의 이해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

제90조 (강제 라이선스의 조건)

- (1) 제84조에 근거한 라이선스의 조건의 재정에 있어서, 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i) 로열티 및 특허권자 또는 그 외의 자로 특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유보된 다른 대가(있는 경우)에 대해서 발명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발명의 창작 혹은 개발, 특허의 취득 및 그 유효 유지에 지출한 비용 및 그 외의 관련 요인에 비추어 적절할 것
 - (ii) 특허 발명이 그 라이선스가 허락된 당사자에 의해 극한까지, 그 자에게 적절한 이익을 수반하여 실시될 것
 - (iii) 특허물품이 적절히 적당한 가격으로 공중에 입수 가능하게 될 것
 - (iv) 허락되는 라이선스가 비배타적 라이선스일 것

- (v) 실시권자의 권리가 이전 불가능할 것
 - (vi) 라이선스의 기간이, 보다 짧은 기간이 공공의 이익에 합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의 잔존기간에 대응하고 있을 것
 - (vii) 라이선스가 인도 시장에 있어서의 공급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허락되고 있을 것 및 실시권자는 제84조(7)(a)(iii)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특허 제품을 수출할 수도 있을 것
 - (viii) 반도체 기술의 경우는 허락되는 라이선스가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을 위해 발명을 실시하는 것일 것
 - (ix) 허락되는 라이선스가 사법 또는 행정 절차 후 반경쟁적이라고 결정된 관행을 교정하는 것일 때에는, 실시권자는 필요한 때는 특허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허가될 것
- (2) 청장이 허락한 어떠한 라이선스도, 특허물품 또는 특허 방법에 의해서 제조된 물품 혹은 물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해당 인가가 없을 때에는 특허권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 그 수입을 실시권자에게 인가하는 것은 아니다.
- (3) (2)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라도 청장에 대해서 특허에 관련되는 실시권자에게 특허물품 또는 특허 방법에 따라 제조된 물품 혹은 물질의(특히 특허권자에게 지불을 필요로 하는 로열티 및 그 외의 대가(있는 경우), 수입량, 해당 수입된 물품의 판매 가격 및 수입 기간에 관해서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가 인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인가해야 하는 취지를 지시하고 청장은 그것에 근거해 해당 지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1조 (관련 특허의 라이선스 허락)

- (1) 이 장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증 날인 후에는 언제라도 특허권자 또는 배타적인지 비배타적인지를 불문하고 그 실시권자로서 다른 어떠한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지는 누구든지 최초로 언급한 특허에 근거하는 라이선스를 그 자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다른 발명을 효율적 혹은 가능한 한 유리하게 실시하는 것을 저해 혹은 방해되고 있는 것을 이유로 해당 라이선스의 허락을 청장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
- (2) (1)에 근거한 어떠한 명령도 다음의 사항에 청장이 납득하지 않는 한 일체 내려서는 아니 된다.
- (i) 신청인이 특허권자 및 그 실시권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들에 대해 적절한 조건으로 해당 다른 발명과 관련된 라이선스를 허락 혹은 허락의 알선을 할 수 있으며, 그 의사가 있을 것, 및
 - (ii) 해당 다른 특허 발명이 인도 영역에서의 상업적 혹은 공업적 활동의 확립 또는 발전에 막대한 공헌을 하고 있을 것
- (3) (1)에서의 조건이 신청인에 의해 증명되었다는 것에 청장이 납득했을 때에는, 청장은 자기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으로 최초로 언급한 특허에 근거한 라이선스를 허락해야 한다는 취

지의 명령 및 최초로 언급한 특허의 소유자 혹은 그 자의 실시권자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다른 특허에 근거한 라이선스를 허락해야 한다는 취지의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청장이 허락한 라이선스는 각각의 특허의 이전과 함께 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전할 수 없다.

- (4) 제87조,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대해서는 제84조에 근거해 허락된 라이선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동조에 근거해 허락된 라이선스에도 적용한다.

제92조 (중앙정부의 고시에 의한 강제 라이선스에 관한 특칙)

- (1) 국가적 긴급 상황 혹은 초긴급 상황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에 실제로 효력을 가지는 어떤 특허에 대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강제 라이선스를 그 특허증 날인 후에 언제라도 허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앙정부가 납득한 때에는, 중앙정부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고시가 있었을 때에는 다음 규정이 발효된다. 즉,

(i) 청장은, 어느 이해관계인에 의해서 전기 고시 후에 언제라도 신청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자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으로 해당 신청인에 대해 해당 특허에 근거한 라이선스를 허락한다.

(ii) 동조에 근거해 허락되는 라이선스의 조건 설정에 있어서는 청장은 해당 특허에 근거해 제조된 물품에 대해서 보유하는 특허권으로부터 특허권자가 적절한 이익을 얻는 것에 모순되지 않는 최저가격으로 공중이 입수 가능해지는 것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제83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대해서는, 제84조에 근거한 라이선스 허락에 관해서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동조에 근거한 라이선스 허락에 관해서도 적용한다.

- (3) (2)의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1)(i)에서 말하는 신청의 심사에 있어서 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인간면역결핍, 결핵, 말라리아 또는 기타 유행병에 관하여 공중위생 위기를 포함하여 발생 또는 경우에 따라서 발생이 요청된다.

(i) 국가적 긴급 상황에서

(ii) 초긴급 상황에서 또는

(iii)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납득한 경우, 청장은 동조에 근거한 라이선스 허락의 해당 신청에 관해서 제87조에 규정된 절차를 일절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장은 신속하게 제87조의 적용 제외의 신청에 관련된 특허에 대해서 특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2A조 (일정한 예외 상황 하에서 특허 의약품의 수출에 대한 강제 라이선스)

- (1) 공중위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제품의 의약품 업계에서 제조능력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제조능력이 일절 없는 국가용 특허 의약품의 제조 및 수출에 대한 강제 라이선스는 이용 가

능하다. 다만, 해당 국가가 강제 라이선스를 허락하고 있는지 또는 해당 국가가 고시 그 밖에 의해 인도로부터의 해당 특허 의약품 수입을 허가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2) 청장은, 소정의 방법에 의한 신청을 수령했을 경우, 자기가 규정하고 공고한 조건에 근거하여 오로지 관련 의약품의 제조 및 수출만을 위한 강제 라이선스를 허락한다.
- (3) (1) 및 (2)의 규정은 강제 라이선스에 근거해 제조된 의약품이 동법의 다른 규정에 근거해 수출할 수 있는 범위를 해치지 않는다.

제93조 (라이선스가 당사자 사이에 증서로서의 효력을 가져야 하는 명령)

이 장에 근거한 라이선스 허락에 대한 어떠한 명령도 특허권자 및 청장에 의해 재정된 조건(있는 경우)을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다른 모든 당사자에 의해 체결된 라이선스 허락증서인 것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94조 (강제 라이선스의 종료)

- (1) 특허권자 또는 그 외 특허의 권원 혹은 이해를 얻은 자에 의한 신청에 의해, 제84조에 근거해 허락된 강제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그 부여에 이른 상황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해당 상황이 재발할 우려가 없을 때에는, 청장은 이것을 종료시킬 수 있다. 다만, 강제 라이선스의 소유자는 해당 종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 (2) (1)에 근거하는 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청장은 먼저 해당 라이선스를 허락받고 있던 자의 이해가 부당하게 손상되지 않음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95조-제98조 [삭제]

제17장 정부 목적을 위한 발명의 사용 및 중앙정부에 의한 발명의 취득

제99조 (정부 목적으로의 발명 사용의 의의)

- (1) 본장의 적용상, 발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주정부 또는 정부계 기업의 목적을 위해 제조, 사용, 이용 또는 판매될 때에는 정부 목적을 위한 사용이다.
- (2) [삭제]
- (3) 본장의 어떠한 규정에 대해서도, 제47조에 규정된 1 또는 2 이상의 조건에 따라 할 수 있는 어떠한 기계, 장치 혹은 그 외의 물품의 수입, 제조 혹은 사용, 어떠한 방법의 사용, 또는 어떠한 의약품의 수입, 사용, 혹은 배포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00조 (정부 목적으로 발명을 사용하는 중앙정부의 권한)

- (1) 동법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후 또는 특허가 부여된 후 언제라도 중앙정부 및 정부로부터 서면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는 본장의 규정에 따라 정부 목적을 위해서 해당 발명을 사용할 수 있다.
- (2) 완전명세서의 관계 클레임의 우선일 전에, 정부 혹은 정부계 기업에 의해 또는 그 대리에 의해 적법하게 서류에 기재되거나 시험 혹은 테스트된 경우, 이것이 특허권자 또는 그 전권원자(前權原者)에 의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해당 발명에 대한 전달의 결과가 아닐 경우 중앙정부 또는 정부 목적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서면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는 특허권자에게 로열티 또는 그 외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해당 발명을 사용할 수 있다.
- (3) 발명이 전기대로 기재 또는 테스트 혹은 시험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특허부여 후 또는 전기의 어떠한 전달의 결과 언제라도 중앙정부 또는 (1)에 근거하여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에 의한 발명의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용 전후 중 어느 하나에, 중앙정부 혹은 (1)에 근거하여 인가를 받은 자와 특허권자 간에 합의된 조건 또는 그 합의가 없을 때에는 제103조에 근거한 회부에 의해 고등법원이 결정한 조건에 따른다. 다만, 특허의 해당 사용의 경우, 특허권자는 해당 특허 사용의 경제적 가치를 참작하여 각 사례의 상황에서 적절한 대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불받는다.
- (4) 발명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인가는 특허부여의 전후를 불문하고 해당 인가의 대상인 행위의 전후를 불문하고 동조에 근거하여 할 수 있고, 그 인가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그 자가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에 의해 해당 발명을 제조, 사용, 이용 혹은 판매하는 것 또는 해당 특허에 포함된 기계, 장치, 그 외의 물품 혹은 의약품을 수입하는 것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위임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부여할 수 있다.
- (5) 발명이 동조에 근거하여 정부 목적을 위해 중앙정부에 의해서 혹은 그 권한에 의해서 사용되었을 때에는, 국가적 긴급사태 혹은 초긴급 상황의 경우 또는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정부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당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며, 해당 발명의 사용의 범위에 관해서 수시로 그 자가 합리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해당 발명이 정부계 기업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을 때에는 중앙정부는 동조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해당 정부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 (6) (1)에 근거하는 정부 목적을 위해서 발명을 제조, 사용, 이용, 및 판매할 권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제조된 상품을 비상업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것처럼 판매된 상품의 구입자 및 그 사람을 통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중앙정부 또는 (1)에 근거해 인가된 사람이 해당 발명의 특허권자인 것처럼 해당 상품을 취급할 권리를 가진다.
- (7) 동조에 근거하는 인가의 대상인 특허에 관해서 제101조(3)에 말하는 배타적 실시권자가 존재할 때 또는 해당 발명의 사용에 비추어 결정되는 로열티 혹은 그 외의 이익(최저 로열티의 지

불을 포함)을 대가로 해서 해당 특허가 특허권자에 대해서 양도된 것일 때에는, (5)에 근거해 제시하도록 지시 받은 통지는 배타적 실시권자 또는 경우에 의해 이전인에게 보내야 하고, (3)에 있어서의 특허권자에게의 언급은 해당 이전인 또는 배타적 실시권자에게의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01조 (정부 목적으로의 발명의 사용과 관련되는 제3자의 권리)

(1) 특허 발명 또는 출원 계속 중인 발명의 사용으로, 정부 목적을 위해서

(a) 중앙정부 혹은 제100조에 근거해 중앙정부의 인가를 받은 자에 의해 또는

(b) 중앙정부의 명령에 따라 특허권자 혹은 특허출원인에 의해

사용되는 것에 관해서는, 특허권자 혹은 특허출원인(또는 그 자로부터 권원을 취득한 자 혹은 그 자의 전권원자(前權原者)와 중앙정부 이외의 몇몇 사람 사이에 허락되거나 체결된 어떠한 라이선스, 이전 혹은 계약의 규정은 이러한 규정이

(i) 해당 발명 혹은 그에 관한 모형, 서류 혹은 정보의 정부 목적으로의 사용을 제한 혹은 규제하거나, 또는

(ii) 해당 발명 혹은 그에 관한 모형, 서류, 혹은 정보의 정부 목적으로의 사용과 관련되는 지불을 규정하는 한,

효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하고, 정부 목적의 전기 사용에 관련된 어떠한 모형 또는 서류의 복제 혹은 공개에 대해서는 해당 모형 또는 서류에 존재하는 어떠한 저작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특허 또는 특허를 출원하거나 취득할 권리가 발명의 사용에 비추어 결정되는 로열티나 그 외의 이익을 대가로 특허권자에게 이전된 것일 때에는, 중앙정부의 명령에 따라 중앙정부의 목적을 위해서 해당 특허권자가 하는 해당 발명의 어떠한 사용에 대해서는 제100조(3)은 해당 사용이 동조에 근거해 부여된 권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효력을 갖는다. 또 동조(3)에 의한 정부 목적을 위한 발명의 사용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에게의 언급은 해당 특허의 이전인에게의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동항에 근거하는 지불액은 특허권자와 이전인과의 사이에 합의된 비율 또는 그 합의가 없을 때는 제103조에 근거하는 회부에 의해서 고등법원이 결정하는 비율을 가지고 양자 사이에 배분하여야 한다.

(3) 제100조(3)에 의해서 정부 목적으로 발명의 사용에 대해 중앙정부 혹은 동조(1)에 근거하여 인가를 받은 사람이 금전 지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및 해당 특허에 관해 그 자의 라이선스에 근거해 정부 목적으로 해당 발명을 사용하기 위한 배타적 실시권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와 해당 실시권자와의 사이에 합의의 비율(있는 경우) 또는 그 합의가 없을 때에는 제103조에 근거하는 회부에 의해서 고등법원이,

(a) 전기 발명의 개발에 있어서 또는

(b) 라이선스의 대가로서 발명의 사용에 비추어 결정되는 로열티 혹은 기타 이익 이외의 특허권자에 대한 지불에 있어서 실시권자가 부담한 지출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는 비율을 가지고, 양자 간에 배분하여야 한다.

제102조 (중앙정부에 의한 발명 및 특허의 취득)

- (1) 중앙정부가 특허출원 또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을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공공 목적을 위해서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납득한 때에는, 관보에 그 취지를 고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발명 또는 특허 및 그것들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동조의 효력에 의해서 중앙정부에 이전하고 이에 귀속한다.
- (2) 해당 취득의 고시에 대해서는 출원인 및 특허가 부여되었을 경우 특허권자 및 등록부에 해당 특허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기재되어 있는 자(있는 경우)에게 통지된다.
- (3) 중앙정부는 출원인 또는 경우에 따라 특허권자 및 등록부에 해당 특허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기재되어 있는 자에게 중앙정부와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 및 그 외의 자 사이에 합의되는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합의가 없을 때에는 제103조에 근거한 회부에 의해 해당 발명과 관련하여 부담한 지출 및 특허의 경우는 그 존속기간, 그것이 이미 실시된 기간 및 방법(특허권자에 의해 또는 배타적인지 비배타적인지를 불문하고 실시권자에 의해서 해당 기간 중에 얻은 이익을 포함한다) 및 기타 관계 요인을 참작하여 고등법원에서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03조 (정부 목적으로의 사용에 관한 분쟁의 고등법원에의 회부)

- (1) 중앙정부 또는 중앙정부의 인가를 받은 자에 의한 제100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의 행사, 그것에 기초한 정부 목적을 위한 발명의 사용 조건, 동조(3)에 따른 지불의 일부를 수령하는 누군가의 권리 또는 제102조에 근거한 발명 혹은 특허의 취득에 대해서 지불을 필요로 하는 보상금액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해당 분쟁의 어느 당사자가 고등법원 규칙에 의해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를 고등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
- (2) 중앙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동조에 근거한 절차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 (a) 특허권자가 해당 절차의 당사자인 때에는, 제64조에 근거하여 특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이유에 의해 해당 특허의 취소를 반소의 형태로 청구할 수 있고,
 - (b) 특허권자가 해당 절차의 당사자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해당 특허의 취소를 청구하지 않고 해당 특허의 효력을 다룰 수 있다.
- (3) 앞에서 본 절차에서 발명이 제100조에 규정된 대로 기재되거나 시험 혹은 사용된 것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된 경우, 해당 발명에 관한 서류의 공개 또는 그 시험 혹은 사용의 어떠한 증

거의 개시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앙정부가 인정할 경우, 해당 공개에 대해서는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사나 상호 합의한 독립의 전문가에 대해 이것을 비밀리에 할 수 있다.

- (4) 정부 목적으로의 발명 사용의 조건에 관해 중앙정부와 누군가 사이에 생긴 분쟁을 동조에 근거하여 재정함에 있어서, 고등법원은 그 자 혹은 그 자의 전권원자(前權原者)가 정부 목적을 위한 해당 발명의 사용에 관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수령했다고 생각되거나 수령할 수 있는 이익 혹은 보상금을 참작해야 한다.
- (5) 동조에 근거하는 어떠한 절차에서 고등법원은 언제라도 그 모든 절차 또는 그 절차상 발생하는 사실 인정의 어떠한 문제 혹은 쟁점에 대해 고등법원이 지시하는 조건으로 공인 중재인, 수입자 혹은 중재인에게 회부해야 하는 취지를 명령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또 동조의 전기 규정에 있어 고등법원이라고 할 때는 그 취지에 따라 해석한다.
- (6) 특허에 있어서 클레임된 발명이 해당 발명이 된 당시 중앙정부에 혹은 주정부에 근무 중이었던 자 또는 정부계 기업의 직원이었던 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해당 발명의 대상이 정부 직원 혹은 정부계 기업 직원의 통상 직무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증명이 관계 정부에 의해 또는 정부계 기업의 주요 간부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동조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명에 관해서 (1)에 말하는 내용의 어떤 분쟁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한 동조 규정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처분해야 한다. 다만, 중앙정부는 것처럼 처분하기 전에 해당 특허권자 및 중앙정부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자에 대해 청문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장 특허침해소송

제104조 (재판관할권)

제105조에 근거하는 선언을 요구하는 소송 혹은 제106조에 근거하는 어떠한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소송 또는 특허 침해에 관한 소송에 대해서는 해당 소송 심리의 재판 관할권을 가지는 지방법원보다 하급 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고가 특허 취소의 반소를 한 경우, 해당 소송에 대해서는 이것을 해당 반소와 함께 판결을 받기 위해 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제104A조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 (1) 어떠한 특허침해소송에서도 특허의 주제가 제품을 얻기 위한 방법일 경우, 법원은 피고에 대해서 특허방법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얻기 위해 그 자가 사용한 방법이 다음의 경우 특허방법과 다른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를 지시할 수 있다.

- (a) 특허의 주제가 새로운 제품을 얻는 방법인 경우 또는
 - (b) 동일한 제품이 해당 방법에 의해 제조될 우려가 충분히 있고, 특허권자 또는 그 자로부터 권원 또는 이해를 얻은 자가 적절한 노력에 의해서도 실제로 사용된 방법을 결정할 수 없었던 경우
- 다만, 특허권자 또는 그 자로부터 특허의 권원 혹은 이해를 얻은 자가 해당 제품이 특허방법에 의해 직접 얻을 수 있던 제품과 동일한 것임을 최초로 입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2) 법원은 당사자가 (1)에 의해 그 자에게 부과된 입증책임을 완수했는지 여부를 심리할 때, 어떠한 제조 비밀 또는 상업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에는 그 것의 공개를 그 자에게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05조 (비침해의 선언을 하는 법원 권한)

- (1) 1963년 특정구제법(1963년 법률 제47호) 제34조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또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가 반대의 주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실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자에 의한 어떤 방법의 사용 또는 물품의 제조, 사용 혹은 판매가 특허권자 또는 특허에 근거한 배타적 라이선스의 소유자에 대하여 특허 클레임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취지 또는 구성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선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a) 원고가 서면으로 특허권자 또는 배타적 실시권자에게 소송과 관련된 선언의 취지를 서면에 의하여 확인을 요구하고, 해당 방법 또는 물품을 기재한 서면에 의한 완전한 명세를 제출한 것 및
 - (b)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가 그러한 확인을 하는 것을 거절 또는 무시한 것
- (2) 동조에 의해 제기된 선언을 요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모든 당사자의 비용은 특별한 이유에 의해 법원이 별도의 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원고가 지불한다.
- (3) 특허 명세서의 클레임의 유효성은 동조에 의해서 제기된 선언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다투어서는 아니 되고, 이에 따라 특허와 관련된 사건에서 해당 선언을 하거나 이를 거절하는 것은 해당 특허의 효력의 유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4) 특허부여가 공고된 날 후에는 언제라도, 동조에 의해서 선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동조에 있어 특허권자라고 할 때에는 이 취지에 따라서 해석해야 한다.

제106조 (근거 없는 침해소송의 협박사건에서 구제를 허용하는 법원 권한)

- (1) 누군가(특허 혹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지 아닌지 또는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어느 하나의 타인에 대하여, 해당 타인 또는 그 밖의 자에게 회부 혹은 광고에 의해서, 또는 구두 혹은 서면에 의한 전달에 의해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다고 협박할 때에는, 그에 의한 피해자는 해당 협박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 (a) 해당 협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선언
 - (b) 해당 협박의 속행에 대한 금지명령, 및
 - (c) 그에 따라 그 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있는 경우)
- (2) 해당 소송에서 피고가 소송 제기의 협박과 관련된 행위는 특허에 관한 침해 또는 원고에 의해 무효임을 표시받지 않는 명세서의 클레임과 관계된 완전명세서의 공고에서 발생하는 여러 권리에 관한 침해를 구성하거나 그 행위가 실행되면 침해를 구성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법원은 소구된 구제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에게 허용할 수 있다.

제107조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항변 등)

- (1) 특허침해소송에서, 제64조에 근거해 취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모두 항변이유로서 원용 가능한 것으로 한다.
- (2) 어떠한 기계, 장치 혹은 기타 물품을 제조, 사용 혹은 수입하거나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어떠한 의약품을 수입, 사용 혹은 배포하는 것에 따른 특허침해와 관련된 어떤 소송에서 해당 제조, 사용, 수입 또는 배포가 제47조에 규정된 조건의 임의의 1 또는 2 이상의 조건에 적합하다는 것은 항변 이유가 된다.

제107A조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일정한 행위) 동법의 적용상,

- (a) 어떠한 제품의 제조, 조립, 사용, 판매 또는 수입을 규제하는 법률로서 인도 또는 인도 이외의 국가에서 실제로 유효한 것에 근거하여 필요한 개발 및 정보의 제출에 적절히 관계하는 사용을 위해서만 특허발명을 제조, 조립, 사용, 판매 또는 수입하는 행위 및
- (b) 해당 제품을 제조 및 판매 또는 배포하는 것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자로부터 누군가에 의한 특허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108조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구제조치)

- (1) 어떠한 침해소송에서도 법원이 허용할 수 있는 구제조치는 금지명령(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있는 경우)에 따른다) 및 원고의 임의 선택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포함한다.
- (2) 법원이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상품, 주요한 용도가 침해 상품의 창작인 재료 및 기구에 대해 해당 사건의 상황에 근거해 적절하다고 인정하도록, 어떠한 보상금도 지불하지 않고, 압수, 몰수 또는 파기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령할 수도 있다.

제109조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배타적 실시권자의 권리)

- (1) 배타적 라이선스의 소유자는 해당 라이선스일 후에 범해진 특허 침해에 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특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또 어떠한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반환을 재정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허여함에 있어서 법원은 해당 배타적 실시권자가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손실 또는 경우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해 취득된 부당이득에 대해서 그것이 해당 배타적 실시권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구성하는 한 참작하여야 한다.
- (2) (1)에 근거해 배타적 라이선스의 소유자가 제기하는 어떠한 특허침해소송에서도 특허권자는 해당 소송에 원고로서 참가하지 않는 한 피고로서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로서 참가하는 특허권자는 출두하여 재판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 한, 소송비용의 지불의무는 없다.

제110조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제84조에 따른 실시권자의 권리)

제84조에 근거해 라이선스가 허락된 자는 특허의 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취지를 특허권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가 그 청구가 있던 날 후 2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거절 또는 무시했을 때에는, 해당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인 것처럼 자기 명의로 특허권자를 피고로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고로서 참가된 특허권자는 출두하여 재판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 한 소송비용의 지불의무가 없다.

제111조 (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허여하는 법원 권한의 제한)

- (1)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에 대해서는 침해행위가 있던 날 현재 해당 특허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모르는 것에 적절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피고에 대해서는 이를 허여하지 않는다.
- (2) 어떠한 특허침해소송에서도 법원은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갱신수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후 해당 기간의 연장 전에 범해진 침해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허여에 대해서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3) 권리의 부분 포기, 정정 또는 해명의 형식에 의한 명세서의 정정이 명세서의 공개 후에 동법에 근거해 허가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정 허가의 결정일 전에 된 해당 발명의 사용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는 어떠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도 허여되지 않는다. 다만, 당초 공개된 명세서가 선의로, 적절한 숙련 및 지식을 가지고 작성된 것을 법원이 납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동조의 어떠한 규정도 특허침해소송에서 금지명령을 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에는 일절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2조 (일정한 경우에 금지명령을 하는 법원 권한에 대한 제한) [삭제]

제113조 (명세서의 유효성 증명서 및 그 침해에 대한 후속 소송의 비용)

- (1) 제64조 및 경우에 따라서 제104조에 근거해 심판부 또는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특허의 취소 소송에서 명세서의 클레임의 유효성이 다투어지고, 해당 클레임이 심판부 또는 고등법원에 의해서 유효라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심판부 또는 고등법원은 해당 클레임의 유효성이 다투어졌고 해당 유효성이 지지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다.
- (2) 해당 증명서가 교부된 경우, 법원에 계속 중인 해당 특허 클레임의 침해 중 하나의 후속 소송 또는 해당 클레임에 관한 특허 취소에 대한 후속 소송에서 해당 클레임의 유효성에 의거하는 특허권자 또는 그 외의 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중국 명령 또는 판결을 얻었을 때에는 그 자는 수소법원이 별도의 명령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부된 해당 증명서와 관련된 클레임에 관계되는 한 정당하게 지출된 해당 소송 혹은 기타 절차에 대한 또는 그것에 부수한 모든 비용, 요금 및 경비의 지급명령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동항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해당 클레임의 유효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그것을 다투는 시점에서는 해당 증명서의 교부 사실을 몰랐던 것을 법원에게 납득시키고, 그 자가 해당 증명서에 대해 알았을 때 해당 항변을 지체 없이 취하였을 때에는 이를 발하지 않는다.
- (3) 동조의 어떤 규정도 특허침해소송 또는 경우에 따라 특허취소소송에서 내린 판결 또는 명령에 대한 상소를 심리하는 법원 또는 심판부에 대해서 동조에서 말하는 금액의 비용의 지급명령을 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절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제114조 (부분적으로 유효한 명세서의 침해에 대한 구제)

- (1) 특허침해소송에서 명세서 중 어느 클레임에서 침해의 제기 대상인 것이 유효하나, 다른 어느 클레임이 무효라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침해된 유효한 클레임에 대해 구제조치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2)와 같은 상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금지명령 이외의 구제조치를 허용할 수 없다.
- (2) 해당 무효인 클레임에 대해서 그것이 선의로, 적절한 숙련 및 지식을 가지고 작성된 것을 원고가 입증한 경우, 법원은 침해된 유효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비용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기산해야 할 날에 관한 법원의 재량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구제조치를 허용한다. 또 해당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원은 명세서 중에 해당 무효인 클레임을 삽입하거나 또는 이 클레임을 잔존시킨 당사자의 행위를 참작할 수 있다.

제115조 (감정인)

- (1) 동법에 근거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어떤 침해소송 또는 재판 절차에 있어서도 법원은 언제라도 또 어느 당사자로부터 그 목적으로 신청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법원을 보조하기 위해 또는 법원이 제시한 사실 혹은 의견의 문제(법률 해석의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다)에 대

해 조사 및 보고시키기 위해 독립의 감정인을 임명할 수 있다.

- (2) 감정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법원이 정해 보고서 작성 비용 및 해당 감정인의 법원에 출두를 요하는 기일에 대한 정당한 일당을 포함하며, 이 목적을 위해 법률에 의해 의회의 예산으로부터 지불된다.

제19장 심판부에의 심판 청구

제116조 (심판부)

- (1) 동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1999년 상표법 제83조에 근거해 설립된 심판부는 동법의 적용상 심판부로 하고, 전기 심판부는 동법에 의해 또는 그것에 근거해 부여된 관할권, 권한 및 권능을 행사한다. 다만, 동법의 적용상 심판부의 기술심판관은 (2)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 (2) 누구든지 다음의 자가 아닌 한, 기술 심판관으로서 임명될 자격은 없다.
- (a) 적어도 5년간 동법에 근거한 청장의 직에 있거나 또는 적어도 5년간 동법에 근거한 청장의 직권을 행사한 것이 있는 자
- (b) 적어도 10년간 등록 특허대리인으로서 직무를 한 적이 있고, 실제로 유효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대학의 공학 학사 학위 또는 이학 석사 학위를 소유한 자 또는 동등한 자 또는
- (c) [삭제]

제117조 (심판부의 직원)

- (1) 중앙정부는 동법에 근거하는 심판부의 직무 이행에 있어서 해당 부서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간부 직원 및 기타 일반직원의 직제 및 분류를 결정하고, 심판부에 대해 중앙정부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간부 직원 및 기타 일반직원을 제공한다.
- (2) 심판부의 간부 직원 및 기타 일반직원의 급료, 수당 및 근무 조건은 소정의 것으로 한다.
- (3) 심판부의 간부 직원 및 기타 일반직원은 소정의 방법에 의해 심판부장의 전반적 감독 하에서 이들의 직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117A조 (심판부에의 심판 청구)

- (1) (2)에 명기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에 근거해 중앙정부가 행하거나 발하는 결정, 명령 혹은 지시에 대해서 또는 해당 결정, 명령 혹은 지시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장의 행위 혹은 명령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 (2) 다음의 각 조에 근거하는 청장 또는 중앙정부의 어떤 결정, 명령 혹은 지시에 대해서는, 심판

- 부에 대해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4), 제28조, 제51조, 제54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6조, 제69조(3), 제78조, 제84조(1)에서 (5)까지, 제85조, 제88조, 제91조, 제92조 및 제94조
- (3) 동조에 근거한 각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소정의 양식에 따르도록 하고, 소정의 방법으로 증명해야 하며, 심판청구 대상의 결정, 명령 또는 지시의 사본 및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해야 한다.
- (4) 각 심판 청구는 청장 혹은 중앙정부의 결정, 명령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심판부가 그것을 위해 제정한 규칙에 따라 허가하는 부가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117B조 (심판부의 절차 및 권한)

1999년 상표법(1999년 제47호) 제84조(2)에서 (6)까지, 제87조, 제92조, 제95조 및 제96조는 1999년 상표법에 근거한 심판부의 직무 이행에 있어서 그것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법에 근거한 그 직무이행에 있어서 심판부에도 적용된다.

제117C조 (법원의 관할권 등의 금지)

어떤 법원이나 다른 당국도 제117A조(2) 또는 제117D조에서 말하는 사항에 관한 관할권, 권한 혹은 권능을 가지거나 그것을 행사할 수 없다.

제117D조 (심판부에서의 경정 신청 등의 절차)

- (1) 제64조에 근거해 심판부에 대해서 하는 특허취소신청 및 제71조에 근거해 심판부에 대해 하는 등록부의 경정 신청은 소정의 양식에 의한다.
- (2) 동법에 근거한 특허에 관한 심판부의 각 명령 또는 심결의 인증 등본은 심판부에 의해 청장에게 전달되고, 청장은 해당 부서의 명령을 집행하고, 그 취지를 지시받았을 때에는 해당 지시에 따라 등록부에 있어서의 등록을 보정하거나 등록부를 경정해야 한다.

제117E조 (청장의 법적 절차에의 출두)

- (1) 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출두하여 청문 받을 권리를 가진다.
- (a) 심판부의 법적 절차로서, 거기서 구할 수 있었던 구제조치가 등록부의 변경 혹은 경정을 포함하는 것 또는 거기서 특허청의 실무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
 - (b) 특허부여의 출원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청장 명령에 대한 심판부의 심판 청구
 - (i) 이의신청이 없고, 해당 출원을 청장이 거절하였거나 청장이 어떠한 정정, 변경, 조건 또는 제한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수리한 것, 또는

- (ii) 이의신청이 있고, 청장이 공공의 이익상 자기의 출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또 청장은 심판부에 의해 그렇게 지시 받았을 때에는 모든 사건에 출두해야 한다.
- (2) 심판부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청장은 출두하는 대신 쟁점 사항에 관한 자기에 대한 절차, 자기가 내린 어떤 결정의 이유, 동종 사건에 있어서의 특허청의 업무 또는 해당 쟁점에 관련된 기타 사항으로 자기의 지식 내의 것으로 청장이 필요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 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명세를 기재하고 자기의 서명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진술서는 해당 절차에 있어서의 증거로 한다.

제117F조 (심판부의 절차에 있어서 청장의 비용)

심판부에 대한 동법에 근거한 모든 절차에 대하여, 청장의 비용은 해당 부서의 지시에 따르나, 청장은 어느 당사자의 비용도 지불하라고 명령받지 않는다.

제117G조 (계속 중인 절차의 심판부로의 이송)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청장의 어떤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의 모든 사건 및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반소 이외에 특허의 취소 및 등록부의 경정에 관한 모든 사건은 중앙정부가 관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심판부로 이송하고, 심판부는 그 사항에 대해 당초 또는 이송된 단계부터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7H조 (규칙을 제정하는 심판부의 권한)

심판부는 동법에 근거한 해당 부서에 대한 모든 절차에 대한 행위 및 절차에 관해서 동법에 적합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0장 벌칙

제118조 (일정한 발명에 관한 비밀유지 규정에 대한 위반)

누구든지 제35조에 근거해 발해진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제39조에 위반하여 특허부여의 출원을 하거나 또는 하게 했을 때에는 그 자는 2년 이하의 구금 혹은 벌금에 처하거나, 이들을 병과한다.

제119조 (등록부 등의 허위 기재)

누구든지 동법에 근거해 갖춰진 등록부에 허위 기재를 하거나 기재하게 하거나 관련된 등록부의 등록사항의 등본임을 사칭하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하거나, 또는 해당 기재사항 혹은 서

면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제공 또는 제출 혹은 제공하게 했을 때에는, 그 자는 2년 이하의 구금이나 벌금에 처하거나, 이들을 병과한다.

제120조 (특허권의 무권한 주장)

누구든지 자기가 판매하는 어떠한 물품이 인도에서 특허를 취득했거나 인도에서의 특허출원 대상인 취지의 허위 표시를 했을 때에는, 그 자는 100,000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1조 ('특허청'이라는 말의 부정 사용)

누구든지 그 자의 영업소나 그 자가 발행한 어떠한 서면 등에 '특허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그 자의 영업소가 특허청이거나 특허청과 공식적 관계가 있는 것처럼 용이하게 오해하게 하는 그 외의 단어를 사용한 때에는 그 자는 6개월 이하의 구금이나 벌금에 처하거나, 이들을 병과한다.

제122조 (정보 제공의 거절 또는 해태)

- (1) 누구든지 다음의 것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게을리했을 때에는, 그 자는 1,000,000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a) 중앙정부에 대해서, 그 자가 제100조(5)에 근거하여 제공을 필요로 하는 어떠한 정보
 - (b) 청장에 대해서, 그 자가 제146조에 의하거나 근거하여 제공을 필요로 하는 어떠한 정보 또는 진술서
- (2) (1)에서의 정보의 제공을 요하는 누구든지 허위인 정보 혹은 진술서 및 그 자가 허위임을 알거나 그렇게 믿는 이유를 가지거나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 정보 혹은 진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자는 6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들을 병과한다.

제123조 (무등록 특허대리인에 의한 업무)

누구든지 제129조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에는 그 자는 초범인 경우 100,000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재범 이상의 경우는 500,000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4조 (회사에 의한 위반)

- (1) 동법에 근거한 죄를 범한 자가 회사일 때에는 해당 회사 및 그 영업행위에 대해 범행 당시의 각 담당자 및 각 책임자는 해당 범행에 대해 유죄로 간주되며, 그에 따라 소추 및 처벌을 받는다. 다만, 동항의 어떠한 규정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해당 범행이 된 것 또는 그 자가 해당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것을 입증했을 때에는 그 누구도 일절 처벌하지 않는다.
- (2) (1)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동법에 근거한 죄를 범했을 경우, 해당 죄가 회사의

이사, 관리직, 비서직 혹은 기타 간부의 동의 또는 묵인 하에 범해진 것 또는 해당 범행이 회사의 이들의 어떠한 태만에 기인하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해당 이사, 관리직, 비서직 혹은 기타 간부도 또한 해당 범행에 대해서 유죄로 간주되어 그에 따라 소추 및 처벌을 받는다.

제21장 특허대리인

제125조 (특허대리인 등록부)

- (1) 청장은 특허대리인 등록부라고 칭하는 등록부를 갖추고, 이에 제126조에 근거하여 등록을 받는 유자격자 전원의 명칭, 주소 및 기타 소정의 관련한 명세를 등록한다.
- (2) (1)의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소정의 안전보호조치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컴퓨터 용 플로피 디스크, 디스켓 또는 다른 전자형식으로 특허대리인 등록부를 유지 관리하는 것은 적법하다.

제126조 (특허대리인의 등록 자격)

- (1)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특허대리인 등록부에 그 자의 명칭을 등록시킬 자격을 갖는다. 즉,
 - (a) 인도 국적을 가진 자
 - (b) 만 21세의 자
 - (c) 인도 영역에서 실제로 유효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대학의 이학 혹은 공학 학위를 취득했거나 중앙정부가 본건에 대해 지정하는 기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및
 - (i) [삭제]
 - (ii) 그 목적을 위해서 소정의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 (iii) 총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제73조에 근거해 심사관의 직위에 있거나 청장의 직무를 이행했던 적이 있거나 그 쌍방인 자로서, 등록 신청 시에는 해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자
 - (d) 그 자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을 것
- (2) (1)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 특허(개정)법의 시행 전에 특허대리인으로서 등록되어 있던 자 혹은 재등록이 필요한 때에도,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계속 특허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제127조 (특허대리인의 권리)

동법의 규정 및 동법에 근거해 제정된 규칙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특허대리인 등록부에 명칭

이 등록된 각 특허대리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a) 청장에 대한 업무를 하는 것, 및
- (b) 모든 관계서류의 작성하고, 모든 관계 업무를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해 청장에게 계속하는 절차와 관련해 소정의 다른 직무를 이행하는 것

제128조 (특허대리인에 의한 일정한 서류의 서명 및 인증)

- (1) 동법에 근거하는 청장에 대한 모든 신청 및 통신에 대해서는, 본건에 대해 관계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위임된 특허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관계인이 인도에 없는 경우에도, 그 관계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위임받은 특허대리인이 정식대리인으로서 서명 및 입증할 수 있다.
- (2) [삭제]

제129조 (특허대리인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제한)

- (1) 누구든지 단독으로 할 것인지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할 것인지를 불문하고, 그 자가 특허대리인으로서 등록되지 않은 한 또는 경우에 따라 그 자 및 그 자의 파트너 전원이 것처럼 등록되지 않은 한, 특허대리인으로서 업무에 종사하고, 자기를 특허대리인으로서 기재 혹은 칭해서는 아니 되며, 자기가 특허대리인으로서 기재되거나 칭해지는 것을 허락해서는 아니 된다.
- (2) 어떤 회사 또는 법인도 특허대리인으로서 업무에 종사하고 자기를 특허대리인으로 기재하거나 칭해서는 아니 되고, 자기가 특허대리인으로서 기재되거나 혹은 칭해지는 것을 허락해서는 아니 된다.

제130조 (특허대리인 등록부로부터 말소 및 회복)

- (1) 청장은 특허대리인 등록부로부터 피등록자의 명칭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자에 대해서 청문을 받을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고, 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있는 경우)를 한 후에, 청장이 납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 (i) 그 자의 명칭이 착오 또는 중요 사실의 부실 표시 또는 은폐에 의해 등록부에 등록된 것
 - (ii) 그 자가 유죄 판결을 받아 유기의 구금형이 선고되거나 그 자의 직업상 자격상의 위법행위로 유죄가 된 적이 있어, 그 자를 해당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것
- (2) 청장은 신청에 의해 충분한 이유가 제시된 경우, 해당 등록부로부터 말소된 자의 명칭을 해당 등록부로 회복할 수 있다.

제131조 (일정한 대리인과의 대응을 거절하는 청장 권한)

- (1) 본건에 대해 제정된 규칙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청장은 동법에 근거한 어떠한 업무와 관련

된 대리인으로서 다음의 자의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 (a) 그 명칭이 특허대리인 등록부에서 말소되고, 해당 등록부에 회복되지 않은 자
 - (b) 제123조에 근거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자
 - (c) 특허대리인으로서 등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의 사용자의 명의로 또는 이익을 위해서, 인도 또는 기타 영역에서의 특허출원에 있어서, 오로지 대리인으로서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자
 - (d) 청장이 동법에 근거해 어떠한 업무와 관련된 대리인으로서 승인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음이 분명한 몇몇 사람이 회사의 이사 혹은 관리직으로서 행동하고 있거나 기업 파트너일 때에는, 해당 회사 또는 기업
- (2) 청장은 인도에 거주하지 않고, 영업소도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서 동법에 근거한 업무와 관련된 대리인으로서 승인하는 것을 거절한다.

제132조 (대리인으로 위임된 다른 자와 관련된 예외)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의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아니 된다.

- (a) 특허출원인이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청장에게 출두하거나 절차를 밟는 것 또는
- (b) 특허대리인이 아닌 변호사가 동법에 근거한 절차에 참가하는 당사자의 대리로서 청장의 청문에 참가하는 것

제22장 국제 협정

제133조 (조약국)

인도 또한 체결국 또는 당사국으로, 특허의 부여 및 특허권의 보호에 관해 인도에서 특허출원인 또는 인도 국민에 대해서 자국민 또는 이들의 구성국의 국민에 대해서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특권을 부여하는 국제적, 지역적 혹은 쌍무적인 조약, 협약 또는 협정의 체결국 혹은 당사국, 국가군, 국가 동맹 또는 정부간 기관인 어떠한 국가도, 동법의 적용상 조약국으로 한다.

제134조 (상호주의를 채용하지 않는 국가에 관한 고시)

중앙정부가 본건에 대해 관보 고시에 의해 지정한 국가가 특허의 부여 및 특허권의 보호에 관해서 자국민에 대해서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인도 국민에게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외국 국민은 단독인지 타인과 공동인지를 불문하고 다음의 것을 일절 할 수 없다.

- (a)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의 소유자로서 등록을 받는 것
- (b) 특허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으로서 등록을 받는 것 또는
- (c) 동법에 근거해 부여된 특허에 근거하여 라이선스를 신청하거나 라이선스를 보유하는 것

제135조 (조약 출원)

- (1) 제6조의 규정을 해치지 않고, 누구든지 조약국에 대해 발명과 관련되는 특허출원(이하 '기본출원'이라고 한다)을 하고, 그 자 또는 그 자의 법정대리인 혹은 양수인이 기본출원이 이루어진 날 후 12개월 이내에 동법에 근거해 특허출원을 할 때에는, 완전명세서의 클레임으로 기본출원에 대해 개시된 사항을 기초로 하는 클레임의 우선일을 바탕으로 기본출원을 한 날로 한다.
- (2) 2 이상의 동종 발명 또는 그 1의 개량인 발명에 대한 보호출원이 1 또는 2 이상의 조약국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보호출원 중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언제라도 그 발명과 관련되는 단일의 조약 출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출원에 대하여 납부를 필요로 하는 수수료는 전기 발명 각각에 관해서 개별 출원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은 금액이며, 또 제136조(1)(b)의 요건은 그러한 출원의 경우 전기 발명 각각에 관련된 보호출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 (3) 인도를 지정하여 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출원이며, 인도에서 이미 한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1) 및 (2)의 규정을 해당 기술원이 기본출원인 것으로서 적용한다. 다만, 제11B조에 근거하는 심사청구는 인도에서의 출원의 1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제136조 (조약 출원에 관한 특칙)

- (1) 각 조약 출원에는
 - (a) 완전명세서를 첨부하고,
 - (b) 보호출원 또는 경우에 따라 최초로 보호출원을 한 날 및 조약국을 명시하고,
 - (c) 출원인 또는 그 전권원자(前權原者)가 그 날 전에 조약국에서 해당 발명과 관련된 보호출원을 한 적이 없는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 (2)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조약 출원과 함께 제출된 완전명세서에 대해서는 조약국에서 이루어진 보호출원에 관련된 발명의 개량 또는 추가에 대한 클레임으로, 해당 출원인이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해 별개의 특허출원을 할 수 있었던 개량 또는 추가에 대한 클레임을 포함할 수 있다.
- (3) 조약 출원은 동법의 규정에 근거해 해당 출원을 할 수 있었던 날보다 후의 날까지 제17조(1)에 근거하여 후일로 할 수 없다.

제137조 (복합 우선권)

- (1) 발명에 관련된 2이상의 특허출원이 1 또는 2 이상의 조약국에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발명이 1 발명을 구성하도록 관련된 때에는, 제135조(1)에서 말하는 자 중 일부 또는 전원은 기본출원에 첨부한 명세서에 공개된 발명에 대해서는 해당 출원의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에 단일 출원을 할 수 있다.

- (2) 완전명세서의 클레임으로, 1 또는 2 이상의 기본출원에 공개된 사항을 기초로 하는 클레임의 우선일은 해당 사항이 최초로 개시된 날로 한다.
- (3) 동법의 적용상, 어떤 사항이 조약국에 있어서의 보호의 기본출원 또는 해당 출원을 지지하기 위해 동시에 출원인에 의해 제출된 서류에 대해 클레임되거나 또는 공개(선행 기술의 권리의 부분 포기 또는 승인에 의한 이외의 것)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본출원에 있어서 공개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서류에 의한 공개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의 사본이 조약 출원과 함께 또는 해당 출원일 후 소정의 기간 내에 특허청에 제출되지 않는 한 일절 참작되지 않는다.

제138조 (조약 출원에 관한 보칙)

- (1)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조약 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인은 청장으로부터 요구받았을 때에는, 완전명세서에 추가해 제133조에 말하는 조약국의 특허청에 해당 출원인이 제출하거나 기탁한 명세서 또는 이에 대응하는 서류로 청장이 납득하도록 인증된 것의 사본을 청장이 요구한 날로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 (2) 해당 명세서 또는 기타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청장이 요구하였을 때에는, 해당 명세서 또는 기타 서류의 영어번역문으로 선서 진술서 또는 기타 사항에 의해 청장이 납득하도록 증명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 (3) 동법의 적용상 조약국에 출원한 날이란, 조약국의 특허청장이 작성한 증명서 또는 기타에 의해 청장이 해당 조약국에 대해 출원되었다고 인정하는 날을 말한다.
- (4) 인도를 지정하고 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해서 된 국제출원은, 경우에 따라 제7조, 제54조 및 제135조에 근거한 특허출원의 효력을 가지며, 국제출원에 있어서 제출된 명칭, 명세서, 클레임, 요약 및 도면(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동법의 적용상 이들을 완전명세서로 해석한다.
- (5) 특허출원 및 지정 관청으로서 특허청에 의해 처리된 그 완전명세서의 제출일은 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하여 부여되는 국제출원일로 한다.
- (6) 인도를 지정했는지 또는 인도를 지정하고 선택한 국제출원의 출원인에 의해 국제 조사기관 또는 예비심사기관에 대해 제안된 보정(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출원인이 희망할 때에는 특허청에 대해 실시한 보정으로 해석한다.

제139조 (조약 출원에 적용되는 동법의 다른 규정)

이 장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의 모든 규정은 조약 출원 및 그것에 근거해 부여된 특허에 대해 통상의 출원 및 그것에 근거해 부여된 특허에 대해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3장 보칙

제140조 (일정한 제한 조건의 회피)

(1) 다음의 경우, 즉,

- (i) 특허물품 혹은 특허 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품의 판매 또는 임대와 관련된 계약에서
 - (ii) 특허물품의 제조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라이선스 계약에서 또는
 - (iii) 특허에 의해 보호된 방법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라이선스 계약에서
- 다음의 효과를 가지는 경우가 있는 조건을 삽입하는 것은 위법이며, 그러한 어떠한 조건도 무효로 한다.

- (a) 특허물품 이외의 물품이나 특허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된 물품에 대해 구입자, 임차인 또는 실시권자에 대해 판매자, 임대인 또는 라이선서 또는 그 피지명인으로부터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것, 그 자에 의한 취득을 금지하는 것, 누구로부터도 취득할 수 있는 그 자의 권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혹은 어떠한 범위로 제한하는 것 또는 판매자, 임대인 또는 라이선서 또는 그 피지명인 이외의 그 자에 의한 취득을 금지하는 것
 - (b) 특허물품 이외의 물품 또는 특허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된 물품으로, 판매자, 임대인 혹은 라이선서 또는 그 피지명인에 의해 공급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 구입자, 임차인 혹은 실시권자에 의한 사용을 금지하는 것 또는 해당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구입자, 임차인 혹은 실시권자의 권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혹은 어떠한 범위로 제한하는 것
 - (c) 특허 방법 이외의 방법에 대해 구입자, 임차인 혹은 실시권자에 의한 사용을 금지하는 것 또는 해당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구입자, 임차인 혹은 실시권자의 권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혹은 어떠한 범위로 제한하는 것, 또는
 - (d) 배타적 그랜트백(Grantback),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신청의 억제 및 강제적 포괄 라이선스의 허락을 규정하는 것
- (2) (1)(a), (b) 또는 (c)에서 말하는 내용의 조건에 대해서는 특허물품 또는 방법의 판매, 임대 혹은 라이선스에 관한 계약의 전후를 불문하고, 그것을 포함한 계약이 별개로 체결되었다는 사실의 이유에 의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항에 해당하는 조건이 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
- (3) 누군가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 시점에 해당 특허에 관한 계약이고, 동조에 의해 위법이라고 선언된 조건을 포함하는 것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입증하는 것은 항변의 방법이 된다. 다만, 동항에 대해서는 원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동시에 해당 제한 조건이 원고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명시 또는 묵시적 동의를 얻지 않고 해당 계약 중에 삽입된 것을 법원이 납득하도록 원고가 입증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4) 동조의 어떤 규정도,
- (a) 계약에서의 조건에서 특정인의 상품 이외의 상품에 대해 누군가에 의한 판매를 금지하는

- 것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고,
- (b) 동조에 구애받지 않고 무효가 되는 계약을 유효하게 하지 않고,
- (c) 특허물품의 임대 또는 사용의 라이선스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의 조건에 있어서, 임대인 혹은 라이선서가 특허물품을 수리,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부품을 공급할 권리를 그 자 또는 그 자의 피지명인에 대해 유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5) [삭제]

제141조 (일정한 계약의 종료)

- (1) 특허물품의 판매 혹은 임대를 위한 계약 또는 특허물품 혹은 방법으로 제조, 사용 혹은 실시하는 라이선스를 위한 계약 또는 해당 판매, 임대 혹은 라이선스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의 체결 시에 해당 물품이나 방법을 보호하고 있던 1의 특허나 2 이상의 모든 특허가 효력을 잃은 후 언제라도 해당 계약 혹은 다른 계약의 어떠한 별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입자, 임차인 또는 경우에 따라 특허의 실시권자에 의해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3개월의 예고를 하고, 이것을 종료시킬 수 있다.
- (2) 동조는 동조와는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을 종료시킬 권리를 해치지 않는다.

제142조 (수수료)

- (1) 특허부여 및 특허출원에 대해 및 기타 동법에 근거한 특허부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에 의해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2) 청장의 행위에 대해 수수료의 납부를 필요로 할 경우, 청장은 해당 수수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해당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 납부를 필요로 할 경우, 해당 수수료는 서류와 함께 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고, 해당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내에 수수료의 납부가 없을 때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4) 출원일로부터 2년의 기간 경과 후에 주특허의 부여가 있을 경우, 그 사이에 납부 기일이 도래한 수수료는 해당 특허 등록부예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 또는 등록일로부터 9개월까지의 연장된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다.

제143조 (명세서의 공개에 대한 제한)

제12장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특허출원 및 그것에 대해 제출된 어느 명세서에 대해서는 출원인의 동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1A조(1)에 근거해 소정의 기간의 만료 전 또는 제11A조(3) 혹은 제43조에 따라 그것이 공중의 열람에 제공되기 전에는, 청장은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144조 (심사관의 보고서에 대한 비밀유지)

동법에 근거한 심사관의 청장에 대한 보고서는 청장이 이것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며, 관련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그 제출 또는 검열이 사법상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고, 당연히 허가되어야 할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상 어떤 소송 절차에서도 제출 또는 검열의 의무를 면한다.

제145조 (공보의 발행)

청장은 동법의 규정 또는 그것에 근거해 제정된 규칙에 의해 또는 그것에 근거해 발행을 필요로 하는 정보를 포함한 공보를 정기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제146조 (특허권자로부터의 정보를 요구하는 청장 권한)

- (1) 청장은, 특허 존속기간 중 언제라도 서면에 의한 고지로 특허권자 또는 배타적인지 비배타적인지를 불문하고 실시권자에 대해서 해당 고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청장이 허가하는 부가기간 내에 인도에서 특허 발명의 상업적 실시의 정도에 대해 해당 고지서에 명시된 정보 또는 정기적 진술서를 청장에게 제공해야 할 취지를 요구할 수 있다.
- (2) (1)의 규정을 해치지 않고, 각 특허권자 및 (배타적인지 비배타적인지를 불문하고) 각 실시권자는 소정의 방법, 양식 및 기간(6개월 이상)을 가지고, 인도에서 해당 특허 발명의 상업 규모로 실시하는 정도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 (3) 청장은 (1) 또는 (2)에 근거해 수령한 정보를 소정의 방법에 의해 공개할 수 있다.

제147조 (등록 사항, 서류 등의 증거)

- (1) 청장이 동법 또는 동법에 근거해 제정된 규칙에 의해 하도록 수권된 등록, 사항에 관해서 청장이 서명했다고 여겨지는 증명서는 이루어진 등록, 그 내용 및 이행된 또는 불이행된 사항에 대한 일응의 증거로 한다.
- (2) 특허청에 보관된 등록부의 어떠한 등록 사항, 서류 혹은 특허증의 등본 또는 해당 등록부 혹은 서류의 초본으로 청장이 증명하고, 특허청의 공인을 날인했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법원 및 모든 소송 절차에서 추가의 증거 또는 원본의 제출 없이 증거로 채용된다.
- (3) 청장 및 기타 특허청 간부 직원은 자기가 당사자가 아닌 어떤 소송에서도 동법에 근거해 교부되는 인증 등본의 제출에 의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등록부 혹은 그 외의 서류로, 자기가 보관 중인 것을 제출 또는 그것에 기록된 사항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출두를 강요받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이유를 위해 발하여진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8조 (미성년자, 심신상실자등에 의한 선언)

- (1) 누구든지 미성년자, 심신상실 혹은 기타 행위 무능력자라는 이유로 동법에 의해 혹은 필요하게 되거나 허용된 진술 또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행위 무능력자의 법정후견인, 보좌인 혹은 관재인(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자가 없는 경우는 그 자의 재산과 관련된 재판관할권을 갖는 법원에 의해 임명된 자가, 상황이 허락하는 한 진술 또는 약식 대응하는 진술을 할 수 있고, 해당 행위무능력자의 명의로, 그 대리로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 (2) 법원은 행위무능력자의 대리인이나 해당 진술 혹은 행위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는 자의 청구에 의해 동조의 적용상, 임명을 할 수 있다.

제149조 (우편에 의한 통지 등의 송달)

동법에 의해 또는 의거하여 제출하는 것을 필요로 하거나 승인된 어떠한 통지 및 작성 혹은 제출하는 것을 승인받거나 필요로 하는 어떠한 신청서 또는 기타 서류에 대해서도 우편으로 제출, 실시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제150조 (비용에 대한 보증금)

동법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자 또는 특허에 근거한 라이선스의 허락을 청장에 대해서 신청하는 자가 인도에 거주하지 않고 사업도 하지 않을 때에는 청장은 절차의 비용에 대한 보증금의 적립을 그 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보증금의 적립이 없는 경우, 해당 이의신청 또는 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서 취급할 수 있다.

제151조 (법원 명령의 청장에게의 전달)

- (1) 취소 청구에 근거하는 고등법원 또는 심판부의 각 명령은 클레임의 유효성 증명서의 교부 명령을 포함하여 고등법원 또는 심판부가 청장에게 통지하고 청장은 등록부에 그 취지 및 관련 사항을 기록하도록 한다.
- (2) 특허침해소송 또는 제106조에 근거하는 소송에서, 명세서 중 어느 하나의 클레임의 유효성이 다투어지고 해당 클레임에 대해 법원이 유효 또는 경우에 따라 무효인 취지를 인정한 경우, 해당 법원은 그 판결서의 등본을 청장에게 송부하고 청장은 그 수령에 의해 등록부의 보충 기록에 소정의 방법으로 해당 소송에 관해 등록을 시킨다.
- (3) (1) 및 (2)의 규정은 해당 각 항에서 말하는 심판부 또는 경우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상소가 제기되는 법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52조 (명세서 등의 사본 이송 및 그 열람) [삭제]

제153조 (특허에 관한 정보)

누구든지 어떠한 특허 또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청구서로 지정해 소정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소정의 방법에 의해 청장에게 청구한 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에 응하는 정보의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제154조 (특허증의 상실 또는 훼손)

특허증을 상실 혹은 훼손하거나 불제출의 이유를 청장이 납득하도록 명확히 한 경우, 청장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에 의해 소정의 방법에 의한 신청에 근거하여 언제라도 그 부분에 공인을 날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에 대해 교부할 수 있다.

제155조 (청장 보고서의 의회 제출)

중앙정부는 청장에 의한 또는 그 지휘 하에 동법집행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1회 의회 양원에 제출시켜야 한다.

제156조 (정부를 구속하는 특허)

동법의 다른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특허는 모든 점에서 정부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57조 (몰수 물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정부의 권리)

동법의 어떤 규정도, 정부의 권한 또는 정부로부터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권한취득자의 권한으로, 실제로 유효한 법률에 근거해 몰수된 물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권한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57A조 (인도의 안전 확보)

동법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 (a) 동법에 근거한 어떠한 특허성이 있는 발명에 관한 정보 또는 어떠한 특허출원으로서, 중앙정부가 인도의 안전 확보에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 (b) 중앙정부가 인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허의 취소도 포함하여 그 취지의 관보 고시를 발표하고, 이를 해야 한다.

제158조 (규칙을 제정하는 고등법원 권한)

고등법원은 동 법원에 대한 동법에 근거한 모든 소송에 관련된 행위 및 절차에 관하여 동법에 부합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59조 (규칙을 제정하는 중앙정부의 권한)

- (1) 중앙정부는 관보 고시에 의해, 동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2) 위의 권한에 관한 일반 원칙을 해치지 않고, 중앙정부는 다음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규정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즉,
- (i) 특허출원서, 명세서 또는 도면 및 기타 신청서 또는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는 양식 및 방법
 - (ia) (1)에 근거한 신청과 관련된 진술서 및 서약서의 제출을 위해 청장이 허가할 수 있는 기간, 신청의 처리에 관한 명세를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기간 및 제8조(2)에 근거해 출원인이 청장에게 제출해야 할 명세
 - (ib) 제10조(4) 단서(ii)(A)에 따라 명세서에(생물학적) 재료의 기탁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하는 기간
 - (ic) (1)에 따라 특허출원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지 않는 기간 및 제11A조(2)에 따라 출원인이 자기의 출원을 공개하도록 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
 - (id) 특허출원의 심사청구를 하는 방법 및 제11B조(1) 및 (3)에 따라 해당 심사를 하는 기간
 - (ie) 특허출원의 취하 신청을 하는 방법 및 비밀유지 지시의 취소일로부터 제11B조(4)단서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는 기간
 - (ii) 동법에 근거해 어떠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 및 기간을 포함하여, 동법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 또는 사항을 할 수 있는 기간
 - (iii) 동법에 근거하여 납부를 필요로 하는 수수료 및 해당 수수료 납부 방법 및 시기
 - (iv) 심사관이 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사항
 - (v) 청장이 제25조(1)에 근거하여 심사하고 처분하는 방법 및 기간
 - (va) 제39조에 근거해 청장이 신청을 처분할 필요가 있는 기간
 - (vi) 동법에 근거하여 통지를 할 수 있는 양식, 방법 및 시기
 - (vii) 특허의 소멸 후에 해당 특허의 대상을 이용했다고 생각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의 회복 명령 중에 삽입할 수 있는 규정
 - (viii) 특허청의 지청 설치 및 지청을 포함한 특허청의 업무 일반의 규제
 - (ix) 특허등록부의 유지 관리, 컴퓨터용 플로피 디스크, 디스켓 또는 다른 전자 형식에 의한 등록부의 유지관리상 준수해야 할 안전보호조치 및 등록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
 - (x) 청장이 민사 법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사항
 - (xi)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는 등록부 및 그 외의 서류를 동법에 근거해 열람할 수 있는 시간 및 방법
 - (xii) 제115조의 적용상 감정인에 대한 그 자격 및 명부의 작성
 - (xiia) (2)에 따른 심판부의 간부 및 기타 일반직원의 급료, 수당 및 기타 근무 조건 및 제117

- 조(3)에 따른 심판부의 간부 및 기타 일반직원의 직무이행 방법
- (xiib) 제117A조(3)에 근거한 심판청구 양식, 증명방법 및 납부를 필요로 하는 수수료
 - (xiic) 제117D조(1)에 근거하는 심판부에의 신청서 양식 및 이에 포함되어야 할 명세
 - (xiii) 정부에 의한 발명의 취득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
 - (xiv) 제125조(1)에 근거해 특허대리인 등록부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동조(2)에 근거해 컴퓨터용 플로피 디스크, 디스켓 또는 다른 전자 형식에 의한 해당 특허대리인 등록부의 유지관리상 준수해야 할 안전보호조치, 특허대리인 자격시험의 실시 및 불법행위를 위한 특허대리인에 대한 제재절차 집행을 포함하여 특허대리인의 업무 및 행위에 관련된 사항
 - (xv) 특허청에서 보관하는 명세서 및 기타 서류의 색인 및 초록의 작성, 인쇄, 발행 및 판매에 대한 규제 및 색인, 초록 및 기타 서류의 열람
 - (xvi) 규정해야 할 또는 규정할 수 있는 기타 사항
- (3) 동조에 근거해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이전 공시 후 제정되는 규칙의 조건에 따른다. 다만, 중앙정부는 이전 공시의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존재하는 것에 납득할 때에는 관련된 준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0조 (의회에 제출해야 할 규칙)

동법에 근거해 제정된 각 규칙은 제정 후 신속하게 개회 중인 의회의 각 원에 제출하여 총 30일의 기간 심의를 받도록 하며, 해당 기간은 1회기 또는 2 이상의 회기에 걸쳐 계속될 수 있고 규칙 제출 회기 직후의 회기 또는 전기 계속 중인 회기의 만료 전에 양원이 해당 규칙에 어떠한 수정을 하거나 해당 규칙을 제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에 합의했을 때에는 해당 규칙은 그 후 그와 같이 수정된 것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효력을 갖지 않는다. 다만, 어떠한 해당 수정 또는 무효도 해당 규칙에 근거해 이미 이루어진 사항의 효력을 해치지 않는다.

제161조 (1911년 법률 제2호에 근거해 거절된 것으로 본 일정한 출원에 관한 특칙) [삭제]

제162조 (특허에 관한 한 1911년 법률 제2호의 폐지 및 예외)

- (1) 1911년 인도 특허 및 디자인법은 그것이 특허에 관한 한 동법에 따라 폐지한다. 즉, 이전 법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지정한 방법에 따라 개정한다.
- (2)-(3) [삭제]
- (4) 동조에 말하는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폐지에 관한 1897년 일반조항법(1897년 법률 제10호)의 전반적 적용을 해치지 않는다.

- (5) 동법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 시 어느 법원에 계속 중인 특허의 침해소송 또는 특허의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동법이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계속 처리된다.

제163조 (1958년 법률 제43호의 개정) [삭제]

붙임 2 인도 상표법

인도 상표법(1999년 법률 제47호) 2010년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약칭, 적용지역 및 시행)

- (1) 동법은 1999년 상표법이라 칭한다.
- (2) 동법은 인도의 전 지역에 적용한다.
- (3) 동법은 중앙정부가 관보 고시에 의해 지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법의 다른 규정에 대해 다른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해당 규정에 있어서 동법의 시행이라고 할 때에는 해당 규정의 시행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및 해석)

- (1) 동법에서, 문맥상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 (a) '심판부'란 제83조에 의해 설치되는 심판부를 말한다.
 - (b) '양도'란 당사자의 행위에 의해 서면으로 하는 양도를 말한다.
 - (c) '연합상표'란 동법에 의거해 연합상표로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등록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상표를 말한다.
 - (d) '심판관'이란 심판부의 심판관을 말한다.
 - (e)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원산지, 원재료, 제조방법 또는 서비스의 품질, 정확도 및 기타 특징에 관해 표장의 소유자에 의해 증명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거래상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증거가 없는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표장으로, 제9장에 따라 해당 상품에 관한 증명표장의 소유자로서 그 자의 명의로 증명 표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 (f) '부장'은 심판 부장을 말한다.
 - (g) '단체표장'이란 표장의 소유자인 사람들의 단체(1932년 인도 파트너십법(Indian Partnership Act)상 조합을 의미하지 않음)의 구성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로부터 식별하기 위한 상표를 말한다.
 - (h) '유사'란 어떤 상표가 다른 상표와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상표는 다른 상표에 대해 유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 (i) '허위의 거래 표시'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 (I) 그것이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오류의 거래표시
- (II) 추가, 삭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그것이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거래 표시를 변경하고, 그 변경에 의해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오해시키게 되는 것
- (III) 그것이 사용되는 상품에 대해 상품의 표준 야드 또는 표준 미터 이상의 야드 또는 미터가 있음을 나타내거나 의미하는 거래 표시
- (IV)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의 포장 또는 포장의 배열이나 조합
 - (a) 그 제품이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생산물 또는 물건이라고 오인될 우려가 생기는 방법으로 제품에 사용되는 것
 - (b) 서비스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생기는 방법으로 서비스에 사용되는 것 또는
- (V) 이름 또는 명칭의 머리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명칭의 머리글자가 마치 거래 표시인 것 같은 방법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거짓 이름 또는 명칭의 머리글자
 - (a) 상표 또는 상표의 일부가 아닌 경우
 - (b) 동일한 종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쌍방에 대해 영업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 또는 명칭의 이니셜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하고 또한 그 사람이 그 명칭 또는 명칭의 머리글자의 사용에 대해 승인하지 않은 경우 및
 - (c) 가공자 또는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영업을 공정하게 관여하지 않은 자의 명칭 또는 명칭의 머리글자인 경우 또한 거래 표시가 상표 또는 상표의 일부라는 사실은 본법의 취지에 있어서 관련된 거래 표시가 허위의 거래 표시임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j) '상품'은 거래 또는 생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
- (k) '법무 심판관'은 동법에 따라 그 직에 임명된 심판부의 심판관을 말하며, 심판장 및 부심판장을 포함한다.
- (l) '제한'(문법적 변화를 포함)은 상표의 소유자로 등록에 의해 부여된 상표를 사용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며, 인도 내 또는 인도 국외에서 사용 양태 또는 분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제한을 포함한다.
- (m) '포장'은 도형, 브랜드, 제목, 라벨, 티켓, 이름, 서명, 말, 문자, 숫자, 상품의 형상, 포장, 색채의 조합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한다.
- (n) '심판관'은 심판부의 법무 심판관 또는 기술 심판관을 의미하며, 심판장 및 부심판장을 포함한다.
- (o) '명칭'은 약칭도 포함한다.

- (p) '공시'란 등록관에 의해 발행되는 상표 공보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q) '포장'은 케이스, 상자, 용기, 커버, 폴더, 저장장치, 그릇, 작은 상자, 병, 용지, 라벨, 띠, 가격택, 릴, 테두리, 캡슐, 칼집, 뚜껑, 마개 및 코르크를 포함한다.
- (r) '허가된 사용'이란 등록상표에 관한 다음의 상표의 사용을 말한다.
- (i)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에 대한 등록사용자에 의한 사용으로서,
 - (a) 거래 과정에 그 자가 관계할 것
 - (b) 그것에 대해 상표등록이 현재 존속하고 있는 것
 - (c) 그것에 대해 그 사람이 등록사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 및
 - (d) 등록사용자는 등록이 따라야 할 조건 또는 제한을 준수하는 것,
 - (ii) 다음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등록소유자 및 등록사용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사용
 - (a) 거래 과정에서 그 자가 관계할 것
 - (b) 그것에 대해 상표등록이 현재 존속하고 있는 것
 - (c) 해당 소유자의 계약에 의한 동의에 의한 것 및
 - (d) 등록사용자 및 상표 등록이 따라야 할 조건 또는 제한을 준수할 것
- (s) '소정의'란 동법에 따라 제정된 규칙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 (t) '등록부'는 제6조(1)에서 말하는 상표등록부를 말한다.
- (u) '등록된(그 문법적 변화를 포함)'은 동법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 (v) 상표에 관한 '등록 소유자'는 등록부에 상표의 소유자로서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 (w) '등록상표'는 등록부에 실제로 등록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상표를 말한다.
- (x) '등록사용자'는 제49조에 의해 사용자로서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 (y) '등록관'은 제3조에 의한 상표 등록관을 말한다.
- (z) '서비스'는 잠재적 사용자에게 이용 가능한 어떠한 서비스이며, 은행, 통신, 교육, 용자, 보험, chit funds(상호부조 금융 조직), 부동산, 수송, 저장, 소재 처리, 가공, 전기 그 외의 에너지 공급, 기숙, 하숙, 연예, 오락, 건축, 수리, 뉴스 또는 정보의 전달 및 광고 등의 공업적 또는 상업적 사항의 영업에 관련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한다.
- (za) '거래 표시'는 다음의 것에 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기술, 기재 또는 기타 표시를 말한다.
- (i) 상품의 수, 양, 치수, 용적 또는 중량
 - (ii) 거래에서 통상 이용되거나 인정되고 있는 분류에 따르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기준
 - (iii) 1940년 의약 및 화장품법(Drugs and Cosmetics Act)에 대해 정의된 '의약품' 또는 1954년 부정 식품 방지법(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에 대해 정의된 '식품'에 속하는 상품의 용도 적합성, 강도, 기능 또는 작용

- (iv) 상품 또는 서비스가 경우에 따라 제조, 생산 또는 제공된 장소, 국가 또는 시기
 - (v) 제조자, 서비스 제공자 또는 주문자의 명칭 및 주소 또는 기타 동일성에 관한 표시
 - (vi) 상품의 제조 또는 생산 방법 또는 서비스 제공의 방법
 - (vii) 상품을 구성하는 원재료 또는
 - (viii) 현존하는 특허권, 특권 또는 저작권의 대상인 상품
- 또한 다음의 표시를 포함한다.
- (a) 상관습에 의해서 앞의 것 중 어느 하나의 표시와 통상 생각되는 포장의 사용에 관한 표시
 - (b) 통관신고서 또는 적하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수입상품에 관한 표시
 - (c) 앞의 것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기타 표시
- (zb) ‘상표’는 도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며, 상품의 형상, 그 포장 및 색채의 조합을 포함하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i) 제XII장(제107조를 제외)의 규정에 관해서는 상품 또는 경우에 따라 서비스와, 소유자로서 그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 자 간에 존재하는 거래상 결합관계에 대해 표시하거나 표시하려는 목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해서 사용하는 등록상표 또는 포장
 - (ii) 동법의 다른 규정에 관해서는 상품 또는 경우에 따라 서비스와, 소유자로서 또는 허락 사용의 방법으로 해당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 자 간에 존재하는 거래상의 결합관계에 대해서 그 자의 동일성의 표시 여부에 관계없이 표시 또는 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해서 사용 또는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표장으로, 등록상표 또는 단체상표를 포함한다.
- (zc) ‘이전’은 법의 시행에 의한 이전, 사망자의 인격대표자에 의한 상속 및 기타 방식으로의 이전으로, 양도가 아닌 것을 말한다.
- (zd) ‘기술심판관’은 법무심판관이 아닌 심판관을 말한다.
- (ze) ‘심사심판장’은 해당 사건의 절차가 계속 중인 등록관 또는 경우에 따라 심판부를 말한다.
- (zf) ‘부심판장’은 심판부의 부심판장을 말한다.
- (zg)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해서 ‘주지상표’는 해당 상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받는 공중의 실질적인 수요자 대부분에게 주지된 표장으로,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해당 표장의 사용이 이들 상품 또는 서비스와 최초로 기술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해 해당 표장을 사용하는 자 간에 거래과정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있어서 결합관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생각될 우려가 있는 표장을 말한다.
- (2) 동법에서 문맥상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 (a) ‘상표’라고 할 때는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도 포함한다.

- (b) 표장의 사용이라고 할 때에는 표장이 인쇄된 표시 또는 다른 시각적인 표시의 사용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 (c) 표장의 사용이라고 할 때는,
 - (i) 상품에 관해서는 물리적 관계인지 또는 기타 어떠한 관계인지를 불문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 (ii) 서비스에 관해서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제공 또는 실시에 대한 기술 또는 그 일부로서의 해당 표장의 사용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 (d) 등록관은 제3조(2)에 의해 등록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 (e) 상표등록국은 상표등록청의 지국을 말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 (3) 동법의 적용상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동일 영업에 있어서 판매 혹은 그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 서비스가 동일 영업에 의해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상품표시 및 서비스 표시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 (4) 동법의 적용상 '현존하는 등록상표'란 동법 시행 직전인 1958년 상표법(Trade and Merchandise Marks Act 1958)에 의거해 등록된 상표를 말한다.

제2장 상표등록부 및 등록조건

제3조 (상표등록관 및 기타 직원의 임명)

- (1) 중앙정부는 관보 고시에 의해 특허디자인상표청장을 임명하고, 그 자는 동법의 적용상 상표 등록관으로 한다.
- (2) 중앙정부는 상표등록관의 지휘감독 하에 동법에 의거한 등록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직원을 임명하고, 등록관은 해당 직원에 대해 그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수시로 부여한다.

제4조 (등록관의 사건 철회 또는 이전 등의 권한)

제3조(2)항 규정의 원칙을 해치지 않고, 상표등록관은 서면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그 이유를 기재하여 제3조(2)에 의해 임명된 직원에게 계속 중인 사항을 취하하고, 스스로 해당 사안을 처음부터 혹은 해당 사안을 그렇게 취하한 단계로부터 취급하거나, 그렇게 임명된 기타 직원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해당 기타 직원은 해당 이전명령에 있어서 특별한 지시에 따라 처음부터 혹은 그렇게 이전된 단계부터 해당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상표등록청 및 그 지국)

- (1) 동법의 적용상 상표등록청을 설치하고, 1958년 상표법에 근거해 설치된 상표등록청을 동법에 따른 상표등록청으로 한다.
- (2) 상표등록청의 본부는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상표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해 중앙정부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상표등록국의 지국을 설치한다.
- (3) 중앙정부는 관보 고시에 의해 상표등록청의 지국이 그 업무를 집행하는 관할 지역을 정한다.
- (4) 상표등록청의 공인을 둔다.

제6조 (상표등록부)

- (1) 동법의 적용상 상표등록부라고 부르는 기록을 상표등록청의 본부에 보관하고, 이 상표등록부에는 소유자의 명칭, 주소 및 표시, 양도 및 이전의 신고, 등록사용자의 명칭, 주소 및 표시와 등록상표에 관한 소정의 조건, 제한 및 기타 사항을 기재하여 모든 등록상표가 등록된다.
- (2) (1)에 관계없이, 등록관이 소정의 안전보호장치에 따라 해당 기록의 전부 혹은 일부를 컴퓨터용 플로피 디스크, 디스켓 또는 다른 전자형식으로 보관하는 것은 적법하다.
- (3) 등록부가 (2)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가 컴퓨터에 보존되는 경우, 동법상 등록부예의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또는 다른 전자형식으로 보존된 등록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 (4) 신탁에 관한 통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지, 묵시적 혹은 추상적인지를 불문하고 이것을 상표등록부에 등록하지 않는다. 또 신탁에 관한 통지는 상표등록관에게 수리하지 않는다.
- (5) 상표등록부는 등록관의 관리 및 통제 하에 보관된다.
- (6) 등록부의 부분 및 제148조에서 말하는 기타 서류로 중앙정부가 관보 고시에 의해 지시하는 것의 부분을 상표등록청의 각 지국에 보관한다.
- (7) 동법의 시행 시에 현존 상표등록부는 A부 및 B부 모두 동법상 등록부에 합쳐 그 일부를 구성한다.

제7조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

- (1) 등록관은 가능한 한 상표등록을 위해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를 분류한다.
- (2) 상품 또는 서비스의 해당하는 종류에 관해서 의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최종결정권을 갖는 등록관이 결정한다.

제8조 (알파벳 순서 색인의 공고)

- (1) 등록관은 소정의 방법에 의해 제7조에서 말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에 대한 알파벳 순서 색인을 공고한다.

- (2) (1)에 의해 공고된 상품 및 서비스의 알파벳 순서 색인에서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에 대해서는 등록관이 제7조(2)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제9조 (등록거절의 절대적 사유)

- (1) 다음의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 (a) 식별력이 없는 상표, 즉 어떤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식별할 수 없는 것
- (b) 거래상 상품의 종류, 품질, 수량, 의도하는 목적, 가치, 원산지, 해당 상품의 생산 시기나 해당 서비스의 제공 시기 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타 특성을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장 또는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
- (c) 현행 언어에 있어서 또는 공정한 확립된 거래 관행에 있어서 관습적인 된 표장 또는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

다만, 상표는 등록출원일 전에 그것의 사용 결과로서 식별력을 획득하고 있는지 또는 주지상표일 때에는 등록이 거절되지 않는다.

- (2) 표장은 다음의 경우, 상표로서 등록되지 않는다.

- (a) 공증을 오인시키거나 혼동을 시키는 내용인 경우
- (b) 인도 국민의 계급이나 종파의 종교적 감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서 비록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
- (c) 중상적 혹은 외설적 내용으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 (d) 그 사용이 인도의 1950년 엠블럼명칭법(부정사용방지법)(Emblems and Names (Prevention of Improper Use) Act)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

- (3) 다음의 것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표장은 상표로서 등록되지 않는다.

- (a) 상품 자체의 내용에서 유래한 상품의 형상
- (b) 기술적 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형상
- (c) 상품에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형상

제10조 (색채의 제한)

- (1) 상표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2 이상의 색채의 어떠한 조합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제한에 대해서는 상표의 식별력을 결정해야 하는 심판위원회에 의해 참작된다.
- (2) 상표가 색채의 제한 없이 등록되는 한, 모든 색채에 대해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등록거절의 상대적 사유)

- (1) 제12조를 제외하고, 상표는 다음의 경우 등록받을 수 없다.

- (a) 선행 상표와 동일성 및 해당 상표가 적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사성으로 인해
 (b) 선행 상표와 그 유사성 및 해당 상표가 적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으로 인해
 공중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존재하고, 그것이 앞의 상표와 관련된 우려를 포함할 때.
- (2) 상표로서
- (a) 선행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b) 다른 소유자의 명의로 선행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등록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행 상표가 인도에서 주지상표이며, 이후의 표장의 사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행 상표의 식별력 또는 평판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그것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그 범위까지 등록되지 않는다.
- (3) 상표는 다음의 법률에 따라 인도에서의 그 사용을 금지해야 할 때에는 또는 그 범위까지 등록되지 않는다.
- (a) 업으로서 사용되는 미등록상표를 보호하는 법률(특히, 사칭 통용에 관한 법률)
 (b) 저작권법
- (4) 동조는 선행 상표권자 또는 다른 선행 권리소유자가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상표 등록을 일체 방해하지 않는다. 이 경우 등록관은 제12조에 의한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서 해당 표장을 등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해당 표장을 등록할 수 있다.
- (5) 상표는 (2) 및 (3)에 규정된 이유의 1 또는 2 이상에 관한 거절 이유가 이의절차에서 선행 상표의 소유자에 의해 제기되지 않는 한, 상기 규정의 이유에 따라서는 등록이 거절되지 않는다.
- (6) 등록관은 상표가 주지상표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표를 주지상표로서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등록관이 인정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참작하여야 한다.
- (i) 해당 상표의 사용 촉진의 결과로 얻은 인도에서의 지식을 포함하여 공중의 관계 계층에서 해당 상표에 대한 지식 또는 인식
 (ii) 해당 상표의 사용에 대한 기간, 범위 및 지역
 (iii) 해당 상표가 적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박람회 또는 전시회서의 광고 또는 선전 및 소개를 포함하여 해당 상표의 사용 촉진에 대한 기간, 범위 및 지역
 (iv) 동법에 근거해 해당 상표의 등록 또는 등록출원에 대한 기간 및 지역에 있어서 해당 상표의 사용 또는 인식을 반영하는 범위
 (v) 해당 상표에 관한 각종 권리의 성공적 집행기록, 특히 해당 상표가 해당 기록에 근거하여 법원 또는 등록관에 의해 주지상표로서 인식된 범위
- (7) 등록관은 상표가 (6)의 적용상 공중의 관계 계층에서 주지되거나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를 결

- 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야 한다.
- 해당 상표가 적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 (i) 실제 또는 잠재적인 소비자 수
 - (ii) 유통경로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
 - (iii)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취급하는 업계
- (8) 상표가 법원 또는 등록관에 의해, 인도 내 일정범위의 관련 수요자간에 주지하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다면, 등록관은 해당 상표를 동법에 의거한 등록에 있어 주지상표라고 인정해야 한다.
- (9) 등록관은 상표가 주지상표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것도 조건으로서 요구할 수 없다.
- (i) 해당 상표가 인도에서 사용 중인 것
 - (ii)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 있을 것
 - (iii) 해당 상표의 등록이 인도에서 출원되어 있을 것
 - (iv) 해당 상표가,
 - (a) 인도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거나
 - (b) 인도에서 등록되어 있을 것
 - (c) 인도에서 이루어진 등록출원에 대해 인도 이외의 관할권 하에 있는 것
 - (v) 해당 상표가 인도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것
- (10) 상표 등록출원 및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등록관은,
- (i)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해 주지상표를 보호해야 하며,
 - (ii) 상표권에 영향을 미치는 출원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포함된 불성실을 참작해야 한다.
- (11) 상표가 등록관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여 공정하게 등록된 경우 또는 상표에 대한 권리가 동법의 시행 전에 선의의 사용을 통해 취득된 경우, 동법은 해당 상표가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해당 상표 등록 또는 해당 상표 사용의 권리의 유효성을 일절 해치지 않는다.

제12조 (선의의 경합 사용 등의 경우의 등록)

선의의 경합 사용의 경우 또는 등록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등록관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해당 상표의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2명 이상의 상표의 소유자에 의한 등록에 대해서 등록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및 제한이 있으면 그것을 교부하고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 (화학원소의 명칭 및 국제적 비상표권 명칭의 등록 금지)

다음의 경우는 상표로서 일절 등록되지 않으며, 이러한 등록에 대해서는 제57조의 적용상 상황에서 필요한 충분한 이유가 없는 등록 또는 오인되어 존속되고 있는 등록으로 간주한다.

- (a) 화학물질 또는 조제품과 관련된 단일 화학원소 또는 단일 화합물(혼합물과는 구별됨)에 대해 보통 사용되고 인정되고 있는 명칭인 단어 또는
- (b)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국제적 비상표권 명칭으로 선언되어 등록관에 의해 소정의 방법으로 수시로 공고되는 명칭 또는 상기 명칭과 유사한 단어

제14조 (현존자 또는 최근 사망자의 명칭 및 초상의 사용)

현존하는 자 또는 상표 등록출원일 전 20년 이내에 사망한 자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암시를 주는 상표의 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등록관은 그 출원 처리 전에 해당 상표에 나타나는 관계에 대해 그 현존자 또는 경우에 따라 그 사망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의 동의서 제출을 출원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출원인이 등록관에 대해 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해당 출원 처리를 거절할 수 있다.

제15조 (상표의 부분 등록 및 연속상표의 등록)

- (1) 상표의 소유자가 상표의 일부를 분리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분리상표로서 등록출원할 수 있다.
- (2) 각 분리상표는 독립된 상표에 적용되는 모든 조건 및 독립된 상표의 모든 부대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3)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복수의 상표에 대해 본질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하지만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는 상이한 상표에 대해 그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들의 등록을 받으려고 할 경우, 연속상표로서 1건에 의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 (a) 각 개별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표시
 - (b) 수, 가격, 품질 또는 산지명의 표시
 - (c) 상표의 동일성에 본질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는 비식별력의 기타 사항
 - (d) 색채

제16조 (연합상표의 등록)

- (1) 어떠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 중인 상표가 동일 또는 동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 소유자 명의의 다른 등록상표나 등록출원 중인 상표와 동일하거나 소유자 이외의 타인이 사용하면 오인 또는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한

경우, 등록관은 언제라도 해당 상표를 연합상표로서 등록해야 한다는 취지의 명령을 할 수 있다.

- (2) 동일 소유자의 명의로, 전항에서 말하는 동일 또는 동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출원 중인 복수 표장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존재하는 경우, (1)은 동일 또는 동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동일 소유자 명의로 등록되거나 등록출원 중인 복수의 표장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존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3) 상표 및 상표의 일부가 제15조(1)의 규정에 따라 동일 소유자의 명의로 분리상표로 등록된 경우, 그러한 상표는 연합상표로 보고, 연합상표로 등록된다.
- (4) 제15조(3)의 규정에 따라 연속상표로서 1건에 의해 등록된 모든 상표는 연합상표로 보고, 연합상표로서 등록된다.
- (5) 연합상표로서 등록된 2 이상의 상표의 등록소유자에 의해 소정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신청에 의해 등록관은 지정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쌍방 모두 해당 상표가 몇 명에 의해 사용되더라도 오인 또는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납득한 경우, 해당 연합을 해제하고, 이에 따라 등록부를 보정할 수 있다.

제17조 (상표 부분의 등록 효과)

- (1) 상표가 복수의 사항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등록은 소유자에게 해당 상표 전체로서 사용의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상표가,
 - (a) 어떠한 부분을 포함하고, 그것이
 - (i) 소유자에 의한 상표로서 등록하기 위한 분리 출원의 주제가 아닌지
 - (ii) 소유자에 의해 상표로서 분리하여 등록되지 않은 부분인 경우 또는
 - (b) 상표가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사항 또는 식별력이 없는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그 등록은 그 등록상표 전체의 일부만을 구성하는 사항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3장 등록 절차 및 존속기간

제18조 (등록출원)

- (1) 자기가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상표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소정의 방법에 따라 서면으로 등록관에 대해 상표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 (2) 다른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상표 등록에 대해 단일 출원을 할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해 납부를 필요로 하는 수수료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각 종류당 부과된다.

- (3) (1)에 의한 각 출원은 출원인의 인도 내 주영업소 소재지 또는 공동 출원인 경우 인도 내 영업소가 있다고 하여 출원서에 필두로 기재되어 있는 출원인의 주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상표등록청의 지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출원인 또는 공동출원인이 인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출원서에 기재된 인도에서 송달 수신지를 관할하는 상표등록청의 지국에 제출해야 한다.
- (4) 동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등록관은 출원을 수리하지 않거나 무조건적으로 혹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보정, 변경, 조건 또는 제한(있는 경우)을 붙여 이것을 수리할 수 있다.
- (5) 출원의 불수리 또는 조건부 수리의 경우, 등록관은 해당 불수리 또는 조건부 수리의 이유 및 그 결정에 이용한 자료를 서면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19조 (수리의 취하)

상표의 등록출원 수리 후 그 등록 전에 등록관에 있어서

- (a) 해당 출원이 잘못 수리된 것인 것 또는
- (b) 상표를 불등록해야 하는 상황이나 조건 또는 제한을 붙이거나 해당 출원을 수리한 때에 따라야 하는 해당 조건 또는 제한에 대해 부가적이거나 다른 조건 혹은 제한을 붙여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에 대해 납득할 때에는 등록관은 희망할 경우 출원인을 청문한 후, 해당 수리를 취하할 수 있으며, 해당 출원을 수리하지 않았을 경우와 동일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 (출원 공고)

- (1) 상표등록출원이 무조건으로 또는 조건부나 제한부로 수리되었을 경우, 등록관은 수리 후 신속하게 해당 출원의 수리를 그 수리시에 붙여진 조건 또는 제한(있는 경우)과 함께 소정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다만, 출원이 제9조(1) 및 제11조(1) 및 (2)가 적용되는 상표에 관한 경우 또는 특별한 상황에 의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관은 수리하기 전에 해당 출원을 공고할 수 있다.

(2) 등록관은

- (a) 출원이 (1)에 의해 수리 전에 공고되었을 때
- (b) 출원의 공고 후에
 - (i) 출원서의 오기가 정정되거나
 - (ii) 제22조에 의해 출원서의 보정이 인정되었을 때에는

자기의 재량에 의해 출원의 재공고를 할 수 있거나 (b)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의 재공고에 갈음하여 해당 출원에 대해 이루어진 정정 또는 보정을 소정의 방법에 의해 공고할 수 있다.

제21조 (등록이의신청)

- (1) 누구든지 등록출원의 공고 또는 재공고가 있던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소정의 방법에 의해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서면으로 등록관에 대해 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 등록관은 등록출원인에 대해서 이의신청서 부분을 송달해야 한다. 출원인은 이의신청서 부분의 송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정의 방법에 의해 자기의 출원을 이유 있는 것으로 하는 답변서를 등록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출원인이 해당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3)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등록관은 그 부분을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 (4) 이의신청인 및 출원인은 증거가 있을 경우, 소정의 방법에 의해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관에게 그것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관은 그들이 희망할 경우, 그들에게 청문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 (5) 등록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의 청문 및 증거 조사 후에 등록의 여부 및 등록에 대한 조건 혹은 제한(있는 경우)을 결정해야 한다. 등록관은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않는 이의 사유에 대해서도 참작할 수 있다.
- (6) 이의신청인 또는 이의신청서의 부분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한 출원인이 인도에 주소지를 갖고 있지 않으며 영업도 하지 않는 경우, 등록관은 등록관에 대한 절차 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담보가 지체 없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등록관은 해당 이의신청 또는 경우에 따라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서 취급할 수 있다.
- (7) 등록관은 청구가 있으면 이의신청서 또는 답변서에 대한 오기의 정정 또는 보정을 등록관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

제22조 (정정 및 보정)

등록관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여, 제18조에 의한 등록출원의 수리 전 또는 수리 후 언제든지 출원 중 혹은 그와 관련한 오기의 정정 또는 출원의 보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2)에 의한 단일 출원에 대한 보정이 되고, 그것이 해당 출원의 2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되는 경우, 최초 출원일을 그렇게 분할한 분할출원일로 본다.

제23조 (등록)

- (1)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 등록출원이 수리된 경우,
 - (a) 이의신청 없이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 혹은
 - (b)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별도 명령이 없는 한, 등록관은 출원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해당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상표는 전기 출원일자로 등록되며, 해당 일자를 제154조의 규정에 따

- 르는 것으로 조건으로 등록일로 본다.
- (2) 상표가 등록된 경우, 등록관은 출원인에 대해 상표등록청의 공인을 날인한 소정의 양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한다.
 - (3) 상표등록이 출원인의 태만에 의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등록관은 소정의 방법에 의해 출원인에게 통지 후, 해당 통지에 지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 (4) 등록관은 오기 또는 분명한 착오를 정정하기 위해서 등록부 또는 등록증을 보정할 수 있다.

제24조 (공유 상표)

- (1) (2)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은 상표를 독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2 이상의 자의 등록을 공유자로서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
- (2) 1 상표에 이해관계가 있는 2 이상의 자 간의 관계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기와 다른 1인 또는 2 이상의 타인 간의 관계처럼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나,
 - (a) 양자 또는 전원을 위해서 또는
 - (b) 양자 또는 전원이 거래상 관계가 있는 물품 혹은 서비스에 관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관계일 경우,
 그들은 공유자로서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동법은 그들에게 부여된 상표를 사용할 권리에 대해서 해당 권리가 1인에게 부여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제25조 (등록의 존속기간, 갱신, 말소 및 회복)

- (1) 동법의 시행 후 상표 등록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동조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간을 수시로 갱신할 수 있다.
- (2) 상표의 등록 소유자가 소정의 방법에 의해 소정의 기간 내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 갱신 신청을 한 경우, 등록관은 원등록의 기간 만료일 또는 마지막 등록갱신 기간 만료일(이날을 동조에 있어 최종 등록 기간 만료일이라고 한다)로부터 10년간 상표등록의 존속기간을 갱신한다.
- (3) 상표의 최종 등록기간 만료일 이전 소정의 기간에 등록관은 등록 소유자에 대해 해당 만료일, 등록 갱신 수수료의 지불 조건 및 그 외의 조건을 소정의 방법에 의해 통지해야 한다. 소정의 기간 만료시에 그러한 조건이 적법하게 충족되지 않은 경우, 등록관은 해당 상표를 등록부에서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이 소정의 양식으로 이루어지며 소정의 수수료 및 할증 수수료가 해당 상표의 최종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된 경우, 등록관은 해당 상표를 등록부에서 말소하지 않고, (2)에 의해 10년간 상표 등록의 존속기간을 갱신한다.
- (4) 등록관은 상표가 소정의 수수료 불납으로 인해 등록부에서 말소된 경우, 상표의 최종 등록기

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및 1년 이내에 소정의 방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소정의 수수료를 수리하고 적절하다고 납득한 경우, 등록부에 해당 상표를 회복시켜 해당 상표의 등록에 대해서 평상시와 같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혹은 제한을 붙여 최종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간 갱신할 수 있다.

제26조 (갱신수수료 불납에 의한 등록 말소 효과)

상표가 갱신수수료의 불납으로 인해 등록부에서 말소된 경우에도 말소일로부터 1년간은 다른 상표 등록출원과의 관계에서는 등록상표인 것으로 본다. 다만, 심판위원회가 다음에 해당한다고 납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a) 말소된 상표에 대해 그 말소 직전 2년간 성실하게 업으로서의 사용이 없었던 경우
- (b) 말소된 상표가 종전에 사용되고 있었다는 이유로 등록출원의 대상인 상표의 사용으로부터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경우

제4장 등록의 효과

제27조 (미등록상표의 침해에 대한 소송 불능)

- (1) 누구든지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침해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2) 동법의 어떤 규정도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타인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와 사칭 통용시키는 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 또는 그것에 관한 구제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8조 (등록에 의해 부여된 권리)

- (1) 동법의 다른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상표등록이 유효할 경우 상표의 등록 소유자에 대해 상표등록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배타적 사용의 권리 및 해당 상표의 침해에 관한 구제를 동법에 규정의 방법에 의해 취득한 배타적 권리가 부여된다.
- (2) (1)에 따른 상표의 배타적 사용의 권리는 그 등록에 부가된 조건 또는 제한에 따른다.
- (3) 2명 이상의 자가 동일하거나 상호 유사한 상표의 등록소유자인 경우, 이들 중 누구의 배타적 사용 권리는(이들 각자의 상표권이 상표등록부에 등록될 때 붙여진 조건 또는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상표의 등록만으로는 그 중 다른 자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어느 1명에 의해 취득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이들 각자는 단독 등록소유자가 갖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다른 사람(허락사용에 의한 등록사용자를 제외)에 대해 갖는 것으로 본다.

제29조 (등록상표의 침해)

- (1) 등록상표는 등록소유자가 아닌 자 또는 허락 사용에 의한 사용자가 아닌 자로,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상표등록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해당 표장의 사용을 상표로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방법에 의해 업으로서 사용하는 자에 의해 침해로 된다.
- (2) 등록상표는 등록소유자가 아닌 자 또는 허락 사용에 의한 사용자가 아닌 자가 업으로서 표장을 사용하고, 그 표장이 다음의 이유에 의해 공중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등록상표와의 관련성을 가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침해로 된다.
 - (a) 등록상표와의 동일성 및 해당 등록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사성
 - (b) 등록상표와의 유사성 및 해당 등록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또는
 - (c) 등록상표와의 동일성 및 해당 등록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동일성
- (3) (2)(c)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공중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추정한다.
- (4) 등록상표는 등록소유자가 아닌 자 또는 허락사용에 의한 사용자가 아닌 자가 업으로서 표장을 사용하고, 그것이 다음 표장인 경우에는 침해로 된다.
 - (a)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
 - (b)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해 사용된 표장 및
 - (c) 등록상표가 인도에서 평판이 높고, 정당한 이유 없는 표장의 사용이 해당 등록상표의 식별력 혹은 평판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이를 훼손하는 표장
- (5) 등록상표는 해당 등록상표를 자기의 상호 혹은 상호의 일부로서 또는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를 취급하는 회사의 회사명 혹은 회사명의 일부로서 사용하는 자에 의해 침해로 된다.
- (6) 동조의 적용상 어떤 자는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 (a) 상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부착하는 경우
 - (b) 등록상표 하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신청, 전시하고, 시장에 내놓고, 그러한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태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 (c) 상표 하에서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 (d) 등록상표를 영업 문서 또는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 (7) 등록상표는 해당 등록상표를 영업 문서로서 상품에 부착하거나 상품을 포장하기 위해 또는 서비스 광고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도하는 재료에 사용하는 자에 의해 침해로 된다. 다만, 그 자가 해당 표장의 사용 시에 해당 표장의 적용이 소유자 또는 서비스에 의해 정당하게 수권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그것을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 (8) 등록상표는 다음의 경우 해당 상표의 광고에 의해 침해로 된다.
 - (a) 공업 또는 상업사항에서의 공정한 관행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그것에 반하는 광고

- (b) 그 식별력을 해치는 광고 또는
 - (c) 해당상표의 평판에 반하는 광고
- (9) 등록상표의 식별력 요소가 단어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 상표는 이들 단어의 구두 사용 및 시각적 표현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에 있어, 동조에 있어서 표장의 사용이라고 할 때에는 그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제30조 (등록상표의 효력 한계)

- (1) 제29조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유자의 것으로 특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누군가에 의한 등록상표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일절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사용이
- (a) 공업 또는 상업사항의 공정한 관행에 따르는 사용이며,
 - (b)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평판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그것을 훼손할 정도의 사용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한다.
- (2) 등록상표는 다음의 경우,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 (a)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사용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의도하는 목적, 가격, 원산지, 상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의 시기 또는 그 외의 특성을 표시하는 경우
 - (b) 조건 또는 제한을 붙여 상표가 등록되어 있으며, 어느 장소에서 판매, 기타 거래된 상품에 대해서 어느 시장에 대해 수출된 상품에 대해서, 인도 국외 어느 장소 또는 국가에서 이용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또는 이들 조건 혹은 제한을 감안하여 등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상황 하에서 어떤 방법에 의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 (c) 상표의 사용이 다음의 각목과 같은 경우
 - (i) 상표의 소유자 또는 등록사용자와 거래상 관계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 등록 소유자 또는 허락된 사용 방법에 따른 등록사용자가 그 상품 또는 그것이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에 관한 상표를 적용하고, 그 후 그것을 말소 혹은 삭제하지 않았는지 또는 언제라도 해당 상표의 사용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경우
 - (ii) 상기 상표의 소유자 또는 허락된 사용 방법에 따른 등록사용자가 상표를 적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해당 상표 사용 목적 및 효과가 이들 서비스가 소유자 또는 등록사용자에 의해 실시된 것을 사실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 (d) 동법에 근거해 등록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상표가 사용되었거나 당장 사용되어야 하는 다른 상품 혹은 서비스의 일부를 형성하는데 적합하거나 그것에 부속되기에 적합한 상품에 대해 해당 상표의 사용이 상품 혹은 서비스가 그와 같이 적합함을 표시하는데 합리적으로 보아 필요하고 해당 상표의 사용 목적 및 효과가 사실에 따르지 않고 누군가와 해당 상품 또는 경우에 따라 서비스와의 거래상의 관계를 표시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표시하는 것이 아닌 경우

- (e) 동법에 근거해 등록된 2 이상의 동일 또는 상호 유사한 상표 중 한 상표의 1을, 동법에 근거한 등록에 의해 부여된 해당 상표 사용의 권리로서 행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 (3)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누군가에 의해 합법적으로 취득된 경우, 해당 상품을 취득한 자 또는 그 자의 지시에 의해 혹은 그 자를 소개해 해당 상품을 취득한 자에 의한 해당 상품의 시장에서의 판매 기타 거래는 다음 이유에 있어서는 해당 상표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 (a) 해당 상품의 취득 후에 해당 상표가 등록 소유자로부터 다른 자에게 양도된 경우
- (b) 해당 상품이 소유자에 의해 또는 그 동의를 얻어 등록상표 하에 시장에 유통된 경우
- (4) (3)은 소유자가 해당 상품의 추가 거래에 반대하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특히 상품 상태가 시장에 나온 후 변화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1조 (효력의 일응 증거로 되는 증거)

- (1) 동법에 근거해 등록된 상표에 관한 모든 법적 절차(제57조에 의한 신청을 포함)에 있어, 상표의 원등록 및 그 후의 상표의 양도 및 이전의 등록은 그 효력의 일응의 증거가 된다.
- (2) 앞의 모든 법적 절차에서 등록상표에 대해서는 해당 상표가 등록소유자 또는 그 전권리자(前權利者)에 의해 사용되어 온 것으로 등록일에 이미 식별력을 가졌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 식별력의 증거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상표가 제9조에 의해 등록될 수 있는 상표가 아니라 하는 점 및 식별력에 관한 증거가 등록 전에 등록관에 대해서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제32조 (식별력 이유에 의한 등록의 보호)

제9조(1)에 위반하여 상표가 등록된 경우, 그 사용의 효과로서 등록 후 해당 등록의 효력을 다투는 법률절차 개시 전에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해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해당 등록은 무효로 선정되지 않는다.

제33조 (묵인의 효과)

- (1) 선행 상표의 소유자가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해서 그 사용을 알면서도 연속해서 5년간 묵인한 경우, 그 자는 해당 선행 상표에 근거한 다음의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 (a) 후행 상표의 등록이 무효라는 취지의 선언을 신청하는 경우
- (b) 그와 같이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후행 상표의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다만, 해당 후행 상표의 등록이 선의로 출원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1)이 적용된 경우, 후행 상표의 소유자는 선행 상표를 자기의 후행 상표에 대해 더 이상 원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상표의 사용 또는 경우에 따라 선행 권리의 이용에 대해 이의 제기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제34조 (기득권에 대한 예외)

동법의 어떤 규정도 등록상표의 소유자 또는 등록사용자에 대해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있는 자에 의한 사용으로, 다음 날 중 빠른 날 전부터 그 자 또는 그 자의 전권리자가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상품 혹은 서비스에 관한 사용에 대해 이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권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 (a) 소유자 또는 그 전권리자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최초로 언급한 상표가 등록된 날
- (b) 소유자 또는 그 전권리자의 명의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최초로 언급한 상표가 등록된 날

또한 등록관은(그 사용이 입증되었을 때는) 최초로 언급된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선사용에 관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제35조 (명칭, 주소 또는 상품 혹은 서비스 표시 사용에 대한 예외)

동법의 어떤 규정도 등록상표의 소유자 또는 등록사용자에 대해서 누군가에 의한 자기의 명칭 혹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자기의 영업 전주인의 명칭 또는 영업소의 명칭의 선의의 사용 또는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 또는 품질 표시의 선의의 사용을 방해하는 권원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36조 (물품이나 물질 또는 서비스의 명칭 또는 표시로 사용된 단어에 대한 예외)

- (1) 상표등록은 해당 상표가 물품이나 물질 또는 서비스의 명칭 또는 표시로서 포함하거나 그로부터 구성되는 단어 혹은 복수 단어의 등록일보다 후의 사용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보지 않는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의 규정이 적용된다.
 - (a) 상기 단어가 해당 장소에서 거래를 하는 자에 의해 그 물품이나 물질 또는 서비스의 명칭 또는 표시로서 주지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며, 상표의 소유자 또는 등록사용자와의 거래상 관계가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증명표장의 경우) 소유자에 의해 증명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
 - (b) 그 물품 또는 물질이 특허권에 근거하여 생산된 것, 해당 특허권의 소멸 후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것, 상기 단어가 그 물품 또는 물질의 실용상 유일한 명칭이거나 표시인 경우
- (2) (1)의 단서(a) 또는 (b)에서 말하는 사실이 어떠한 단어에 대해 입증된 경우
 - (a) 제57조에 의한 절차의 목적에서는 해당 상표가 전기의 단어로만 이루어진 경우, 해당 물품 혹은 물질 또는 동종의 상품 또는 경우에 따라 서비스나 동종의 서비스에 관한 등록에 관한 한 그 상표 등록은 등록부에 부정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b) 그 상표에 관한 기타 법률 절차의 목적에서는
 - (i) 해당 상표가 전기의 단어로만 이루어진 경우, 동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소유자의 상

표를 사용하는 모든 권리

- (ii) 해당 상표가 상기 단어 외의 다른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의 상기 단어를 사용하는 모든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이나 물질 또는 동종의 상품 또는 경우에 따라 서비스 또는 동종의 서비스에 관해서, (1)단서(a)에서 말하는 사용이 처음으로 주지되어 확립된 날 또는 상기 단서(b)에서 말하는 2년의 기간 만료일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4A장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에 의한 상표 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36A조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 시의 법의 적용)

동장의 규정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및 국제등록에 적용된다.

제36B조 (정의)

- (a) 체약국 또는 체약기관에 관한 ‘출원’이란 해당 체약국이나 경우에 따라 해당 체약기관의 구성원인 국가에서 국적이나 주소를 가지거나 진정한 현실의 공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가 있는 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출원을 말한다.
- (b) ‘기초출원’이란 제18조에 기초한 국제등록출원의 기초로 사용되는 상표의 등록출원을 말한다.
- (c) ‘기초등록’이란 제23조에 기초한 상표등록으로, 국제등록출원의 기초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 (d) ‘공통규칙’이란 마드리드 의정서의 실시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 (e) ‘체약기관’이란 정부간기관인 체약 당사국을 말한다.
- (f) ‘체약당사국’이란 마드리드 의정서의 당사자인 체약국 또는 체약기관을 말한다.
- (g) ‘체약국’이란 마드리드 의정서의 가맹국인 국가를 말한다.
- (h) ‘국제출원’이란 국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으로부터 발생하는 보호체약당사국에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확장을 말한다.
- (i) ‘국제사무국’이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국제사무국을 말한다.
- (j) ‘상표의 국제등록’이란 마드리드 의정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국제사무국의 등록부에 있어서의 상표등록을 말한다.
- (k) ‘마드리드 협정’이란 1891년 4월 14일에 마드리드에서 채택된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으로, 후에 수정 및 개정된 것을 말한다.
- (l) ‘마드리드 의정서’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의 1989년 6월 27일 마드리드에서 채택된 의정서로서 수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36C조 (국제출원을 취급하는 상표등록국)

제5조(3)에 포함된 사항과 관계없이 국제출원은 상표등록국의 본국 또는 중앙정부가 관보 고시에 의해 지정한 지국에 의해 취급된다.

제36D조 (인도를 본국으로 하는 국제출원)

- (1) 제18조에 기초하여 상표의 등록출원이 이루어졌거나 제23조에 기초하여 상표가 등록된 경우, 출원인 또는 등록소유자는 해당 상표의 국제등록을 위하여 공통규칙에 따라 정해진 양식으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 (2) 국제등록소유자는 해당 등록으로부터 발생하는 보호의 어느 다른 계약당사국으로의 확장을 위해 공통규칙에 의해 정해진 양식으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 (3) (1) 또는 (2)에 기초한 국제출원에는 국제등록으로부터 발생하는 보호가 요구되는 체결당사국을 지정한다.
- (4) 등록관은 국제출원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제18조에 기초한 출원 또는 제23조에 기초한 등록에 있어서 인증 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대응하는 것을 소정의 방법으로 인증하고, 해당 출원일 및 번호 또는 해당 등록일 및 번호와 경우에 따라 해당 등록이 발생한 출원일 및 번호를 표시하고, 등록을 위해 국제출원을 국제출원일도 표시하여 국제사무국에 소정의 기간 내에 송부한다.
- (5) 국제등록의 5년 기간 만료 전 언제라도 해당 등록이 다인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제18조에 기초한 출원 또는 경우에 따라 제23조에 기초한 등록이 국제등록에서 일람(一覽)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취하되거나 취소되었거나 만료되었거나 최종적으로 거절된 경우 해당 국제등록에서 발생하는 보호는 효력을 상실한다. 국제등록의 5년 기간 만료 전에 등록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이루어졌거나 출원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취하, 취소, 만료 또는 거절이 되는 최종결정은 국제등록의 5년 만료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6) 등록관은 국제등록일에 시작하는 5년 기간에 (5)에서의 모든 정보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 (7) 등록관은 기초출원 또는 경우에 따라 기초등록의 현황을 감안하여 국제등록에 대해 이루어지는 취소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제36E조 (인도가 지정된 경우의 국제등록)

- (1) 등록관은 인도가 지정된 경우의 국제등록에 대해 국제사무국으로부터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방법으로 해당 국제등록의 상세 기록을 보관한다.
- (2) (1)에서 말하는 국제등록의 상세한 기록 후에 등록관이 사안의 상황에서 인도의 상표 보호가 부여되어서는 아니 되거나 해당 보호가 국제등록이 수리된 조건이나 제한에 따르는 것을 조

건으로 또는 조건이나 제한에 대한 추가적 혹은 서로 다른 조건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되어야 한다는 데 납득한 경우에는 등록관은 출원인이 원할 경우 출원인을 청문 후에 보호의 부여를 거절하고 (1)에서 말하는 통지 수령일 후 18개월 이내에 소정의 방법으로 국제사무국에 전달할 수 있다.

- (3) 등록관이 (2)에 기초한 보호의 부여를 거절해야 할 사항을 국제등록의 상세한 내용을 일절 발견하지 못할 경우, 등록관은 해당 국제등록을 소정의 방법으로 소정의 기간 내에 공고하도록 한다.
- (4) 제9조에서 제21조까지(쌍방을 포함), 제63조 및 제74조는 국제등록에 관하여 해당 국제등록이 제18조에 기초한 상표의 국제등록출원인 것으로 준용된다.
- (5) 국제등록의 보호가 이의신청되지 않아 이의신청의 신고 기한이 만료된 경우, 등록관은 (1)에 기초한 통지의 수령 후 18개월 이내에 해당 국제등록에 기초한 상표보호의 확장의 동관에 의한 수리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고, 등록관이 국제사무국에 통지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경우 보호가 상표에 확장되는 것을 본다.
- (6) 상표의 등록소유자가 해당 상표의 국제등록을 인도를 지정하는 경우, 등록일 후 국제등록은 해당 먼저 소유된 등록에 근거하여 취득된 어느 쪽의 권리도 해치지 않고 인도에서 소유되는 등록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고, 등록관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제6조(1)에서 말하는 등록부에 필요한 기입을 한다.
- (7) 인도를 지정하는 상표의 국제등록의 소유자이며 보호를 인도로 확장하지 않은 자는 제18조에 기초하여 상표의 등록출원을 하지만 그것이 제23조에 근거한 등록을 향유하고 있지 않은 몇 명의 이용에도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구제를 받는다.
- (8) 국제등록의 5년 기간의 만료 전 언제든지 해당 등록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인도 이외의 계약당사국에서 관계하는 기초출원 또는 경우에 따라 기초등록이 국제등록에 있어서 일람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취하되었거나 취소되었거나 만료되었거나 최종적으로 거절된 경우, 해당 국제등록에서 발생하는 인도의 보호는 효력을 잃는다.

제36F조 (국제등록의 효과)

- (1) 인도에 있어서의 국제등록은 인도가 지정된 경우의 상표의 국제등록일 또는 상표의 국제등록으로부터 발생하는 인도에의 보호의 확장에 대해서 국제사무국의 등록부에 기록된 날로부터, 인도에서 등록된 상표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2) 출원인에 의해 지정된 상품 및 서비스류의 표시는 상표의 보호범위를 결정한 것에 관해 등록관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제36G조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및 갱신)

- (1) 국제사무국에서 상표의 국제등록은 10년의 기간으로 전 기간의 만료 후에는 10년의 기간이 갱신된다.
- (2) 규칙에 정해 할증 수수료의 납부를 조건으로, 국제등록의 갱신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인정된다.

제5장 양도 및 이전**제37조 (등록 소유자에 의한 양도 및 영수증 교부의 권한)**

상표의 소유자로서 실제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는, 동법의 규정 및 등록부에 기재된 타인에게 귀속하는 권리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상표를 양도하고, 그러한 양도의 대가에 대하여 유효한 영수증을 교부할 권한을 가진다.

제38조 (등록상표의 양도성 및 이전성)

다른 법률의 반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관련 영업권의 수반 여부를 불문하고,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등록상표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39조 (미등록상표의 양도성 및 이전성)

미등록상표는 관련 영업권의 수반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40조 (복수의 배타적 권리를 창출하는 양도 또는 이전의 제한)

- (1) 제38조 및 제39조에 불구하고, 동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상표의 양도 또는 이전의 결과, 다음 각호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2 이상의 당사자에게 배타적 사용 권리가 존재하게 되어 그 권리의 행사로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면 해당 상품과 서비스의 유사성 및 상표의 유사성으로 인해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a)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

(b) 동종의 상품 또는 서비스

(c) 서로 관련한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동종의 상품 또는 서비스

다만, 상표의 양도 또는 이전의 결과, 당사자가 각각 가지는 배타적 사용의 권리에 대해, 인도로부터의 수출을 제외하고 인도 내에서의 판매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거래되는 상품 또는 인

도 외의 시장에 수출되는 상품 또는 인도 국내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인도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2 이상의 사람에 의해서는 행사할 수 없는 취지의 제한이 첨부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기 양도 또는 이전을 본항에 의해 무효로 보지 아니한다.

- (2) 등록상표를 양도하고자 하는 등록상표의 소유자는 소정의 방법에 따라 등록관에 대해 상황을 설명하는 사정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등록관은 등록 소유자에 대해 해당 사건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및 상표의 유사여부에 비추어 해당 양도가 규정 (1)에 의해 무효인지 아닌지를 기재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된 증명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며, 그 증명서가 사기 또는 부실표시에 의해 취득된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 (1)에 의한 양도의 유효, 무효가 해당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한, 그 유효, 무효에 대해 확정적 효력을 가진다. 다만,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제 45조에 의한 해당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양도를 유효로 보는 증명서는 그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

제41조 (배타적 권리의 분리 양도 또는 이전의 제한)

제38조 및 제39조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상표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즉, 동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양도 또는 이전의 결과,

- (a) 인도 내에서 판매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거래되는 상품 또는 인도 내에서 제공되거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상표 사용에 제한이 첨부된 배타권이 관련 당사자 1인에게 존재하고
- (b) 인도 내에서 판매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거래되는 상품 또는 인도 내에서 제공되거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상표 사용에 제한이 첨부된 배타권이 다음 각목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전 항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에 대한 배타권이 또 다른 관련 당사자에게 존재하는 경우
 - (i)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 (ii) 동종의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 (iii) 해당 상품이나 동종의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 또는 해당 서비스나 동종의 서비스와 관련된 상품

다만, 상표를 양도하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동법 시행 이후 해당 상표가 자신 또는 이전권리자에게 이미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의해 소정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관은 그 권리를 행사하여 해당 상표를 사용해도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나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된 양도나 이전은 해당 허가가 사기 또는 부실표시에 의해 취득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한, 동조 또는 제 40조에 의해 무효라고 보지 아니한다. 다만,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제 45조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나 이전의 허가는 해당 허가일로부터 6월 이내 또는 이전의 경우 이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

제42조 (영업권을 수반하지 않는 양도의 조건)

상표의 양도는, 상표의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상표가 사용되어 온 영업권 또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영업권을 수반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수인이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관이 허가한 연장기간 내에, 등록관에 대해 양도의 공고에 관한 지시를 신청하여 등록관이 명하는 양식, 방법, 기간 내에 공고를 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설명 - 동조의 적용상, 다음의 상표 양도는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영업권을 수반하는 양도로 간주한다.

- (a) 등록상표의 일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만 관계되는 양도로서,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만 관계하는 영업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 (b) 인도로부터의 수출상품 또는 인도 국외에서의 이용을 위한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는 상표의 양도로서, 수출 영업권만을 수반하는 경우

제43조 (증명표장의 양도성 및 이전성)

증명표장은 등록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승인을 위해서는 등록관에게 소정의 방법으로 서면에 의해 신청해야 한다.

제44조 (연합상표의 양도성 및 이전성)

연합상표는 분리하여 이전할 수 없으며, 전체로서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따른 그 외 모든 적용에 있어서는 연합상표는 개별 상표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5조 (양도 및 이전의 등록)

- (1) 양도 또는 이전에 의해서 등록상표를 취득한 자는 등록관에게 소정의 방법으로 자기의 권리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관은 신청의 수리에 기초하여 양도 또는 이전의 대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양도인을 상표의 소유자로서 등록하고, 양도 또는 이전에 관한 명세를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2) 제공된 진술서 또는 문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관은 출원인에게 권리를 증명할 증거 또는 추가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3) 양도 또는 이전의 유효성을 당사자 간에 다투는 경우, 등록관은 당사자의 권리가 관할법원에 의해 결정될 때까지 양도 또는 이전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으며, 다른 모든 경우에는 등록관은 소정기간 내에 출원을 처리한다.
- (4) (1)에 따른 신청이 이루어질 때까지 양도 또는 이전은, 양도 또는 이전을 알지 못하고 등록상표에 있어서 또는 그에 따른 상반된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6장 상표의 사용 및 등록사용자

제46조 (설립 중인 법인 등에 의한 상표의 사용 예정)

- (1) 다음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등록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등록관은 출원인이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보류해서는 안 된다.
 - (a) 법인이 1956년 회사법(Companies Act)에 의해 현재 설립 중이며 등기를 예정하고 있으며, 출원인이 상기 법인의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 사용을 위해 상표를 양도할 의사가 있는 경우
 - (b) 소유자가 그 상표 등록 후에 누군가에게 등록사용자로서 상표를 사용하게 할 의사가 있는 경우
- (2) 본 항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근거하여 등록된 상표와 관련하여, 제47조 (1)의 (a)에서 등록출원인으로서 상표를 사용할 의사는 등록출원인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등록사용자에게 상표를 사용시킬 의사로 대체되는 것으로 본다.
- (3) (1)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심판위원회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에 관한 절차 비용에 대해서 출원인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출원인이 적법하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는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 (4) (1)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법인에 대해서 양도할 의사를 가지는 출원인의 명의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가 등록되었을 경우, 소정의 기간 내 또는 소정의 방법에 따른 신청에 근거하여 등록관이 허가한 6개월을 넘지 않는 연장 기간 내에 그 법인이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상표의 소유자로서 등록되지 않는 이상, 해당 등록은 그 기간 만료와 함께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하여, 등록관은 그에 따라 등록부를 정정해야 한다.

제47조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등록의 말소 및 제한)

- (1) 다음의 각호를 이유로 피해를 입은 누군가에 의해, 등록관 또는 심판부에 소정의 방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등록상표는 등록부에서 말소될 수 있다.
 - (a) 등록출원인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상표를 선의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경우,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등록사용자에 의한 사용의사로 판단하며, 상기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의 기간 내에 어느 소유자에 의해서도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해당 상표의 선의의 사용 사실이 없는 경우
 - (b) 상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상표가 실제로 등록부에 기재된 날로부터 계속하여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기간 중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으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해당 기간 동안 어느 소유자에 의해서도 선의의 상표 사용 사실이 없는 경우

다만, 출원인이 제12조에 의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하여 받았을 경우 또는 심판위원회가 그 사람에게 해당 상표의 등록을 허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전에 또는 해당 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소유자에 의한 해당 상표의 선의의 사용이 있는 경우, 심판위원회는 (a) 또는 (b)의 규정에 따른 상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i) 동종의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ii) 지정상품이나 동종의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 또는 지정서비스나 동종의 서비스와 관련된 상품

(2)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심판부 또는 등록관에 제 소정의 방법으로 신청했을 때는 심판위원회는 상기 (a)의 상표에 대해 그 등록의 효력이 이러한 사용에까지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a) 인도 국내의 특정 장소(수출되는 경우 제외)에서 판매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거래되는 상품 또는 인도 국외의 특정 시장에 대해서 수출되는 상품 또는 인도 국내의 특정 장소에서 제공되거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 또는 인도 국외의 특정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서 해당 상표의 미사용에 관한 (1)의(b) 규정에 의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인정되고,

(b) 특정 장소에서 판매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거래되는 상품 또는 수출되는 상품 또는 제공되거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 12조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하여 받았거나 심판위원회가 해당 상표의 등록을 허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 받은 경우

(3) 상표의 불사용이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해 부과된 것으로서, 인도 내의 상표 사용의 한정을 포함한 거래상의 특수 상황에 의한 것이어서 신청과 관계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를 포기할 의사 또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신청인은 상표의 미사용에 대해 상기 (1)의 (b) 또는 (2)의 규정의 적용을 원용할 수 없다.

제48조 (등록사용자)

(1) 상표의 등록 소유자 이외의 자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등록사용자로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제47조 또는 해당 사용을 요건으로 하는 동법 또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상표의 허락 사용은 그 소유자에 의한 사용으로 간주되며, 소유자 이외의 자에 의한 사용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49조 (등록사용자로서의 등록)

- (1) 상표의 등록사용자로서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등록 소유자 및 등록사용자가 될 예정인 자는 소정의 방법에 따라 서면에 의해 공동으로 등록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a) 등록 소유자 및 등록사용자가 될 예정의 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상표의 허락 사용에 관한 계약서 또는 그 인증 등본, 및
 - (b) 등록 소유자 또는 등록관이 인정하는 대리인에 의해 작성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선서서
 - (i) 등록 소유자와 등록사용자가 될 예정인 자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또는 발생시키려고 하는 관계에 대한 구체적 사항으로서, 양자의 관계로부터 생기는 허락 사용에 대한 소유자의 지배의 정도 및 등록사용자가 될 예정의 사람이 유일한 등록사용자여야 하는지 여부 또는 등록사용자로서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그 외의 한정을 첨부하는 것이 양자 관계의 조건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 (ii)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 (iii)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 허락 사용의 방법 또는 장소 또는 그 외의 사항에 관해서 제의된 조건 또는 한정
 - (iv) 허락 사용 기간의 유무 및 기한 첨부시 그 존속기간 및
 - (c) 등록관의 요구나 명령에 따른 추가 서류 또는 기타 증거
- (2) 규정 (1)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등록관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어 등록사용자가 될 예정인 자를 등록해야 한다.
- (3) 그 상표에 대해 그 밖에 등록사용자가 있을 경우, 등록관은 새로운 등록사용자의 등록사실을 그 밖에 등록사용자에게 소정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 (4) 등록관은 신청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동조에 의한 신청을 위해 제공된 정보(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제외)가 거래상의 경쟁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0조 (등록사용자의 등록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등록관의 권한)

- (1) 제57조의 규정을 해치는 일 없이, 등록사용자의 등록에 대해서는,
- (a) 등록 소유자가 소정의 방법에 의해 서면에서 신청하는 경우, 등록관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해서 그 등록을 변경할 수 있다.
 - (b) 등록 소유자 또는 그 상표의 등록사용자 또는 다른 등록사용자가 소정의 방법에 의해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관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c)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소정의 방법에 의해 서면으로 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관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i) 등록사용자가 제49조(1)의(a)에 의한 계약서에 기재된 이외의 방법 또는 오인 또는 혼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방법에 의해 그 상표를 사용한 경우

(ii) 등록 신청시 정확하게 표시했거나 개시를 하였다면 등록사용자의 등록이 정당화되지 못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등록사용자가 부실표시를 하거나 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iii) 등록사용자의 등록 이후 상황의 변경이 있어, 그 등록의 취소 신청시에 있어 그 등록을 정당화할 수 없게 된 경우

(iv) 등록 신청인이 당사자가 되어 있는 계약에 의해 그 사람에게 부여한 권리가 등록되어 효력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경우

(d) 등록관은 그 상표의 사용과 관련되는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등록 소유자와 등록사용자와의 사이의 계약조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준수되고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직권에 의해 또는 소정의 방법에 의한 서면 신청에 의해서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 등록관은 등록이 실효된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등록관은 등록 소유자 및 상표의 각 등록사용자(신청인 제외)에 대해 소정의 방법에 따라 동조의 각 신청이 있던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3) 등록을 취소하는 절차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등록의 취소 전에 등록 소유자에게 청문을 받을 적절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51조 (등록사용자와 관련한 계약서에 대한 등록관의 정보요청 권한)

(1) 등록관은 등록사용자의 등록이 존속하는 동안은 언제라도 등록 소유자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제49조(1)의 (a)에 의해 제출된 계약서가 계속하여 유효하다는 취지를 1개월 이내에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등록관은 등록 소유자가(1)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1개월 이내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는 상기 기간의 만료일 직후부터 등록사용자가 아니게 된다는 취지를 공고해야 한다.

제52조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록사용자의 권리)

(1)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권리의 침해가 있었을 때에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절차를 소유자에게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이를 무시했을 경우) 등록사용자는 자신이 등록 소유자인 것과 같이 자기의 명의로 등록 소유자를 (공동)피고로서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그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등록사용자의 권리 의무는 등록 소유자의 권리 의무와 일치한다.

(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피고 중 1인으로 추가된 등록 소유자는 직접 출두하여 심리에 참가하지 않는 한 소송 비용의 지불 의무는 없다.

제53조 (침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는 허락 사용자)

제2조(1)(r)(ii)에 의한 자는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는다.

제54조 (양도 또는 이전의 권리를 갖지 않는 등록사용자)

동법의 어떤 규정도 상표의 등록사용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 가능한 상표의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설명 - 상표의 등록사용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동조의 취지상 양도 또는 이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a) 등록사용자인 개인이 관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타인과 파트너십을 결성했을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규정이 있지 않는 한, 등록사용자가 구성원으로 있는 기업만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 (b) 등록사용자인 기업의 조직에 그 후 변경이 있었을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조직 변경 후의 기업은, 등록사용자로서의 등록시 해당 기업의 파트너가 계속하여 변경 후의 기업의 파트너인 경우에만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설명 - 상기의 설명의 적용상, '기업'은 1932년 인도·파트너십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55조 (연합상표 또는 실질적 동일상표의 사용으로 간주되는 사용)

- (1) 동법의 규정하에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 등록상표의 사용을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록된 연합상표의 사용 또는 그 동일성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기나 변경을 가한 상표의 사용도, 심판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을 필요로 하는 상표의 사용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2) 하나의 등록상표의 전체의 사용에 대해서는 동법의 목적상 그 일부이자 제15조(1)의 규정에 의해 동일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도, 그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 (3) 제32조에 불구하고, 규정 (2)에 있어서의 등록상표의 일부의 사용은 동법의 목적상 그 식별력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

제56조 (수출 거래를 위한 상표의 사용 및 거래관계 변경시의 상표의 사용)

- (1) 인도로부터 수출되는 상품 또는 인도 국외에서 이용되는 서비스에 대해 인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 인도로부터 수출되는 상품 또는 인도 국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한 인도 내에서의 기타 행위로서, 상기 행위가 인도 내에서 행해지는 경우, 동법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사용 요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2) 사용자와의 사이에 어떠한 거래관계가 존재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등록상표의 사용은, 상기 사용자 또는 이전권리자와의 사이에 다른 형태의 관계가 존재했거나 존재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해당 상표가 이전부터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아니한다.

제7장 등록부의 경정 및 정정

제57조 (등록의 취소 또는 변경의 권한 및 등록부의 경정의 권한)

- (1) 심판부 또는 등록관에 대하여 피해자의 소정의 방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심판위원회는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관련 조건의 위반 또는 불이행을 이유로 상표 등록을 취소 또는 변경하기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2) 등록부에 있어서 등록 사항의 누락 또는 생략, 충분한 근거 없는 기재, 잘못되어 존속되고 있는 기재, 등록부에 있어서의 기재사항의 오기 또는 불비에 의한 피해자는, 심판부 또는 등록관에 대하여 소정의 방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심판위원회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사항을 기재하거나 말소 또는 변경하라는 취지를 명할 수 있다.
- (3) 심판위원회는 동조에 따른 절차에 있어, 등록부의 경정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 (4) 심판위원회는 소정의 방법에 의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청문을 받을 기회를 준 뒤, 직권으로 (1) 또는 (2)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5) 심판부가 등록부의 경정을 명할 때는 소정의 방법에 의한 경정 통지를 등록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등록관은 상기대로 수령한 통지내용에 따라 등록부를 경정해야 한다.

제58조 (등록부의 정정)

- (1) 등록 소유자로부터 다음의 사항에 대해 소정의 방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등록관은 그에 따라 등록증을 보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등록증을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a) 상표의 등록 소유자의 명칭, 주소 또는 그 외의 기재 또는 그 상표에 관한 다른 등록 사항에 대한 오기의 정정
 - (b) 상표의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명칭, 주소 또는 그 외의 기재에 대한 변경
 - (c)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의 삭제
 - (d)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 분류의 삭제
- (2) 등록관은 등록사용자로부터 소정의 방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등록 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등록사용자의 명칭, 주소, 또는 그 외의 기재에 대해 오기를 정정하거나 변경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제59조 (등록상표의 변경)

- (1) 상표의 등록 소유자는 상표의 동일성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상표에 부기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등록관에게 소정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록관은 이를 거절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조건 및 제한을 첨부하여 허가할 수 있다.
- (2) 등록관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신청을 소정의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이 때 공고일로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소정의 방법에 따른 해당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관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를 청문한 후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 (3) 동조에 의해 허가를 받아 변경된 상표에 대해서는, 그 신청이 (2)의 규정에 의해 이미 공고되어 있지 않은 한 이를 소정의 방법에 의해 공고해야 한다.

제60조 (상품 또는 서비스 분류의 보정 또는 대체에 수반하는 등록부 기재사항의 수정)

- (1) 등록관은 보정 직전의 등록상표의 (다류 지정여부 불문) 지정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류 구분을 확장시키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등록을 소급시키는 효과를 야기하는 등록부의 보정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 항을 준수하면 부당한 복잡함을 유발하며, 상기 부가 또는 등록 효과의 소급이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실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어느 누구의 권리도 해치지 않음을 등록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등록부를 보정하는 경우 소정의 방법에 의해 그 취지를 관련 상표의 등록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한다. 한편, 상기 보정으로 인한 피해자는 상기 보정이 (1)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 등록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8장 단체표장**제61조 (단체표장에 대한 특별 규정)**

- (1) 동법의 규정들은 동 장에 따른 단체표장에 대하여 적용된다.
- (2)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로부터 식별하기 위한 단체표장에 관한 제2조(1)(zb)의 규정은, 상표 소유자인 단체 구성원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데 참조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제62조 (특성 또는 중대성에 관한 오인이 배제되어야 하는 단체표장)

단체표장이 공중에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히 단체표장 이외의 것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등록관은 등록출원과 관련되는 표장에 단체표장이라는 취지의 표시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단체표장의 사용을 규제하는 규약을 첨부해야 할 출원)

- (1) 단체표장의 등록출원에는 해당 단체표장의 사용을 규제하는 규약을 첨부해야 한다.
- (2) (1)의 규정에 의한 규약은 해당 표장의 사용이 승인된 자, 해당 단체의 구성원 자격의 조건,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해당 표장의 사용 조건 및 그 외 소정의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제64조 (등록관에 의한 출원 및 규약의 수리)

등록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관은 출원을 규약과 함께 조건 없이 또는 상기 규약의 보정을 포함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부로 수리하거나 수리를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되며, 수리했을 때는 해당 규약을 공고해야 한다.

제65조 (공중 열람을 위한 규약의 공개)

제63조(1)에 의한 규약은, 제148조에 규정의 등록부와 같이 공중의 열람에 제공한다.

제66조 (규약의 보정)

제63조(1)에 의한 규약의 보정은, 보정이 끝난 규약을 등록관에 대해 제출하여 제64조에 따라 등록관에 의해 수리되어 공고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67조 (단체표장의 등록 소유자에 의한 침해 소송)

단체표장의 등록 소유자가 원고로서 제기한 침해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허락 사용자가 입은 손해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손해를 참작하여, 원고가 상기 허락 사용자를 대신하여 금전적 구제 조치를 받는 범위에 관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제68조 (단체표장 등록을 말소하는 추가 이유)

단체표장의 등록은 다음의 이유에 의해서도 말소할 수 있다.

- (a) 소유자 또는 허락 사용자에 의해 해당 단체표장이 사용된 방법이 공중에게 단체표장으로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 (b) 소유자가 해당 표장을 규제하는 규약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상기 준수를 보증하지 못한 경우

설명 - 동 조의 적용상, 문맥상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락 사용자'란 해당 단체의 등록 단체표장의 사용이 허락된 단체 구성원을 말한다.

설명 - 동법의 목적상, 상기의 설명에 의한 허락 사용자에 의한 단체표장의 사용은 그 등록 소유자에 의한 사용으로 간주한다.

제9장 증명표장

제69조 (동 법상 증명표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증명표장에 대해서는 동법의 다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a) 제9조(1)(a) 및 (c)
- (b) 동 장이 적용될 것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
- (c)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1조, 제42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및 제56조(2)
- (d) 제107조를 제외하고, 제XII장

제70조 (증명표장의 등록)

증명과 관련되는 종류의 상품거래 또는 증명과 관련되는 종류의 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람의 명의로는 증명표장으로서 표장을 등록받을 수 없다.

제71조 (증명표장의 등록출원)

- (1) 증명표장의 소유자로서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등록관에 대하여 소정의 방법으로 증명표장의 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제74조에 의해 제출되는 규약 초안을 첨부해야 한다.
- (2) 제70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제18조,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18조에 의한 출원과 동일하게 동조에 의한 출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에 의한 출원 수리는 출원 절차 진행의 허가라고 해석하는 취지의 수정을 교부하여 적용한다.
- (3) 심판위원회는 동조에 의한 출원에 대해 관련되는 상기 각 항의 규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동장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8조에 의한 출원과 동일하게 심사해야 하며, 상기 상표가 증명표장이라는 취지의 표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72조 (등록출원에 대한 등록관의 심사 사항)

- (1) 등록관은 제71조에 의한 출원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 (a) 출원인이 등록되어야 할 표장과 관련한 지정상품을 증명할 적격이 있는지 여부
 - (b) 제74조에 의해 제출된 규약 초안이 적절한지 여부
 - (c) 모든 상황에서 출원과 관련되는 등록이 공익에 적합한지 여부
 한편, 등록관은, (i) 출원을 거절하거나 (ii) 상기 규약 초안을 수정이나 조건 없이 수리하여 승인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이나 제한 또는 보정이나 수정을 첨부하여 수리하고 승인할 수 있다.
- (2) 등록관은 수정이나 조건 없이 수리하여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인에 대해 청문을 받을 기회를 주지 않고, (1)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제73조 (증명표장의 등록에 대한 이의)

등록관은 출원을 수리한 경우, 소정의 방법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취지를 공고해야 한다. 제21조의 규정은 제18조에 의한 출원에서와 같이, 상기 표장의 등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4조 (증명표장의 사용을 규제하는 규약의 제출)

- (1) 증명표장으로서 등록된 각 표장에 대해 그 사용을 규제하는 규약이 상표등록청에 제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규약에는 소유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증명하는 경우 및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등록관이 일반 또는 특별한 명령에 의해 추가사항을 요구하거나 허가한 그 외의 규정(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상품에 대해 증명을 하는 사항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 허락을 거절하는 경우 등록관에 대해 심판청구 할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 포함)을 포함할 수 있다. 제출된 규약은, 제148조에 규정된 등록부와 동일하게 공중의 열람에 제공되어야 한다.
- (2) 제출된 규약은 등록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관이 변경할 수 있다.
- (3) 등록관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청을 공고한다. 상기 공고에 대해 지정된 기간 내에 해당 신청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등록관은 당사자에 대해 청문을 받을 기회를 주고 사건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제75조 (증명표장의 침해)

증명표장의 등록 소유자가 아닌 자 또는 제74조에 근거해 제출된 규약에 의한 등록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으나 해당 규약에 따라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자가 그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증명표장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표장을 상표로서 사용과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업으로서 사용한 경우에는 제78조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6조 (증명표장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 (1) 동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행위는 등록된 증명표장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a) 증명표장이 등록부에 기재된 조건 또는 제한에 따른 사용으로서,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매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거래되는 상품 또는 수출되는 상품 또는 제공되거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행위
 - (b) 표장 소유자가 증명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그 일부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소유자 또는 관계 규약에 근거해 소유자의 허락을 얻은 사람이 해당 규약이 말소되거나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거나 소유자의 해당 상표 사용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 하에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행위

- (c) 증명표장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를 형성하거나 이에 부속되는데 적합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전술한 바와 같이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가 그에 적합함을 표시하기 위한 합리적 필요가 인정되고, 해당 표장의 사용목적 또는 효과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가 표장의 소유자에 의해 증명된다는 사실만을 표시하는 증명표장의 사용행위
- (2) (1)의 (b)의 규정은, 증명표장출원의 지정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용이 동 규정에 의한 규약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증명표장이 동법에 의해 등록된 동일 또는 서로 유사한 2 이상의 상표 중 하나인 경우에는, 등록에 의해서 부여된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의 행사로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 외의 상표 사용에 대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제77조 (증명표장의 등록의 취소 또는 변경)

피해자로부터 소정의 방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등록관은 소유자에 대해 그 신청에 대한 답변의 기회를 준 후,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증명표장에 관한 등록부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변경하거나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 (a)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어느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유자가 이를 증명할 적격을 잃은 경우
- (b) 소유자가 규약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c) 상표 등록의 존속이 이미 공익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d) 상표의 등록이 존속하는 경우 규약을 변경하는 것이 공익상 불가결한 경우

제78조 (증명표장의 등록에 의해서 부여될 권리)

- (1) 제34조, 제35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증명표장의 소유자로서 등록되고 그 등록이 유효한 때는, 해당 소유자에 대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해당 상표의 배타적 사용 권리를 부여한다.
- (2) (1)의 규정에 의해 부여된 증명표장의 배타적 사용의 권리는 등록시에 첨부된 조건 및 제한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제10장 식물에 관한 특별 규정 (2010년 개정에 의해 생략)

제79조 생략

제80조 생략

제81조 생략

제82조 생략

제11장 심판부

제83조 (심판부의 설치)

중앙정부는 관보 고시에 의해 동법에 의해 또는 그에 기초하여 부여된 관할권, 권능 및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지적 소유권 심판부로 불리는 심판부를 설치한다.

제84조 (심판부의 구성)

- (1) 심판부는 심판장, 부심판장 및 중앙정부가 적당하다고 보는 인원의 기타 심판관으로 구성되며, 동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심판부의 관할권, 권능 및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2) 동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법정은 법무 심판관 1명 및 기술 심판관 1명으로 구성되며, 그 소재는 중앙정부가 관보 고시에 의해 지정한 장소로 한다.
- (3)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판장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a) 임명된 법정의 법무 심판관 또는 기술 심판관의 직무에 더하여, 다른 법정의 법무 심판관 또는 기술 심판관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b) 심판관을 하나의 법정에서 다른 법정으로 전임시킬 수 있다.
 - (c) 하나의 법정에 임명된 부심판장, 법무 심판관 또는 기술 심판관에게 또 다른 법정의 법무 심판관 또는 기술 심판관의 직무도 수행하도록 수권할 수 있다.
- (4) 법정이 구성되는 경우, 중앙정부는 수시로 고시에 의해 심판관단 간의 심판부의 업무 분담에 대해 규정을 제정하고, 각 법정이 취급할 수 있는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
- (5) 어떠한 사항이 법정에 할당된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심판장이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설명 -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상기 '사항'이라는 표현은 제91조에 의한 심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6) 한 법정의 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심판관은 심판장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 진술해야 하며, 심판장은 그에 대해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1인 또는 그 이상의 심판관에게 의견을 들어, 처음 진술한 심판관을 포함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청문한 심판관의 다수 의견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5조 (심판장, 부심판장 또는 그 외 심판관으로서의 임명 자격)

- (1)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심판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 (a) 고등법원의 판사이거나 판사였던 자
 - (b) 적어도 2년간 부심판장의 직위에 있던 자
- (2)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부심판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 (a) 적어도 2년간 법무 심판관 또는 기술 심판관의 직위에 있던 자
 - (b) 인도 법무국의 심판관으로서 적어도 5년간 제1급 이상의 직위에 있던 자
- (3)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법무 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 (a) 인도 법무국의 직원으로서 적어도 3년간 제1급 이상의 직위에 있던 자
 - (b) 적어도 10년간 민사 법률 사무소에 있던 자
- (4)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기술 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 (a) 적어도 10년간 동법 또는 1958년 무역 및 거래 표장법 또는 양법에 시행 하에서, 심판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적어도 5년간 공동 등록관 이상의 직위에 있던 자
 - (b) 상표법에 있어, 적어도 10년간 증명된 전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인 자
- (5) 심판장, 부심판장 및 그 외 각 심판관은 (6)의 규정에 따라 인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 (6) 심판장의 임명은 인도 최고법원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제86조 (심판장, 부심판장 및 그 외 심판관의 임기)

심판장, 부심판장 또는 그 외의 심판관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5년 또는 다음의 연령에 이를 때까지 중 빠른 시점으로 한다.

- (a) 심판장 및 부심판장의 경우, 65세
- (b) 심판관의 경우, 62세

제87조 (일정한 경우 심판장의 직위를 대행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부심판장 또는 최상급 심판관)

- (1) 심판장의 사망, 사임, 기타 사유에 의해 심판장직이 공석이 된 때는, 해당 공석을 채우기 위해 부심판장 및 그 부재 때는 최상급 심판관이, 동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심판장이 임명되어 취임하는 날까지 심판장직을 대행해야 한다.
- (2) 심판장이 부재, 병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심판장 및 그 부재 때는 최상급 심판관이, 심판장이 그 직무 수행을 재개하는 날까지 심판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8조 (심판장, 부심판장 및 그 외 심판관의 급료, 수당 및 그 외의 취업 조건)

- (1) 심판장, 부심판장 및 그 외 심판관에게 지불해야 하는 급료, 수당 및 그 외의 취업 조건(연금,

하사금 및 퇴직 수당 포함)은 소정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

-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판장, 부심판장 또는 그 외 심판관으로서 취임 직전에 정부의 관직에 있던 자는 심판장, 부심판장 또는 그 외 심판관으로서 취임한 날에 해당 관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9조 (사임 및 파면)

- (1) 심판장, 부심판장 또는 그 외 심판관은 인도 대통령에 대한 자필 신고서로서 사임할 수 있다. 다만, 심판장, 부심판장 또는 그 외 심판관은 인도 대통령에 의해 조기 퇴임이 허가되지 않는 이상, 해당 신고의 수리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또는 적법하게 임명된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또는 임기 만료시 중 빠른 날까지 계속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2) 심판장, 부심판장 또는 그 외 심판관은 자신에 대한 고소가 통지되고 대법원 판사에 의한 조사에서 그에 대해 진술할 합리적인 기회가 주어진 뒤에, 입증된 부정행위 또는 무능력을 이유로 한 인도 대통령의 명령이 있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아니한다.
- (3) 중앙정부는, 규칙에 의해, (2)의 규정에 의한 심판장, 부심판장 또는 그 외 심판관의 부정행위 또는 무능력에 대한 조사절차를 규정한다.

제90조 (심판부의 부원)

- (1) 중앙정부는 심판부의 해당 직무수행을 보좌하는데 필요한 공무원 및 기타 직원의 업무와 분야를 결정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기타 직원을 심판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 (2) 심판부의 공무원 및 기타 직원의 급료 및 수당 및 취업 조건은 소정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
- (3) 심판부의 공무원 및 기타 직원은 심판장의 총괄적 감독하에서 소정의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91조 (심판부에의 심판 청구)

- (1) 동법 또는 그에 기초하여 제정된 규칙에 의한 등록관의 명령 또는 결정으로 인한 피해자는, 심판청구를 하려고 하는 대상명령 또는 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부에 대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2) (1)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 후에 청구된 심판은 수리되지 않는다. 다만, 심판 청구를 하려는 자가 해당 규정 기간 내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을 심판부가 인정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리될 수 있다.
- (3) 심판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소정의 양식에 의해, 소정의 방법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청구대상이 되는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사본 1부와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92조 (심판부의 절차 및 권한)

- (1) 심판부는 1908년 민사소송법으로 규정된 절차에 의해 구속되지는 않으나 자연법의 원리에 따라야 하며, 동법의 규정 및 그에 기초하여 제정된 규칙에 따라 심리 장소 및 기일의 결정을 포함하여 해당 절차를 규정할 권한을 가진다.
- (2) 심판부는 동법에 따르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다음과 관련하여 소송을 심리함에 있어, 1908년 민사소송법에 의해 민사 법원에 부여된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a) 증거의 수리
 - (b) 증인 심문 촉탁서의 교부
 - (c) 공문서 기록의 청구
 - (d) 그 외 소정의 사항
- (3) 심판부에서의 절차는 인도 형법 제 193조 및 제228조의 취지와 동법 제 196조의 적용에 따른 사법절차로 간주되며, 심판부는 1973년 인도 형사소송법 제 195조 및 동법 제XXVI장의 적용에 따른 민사법원으로 간주된다.

제93조 (법원의 관할권 등의 금지)

법원 또는 그 외의 당국은 제91조(1)에 의한 사항에 관한 어떠한 관할권, 권능 또는 권한도 획득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제94조 (심판부에의 출두 금지)

퇴임한 심판장, 부심판장 또는 그 외의 심판관은 심판부 또는 등록관 앞에 출두해서는 안 된다.

제95조 (일시 명령을 발효하는 조건)

동법의 다른 규정 또는 실제로 효력을 가지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심판 청구에 대해 또는 심판 청구에 관한 절차에 대해 일시 명령(금지명령 또는 정지 명령 또는 그 외의 방식에 따른)은 발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a) 심판청구서 및 해당 일시 명령에 대한 신청을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이 심판이 청구된 상대방에게 교부된 경우, 및
- (b) 상기 상대방에게 해당 사항에 대해 진술할 기회가 부여된 경우

제96조 (사건을 하나의 법정에서 다른 법정으로 이송하는 심판장의 권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고 원하는 경우 진술 기회를 준 뒤 또는 해당 통지 없이 심판장의 직권에 의해 하나의 법정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처분권을 다른 법정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97조 (심판부에 대한 경정 등의 신청 절차)

- (1) 제57조에 따른 심판부에 대한 등록부의 경정 신청은 소정의 양식에 의해야 한다.
- (2) 동법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심판부의 각 명령 또는 판결의 인증 등본은, 심판부에 의해 등록관에 전달되어야 하며, 등록관은 심판부의 명령에 기속되며, 지시가 있는 경우, 해당 명령에 따라 등록부의 기재를 보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제98조 (법적 절차에의 등록관의 출두)

- (1) 등록관은 다음의 법적 절차에 출두하여 진술한 권리를 가진다.
 - (a) 심판부에 청구된 등록부의 변경 또는 경정을 포함한 구제 또는 상표청의 업무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법적 절차
 - (b) 다음의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등록관의 명령에 대한 심판부에의 심판청구로서,
 - (i) 이의제기 된 바 없이, 등록관에 의해 거절된 출원 또는 일정한 수정, 변경, 조건 또는 제한을 첨부하여 수리된 출원
 - (ii) 이의제기가 있어, 이를 심사한 결과 공익상 등록관의 출두가 필요하다고 보는 출원 한편, 등록관은 심판부의 출두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출두해야 한다.
- (2) 등록관은 심판부의 특별한 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정하는 대신 쟁점과 관련하여 등록관에 의한 절차, 그 결정에 영향을 준 근거, 동종 사례에 있어서의 상표청의 관행 또는 쟁점에 관계가 있는 기타 사항 및 등록관으로서 파악한 사항에 대해,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술서는 법적 절차에 있어 증거가 된다.

제99조 (심판부에 대한 절차에 있어서의 등록관의 비용)

동법에 따른 심판부에 대한 모든 절차에 있어, 등록관의 비용은 심판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등록관은 당사자의 비용에 대해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는다.

제100조 (계속 중인 절차의 심판부로 이전)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등록관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모든 심판 사건 및 등록부의 경정에 관한 모든 사건은, 중앙정부에 의한 관보 고시일로부터 심판부로 이전되며, 심판부는 처음부터 또는 이전된 이후의 단계부터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장 위법행위, 벌칙 및 절차

제101조 (상표 및 거래 표시의 사용의 의의)

- (1)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상표 또는 표장 또는 거래 표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 (a) 상표 등을 상품 자체 또는 서비스에 대해 사용하는 자
 - (b) 상표 등을 판매되는 상품, 판매를 위해 전시되는 상품 또는 기타 거래 또는 생산의 목적으로 소지하는 상품의 포장에 사용하는 자
 - (c) 판매되는 상품, 판매를 위해 전시되는 상품 또는 기타 거래 또는 생산의 목적으로 소지하는 상품을, 상표, 표장 또는 거래 표시가 사용되고 있는 포장 또는 그 외의 것을 이용하여 포장하거나 첨부하는 자
 - (d) 상표, 표장 또는 거래 표시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그 상표, 표장 또는 거래 표시에 의해서 지정되거나 설명되고 있다고 보이는 방법으로, 상표, 표장 또는 거래 표시를 사용하는 자
 - (e)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표지, 광고, 송장, 상품 목록, 영업 서간, 영업 문서, 가격표, 기타 거래 서류에 상표 또는 표장 또는 거래 표시를 사용하는 한편, 사용된 상표 또는 표장 또는 거래 표시를 참조하여 요청되거나 주문된 것에 따라 상품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2) 상표, 표장 또는 거래 표시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 또는 그 외의 것에 포함, 날인,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되거나 첨부 또는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해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02조 (상표의 위조 및 부정 사용)

- (1) 다음의 1항에 해당하는 자는 상표를 위조한 것을 본다.
- (a) 상표 소유자의 동의 없이 해당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제조하는 자
 - (b) 변경, 추가, 소거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진정상표를 위조하는 자
-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표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상표를 부정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 (a)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상품의 포장에 타인의 상표 또는 이와 매우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자
 - (b) 상표 소유자의 진정상품 이외의 상품을 포장 또는 충전할 목적으로, 소유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표장을 첨부한 포장지를 사용하는 자
- (3) (1)의 규정에 의한 위조된 상표 또는 (2)의 규정에 의해 부정 사용하는 상표는, 동법에 있어 허위 상표라고 한다.

(4) 상표의 위조 또는 상표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의 부정 사용에 대한 소송에 있어,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제103조 (허위 상표, 거래 표시 등의 사용에 대한 벌칙)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기의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00 루피 이상 200,000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a) 상표를 위조하는 자
- (b) 상품 또는 서비스에 상표를 부정 사용 한 자
- (c) 상표를 위조 또는 위조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타형, 판목, 기계, 금속판 또는 기타 기구를 제작, 처분 또는 소지하는 자
- (d) 상품 또는 서비스에 허위의 거래 표시를 사용하는 자
- (e) 제139조에 의한 상품의 제조국, 제조지, 생산국, 생산지 또는 제조자의 명칭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하는 상품에 대해, 그 나라, 장소, 명칭 또는 주소를 허위표시하는 자
- (f) 제139조에 의해 원산지 표시가 요구되는 상품에 대해 그 원산지 표시를 위조, 변경 또는 소거하는 자
- (g) 상기 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유발시킨 자

다만, 법원은 판결에 기재된 적절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6개월 미만의 금고 또는 50,000 루피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4조 (허위 상표 또는 거래 표시를 사용한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벌칙)

허위 상표 또는 허위의 거래 표시가 첨부되거나 제139조에 의해 상품의 제조국, 제조지, 생산국, 생산지 또는 제조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명칭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함에도 이를 첨부하지 않은 상품이나 물건을 판매, 임대차하거나 판매를 위해 전시 또는 판매를 위해 임차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임차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00 루피 이상 200,000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a) 동조에 위반하지 않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강구하고, 위반 당시 해당 상표 또는 거래 표시의 진정성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위반 사실을 의심할만한 이유가 없었던 경우
- (b)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또는 고소인을 위해, 자신이 취득한 상품, 물건 또는 서비스를 입수한 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스스로 제공한 경우
- (c) 기타 선의로 행동한 경우

다만, 법원은 판결에 기재된 적절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6개월 미만의 금고 또는 50,000 루피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5조 (재범 또는 누범에 대한 가중 벌칙)

제103조 또는 제104조 위반으로 이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상기 위반으로 재차 유죄가 선고되었을 때는, 재범 및 각 누범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00 루피 이상, 200,000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원은 판결에 기재된 적절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1년 미만의 금고 또는 100,000 루피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유죄 선고에 대해서는 동조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 (제81조 위반의 피륙 등의 출하에 대한 벌칙)

제81조에 규정된 표시를 하지 않고, 피륙, 면사 또는 끈 실을 동조에 의한 공장으로부터 판매를 위해 출하하거나 출하하려고 한 자 또는 출하시키거나 출하시키려고 한 자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서 전시하거나 기타 거래 또는 생산을 위해 소지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모든 피륙, 면사 다발, 끈 실 및 그 포장에 사용된 모든 것을 정부가 몰수하고, 1,000 루피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07조 (허위의 상표 등록 표시에 대한 벌칙)

- (1) 어느 누구도 다음 각호의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 (a) 등록상표가 아닌 표장에 대해, 등록상표라는 취지의 표시
 - (b) 등록상표의 일부로서 분리 등록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분리하여 상표로서 등록을 받았다는 취지의 표시
 - (c)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가 아닌 것에 대해, 등록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는 취지의 표시
 - (d) 등록부에 기재된 제한에 따라 배타적 사용의 권리가 미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등록상표의 배타적 사용의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표시
- (2) 규정 (1)의 어느 한 항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 (3) 동조의 적용상, 인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면서 ‘등록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등록을 의미하는 기타 표현, 상징 또는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부에의 등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a) 해당 단어, 기타 표현, 상징 또는 표지가 인도 이외의 국가의 법률하에서 등록되어 효력을 가지는 등록상표임을 문자로 나타내고 있으며, 그 문자의 크기가 적어도 해당 단어 등과 같은 크기로 표시된 경우
 - (b) 상기 기타 표현, 상징 또는 표지가, (a)에서 언급한 등록을 표시하는 것이 자명한 경우
 - (c) 인도 이외의 국가의 법률에 의해 등록된 상표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가 해당 국가에 수출되는 상품에만 사용되거나 해당 국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만 사용되는 경우

제108조 (영업소와 상표등록청의 관련성에 대한 허위 표시에 대한 벌칙)

자신의 영업소에서 또는 그가 발행하는 서류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해당 영업소가 상표청이거나 상표청과 공식적인 관계가 있다고 오인시킬 만한 단어를 사용하는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109조 (등록부에의 허위 기재에 대한 벌칙)

등록부에 허위 기재를 하거나 허위 기재를 유도하거나 기재사항 또는 서류가 허위임을 알면서 이를 증거로서 작성 또는 제출하거나 작성 또는 제출을 유도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110조 (면책 규정)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및 제105조의 규정은,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의 소유자로서, 동법에 의해 설정되거나 인정된 권리가 있으며,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작위, 부작위에 대해 상기 조항의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 (a) 제기된 위반이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작위 또는 부작위가 동법에 의해 허용되고 있는 경우
- (b) 제기된 위반이 등록상표 또는 미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작위 또는 부작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에 의해 허용되고 있는 경우

제111조 (상품의 몰수)

- (1) 제103조, 제104조 또는 제105조의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되었거나, 사기의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여 제103조 또는 제104조 위반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경우 또는 제104조 (a), (b) 또는 (c)에 규정된 사항을 입증하여 동 조 위반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경우, 해당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한 법원은, 위반에 사용되거나 관련된 모든 상품과 물건을 몰수해야 함을 정부에 명할 수 있다. 다만, 상기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유죄판결에 의해 몰수를 명령받은 후, 유죄판결에 대해 소가 제기되었을 때는, 몰수에 대해서도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3) 무죄판결에 의해 몰수를 명령받아 그 명령과 관련되는 상품 또는 물건이 50 루피를 넘는 가치를 가질 때는, 몰수를 명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해당 명령이 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 (4) 유죄판결에 의해 몰수를 명령이 있는 경우, 유죄판결을 내린 법원은 몰수한 모든 물품을 파기하거나 해당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방법으로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12조 (통상 업무에 있어서의 종업원의 면책)

제103조 위반으로 고소된 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증한 경우에는 무죄로 본다.

- (a) 타인에게 고용된 자로서, 자기의 통상의 업무상 타인을 위해서 상표 또는 거래 표시를 사용하거나 상표를 제조 또는 상표의 제조를 위해 사용되는 타형, 판목, 기계, 금속판, 또는 기타 기구를 제작한 경우, 및
- (b) 고소의 대상이 된 사건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고용된 자로서, 위반과 관련된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의한 이윤 또는 수수료 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상품 또는 기타 물건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경우, 및
- (c) 고소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위반 당시, 상표 또는 거래 표시의 진정성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던 경우, 및
- (d)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또는 고소인을 위해, 상표 또는 거래 표시를 사용한 당사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스스로 제공한 경우

제113조 (피고가 등록 무효의 항변을 하는 경우의 절차)

(1) 제103조, 제104조 또는 제105조의 위반과 관련한 등록상표에 대해 피고가 해당 상표가 무효라고 항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a) 법원이 피고의 항변에 대해 일응 수긍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속행하지 않고, 피고가 동법에 근거해 심판부에 대해 해당 등록이 무효임을 이유로 등록부의 경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의 항변이 기록된 날로부터 3개월간 해당 절차를 연기할 수 있다.
- (b) 피고가 법원에 대해 소정의 기간 내 또는 법원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연장기간 내에 해당 신청사실을 입증한 때는 등록부의 경정에 대한 해당 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을 때까지 이후의 소송절차를 정지시켜야 한다.
- (c) 피고가 3개월 이내 또는 법원이 허가한 연장기간 내에 심판부에 대해 등록부의 경정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법원은 해당 등록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해당 절차를 속행한다.

(2) (1)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개시 전에, 해당 상표에 대해 등록 무효를 이유로 이미 등록부의 경정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심판위원회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법원은 상기 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고, 원고가 그의 등록 표장에 근거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상기 경정 신청의 결과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소송에 대해 판결해야 한다.

제114조 (회사에 의한 위법행위)

(1) 동법에 따른 위반자가 회사인 경우, 회사 및 위반 당시 해당 직무 수행을 담당하고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개인은 해당 위반에 대해 유죄로 간주되어 피고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본 항은 그의 부재중에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 또는 그가 상기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한 자에게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동법에 따른 위법행위를 하였고, 그 위반이 해당 회사의 이사, 관리자, 비서 또는 기타 간부의 동의 또는 묵인하에 이루어졌거나, 상기에 해당하는 자의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해당 이사, 관리자, 비서 또는 기타 간부도 상기 위법행위에 대해 유죄로 간주되어 피고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설명 - 동조의 적용상,

- (a) '회사'란 법인을 의미하며, 기업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
 (b) 기업과 관련하여, '이사'란 해당 기업의 파트너를 의미한다.

제115조 (일정한 위법행위에 대한 재판 관할권 및 경찰관의 수사 및 압수 권한)

- (1) 법원은, 등록관 또는 서면에 의해 등록관의 권한이 위임된 공무원이 서면으로 제기한 소를 제외하고, 제107조, 제108조, 또는 제109조의 위반사실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 다만, 제107조(1)(c)의 규정과 관련하여, 등록상표가 실제로는 등록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표시된 것이 등록관에 의해 교부된 증명서를 기초로 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 (2) 수도권 치안 판사 또는 일급 치안 판사의 법원보다 하급의 법원은, 동법에 따른 위반여부를 심리할 수 없다.

- (3) 제103조, 제104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위반에 대해서는, 재판 관할권이 적용된다.

- (4) 경시보(deputy superintendent) 또는 동등 계급 이상의 경찰관은, (3)의 규정에 의한 위반이 있었는지, 위반행위가 있는지 또는 위반의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장없이 해당 위반에 관계한 상품, 타형, 판목, 기계, 금속판, 기타 기구 또는 물건을 수사하고, 발견의 장소를 불문하고 압수할 수 있으며, 모든 압수 물품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일급 치안 판사 또는 수도권 치안 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은 수사 및 압수를 하기 전에, 상표에 관한 위반에 포함되는 사실에 대해 등록관의 의견을 구해야 하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 (5) 규정 (4)에 의한 압수물품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해당 압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일급 치안 판사 또는 수도권 치안 판사에 대해 해당 물품의 자기로의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치안 판사는 신청인 및 고소인을 청문한 뒤 해당 신청에 대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명령을 해야 한다.

제116조 (해로에 의한 수입상품의 원산지의 증거)

해로를 통해 인도에 수입된 상품의 경우, 동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소송 또는 1962년 관세

법 제 111조(d)에 따라 동법 제 11조(2)(n)에 의해 상품 수입에 관한 상표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가 고시한 상품의 몰수에 관한 동법 제 112조(b)에 의한 위반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의 선적항의 증거는, 그 상품이 제조 또는 생산된 장소 또는 국가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 본다.

제117조 (변호 또는 고소의 비용)

법원은 동법에 따른 소송에 있어, 해당 사건의 모든 상황 및 당사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합리적이라고 보는 바대로, 피고에 대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할 취지, 또는 원고에 대해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할 취지를 명할 수 있다. 벌금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8조 (고소의 시효)

동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제소 또는 1962년 관세법 제111조(d)에 따라 동법 제11조(2)(n)에 의해 상품 수입에 관한 상표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가 고시한 상품의 몰수에 관한 동법 제112조(b)에 의한 위반에 대한 제소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3년 또는 고소인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의 기간 중 빨리 만료하는 날까지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19조 (범행에 관한 정보)

동 장의 규정의 시행을 담당하는 정부 공무원은, 법원에 대해 동법의 위반에 관해 자신이 입수한 정보의 출처에 대해 진술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는다.

제120조 (인도 국외에 있어서의 행위를 인도에서 교사한 경우의 처벌)

인도 내에서 해당 행위를 하면 동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인도 국외에서 하도록 인도 내 거주자가 교사한 경우에는, 상기 교사자에 대해 그가 발견된 장소에서 해당 교사와 관련된 행위를 한 것처럼 재판에 회부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121조 (형사 법원이 준수해야 할 허용 변량에 관한 중앙정부의 지시)

중앙정부는 관보 고시에 의해, 상품의 경우에 형사 법원에 의해 허용된다고 인정되는 수, 양, 치수, 용량 또는 증량에 대한 변량의 한계에 관한 지시를 발행할 수 있다.

제13장 기타 규정

제122조 (선의의 행위의 보호)

선의로 한 행위 또는 동법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 또는 기타 법적 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3조 (공무원인 일정한 사람)

동법에 의해 임명된 개인 및 심판부의 각 심판관은 인도 형법 제 21조의 취지에 있어서의 공무원이라고 간주한다.

제124조 (상표 등록의 효력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의 절차의 정지 등)

- (1) 상표 침해 소송에 있어,
 - (a) 피고가, 원고의 상표 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또는
 - (b) 피고가 제30조(2)(e)에 의한 항변을 하고, 원고가 피고의 상표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 (i) 원고 또는 피고의 상표에 관한 등록부의 경정 절차가 등록관 또는 심판부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경정 절차의 최종 처분이 있을 때까지 절차를 정지한다.
 - (ii) 등록부의 경정 절차가 계속 중에 있지 않고, 법원이 원고 또는 피고의 상표 등록 무효에 관한 주장에 대해 일응 수긍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의 무효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당사자가 심판부에 대해 등록부의 경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쟁점이 주장된 날로부터 3개월간 해당 사건의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 (2) 관련 당사자가, 규정 (1)(b)(ii)에 의한 3개월 이내에 또는 법원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연장기간 내에 등록부의 경정 신청한 사실을 법원에 입증한 경우에는, 해당 경정 절차의 최종 처리가 있을 때까지 소송 심리를 정지해야 한다.
- (3) 상기 3개월 이내 또는 법원이 허가한 연장기간 내에 등록부의 경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상표 등록의 효력에 관한 쟁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사건의 다른 쟁점에 대해 소송절차를 속행한다.
- (4) (1) 또는 (2)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의 경정 신청에 대한 최종 명령은, 당사자를 구속하며, 법원은 그 명령이 상표 등록의 효력에 대한 쟁점에 관계하는 한, 그 명령에 부합하게 소송을 처리해야 한다.
- (5) 동조에 의한 상표 침해 소송의 정지의 경우, 해당 정지 기간 중에도 중간 명령(금지명령, 계좌 보전 명령, 관재인 지정 명령 또는 재산 차압 명령 포함)을 할 수 있다.

제125조 (심판부에 대한 등록부의 경정 신청)

- (1) 등록상표 침해 소송에 있어, 원고의 상표 등록의 효력에 대해 피고와 다툼이 있을 때 또는 피고가 제30조(2)(e)에 의한 항변을 하여 원고가 피고의 상표 등록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 등록의 효력에 관한 쟁점은 등록부의 경정 신청에 근거해서만 결정된다. 이 경우, 제47조 또는 제57조에 불구하고, 상기 신청은 등록관이 아닌 심판부에 해야 한다.

- (2) (1)의 규정에 따른 등록부의 경정 신청이, 제47조 또는 제57조에 의해 등록관에게 제출된 경우, 등록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는, 어떠한 단계에 있는 신청이든 심판부로 이송할 수 있다.

제126조 (표장을 첨부한 상품에 대한 묵시적 보증)

표장, 상표, 또는 거래 표시가 상품 판매, 상품 판매 계약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상표 또는 표장이 진정한 것이며, 허위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 또는 거래 표시가 동법의 취지상 허위의 거래 표시가 아니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매수자에 의한 계약 수락 당시 판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한 자가 서면으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 (등록관의 권한)

동법에 따른 등록관에 대한 모든 절차에 있어,

- (a) 등록관은 증거를 수리하고, 선서를 집행하고, 증인 출두를 명하고, 서류의 개시 및 제출을 명하고, 증인 심문 촉탁서를 교부할 목적으로, 민사 법원이 가지는 모든 권한을 가진다.
- (b) 등록관은 제157조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따라, 등록관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 비용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해당 명령은 민사 법원의 명령과 같이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관은 증명표장의 소유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의 증명을 거절하거나 표장의 사용 허락을 거절한 것에 대해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에 대해서도 절차 비용을 명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 (c) 등록관은 소정의 방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해 재심사할 수 있다.

제128조 (등록관에 의한 재량권의 행사)

제 13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관이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의한 그 재량권 또는 기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당사자에 대해 (소정의 기간 내에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진술한 기회를 주지 않고 그에게 불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129조 (등록관에 대한 증거)

동법에 따른 등록관에 대한 절차와 관련하여, 증거는 선서서에 의해야 한다. 다만, 등록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서서에 의한 증거를 대신하거나 이에 더하여 구두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0조 (당사자의 사망)

동법에 따르는 절차(심판부 또는 법원에 있어서의 절차 제외)의 당사자가 절차의 계속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등록관은 청구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권리 이전에 대해 납득할만한 증거에 근거하여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절차를 대행하도록 하거나 등록관이 사망자의 권리가 생존한 당사자에 의해 충분히 대표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대행하게 하지 않고 절차의 속행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1조 (기간의 연장)

- (1) 등록관에 대해 소정의 방법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신청에 근거하며, 지정기간의 만료일 전후를 불문하고, 일정한 행위를 하는 기간(동법에서 별도로 규정된 기간 제외)을 연장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등록관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교부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2) (1)의 규정은 등록관이 기간 연장 신청을 처리하기 전에 당사자를 청문해야 함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동조에 의한 등록관의 명령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2조 (절차의 포기)

등록관이 동법 또는 동법 시행 전에 효력을 가진 상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신청의 수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해태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신청인에 대한 통지로서 지정기간 내에 해태를 시정해야 할 취지를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청문을 받을 기회를 준 후 그 통지로 지정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이상 해당 신청은 포기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제133조 (식별력에 관한 등록관의 예비적 조언)

- (1) 등록관은 상표 등록출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소정의 방법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는 해당 상표가 일단 식별력이 있다고 생각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
- (2) 등록관이 전항에 의해 긍정적인 조언을 한 상표에 대해 해당 조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출원을 한 경우, 등록관이 추가로 조사 또는 심사하여 출원인에 대해 해당 상표가 식별력이 없음을 이유로 거절통지를 했을 때는, 출원인은 소정의 기간 내에 취하통지를 한 후, 출원시 납부한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제134조 (지방법원에 제기되어야 할 침해 소송 등)

- (1) 다음에 관해서는 이에 대해 재판 관할권을 가지는 지방법원보다 하급의 법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a) 등록상표의 침해에 대한 소송
 - (b) 등록상표의 권리에 관한 소송
 - (c) 등록 또는 미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가 원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데 따른 부정경쟁(passing off)에 대한 소송
- (2) 규정(1)(a) 및 (b)의 적용에 있어, ‘재판 관할권을 가지는 지방법원’이란 1908년 민사소송법 또는 실제로 효력을 가지는 기타 법률에도 불구하고, 소송 또는 기타 절차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소송 또는 절차를 제기한 자 또는 그러한 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또는 영업을 수행하거나 개인적 영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소재지가 있는 당사자에 대해 재판 관할권을 가지는 지방법원을 포함한다.
- 설명 - 규정 (2)의 적용상, ‘~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 소유자 및 등록사용자를 포함한다.

제135조 (침해 또는 부정경쟁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구제)

- (1) 제134조에 의한 침해 또는 부정경쟁에 대한 소송에 대한 구제로서, 법원은 금지명령(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과 함께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는 침해하는 표지 및 포장의 말소를 위한 인도 명령이 포함될 수 있다.
- (2) 규정 (1)에 의한 금지명령에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관한 일방적 금지명령 또는 중간 명령을 포함할 수 있다.
- (a) 서류의 개시
 - (b) 침해 상품, 서류 또는 소송물과 관련된 기타 증거의 보존
 - (c) 최종적인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 또는 기타 금전적 구제에 대해, 악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피고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처리하는 것의 제한
- (3)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명목적 손해배상 제외)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의한 구제를 명할 수 없다.
- (a) 증명표장 또는 단체표장에 대한 침해 소송
 - (b) 침해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납득시켰을 경우
 - (i) 피고가 소송 대상 상표의 사용을 개시할 당시, 원고가 해당 상표에 대한 등록권자라는 사실 또는 원고가 허락된 방법에 의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등록사용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믿은 데 과실이 없는 경우, 및
 - (ii) 피고가 해당 상표에 관한 원고의 권리의 존재 및 내용을 안 즉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멈춘 경우
 - (c) 부정경쟁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가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납득시켰을 경우
 - (i) 피고가 소송 대상의 상표 사용을 개시할 당시, 원고의 해당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

- 는지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믿은 데 과실이 없는 경우, 및
- (ii) 피고가 원고의 상표의 존재 및 내용을 안 즉시, 소송 대상의 상표 사용을 멈춘 경우

제136조 (일정한 절차에 있어 기소되어야 할 등록사용자)

- (1) 제7장 또는 제91조에 근거하는 각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허락을 받은 사용 방법에 의해 상표를 사용하는 등록사용자는, 동장 또는 동조에 근거하는 절차의 신청인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절차의 당사자로 취급된다.
- (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의 당사자로 취급되는 등록사용자는 출정하여 소송절차에 참가하지 않는 한 소송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제137조 (등록부의 기재 사항 및 등록관에 의한 사항의 증거력)

- (1) 등록부의 기재 사항 또는 등록관이 인증하고 상표청의 날인이 있는 제148조(1)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등본은, 모든 법원 및 모든 절차와 관련하여, 추가 입증 또는 원본의 제출을 없이 증거로 채용될 수 있다.
- (2) 동법 또는 규칙에 의해 등록관이 직접 작성하거나 그 권한을 가지는 등록 사항 또는 기타 사항에 관하여 등록관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명서는, 해당 기재 사실 및 그 내용 또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일응의 증거로 본다.

제138조 (등록부 등의 제출을 강제당하지 않는 등록관 및 기타 공무원)

등록관 또는 상표등록청의 기타 공무원은, 자신이 해당 소송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모든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등록부 또는 자기가 보관 중인 기타 서류의 제출을 강제당하지 않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법에 의해 교부되는 인증 등본의 제출에 의해 입증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의하지 않는 이상 상기 인증 등본에 기재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으로서 출정하는 것을 강제당하지 않는다.

제139조 (상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요청 권한)

- (1) 중앙정부는 관보 고시에 의해 인도 국외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어 인도에 수입되는 상품 또는 인도 국내에서 제조 또는 생산된 상품으로서 고시로 지정된 종류의 상품에 대해서는, 고시로 정한 공포일로부터 3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제조 또는 생산된 국가 또는 장소 또는 제조자 또는 생산자의 명칭 및 주소의 표시를 첨부해야 하는 취지를 명할 수 있다.
- (2) 해당 고시에서는 그 표시 방법 즉, 상품에 표시하는지 아니면 그 외의 방법에 따르는지 여부 및 표시가 필요한 시기 및 경우 즉, 수입 당시에만 필요한지 아니면 그에 더하여 도소매를 불문한 판매 당시에든 표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규정할 수 있다.

- (3) 동조에 의한 고시에 대해서는, 관계 상품 취급업자, 제조자, 생산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부터 그 공포의 신청이 없는 한 또는 조사여부를 불문하고, 중앙정부가 고시를 공포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를 공포하지 아니한다.
- (4) 1897년 일반 조항법(General Clauses Act) 제23조의 규정은, 이전에 공포된 조건에 따라 규칙 제정 또는 부칙 제정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동조에 의한 고시의 공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5) 동조에 의한 고시에 대해서는, 인도 국외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어 인도에 수입된 상품으로서 수입 당시 세관장이 수출을 예정한 상품임을 인정한 경우에는, 인도에서 적재 후인지, 인도를 통과한 후인지 또는 그 외의 경우인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0조 (허위 상표를 교부한 수입상품에 관한 정보요구 권한)

- (1) 등록상표의 소유자 또는 그 사용권자는, 상품의 수입이 제29조(6)(c)에 의해 침해를 구성할 때는, 그 상품의 수입을 금지해야 할 취지를 관세 징수관에 대해서 서면에 의해 통지할 수 있다.
- (2) 상표 보호를 위해 1962년 관세법 제 11조(2)(n)에 의한 중앙정부의 고시에 의해 수입을 금지되고 있어 수입되면 동법에 의해 몰수되어야 하는 상품이 인도에 수입되었을 경우, 세관장은 신청에 근거하여 제기 대상 상표가 허위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는, 그 상품의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해, 그 상품과 관련하여 그 사람이 소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취지를 명하는 한편, 그 상품에 대한 인도 전용 출하인 및 인도에 있어서의 수취인의 명칭 및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할 취지를 명할 수 있다.
- (3)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14일 이내에 전항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따르지 않는 경우, 500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동조에 근거하는 상품의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세관장은 해당 상표의 등록 소유자 또는 등록사용자에 통지할 수 있다.

제141조 (효력의 증명)

심판부에 있어서의 등록부 경정의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상표 등록의 효력이 쟁점이 되어 등록 소유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있는 경우, 심판부는 해당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해당 증명서가 교부된 경우, 상기 효력이 문제되는 그 후의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상표 등록의 효력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확정 명령 또는 판결을 받은 상기 소유자는, 자신의 전 소송비용, 수수료 및 변호사 비용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상기 명령 또는 판결이 충분한 이유에 의해 이와 다른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2조 (법적 절차에 관한 근거 없는 위협)

- (1) 등록상표 또는 등록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상표와 관련하여, 답장, 광고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침해 소송 또는 절차 또는 기타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타인을 위협하는 경우, 상기 협박자가 해당 상표의 등록 소유자 또는 등록사용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협을 받은 자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협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신고 및 해당 위협의 속행에 대한 금지명령을 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가 받은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위협한 자가 해당 상표를 등록받은 사실 및 소송에서 상기 행위로 인해 상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또는 상기 행위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납득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전항에 대해서는 상표의 등록 소유자 또는 제52조(1)에 의해 행동하는 등록사용자가 상표 침해와 관련한 상대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동조는 소송의뢰인을 위해서 직업상의 자격으로 변호사 또는 등록상표의 대리인에 의한 행위와 관련하여, 상기 대리인에 대해 동조에 의한 소송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 (4) (1)의 규정에 근거하는 소송은 지방법원보다 하급의 법원에 대해서는 제기할 수 없다.

제143조 (송달주소)

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송달주소는, 신청 또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주소로 간주한다.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서류는 신청인 또는 이의신청인에 대한 송달주소에서 교부하거나 우편에 의해 해당 주소로 송달할 수 있다.

제144조 (참작되어야 할 거래 관습 등)

상표에 관한 소송과 관련하여, 심판위원회는 거래계의 관습 및 타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는 관련 상표, 상호 또는 외장을 증거로 채용할 수 있다.

제145조 (대리인)

동법에 의해 또는 동법에 따라 등록관에 대해 선서 외의 행위를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 상기 행위는, 이와 관련하여 제정된 규칙에 따라,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정의 방법에 의해 정당하게 위임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의할 수 있다.

- (a) 변호사
- (b) 소정의 방법에 의해 상표 대리인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자
- (c) 정식의 정규 복대리인

제146조 (무권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의해 등록된 표장)

등록상표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위임을 받지 않고 자기의 명의로 표장을 사용하거나 등록하려고 하거나 등록한 때는, 해당 소유자는 출원된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거나 자신에 대한 양도로써 상기 표장의 등록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등록부의 취소 또는 경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상기 조치는 해당 상표의 등록 소유자가 해당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47조 (색인)

등록관의 지휘 감독 하에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보관해야 한다.

- (a) 등록상표에 대한 색인
- (b) 등록출원이 실제로 계속하고 있는 상표의 색인
- (c) 등록상표 소유자의 명칭의 색인
- (d) 등록사용자의 명칭의 색인

제148조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는 서류)

(1) 제49조(4)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는,

- (a) 등록부 및 등록 사항의 근거가 된 서류
- (b) 상표 등록에 대한 각 이의신청서, 등록관에 대한 경정 신청서, 이에 대한 답변서 및 등록관에 대한 모든 절차에서 당사자에 의해 제출된 모든 선서서 또는 서류
- (c) 제63조 또는 제74조에 근거해 기탁된 모든 규약 및 제66조 또는 제77조에 근거하는 그 규약 변경의 신청서
- (d) 제147조에 의한 색인
- (e) 관보 고시에 의해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그 외의 서류

소정의 조건에 따라 상표등록청에서 공중의 열람을 위해 개방된다.

다만, 상기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 컴퓨터에 보존되고 있을 때는 동조에 의한 해당 등록부의 열람은 컴퓨터에 보존된 등록부의 관련 기재 사항을 출력하여 열람하는 것으로 한다.

(2)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등록관에게 신청하는 자는, 등록부 또는 (1)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인증 등본을 얻을 수 있다.

제149조 (의회에 제출해야 할 등록관의 보고서)

중앙정부는 동법에 의한 또는 동법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매년 1회, 의회 양원에 대해 제출해야 한다.

제150조 (수수료 및 할증 수수료)

- (1) 동법에 근거하는 출원, 등록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의해 정해진 수수료 및 할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2) 등록관에 작위에 대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등록관은 그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3) 상표등록청에 대한 서류의 제출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해당 서류는 상표청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51조 (제12장의 일정한 사항에 대한 적용 제외)

제12장의 어떤 규정도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 (a) 동 장에 규정이 없는 한, 소송 또는 기타 절차에서의 면책
- (b) 소송 또는 기타 절차에 대해 완전한 증거개시를 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질문 또는 심문에 답변하는 것을 거절하는 권한의 부여. 다만, 그 증거개시 또는 답변은 동 장의 규정 위반에 대한 고소에 대해 해당하는 자에 대한 증거로 하거나 1962년 관세법 제111조(d)에 의해, 한편, 동법 제11조(2)(n)에 의해 수입상품에 관한 상표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가 고시한 상품의 몰수에 관한 동법 제112조(h)에 대한 증거로 채용되지 아니함.
- (c) 인도에 거주하는 사용자의 어떤 종업원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하였으며 고소인의 요구에 의해 또는 고소인을 위해 해당 사용자에 관한 정보 및 그 사람의 사용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관한 정보를 모두 제공한 종업원을 고소 또는 처벌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

제152조 (1908년 인도 등록법에 근거해 등록할 수 없는 상표의 소유권에 관한 선언)

1908년 인도 등록법에도 불구하고, 등록상표 이외의 상표에 대한 어떤 사람의 소유권 또는 권원을 선언하거나 선언하는 취지로 여겨지는 서류는 동 등록법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다.

제153조 (동법의 규정에 의해 구속을 받는 정부)

동법의 규정은 정부를 구속한다.

제154조 (조약국의 국민에 의한 등록출원에 관한 특별 규정)

- (1) 자국의 국민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는 것과 동등의 권리를 인도 국민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는 인도 이외의 국가 또는 국가 동맹의 회원국 또는 국가 연합 또는 정부간 기관과의 조약, 협약 또는 협정의 이행의 관점에서, 중앙정부는 관보 고시에 의해 동법의 적용에 있어 해당 국가 등을 조약국 등으로 선언할 수 있다.

- (2) 조약국 등에서 상표등록출원을 한 자 또는 그 법률상 대표자 또는 양수인이, 해당 조약국 등에서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동법에 따라 등록을 받았을 경우, 해당 상표는 해당 조약국 등에서의 출원일에 등록된 것으로 보아, 동법의 목적상 해당 일을 등록일로 간주한다.
- (3) 상표등록출원이 2 이상의 조약국 등에 출원된 경우, 전항의 6개월의 기간은 그 중 최선의 출원일로부터 기산한다.
- (4) 동법의 어떤 규정도 상표의 소유자에 대해 동법에 따르는 상표등록출원일 이전에 발생한 침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 회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제155조 (상호주의에 관한 규정)

중앙정부가 관보 고시에 의해 지정한 국가 또는 국가 동맹의 회원국 또는 국가 연합 또는 정부간 기관이, 상표의 등록 및 보호에 관해서 자국의 국민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는 것과 동등의 권리를 인도 국민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 등의 국민은 단독으로도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지 아니한다.

- (a)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상표의 소유자로서의 등록을 받는 것
- (b) 등록상표의 소유자의 양수인으로서의 등록을 받는 것
- (c) 제49조에 의해 상표의 등록사용자로서의 등록 신청을 하거나 등록사용자로서의 등록을 받는 것

제156조 (장해를 배제하는 중앙정부의 권한)

- (1) 동법의 규정을 실시하는데 장해가 생겼을 때는, 중앙정부는 관보에 고시되는 명령에 의해, 해당 장해를 배제하는데 필요한 동법의 규정과 상반되지 아니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동법의 시행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동조에 의한 명령을 발할 수 없다.
- (2) 동조에 의한 모든 명령은, 즉시 의회의 각 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157조 (규칙제정 권한)

- (1) 중앙정부는 관보 고시에 의해, 이전에 공포된 조건에 따라 동법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2) 특히, 상기 규칙은 앞서 본 권한의 일반원칙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다음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규정될 수 있다.
 - (i) 제6조(1)에 의해 상표등록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 및 컴퓨터용 플로피 디스크 또는 디스켓 또는 동조(2)에 의한 다른 전자 형식의 기록의 보존상 준수해야 할 안전 보호 조치
 - (ii) 제8조(1)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의 알파벳순서 색인의 공고 방법

- (iii) 등록관이 제13조에 의한 국제적 독점불가 명칭에 해당하는 말을 공고하는 방법
- (iv) 제16조(5)에 의한 연합 해제의 신청 방법
- (v) 제18조(1)에 의한 상표 등록의 출원 방법
- (vi) 제20조(1)에 의한 등록출원의 공고 방법 및 동조(2)에 의한 정정 또는 보정의 공고 방법
- (vii) 제21조(1)에 의한 신청 방법 및 해당 신청에 대한 수수료, 통지 방법, 동조(2)에 의한 답변서 송달 방법 및 동조(4)에 의한 증거 제출의 방법 및 그 기간
- (viii) 제23조(2)에 의한 등록증 양식 및 동조(3)에 의한 출원인에 대한 통지 방법
- (ix) 제25조에 의한 갱신 및 회복의 신청 양식 및 해당 신청을 해야 하는 시기, 각 출원에 대한 수수료 및 할증 수수료, 등록관이 동조(3)에 의해 통지를 하는 시기 및 해당 통지의 방법
 - (ixa) 국제출원이 국제사무국으로 송달되어야 하는 기한 및 제36D조(4)에 따라 등록관에 의해 상세한 내용을 인증하는 방법
 - (ixb) 제36E조(1)에 따라 국제등록의 상세기록을 보관하는 방법
 - (ixc) 제36E조(2)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전달하는 방법
 - (ixd) 제36E조(3)에 따라 국제등록을 공고하는 방법 및 국제등록을 공고하는 기한
- (x) 제40조(2)에 의한 사정 진술서의 제출 방법
- (xi) 제41조에 의한 상표의 소유자에 의한 신청 방법
- (xii) 제43조에 의한 증명표장의 양도 또는 이전의 신청 방법
- (xiii) 제45조(1)에 의한 등록관에 대한 권원 등록의 신청 방법
 - (xiii a) 등록관이 제45조(3)에 기초한 신청을 처리하는 기간
- (xiv) 제46조(4)에 의한 신청을 해야 할 방법 및 기간
- (xv) 제47조(2)에 의한 신청 방법
- (xvi) 제49조(1)에 의한 신청서, 서류 및 해당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기타 증거 및 동조(3)에 의한 통지 방법
- (xvii) 제50조(1)에 의한 신청 방법, 동조(2)에 의한 통지 방법 및 동조(3)에 의한 등록 취소의 절차
- (xviii) 제57조(1) 및 동조(2)에 의한 신청 방법, 동조(4)에 의한 통지 방법 및 동조(5)에 의한 경정 통지의 송달 방법
- (xix) 제58조에 의한 신청 방법
- (xx) 제59조(1)에 의한 신청 방법, 동조(2) 및 동조(3)에 의한 신청의 공고 방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간 및 방법
- (xxi) 제60조(2)에 의한 공고 방법
- (xxii) 제63조(2)에 의해 규약에 규정해야 할 기타 사항

- (xxiii) 제71조(1)에 의한 출원 방법
 - (xxiv) 제73조에 의한 신청의 공고 방법
 - (xxv) 제77조에 의한 신청 방법
 - (xxvi) 생략
 - (xxvii) 생략
 - (xxviii) 생략
 - (xxix) 제88조(1)에 의한 심판장, 부심판장 및 그 외 심판관에게 지불해야 하는 급료, 수당 및 기타 취업 조건
 - (xxx) 제89조(3)에 의한 심판장, 부심판장 및 그 외 심판관의 부정행위 또는 무능력에 대한 조사 절차
 - (xxxi) 제90조(2)에 의한 심판부의 공무원 및 기타 직원의 급료, 수당 및 기타 취업 조건 및 동조(3)에 의한 심판부의 공무원 및 기타 직원의 직무 수행 방법
 - (xxxii) 제91조(3)에 의한 심판 청구의 양식, 증명 방법 및 수수료
 - (xxxiii) 제97조(1)에 의한 심판부에 대한 신청서 양식 및 기재사항
 - (xxxiv) 제127조(c)에 의한 심사의 신청 방법
 - (xxxv) 제128조에 의해 등록관에 대한 그 재량권 행사 요구 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
 - (xxxvi) 제131조(1)에 의한 신청 방법 및 수수료
 - (xxxvii) 제133조(1)에 의한 신청 방법 및 동조(2)에 의한 해당 신청 취하 기간
 - (xxxviii) 제145조에 의해 상표 대리인 위임 방법 및 상표 대리인 등록 방법
 - (xxxix) 제148조(1)에 의한 서류의 열람 조건 및 동조(2)에 의해 등록부의 등록 사항의 인증 등본 신청에 대한 수수료
 - (xl) 제150조에 의한 출원, 등록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수수료 및 할증 수수료
 - (xli) 규정을 필요로 하거나 규정할 수 있는 기타 사항
- (3) 동조에 의해 부여된 규칙 제정 권한은 (2)의(xxix) 및 (xxxi)에 의한 사항에 대해 소급 효과를 주는 권한을 포함한다. 다만, 소급 효과는 동법의 시행일 이전으로 소급될 수 없으며, 해당 규칙이 적용되는 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규칙에는 적용이 없다.
- (4) 동법에 근거해 중앙정부에 의해 제정되는 각 규칙은, 그 제정 즉시 개최 중인 의회의 각 원에 대해 제출하여 30일의 기간 동안 심의를 받는 것으로 하며, 해당 기간은 1 회기 또는 2 이상의 계속 회기에 걸칠 수 있으며, 해당 규칙을 제출한 회기 직후의 회기 또는 상기 계속 회기의 만료 전에, 양 원이 해당 규칙에 어떠한 수정을 가하거나 해당 규칙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합의했을 때는, 이후 해당 규칙은 그에 따라 수정된 내용대로만 효력을 가지거나 효력을 갖지 않게 된다. 다만, 어떠한 수정 또는 무효화도 해당 규칙에 의해 이미 완료된 사항의 효력을 해치지 아니한다.

제158조 (개정)

부칙에 규정된 법령은, 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개정한다.

제159조 (폐지 및 유보 조항)

- (1) 1958년 무역 및 거래 표장법은 동법에 의해 폐지한다.
- (2) 1897년 일반 조항법에 포함된 규정을 해지는 일 없이, 1958년 무역 및 거래 표장법에 의해 제정되거나 공포되거나 부여되거나 수행된 고시, 규칙, 명령, 요건, 등록, 증명서, 통지, 결정, 결의, 지시, 승인, 인가, 승낙, 신청, 청구 또는 기타 사항과 관계된 것으로서, 동법의 시행 당시 실제로 효력을 가지는 것은 계속하여 그 효력을 유지하며, 동법에 대응하는 규정에 의해 제정, 공포, 부여되거나 수행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3) 동법의 규정은, 동법의 시행 당시 실제로 계속 중인 상표등록출원, 해당 등록출원에 수반하는 절차 및 그 등록출원에 대해 부여되는 등록에 대해 적용한다.
- (4) 제100조의 적용에 있어, 동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의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절차에 대해서는 동법이 가결되지 않았던 경우와 같이 동 법원에 계속될 수 있다.
- (5) 동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상표의 특정 사용이 동법의 시행 전에 등록된 상표의 침해가 아닌 경우 해당 상표의 계속적인 사용은 동법에 따르는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6)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의 시행 전에 등록된 상표등록의 만료일은 해당등록 또는 갱신 일로부터 7년의 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로 본다.

다만, 1958 무역 및 거래 표장법 제47조에 의한 방어 상표의 등록은 그 시행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당 등록 또는 갱신기간의 만료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붙임 3 인도 디자인법

인도 디자인법 (2000년 법률 제16호 개정, 2001년 5월 11일 시행)

제1장 서

제1조 (약칭, 적용 지역 및 시행)

- (1) 동법은 2000년 디자인법이라고 칭한다.
- (2) 동법은 인도 전 영역을 범위로 한다.
- (3) 동법은 중앙정부가 고시에 의해서 지정한 날에 시행하지만, 동법이 다른 조항에서 다른 시행 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2조 (정의)

동법에서, 주제 또는 내용에 상반되는 사항이 없는 한,

- (a) ‘물품’이란, 어떠한 제품 또는 물질로서, 인공의 것 또는 부분적으로 인공에서 부분적으로 천연의 것을 의미하고, 제조하여 개별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부품을 포함한다.
- (b) ‘청장’이란, 제3조에 언급된 특허, 디자인, 상표청장(Controller-General of Patents, Designs and Trade Marks)을 의미한다.
- (c) ‘디자인권’이란,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구분에서 물품에 해당 디자인을 적용한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 (d) ‘디자인’이란, 수공예적, 기계적 혹은 화학적인지를 불문하고 또는 분리 혹은 결합을 불문하고, 공업적 방법 또는 수단에 의해 2차원 혹은 3차원 또는 그 쌍방의 형태를 불문하고, 물품에 적용되는 선 또는 색채의 형상, 윤곽, 모양, 장식 혹은 구성의 특징에 한정되는 것으로, 제품에서 시각에 호소하고, 시각에 의해서만 판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구조의 모양 혹은 원리 또는 실질적으로 단순한 기계 장치인 것을 포함하지 않고, 1958년 상표 및 상품법 제2조(1)(v)에 정의된 상표, 인도 형법 제479조에 대해 정의된 재산 표장 또는 1957년 저작권법 제2조(c)에 정의된 예술적 작품도 포함하지 않는다.
- (e) ‘고등법원’이란, 1970년 특허법 제2조(1)(i)에서 그것에 할당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 (f) ‘법정대리인’이란, 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권을 법률상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 (g) ‘창작성이 있다’란, 디자인에 관해서 해당 디자인의 창작자로부터 기원한 것을 의미하고 그 자체가 낱아도 그러한 사용에 대해서는 신규의 디자인을 포함한다.
- (h) ‘특허청’이란, 1970년 특허법 제74조에서 말하는 특허청을 의미한다.

- (i) '소정의'란, 동법에 근거하는 규칙에 의한 소정의 것을 의미한다.
- (j) '신규성이 있는 또는 창작성이 있는 디자인의 소유자'란, 다음에 열거된 사람을 의미한다.
 - (i) 디자인 창작자가 적정한 보수를 받고 타인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디자인 수행의 수익자인 해당 타인
 - (ii) 누군가 타인으로부터 배타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디자인 또는 디자인을 물품에 적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디자인 또는 해당 권리에 대해 그것을 취득한 범위에 있어서 해당 디자인 또는 해당 권리의 취득자
 - (iii) 그 밖의 경우는 디자인 창작자.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 적용권이 원(原)소유자로부터 타인에게 양도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타인을 포함한다.

제2장 디자인 등록

제3조 (청장 및 그 외의 직원)

- (1) 1958년 상표 및 상품법 제4조(1)에 근거하여 임명된 특허, 디자인, 상표 청장은 동법의 적용상 디자인 청장(Controller of Designs)으로 한다.
- (2) 동법의 적용상, 중앙정부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인원의 심사관 및 그 외의 직원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직책을 교부해 임명할 수 있다.
- (3) 동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2)에 의해 임명된 직원은 청장의 지휘 감독아래에 청장이 동법에 근거하는 청장의 직무이며 서면으로 하는 일반 또는 특별한 명령에 의하여 그 수행을 위임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4) (3)의 일반 규정을 해치는 일 없이, 청장은 서면으로 하는 명령 및 거기에 기재한 이유에 의해, (2)에 의해 임명된 직원에게 계속 중인 어떠한 사항을 철회하고, 해당 사항을 청장 자신이 최초부터 혹은 철회한 단계로부터 처리하거나 또는 그것을 (2)에 의해 임명된 다른 직원에게 지시할 수 있고 해당 직원은 지시 명령서에 기재된 특별 지시에 따라서 해당 사항을 최초부터 또는 지시 단계로부터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특정한 디자인의 등록 금지)

다음의 디자인은 등록할 수 없다.

- (a) 신규성 혹은 창작성이 없는 것
- (b) 등록출원의 출원 전 또는 해당할 때에는 우선일 전에, 유형의 형태로 공개 또는 사용에 의해 또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 또는 외국에서 공중에게 개시된 것
- (c) 주지 디자인 또는 주지 디자인의 결합으로부터 두드러질 정도로 식별할 수 없는 것
- (d) 비방적인 또는 외설적인 사항을 포함하거나 담고 있는 것

제5조 (디자인 등록출원)

- (1) 누군가 신규성 또는 창작성이 있고 어떤 나라에 있어서도 먼저 공개되지 않았으며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디자인의 소유자인 취지를 주장하며 출원한 경우, 청장은 동법에 의해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청장은 해당 등록 전에 출원에 대해서 해당 디자인이 동법 및 이에 기초를 두고 제정된 규칙에 의해 등록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관해서, 제3조(2)에 의해 임명된 심사관에 의한 심사를 지시하고, 지시받은 심사관의 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 (2) (1)에 의한 각 출원은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소정의 방법으로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하나의 디자인은 하나의 군에 한정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디자인을 등록해야 할 군에 대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는 청장은 그 이의를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 (4)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장은 등록을 위해 자기에게 제출된 디자인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그 거절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사람은 고등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 (5) 출원인의 불이행 또는 태만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위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수 없었던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 (6) 디자인이 등록될 때에는 출원일에 등록된 것으로 한다.

제6조 (특정 물품에 관한 등록)

- (1) 디자인은 소정의 물품 군에 포함된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해서 등록할 수 있다.
- (2) 어떤 물품이 해당하는 군에 관해서 생기는 의문에 대해서는, 청장이 결정하고 해당 사항에 관한 청장의 결정을 최종적인 것으로 한다.
- (3) 디자인이 하나의 물품 군에 포함된 물품에 관해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군에 포함된 1 또는 2 이상의 다른 물품에 관한 디자인 소유자의 등록출원은 다음의 이유로 거절되지 않으며, 또 그 등록이 무효되지 않는다.
 - (a) 해당 디자인이 먼저 등록된 사실에만 의하여 해당 디자인이 신규성 혹은 창작성을 가지는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
 - (b) 해당 디자인이 먼저 등록된 물품에 적용되고 있는 사실에만 의하여 해당 디자인이 인도 혹은 다른 외국에서 먼저 공개되고 있다는 이유
 다만, 후속 등록의 디자인권 기간은 이전 등록으로부터 발생하는 디자인권 기간을 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4) 누군가가 어떠한 물품에 관해서 디자인 등록을 출원하고,
 - (a) 해당 디자인이 다른 물품에 관해서 타인에 의해 먼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 (b) 해당 출원과 관련되는 디자인이 동일한 물품 또는 그 특징을 변경할 만큼 충분하지 않거

나 혹은 그 동일성에 영향을 줄 만큼 실질적이 아닌 수정 혹은 변경을 가한 다른 물품에 관해서 타인에 의해 먼저 등록된 디자인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출원이 계류 중인 동안 해당 출원인이 먼저 등록된 디자인의 등록소유자가 된 때에는 동조의 전기 규정은 출원인이 출원 시에 그 디자인의 등록 소유자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7조 (등록디자인의 상세 사항 공고)

디자인의 등록 후 신속하게 청장은 해당 디자인에 대한 상세 사항을 소정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그 후 해당 디자인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된다.

제8조 (출원의 대체 등에 관한 명령을 발표하는 청장의 권한)

- (1) 디자인의 등록 전에 언제라도 소정의 방법으로 된 이의제기에 대해서, 디자인 등록의 출원인 혹은 복수의 출원인의 1명에 의해 된 서면에 의한 양도 혹은 계약에 의해 또는 법률의 적용에 의해, 이의제기인이 해당 디자인이 그 후 등록되면 권리를 받거나 출원인의 거기에 따른 권리 또는 해당 디자인의 혹은 해당 권리의 불가분의 지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청장이 납득한 때에는, 청장은 해당 출원을 이의제기인의 명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의제기인 및 출원인 또는 다른 1명 혹은 2명 이상의 공동 출원인의 명의로 처리해야 할 취지를 동조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명령할 수 있다.
- (2) 앞에서 본 명령은, 디자인 등록의 2명 이상의 공동 출원인의 1명에 의해 된 양도 또는 계약에 대해서는 다른 1명 또는 2명 이상의 출원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발할 수 없다.
- (3) 앞에서 본 명령은, 디자인의 이익의 양도에 대한 양도서 또는 계약서에 대하여는 일절 발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a) 해당 디자인이 양도서 혹은 계약서에서 출원 번호로서 특정되고 있는 경우
 - (b) 해당 양도 혹은 계약을 실시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양도 혹은 계약은 출원이 된 디자인과 관련되는 취지의 확인서가 청장에게 제출되고 있는 경우
 - (c) 해당 디자인에 관한 이의제기인의 권리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 (d) 청장이 해당 출원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명령 또는 (5)에 의해 그것을 처리해야 할 방법을 규제하기 위한 명령을 발표하는 경우
- (4) 2명 이상의 공동 출원인 중 1명이 해당 디자인의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 청장은 1명 또는 2명 이상의 생존자가 한 본건에 관한 청구에 근거하고, 고인의 법률상 대표자의 동의에 의하여, 해당 출원을 생존자만의 명의로 처리해야 할 취지를 명령할 수 있다.
- (5) 출원의 처리 여부 또는 처리 방법에 대해 공동 출원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청장은

당사자에 의해 소정의 방법으로 청장에게 한 신청에 근거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청문을 받을 기회를 준 후, 1명 이상의 당사자만의 명의로 출원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또는 그 처리의 방법을 규제하기 위해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모든 목적을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명령을 발표할 수 있다.

제9조 (등록증)

- (1) 디자인을 등록한 경우, 청장은 디자인 소유자에게 등록증을 부여한다.
- (2)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 또는 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장은 등록증의 하나 이상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디자인 등록부)

- (1) 특허청에 디자인 소유자의 명칭 및 주소, 양도 및 이전의 통지, 그 외 소정의 사항을 등록한 디자인 등록부를 보관하고, 해당 등록부는 소정의 안전 보호 조치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플로피 디스크 또는 디스켓에 보존할 수 있다.
- (2) (1)에 의해 디자인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에 보존하는 경우는, 동법에 있어서 디자인 등록부에 등록이라는 단어는 컴퓨터, 플로피 디스크 또는 디스켓에 것처럼 등록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 (3) 동법 시행 시 존재하는 디자인 등록부는 동법에 따르는 디자인 등록부로 통일되어 그 일부를 구성한다.
- (4) 디자인 등록부는 동법에 의해 디자인 등록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들로 지시되거나 인증된 사항에 대한 일응이 증거로 한다.

제3장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제11조 (등록에 의한 디자인권)

- (1) 디자인이 등록되었을 때, 등록디자인 소유자는 동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등록일부터 10년간 해당 디자인권을 가진다.
- (2) 10년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 디자인권 기간의 연장 신청이 소정의 방법으로 청장에게 제출된 경우, 청장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에 의해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을 최초 10년의 만료 시부터 5년간 연장한다.

제12조 (실효 디자인의 회복)

- (1) 제11조(2)에 의한 디자인권 기간 연장의 수수료 납부가 없었다는 이유로 디자인권이 실효한 경우는, 해당 디자인 소유자 또는 그 사람의 법률상 대표자 및 해당 디자인이 2명 이상의 공유인 경우에는 청장의 허가를 얻은 공유자 중 1명 이상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하지 않고 해당 디자인권의 실효일부터 1년 이내에 소정의 수수료를 소정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에 의하여, 해당 디자인권의 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
- (2) 동조에 근거하는 신청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충분히 기술하고, 소정의 방법으로 증명된 진술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의 증거를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실효한 디자인권의 회복 신청 처리 절차)

- (1) 신청인이 희망하거나 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청인을 청문한 후 디자인권 연장 수수료의 불납이 고의가 아니고 신청에 부당한 지연이 없었던 것으로 청장이 납득한 때에는, 미납된 디자인권 기간 연장 수수료 및 소정의 추가 수수료의 납부가 있으면 디자인 등록을 회복할 수 있다.
- (2) 해당 디자인권을 회복하는 조건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장은 동법에 의해 등록부에 등록해야 함에도 등록되지 않은 서류 또는 사항에 대해서 등록부에 등록해야 할 취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회복된 실효 디자인 소유자의 권리)

- (1) 디자인 등록이 회복된 경우, 등록디자인 소유자의 권리는 소정의 규정에 따르는 것 및 디자인 등록이 실효한 날과 해당 디자인 등록의 회복의 날 사이에 해당 디자인을 사용하기 시작했을지 모르는 사람 또는 계약 및 그 외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 명확한 조치를 취한 사람의 보호 또는 보상을 위해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다른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2) 디자인 등록이 실효된 날과 해당 디자인 등록의 회복의 날 사이에 범해진 등록디자인의 도용 또는 해당 디자인권의 침해에 관해서는 소송 또는 그 외의 절차를 일절 제기할 수 없다.

제15조 (판매에 의한 인도 전의 요건)

- (1)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의 판매에 의한 인도 전에 디자인 소유자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해야 한다.
 - (a) (등록출원 시에 정확한 표시 또는 견본이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소정의 디자인의 정확한 표시 또는 견본을 청장에게 제공한다. 디자인 소유자가 그 제공을 게을리할 경우, 청장은

디자인 소유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 후 그 사람의 명칭을 등록부로부터 말소하고 그 결과 디자인권은 정지된다.

- (b) 전기 물품에 각각 소정의 표장 또는 소정의 문자 혹은 도형을 표시시키고, 해당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다. 그 표시를 게을리할 경우, 디자인 소유자는 자기의 디자인 권의 침해에 관한 벌금 또는 배상금을 회수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다만, 해당 물품에 표시하기 위해 적정한 방책을 모두 강구한 것을 디자인 소유자가 증명하는 경우 또는 침해의 발생은 침해자가 해당 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재를 안 후 혹은 그 존재의 통지를 받은 다음에 있었던 것을 디자인 소유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업계 또는 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군 또는 종류의 물품에 대해서 표장에 관한 동조의 요건을 면제 또는 수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취지의 진정이 업계 또는 산업의 입장에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있는 경우, 중앙정부는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법에 근거하는 규칙에 의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그리고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부과하여 해당 군 또는 종류의 물품에 대해서 해당 요건을 면제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16조 (디자인권 개시의 효력)

디자인소유자에 의한 타인에의 디자인 개시에 있어서도 해당 타인이 해당 디자인을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는 정의에 반하는 상황에서의 개시 및 디자인소유자 이외의 자에 의한 정의에 반한 디자인의 개시 및 해당 타인이 해당 디자인을 사용 또는 공개하면 선의에 반하는 상황에서의 개시 및 디자인 소유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선의에 반하는 디자인의 개시 및 등록을 의도한 신규성 및 창작성이 있는 직물 디자인을 가진 물품에 대한 최초의 비공개 수주에 대해서는 해당 디자인의 등록이 해당 개시 또는 수주 후에 얻은 경우, 해당 디자인권을 무효로 하는 정도의 디자인 공개로 보지 않는다.

제17조 (등록 디자인의 열람)

- (1)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 중에는 누구나 청장이 해당 디자인을 특정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소정의 방법으로 해당 디자인을 열람할 수 있다.
- (2) 누구나 청장에게 신청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 등록 디자인의 인증 등본을 입수할 수 있다.

제18조 (디자인권 존재에 관한 정보)

청장은 해당 디자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청구에 의하고 소정의 수수료의 납부가 있을 경우, 해당 디자인 등록의 존속 여부, 그 등록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어떤 물품 군에

관해서 존속하는지를 그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등록일 및 등록디자인 소유자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제19조 (등록 취소)

- (1) 이해관계인은 다음의 경우에 근거하여 디자인의 등록 후 언제라도 디자인 등록의 취소 신청을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즉,
 - (a) 해당 디자인이 먼저 인도에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b) 해당 디자인이 등록일 전에 인도 또는 외국에서 공개되어 있는 경우
 - (c) 해당 디자인이 신규성 또는 창작성이 있는 디자인이 아닌 경우
 - (d) 해당 디자인이 동법에 의하여 등록 가능하지 않은 경우
 - (e) 해당 디자인이 제2조(d)에 정의된 디자인이 아닌 경우
- (2) 동조에 근거하는 청장의 명령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상소하고, 청장은 언제라도 해당 취소 신청을 고등법원에 촉탁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은 이와 같이 촉탁된 신청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정부를 구속하는 디자인)

등록 디자인은 타인에 대한 효력과 모든 점에서 동일한 효력을 정부에 대해서도 가지며, 1970년 특허법 제17장의 규정은 특허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등록디자인에도 적용된다.

제4장 산업 및 국제 박람회

제21조 (박람회 관련 규정)

중앙정부에 의한 관보의 고시에 의해 동조가 적용되는 산업 그 외의 박람회에서 박람회 개최 기간 중 혹은 그 후에 디자인 혹은 디자인 적용 물품의 전시 또는 디자인 표시의 공개 또는 누군가에 의한 다른 장소에 있어서의 박람회 개최 기간 중 혹은 그 후의 디자인 혹은 물품의 전시 또는 디자인 표시의 공개이며, 디자인 소유자의 묵인 혹은 동의를 얻지 않는 것은, 해당 디자인이 등록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전제로 한다.

- (a) 해당 디자인 혹은 물품을 전시하거나 디자인 표시를 공개하는 전시자가 청장에게 소정의 양식으로 사전 통지를 할 것 및
- (b) 등록출원이 디자인 혹은 물품의 최초 전시일 또는 디자인 표시의 최초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된 것

제5장 법적 절차

제22조 (등록디자인의 도용)

- (1) 디자인권 존속 기간 중에 누군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으로 한다.
- (a) 디자인 소유자의 라이선스 혹은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 목적으로 해당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물품 군에 포함되는 어떠한 물품에 해당 디자인 또는 부정의 명백한 모방을 적용하거나 적용시키는 것 또는 해당 디자인이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 또는
 - (b) 해당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물품 군에 속하고 그것에 해당 디자인 또는 부정의 명백한 모방을 적용한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등록 디자인 소유자의 동의 없이 수입하는 것 또는
 - (c) 해당 디자인 또는 부정의 명백한 모방이 해당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물품 군의 어떠한 물품에 등록 디자인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해당 물품을 판매용으로 공개 혹은 개시하거나 또는 공개 혹은 개시시키는 것
- (2) 동조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각 위반에 대해 다음의 책임을 진다.
- (a) 계약 채무로 징수할 수 있는 25,000 루피(INR)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등록디자인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것 또는
 - (b) 디자인 소유자가 위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그 위반의 반복에 대한 금지명령을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정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금지명령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것
- 다만, (a)에 의해 1 디자인과 관련된 징수 합계액은 50,000 루피(INR)를 넘지 않는다.
- 다만, 본항에 의한 구제를 요구하는 소송 또는 그 외의 절차는 지방법원보다 하급의 법원에 일절 제기해서는 안 된다.
- (3) (2)에 의해 구제를 요하는 소송 또는 그 외의 절차에 대하여 제19조에 의해 디자인 등록이 취소되는 각 이유는 항변의 이유로서 원용할 수 있다.
- (4) (2) 제2 단서에 관계없이 제19조에 의해 디자인 등록이 취소되는 이유가 (2)에 의한 구제를 요하는 소송 또는 그 외의 절차에서 (3)에 의한 항변의 이유로서 원용된 경우, 해당 소송 또는 그 외의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소송 또는 해당 다른 절차를 계속 중인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얻기 위해 고등법원에 이관된다.
- (5) 법원이 (2)에 의한 소송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경우, 판결 등본을 청장에게 송부하고, 청장은 디자인 등록부에 그 판결을 등록시킨다.

제23조 (특허에 관련되는 일정한 규정의 디자인에의 적용)

특허의 유효성 증명서 및 취지의 근거 없이 특허권자에 의한 소송 절차가 취해지는 협박의 경우

의 구제와 관련되는 1970년 특허법은, 특허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등록 디자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 경우, 디자인에 있어서 디자인권의 언급은 특허의 언급으로 대체하고, 디자인 소유자의 언급은 특허권자의 언급으로 대체하며, 디자인의 언급을 발명의 언급으로 대체한다.

제6장 일반

제24조 (수수료)

- (1) 동법에 근거한 디자인 등록 및 디자인 출원에 대해서, 디자인에 관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2) 동법 또는 동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칙에 의해 수수료 납부를 필요로 하는 절차에 대해서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무효로 한다.

특허청에 있어서 등록부 및 다른 서류에 관한 규정

제25조 (신탁의 통지가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는 것)

신탁의 통지는 명시적, 묵시적, 추정적인지를 불문하고, 동법에 의해 보관되는 등록부에 등록하지 않거나 또는 청장에 의해 수리되지 않는다.

제26조 (등록부의 열람 및 초본)

동법에 근거해 보관되는 각 등록부는 동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편의 시에는 언제든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고, 등록부의 등록 사항의 인증 등본은 특허청 직인 날인하여 그것을 청구하는 누구에게나 소정의 수수료의 납부하면 주어진다. 다만, 해당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에 보존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해당 등록부의 열람은 컴퓨터에 보존된 등록부의 관계 등록 사항의 컴퓨터 출력을 열람하는 것으로 된다.

제27조 (청장 보고의 특권)

제45조에 말하는 보고 이외에 동법에 근거하여 청장이 하는 보고 또는 청장에 대한 보고는 어떤 경우에도 공개해서는 안되고 공중의 열람에 제공해서도 안 된다.

제28조 (출원이 포기된 경우 등의 명세서, 도면 등의 공개 금지)

디자인 출원이 포기 또는 거절되었을 경우, 해당 출원에 관해서 제출한 출원서 및 도면, 사진, 복사, 표시 또는 전본은 어떤 경우에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또는 청장에 의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제29조 (오기를 정정하는 청장의 권한)

청장은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한 서면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디자인 등록부에 등록된 디자인의 표시 혹은 디자인 소유자의 명칭 혹은 주소에 있어서 또는 기타 사항에 있어서 오기를 정정할 수 있다.

제30조 (양도 및 이전의 등록부예의 등록)

- (1) 누군가가 양도, 이전, 기타 법의 적용에 의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자가 될 경우, 그 자는 자기의 권리를 등록하도록 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청장은 해당 신청을 수리하고 해당 권리의 증명에 납득할 경우, 해당 디자인의 소유자로서 그 자를 등록하고 등록부에 소정의 방법으로 해당 양도, 이전 또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증서의 등록을 시킨다.
- (2) 누군가가 양도 저당권자, 실시권자, 그 외의 사람으로서 등록디자인에 있어서 권리를 가지는 자로 되는 경우, 그 자는 청장에게 자기의 권리를 등록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청장은 해당 신청을 수리하고 해당 권리의 증명에 납득할 때에는, 해당 권리를 발생시키는 해당 증서가 있는 경우 그 상세 사항과 함께 해당 권리의 통지를 디자인 등록부에 소정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 (3) (1) 또는 (2)의 목적으로, 디자인 혹은 디자인 지분의 양도, 양도저당권, 라이선스 또는 디자인의 다른 권리의 설정은 이들을 서면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그들의 권리 및 의무를 지배하는 조건과 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증서 양식으로 정리되며 해당 증서에 근거한 권리의 등록 신청서가 해당 증서의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청장이 소정의 방법으로 신청이 이루어지면 허가할 수 있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부가 기간 내에 청장에게 소정의 방법으로 제출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 다만, 해당 증서는 (1) 또는 (2)에 의해 등록부에 그 상세 사항이 등록된 경우, 그 등록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 (4) 디자인 소유자로서 등록된 자는 동법에 따르는 것 및 등록부에서 타인에게 부여되고 있다고 인정된 권리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디자인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양도하고, 라이선스의 허락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처분하고, 또한 해당 양도, 라이선스 혹은 처분의 대가에 대해서 유효한 수령증을 발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해당 디자인과 관련된 재산권이 다른 동산에 관해서와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 (5) 제31조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 및 (2)에 따라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서류 또는 증서는 어떤 법원에 대해서도 디자인의 디자인권 및 그 외의 권리를 증명하는 증거로 수리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이 서면에 의해 기록된 이유에 의해 특별한 지령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등록부의 경정)

- (1) 디자인 등록부에 부등록 혹은 탈락 또는 해당 등록부에 충분한 이유 없이 된 등록 또는 해당 등록부에 부정하게 존속하고 있는 등록 또는 해당 등록부에 등록의 오기 혹은 결함에 불복하는 자가 소정의 방법에 의해 신청한 경우, 청장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등록을 하거나 삭제 하거나 혹은 변경하는 명령을 발표하고, 그에 상응하게 등록부를 경정할 수 있다.
- (2) 청장은 동조에 의한 절차에 있어서 등록부의 경정에 관해 결정할 필요 또는 편의라고 생각되는 이의를 결정할 수 있다.
- (3) 동조에 근거한 청장의 명령에 대한 불복 제기는 고등법원에 한다. 청장은 동조에 근거한 신청을 고등법원의 결정에 위탁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은 위탁된 신청을 처리한다.
- (4) 등록부를 경정하는 법원의 명령은 경정의 통지가 소정의 방법에 의해 청장에게 송달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지시하고, 청장은 그 통지의 수령에 의해 상응하게 등록부를 경정해야 한다.
- (5) 동조의 어떤 규정도, 청장에 대해 제19조에 규정된 디자인 등록의 취소 명령을 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7장 청장의 권한 및 의무**제32조 (동법에 근거한 절차에 있어서의 청장의 권한)**

본건에 대한 규칙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청장은 동법에 근거해 자기에 대해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하여 증거를 수리하고 선서를 집행하며 증인의 출두를 강제하고 서류의 개시 및 작성을 강제하며 증인 심문 지령서를 교부하고 비용을 재정하는데 있어서 민사 법원의 권한을 가지며, 해당 재정은 관할권을 갖는 어느 법원에서의 판결과 같이 집행할 수 있다.

제33조 (청장에 의한 재량권의 행사)

동법에 의해 또는 동법에 근거하여 재량권이 청장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청장은 출원인에게 청문을(출원인에 의해 소정의 기간 내에 그렇게 청구되고 있을 때에는) 받을 기회를 주지 않고 해당 재량권을 출원인에게 불리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34조 (중앙정부의 지령을 받는 청장의 권한)

청장은 동법의 시행상 발생하는 이의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그 건에 있어서의 지령을 중앙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제35조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디자인 등록의 거절)

- (1) 청장은 그 사용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디자인에 대해서 그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 (2) 동조에 근거한 청장의 명령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제36조 (고등법원에의 상소)

- (1) 동법에 의한 청장명령에 대한 상소가 고등법원에 이루어진다고 선언될 경우, 그 상소는 청장에 의해 발해진 명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2) 전기 3개월의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해당 상소의 대상인 명령의 사본 교부에 필요로 한 시간(있으면)은 제외한다.
- (3) 고등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상소의 결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보좌를 받을 수 있으며, 고등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한다.
- (4) 고등법원은 동 법원에 있어서의 동법에 근거한 모든 심리의 처리 및 절차에 대해 동법에 적합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8장 증거 등**제37조 (청장에 대한 증거)**

제47조에 의해 제정되는 규칙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청장에 대한 동법에 근거한 절차에 있어서 청장에 의한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증거는 선서 진술서에 의해서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청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장은 선서 진술서에 의한 증거를 대신하거나 그에 대한 추가로서 구두에 의한 증거를 받을 수 있거나 당사자가 자기의 선서 진술서의 내용에 관해서 반대신문을 받는 것을 인용할 수 있다.

제38조 (청장의 증서가 증거인 경우)

동법에 의해 또는 동법에 근거해 제정되는 규칙에 의해 청장이 할 수 있도록 수권되고 있는 등록, 사항에 대해서 청장의 수증에 놓여야 하는 증서는 등록된 것, 그 내용 및 해당 사항 혹은 사항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일응이 증거로 한다.

제39조 (특허청 서류의 증거)

청장에 의해 인증되고 특허청에 의해 날인되었다고 여겨지는 특허청의 서류 및 특허청에 보관되고 있는 등록부, 기타 장부에 인쇄되거나 자필 사본 또는 초본은 인도의 모든 법원의 모든 절차에서 추가 증거 또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증거로 수리된다. 다만, 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사본

의 정확성 또는 정통성에 대해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원본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 (우편에 의한 출원 및 통지)

특허청에서 혹은 청장에 대해 또는 동법에 의해 다른 누군가에게 제출, 작성 또는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수권 혹은 청구되고 있는 원서, 통지 및 그 외의 서류는 우송할 수 있다.

제41조 (미성년자, 심신 상실자 등에 의한 선언)

- (1) 누군가가 미성년자, 심신상실 또는 기타 행위무능력이라는 이유로 동법에 의해 청구되거나 혹은 허용된 어떠한 진술 또는 어떠한 사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행위무능력자의 법정 후견인, 위원회 혹은 관리인(있으면) 또는 이들 모두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관해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자가 그러한 진술을 하거나 또는 상황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그에 가장 가까운 진술을 하고, 해당 행위무능력자의 명의로 인해 그 대리로서 해당 사항을 할 수 있다.
- (2) 선임은 행위무능력자의 대리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해당 진술을 하는 것 혹은 해당 사항을 하는 것에 이해관계자에 의한 신청에 의해 동조의 적용상 법원이 할 수 있다.

제42조 (일정한 제한 조건의 무효)

- (1) 다음의 계약 또는 라이선스에 있어서 다음의 효과를 갖는 조건을 삽입하는 것은 위법으로 한다.
 - (i) 디자인이 등록된 물품의 판매 혹은 임대에 관한 계약에서 또는
 - (ii) 디자인이 등록된 물품을 제조 혹은 사용하는 라이선스에서 또는
 - (iii) 디자인이 등록된 물품을 포장하는 라이선스에서
 - (a)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물품 이외의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 구입자, 임차인 또는 실시권자에 대해서 판매자, 임대인, 실시허락자 혹은 그 자의 피지명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강제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금지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그 자의 권리를 어떠한 방법 혹은 어떠한 정도까지 제한하거나 또는 판매자, 임대인, 실시허락자 혹은 그 사람의 피지명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또는
 - (b)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물품 이외의 물품에 있어서 판매자, 임대인, 실시허락자 혹은 그 자의 피지명인에 의해 공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구입자, 임차인 또는 실시권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구입자, 임차인 혹은 실시권자의 권리를 어떠한 방법 혹은 어떠한 정도까지 제한하는 것

- (2) (1)(a) 또는 (b)에 열거된 내용의 조건은, 그것을 포함한 계약이 디자인 등록의 물품의 판매, 임대 또는 라이선스에 관한 계약의 전후를 불문하고, 개별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동항에 해당하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 (3) 제22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누군가에 대한 소송에서 등록디자인에 관한 계약으로 동조에 의해 위법이라고 선언된 조건을 포함한 계약이 위반 행위 시 유효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항변이 된다. 다만, 동항은 원고가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법원이 납득할 때까지 제한 조건이 그 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식 및 동의 없이 계약서에 삽입된 것을 입증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4) 동조의 어떤 규정에 대해서도
- (a) 특정의 사람의 상품 이외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금지하는 계약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b) 동조가 아니면 무효일 계약을 유효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 (c)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물품의 임대차 또는 사용 라이선스에 대한 계약에서 임대인 또는 실시허락자가 자기 혹은 그 피지명인에게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물품의 새로운 부품을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거나 그 물품을 수리에 맡기거나 혹은 그것을 위해 보관할 권리를 유보하는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5) 동조는 동법의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동조에 의해 위법이라고 선언된 제한 조건이 해당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만료 후 유효하게 존속할 때에는 그 한에서 적용된다.

제9장 대리

제43조 (대리)

- (1) 동법에 의한 청장에 대한 모든 출원, 통신 및 청장에 대한 모든 출두는 법조전문가에 의해 또는 명칭 및 주소가 1970년 특허법 제125조에 의해 보관된 특허대리인 명부에 등록된 대리인에 의해 또는 그들을 통해서 서명하거나 할 수 있다.
- (2) 청장은 자기가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 (a) 해당 대리인이 인도의 거주자여야 할 것
- (b) 인도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인도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고용할 것
- (c) 출원인 또는 그 외의 사람에게 의한 서명 또는 출두

제44조 (영국 및 그 외의 조약국 혹은 국가군 또는 정부간 기관과의 상호 협정)

- (1) 영국 또는 그 외의 조약국 혹은 국가군 또는 정부간 기관의 구성국인 나라에 디자인 보호를 출원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법률상의 대표자 혹은 양수인은 단독 또는 공동인지를 불문하고,

동법에 따르는 전기 디자인의 등록이 다른 출원인보다 우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국 또는 그 외의 조약국 혹은 국가군 또는 정부간 기관의 구성국인 나라에의 출원과 동일 일자를 가지는 취지를 주장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전제로 한다.

- (a) 해당 출원이 영국 또는 경우에 따라서 그 외의 조약국 혹은 국가군 또는 정부간 기관의 구성국인 나라에 디자인 보호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되었을 것
- (b) 동조에 어느 사항도 해당 디자인이 인도에 있어 실제로 등록된 날 전에 발생한 도용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권리를 디자인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 (2) 출원 가능 기간으로 동조에 지정된 기간 중에 인도에서 해당 디자인이 전시 혹은 사용된 것 또는 그 설명 혹은 표시가 공개된 것만을 이유로서는, 디자인 등록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 (3) 동조에 근거하는 디자인 등록의 출원은 동법에 근거하는 통상의 출원과 같은 방법으로 되어야 한다.
- (4) 영국 또는 본건에 대해 중앙정부에 의해 통지되는 그 외의 조약국 혹은 국가군 또는 정부간 기관의 구성국인 나라의 의회가 인도에 등록된 디자인의 보호를 위해 충분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것이 중앙정부에 판명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는 관보 고시에 의해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포함하여 동조의 규정이 영국, 해당 다른 조약국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군 혹은 정부간 기관의 구성국인 나라에 있어서 등록된 디자인의 보호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를 지령할 수 있다.

제45조 (의회에 제출해야 할 청장의 보고서)

중앙정부는 의회의 양원에 동법의 집행에 관한 보고서를 청장에 의해 또는 청장 하에서 1년에 1회 제출시켜야 한다.

제46조 (인도의 안전 보장)

동법의 다른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청장은

- (a) 동법에 따르는 디자인 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디자인 등록의 출원이며, 청장이 인도의 안전 보장상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개시해서는 안 되며,
- (b) 동법에 의해 등록된 디자인이며, 중앙정부가 인도의 안전보장상 관보 고시에 의해 지정한 디자인 등록의 취소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0장 중앙정부의 권한 등

제47조 (규칙을 제정하는 중앙정부의 권한)

- (1) 관보 고시에 의해 중앙정부는 동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2) 특히 해당 규칙에는 상기한 권한의 원칙을 해하는 일 없이, 다음의 사항 모두 또는 어느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즉,
 - (a) 출원서 양식, 그것의 특허청에 제출하는 방법 및 제5조(2)에 의해 거기에 첨부되어야 할 수수료.
 - (b) 제5조(5)에 의해 등록을 실시해야 할 기간
 - (c) 제6조(1)에 의한 등록을 위한 물품 분류
 - (d) 제7조에 의해 공고되어야 할 디자인의 상세 사항 및 그러한 공고의 방법
 - (e) 제8조(1)에 의해 이의제기를 하는 방법
 - (f) 제8조(5)에 의해 청장에게 신청하는 방법 및 제6조(1)에 의해 디자인 등록부에 등록해야 할 그 외의 상세 사항
 - (g) 디자인 등록부에 등록을 필요로 하는 추가 사항 및 제10조(1)에 의해 컴퓨터, 플로피 디스크 또는 디스켓으로 해당 등록부를 보존하는 경우에 해야 할 안전 보호 조치
 - (h) 제11조(2)에 의해 디자인권 존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신청 방법 및 납부해야 할 수수료 및 해당 연장에 대하여 납부를 필요로 하는 수수료
 - (i) 제12조(1)에 의해 디자인의 회복 신청의 방법 및 거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수수료
 - (j) 제12조(2)에 의한 신청에 포함된 진술서의 증명 방법
 - (k) 제13조(1)에 의한 디자인 등록의 회복을 위해 납부해야 할 추가 수수료
 - (l) 제14조(1)에 의해 등록디자인 소유자가 따라야 할 규정
 - (m) 제15조(1)(a)에 의해 청장에게 제공해야 할 정확한 표시 또는 견본의 수
 - (n) 물품에 표기해야 하는 표장, 문자 또는 도형이며, 물품이 제15조(1)(b)에 의해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취지를 나타내는 것
 - (o) 제15조(2)에 의한 표기에 관한 것으로 물품의 구분 또는 종류에 대해 면제 또는 수정하는 규칙
 - (p) 제17조(1)에 의한 열람을 위해 납부해야 할 수수료 및 열람 방법
 - (q) 제17조(2)에 의한 디자인의 인증 등본을 취득하기 위해 납부해야 할 수수료
 - (r) 제18조에 의한 청장의 통지에 대해 납부해야 할 수수료
 - (s) 제21조(a)조건 하에 통지하기 위한 양식
 - (t) 제24조(1)에 의해 디자인 등록 및 그 출원에 관해서 및 디자인에 관계하는 그 외의 사항에 관해서 납부해야 할 수수료

- (u) 제26조에 의해 등록부의 등록 사항의 인증 등본의 교부를 받기 위해 납부해야 할 수수료
 - (v) 제29조에 의해 오기를 정정하기 위한 청구서에 첨부될 수수료
 - (w) 디자인 소유자로서의 등록을 위해서 출원을 해야 할 양식 및 청장이 제30조(1)에 의해 권원을 발생시키는 양도, 이전 또는 그 외의 증서를 등록부에 기재시키는 방법
 - (x) 권원의 신청에 임하여 사용해야 하는 양식 및 청장이 해당 권리의 통지에 대해서 제30조(2)에 의해 해당 권리를 설정하는 증서(있으면)의 상세사항과 함께 디자인등록부에 기입시키는 방법
 - (y) 등록의 원서 및 제30조(3)에 규정된 기간 연장 신청서의 제출 방법
 - (z) 제31조(1)에 의한 청장에 대한 신청 방법
 - (za) 제31조(4)에 의해 청장에 대해서 경정의 통지를 송달해야 할 방법
 - (zb) 제32조에 의해 청장에 대한 절차를 규제하는 규칙
 - (zc) 제33조에 의해 청장에 의한 청문을 받기 위해 출원인에게 부여해야 할 기간
 - (zd) 제36조(1)에 의한 상소에 첨부될 수수료
 - (ze) 소정되어야 할 또는 소정될 필요가 있는 그 외의 사항
- (3) 동조에 의해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은 이전 공시 후에 제정되는 규칙의 조건에 따른다.
- (4) 동법에 의해 제정되는 각 규칙은 신속하게 제정 후 개회 중인 의회의 1회기 또는 거기에 계속되는 2 이상의 후속 회기에서 총 30일의 회기의 사이에 의회의 각 원에 상정하고, 해당 회기의 직후의 회기 또는 전기 계속 회기의 만료 전에 양원이 해당 규칙의 수정에 대해 동의하거나 또는 양원이 해당 규칙은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동의할 때에는, 해당 규칙은 이후,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 형태로만 효력을 가지거나 효력을 갖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어떤 수정 또는 취소도 동법에 근거하여 이전에 된 사항의 유효성을 해치지 않는다.

제11장 폐지 및 제외

제48조 (폐지 및 제외)

- (1) 1911년 디자인법은 동법에 의해 폐지한다.
- (2) 폐지에 관한 1897년 일반 조항법에 포함된 규정을 해치는 일 없이, 1911년 디자인법에 근거, 교부, 부여, 또는 만들어진 어떠한 고시, 규칙, 명령, 요건, 등록, 증명서, 통지, 결정, 인정, 지시, 허가, 위임, 동의, 신청, 청구 혹은 사항들 중 동법의 시행 시에 유효한 것은, 계속해서 유효한 것으로 하고 동법의 대응 규정에 의해 교부, 부여 또는 만들어진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3) 동법의 시행 시에 계속되고 있는 디자인 등록의 출원, 거기에 따르는 절차 및 거기에 부여된 등록에 동법은 적용된다.
- (4) 동법에 포함된 규정에 구매 받지 않고, 동법의 시행 시에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소송은 동법이 가결되지 않았던 것처럼 계속 동 법원에서 된다.
- (5) (2)에 포함된 규정에 구매 받지 않고, 동법의 시행 전에 등록된 디자인권의 만료일은 동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그것이 등록된 5년의 기간의 직후의 날 또는 원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제2 디자인권 기간의 연장이 된 5년의 기간 직후의 날로 한다.

제3절

●●

베트남

1. 지식재산 환경

베트남은 산업발전, 교역 확대에 따라 산업재산권 창출·보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민 인식 미흡, 전문 인력 부족,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해 가시적 성과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베트남은 산업재산권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2018년에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업무협력을 통해 산업재산권 자동화 시스템(IPAS, Industrial Property Automation System)을 운영 개시하였다. 또한, 베트남은 2020년 5월에 국가 지식재산 전략을 발표¹³⁾하면서 정책 목표 중 하나로서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양적·질적 향상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베트남은 2019년에 디자인 국제등록을 위한 헤이그협약(Hague system)에 가입하고¹⁴⁾ 우리와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실시하는¹⁵⁾ 등 신속한 심사·등록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베트남에서 특허출원·등록은 최근 5년간 연평균 8.20%, 12.92% 증가율을 나타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엔 출원 6,071건, 등록 2,219건을 기록하였다.¹⁶⁾ 베트남에서는 특히 2018년에 특허출원이 12.80%, 특허등록이 27.16% 각각 급증했는데, 이는 해외기업의 진출 확대, 국내 지식재산권 인식 향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내국인 출원 규모로 볼 때, 베트남의 특허 활동은 2018년 세계 4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¹⁷⁾ 세계 특허출원·등록 건수에서 베트남의 특허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매우 작지만, 베트남의 지식재산 제도 개선, 시장 확대 등에 따라 특허 활동이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베트남에서 특허출원·등록 중에 외국인의 비중은 약 90%로서 매우 높는데, 내국인 출원·등록도 최근 5년간 연평균 7.64%, 56.59% 증가율을 기록해 지속 증가 중이다. 한편, 베트남 내국인이 타국에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해외출원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에 출원 103건, 등록 43건을 기록하는 등 아직 100건 내외 수준에 불과하다.

13) 베트남 국가지식재산청, “베트남 지식재산 전략 2030(Viet Nam’s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until 2030 : Driving force for develop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assets)”(2020).

14) 베트남은 특허 국제등록을 위한 PCT 시스템(PCT system)에 1992년 12월에 가입하였고, 상표 국제등록을 위한 마드리드 시스템(Madrid system)에는 조약승계를 통한 계속 적용을 선언함으로써 1956년 9월에 가입함. 한편, 베트남은 2006년 4월에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루는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에도 추가 가입함.

15) 우리 특허청은 베트남 특허청과 2019년 6월부터 2년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시범 시행하고 있음.

16)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 www3.wipo.int/ipstats/keyindex.htm (11월 22일 최종방문).

17)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 2019(2019), p.9.

▼ 표 10 | 베트남에서의 특허출원·등록 추이(2013~2018년)

(단위: 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최근 5년)
특허 출원	내국인	443	487	582	560	592	646	7.641%
	외국인	3,552	3,960	4,451	4,668	4,790	5,425	8.286%
	소 계	3,995	4,447	5,033	5,228	5,382	6,071	8.200%
	해외출원	54	74	100	73	71	103	12.616%
특허 등록	내국인	59	36	63	76	111	205	56.593%
	외국인	1,123	1,361	1,325	1,347	1,634	2,014	10.894%
	소 계	1,182	1,397	1,388	1,423	1,745	2,219	12.917%
	해외등록	11	24	25	42	48	43	19.009%

2018년 기준, 베트남에서 상표출원·등록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1.57%, 2.58% 증가율을 나타내 점증하는 추세이며, 2018년엔 출원 94,196건, 등록 49,769건을 기록하였다.¹⁸⁾ 베트남에서도 상표출원·등록 건수가 특허 등 다른 산업재산권에 비하여 월등히 많으며, 내국인 비중이 높아서 전체 출원 건수의 약 65%, 등록 건수의 약 45% 이상을 차지한다. 베트남에서는 2016년 이래 매년 8만 건 이상 상표가 출원되는 등 상표 활동이 활발하며, 상표 등록도 2017년에 14.70% 급증해 2019년에는 상표 등록이 年 5만 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베트남에서 상표출원·등록이 점증한 이유는 ① 베트남 시장의 확대 및 해외기업 진출, ② 특허와 달리 기술적 창작이 필요하지 않은 창작 용이성 등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내국인 출원 규모를 볼 때, 베트남의 상표 활동은 2018년 세계 18위에 해당하는 것으로¹⁹⁾ 해외기업 진출 확대, 상표권 인식 제고에 따라 베트남에서 상표 활동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베트남 내국인이 타국에서 상표를 출원·등록하는 해외출원도 계속 증가하는데, 2018년에 해외출원은 전년대비 63.08% 증가한 7,244건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18)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 www3.wipo.int/ipstats/keyindex.htm (11월 19일 최종방문).

19)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 2019(2019), p.9.

▼ 표 11 | 베트남에서의 상표출원·등록 추이(2013-2018년)

(단위: 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최근 5년)
상표 출원	내국인	36,236	38,854	45,230	54,963	55,313	60,731	12.090%
	외국인	21,482	22,308	22,514	26,965	29,463	33,465	10.885%
	소계	57,718	61,162	67,744	81,928	84,776	94,196	11.572%
	해외출원	2,032	2,734	3,482	3,733	4,442	7,244	29.160%
상표 등록	내국인	22,515	23,831	21,971	20,466	22,504	22,699	-0.958%
	외국인	21,315	21,704	22,851	20,862	24,901	27,070	6.163%
	소계	43,830	45,535	44,822	41,328	47,405	49,769	2.583%
	해외등록	1,592	5,191	2,332	2,718	5,044	4,470	8.918%

베트남에서 외국출원인 상표출원 건수(2018년 기준)는 중국이 5,5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 4,132건, 일본 4,011건, 우리나라 3,212건 등의 순이었다.²⁰⁾

▼ 표 12 | 베트남에서의 국가별 외국인 상표출원 현황(2013-2018년)

(단위: 건)

국 가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최근 5년)
중 국	1,590	1,860	1,706	3,263	3,872	5,531	36.124%
미 국	3,496	3,335	3,636	3,543	3,955	4,132	5.643%
일 본	3,133	2,770	2,445	3,075	3,955	4,011	11.017%
한 국	1,175	1,252	1,486	2,053	2,232	3,212	27.368%

베트남에서 전체 상표출원 중에 우리나라의 출원은 3.41%를 차지했으며, 우리 기업의 진출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상표출원도 2018년에 43.90% 급증하였다(2018년 기준).

베트남의 디자인 출원·등록(2018년 기준)은 최근 5년간 연평균 6.94%, 12.45% 증가율을 나타내 점증하는 추세이며, 2018년엔 출원 3,366건, 등록 2,824건을 기록하였다.²¹⁾ 베트남에서 디자인 출원·등록 건수는 상표 등 다른 산업재산권에 비해 아직 적은 편이며, 내국인 비중이 외국인보다 높아서 출원·등록 건수 모두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20)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 2019(2019), p.96.

21)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 www3.wipo.int/ipstats/keyindex.htm (11월 19일 최종방문).

▼ 표 13 | 베트남에서의 디자인 출원·등록 추이(2013-2018년)

(단위: 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최근 5년)
디자인 출원	내국인	1,556	1,736	1,839	2,060	1,763	1,891	2.698%
	외국인	873	873	1,046	1,334	1,420	1,475	14.418%
	소계	2,429	2,609	2,885	3,394	3,183	3,366	6.939%
	해외출원	712	287	1,639	927	826	425	92.049%
디자인 등록	내국인	960	1,144	1,029	988	1,504	1,433	8.367%
	외국인	597	819	652	671	1,104	1,391	18.263%
	소계	1,557	1,963	1,681	1,659	2,608	2,824	12.453%
	해외등록	754	219	1,759	574	1,115	345	165.255%

내국인 출원 규모를 볼 때, 베트남의 디자인 활동은 2018년 세계 26위에 해당하는 것으로²²⁾ 베트남에서는 2017년에 디자인 등록 건수가 57.20% 급증하는 등 디자인 활동이 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와 같이 정보통신 등 첨단기업을 중심으로 디자인 출원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베트남 내국인이 타국에서 디자인을 출원·등록하는 해외출원 건수는 2015년에 디자인 해외출원이 471.08%, 해외등록이 703.20% 급증한 바 있다.

2. 지식재산 법

베트남은 우리와 달리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비롯하여 저작권, 지리적표시 및 식물품종보호를 모두 통합하여 규정한 「지식재산권법(Law on Intellectual Property)(50/2005/QK11)」을 보유하고 있다. 동법은 2005년 제정되어 2006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2009년 6월 개정법인 「지식재산권법 일부개정법」(36/2009/QH12)이 통과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22)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 2019(2019), p.9.

붙임 1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2009년 6월 19일 개정 36/2009/QH12(2010년 1월 1일 시행)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법규의 범위)

동법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산업재산권,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 및 이러한 권리의 보호에 관해 규정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동법은 베트남 조직 및 국민, 동법 및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한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조직 및 국민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 (지식재산권의 대상)

1. 저작권의 대상은 문학, 예술적·과학적 저작물을 포함하고, 저작권 인접권의 대상은 공연, 음반, 영상 기록, 방송 및 프로그램이 암호화된 위성 신호를 포함한다.
2. 산업재산권의 대상은 발명, 산업디자인, 반도체배치설계, 영업비밀, 상표, 상호 및 지리적표시를 포함한다.
3. 식물품종권의 주제는 재생산할 수 있는 재료와 수확된 재료를 포함한다.

제4조 (용어의 해석)

동법에서 아래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1. 지식재산권은 저작권, 저작권 인접권,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을 포함한 지식재산에 대한 개인 또는 조직의 권리를 의미한다.
2. 저작권은 창출했거나 소유한 저작물에 대한 개인 또는 조직의 권리를 의미한다.
3. 저작인접권(이하, 인접권) 공연, 음반, 영상 기록, 방송, 프로그램이 암호화된 위성신호에 대한 개인 또는 조직의 권리를 의미한다.
4. 산업재산권은 창출했거나 소유한 발명, 산업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영업비밀, 상표, 상표명, 지리적표시에 대한 개인 또는 조직의 권리 및 부정경쟁을 억압할 권리를 의미한다.
5. 식물품종권은 선택, 창출 또는 발견 및 개발 또는 소유한 새로운 식물품종에 대한 개인 또는 조직의 권리를 의미한다.

6. 지식재산 소유권자는 지식재산의 소유권자 또는 소유권자에게 지식재산권을 양도받은 개인 또는 조직을 의미한다.
7. 저작물은 모든 표현 방식이나 형태로 된 문학, 예술적·과학적 분야에서의 정신의 창출을 의미한다.
8. 파생작은 선택, 요약, 수집, 변형, 수정, 적용 또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9. 출판된 저작물, 음반 또는 영상 기록은 저작권 소유권자 또는 인접권 소유권자의 허가로서, 합리적인 양의 사본을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물, 음반 또는 영상 기록을 의미한다.
10. 재생산은 전자적 형태로 저작물을 백업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방식 또는 모든 형태로써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저작물 또는 음반 또는 영상 기록을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11. 방송은 저작물, 공연, 음반, 영상 기록 또는 방송의 소리나 영상, 또는 소리와 영상을 위성 송신을 포함한 유·무선 방식으로 대중에게 전송하여 사람들이 그 저작물을 그들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12. 발명은 자연법칙의 적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절차의 형태를 한 기술적 해결책을 의미한다.
13. 산업디자인은 3차원 배열, 선, 색채 또는 이러한 요소의 결합으로 구현된 제품의 특정한 외관을 의미한다.
14. 반도체집적회로는 전기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요소 중 최소한 하나가 활성 요소이고, 일부 또는 모든 상호연결이 반도체 물질의 조각 내에 혹은 그 위에 통합적으로 형성된 최종 형태 또는 중간 형태를 한 제품을 의미한다. 집적회로는 IC, 칩 및 초소형 전자회로와 유사하다.
15.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는 반도체집적회로 내에서의 회로 요소 및 그 상호연결에 대한 3차원 배치를 의미한다.
16. 상표는 다른 조직 또는 개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를 의미한다.
17. 단체표장은 상표를 소유한 조직의 일원이 아닌 것을 일원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표를 의미한다.
18. 증명표장은 상표를 지닌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 원재료, 재료, 상품 제작 방식 또는 서비스 공급 방식, 품질, 정확성, 안전성 또는 다른 특징을 인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조직 또는 개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조직 또는 개인이 사용하도록 소유자가 인증한 상표를 의미한다.
19. 연합상표는 동일한 종류 또는 유사한 종류 또는 서로 연관된 제품 혹은 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일한 주체가 등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의미한다.
20. 주지상표는 베트남 전역에서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상표를 의미한다.
21. 상호는 그 상표명을 지닌 사업 주체를 동일한 사업 부문 및 영역에 있는 다른 주체와 구별시

켜 줄 수 있는,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 또는 개인의 명칭을 의미한다. 동조에서 언급한 사업 영역은 사업 주체의 파트너 또는 고객이 있거나, 사업 주체가 명성을 얻는 지리적 영역을 의미한다.

22. 지리적표시는 특정한 지역, 장소, 영토 또는 국가로부터 유래하는 제품을 식별시켜주는 상징을 의미한다.
23. 영업비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적·지적 투자 활동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의미한다.
24. 식물품종은 단일한 식물 분류 체계의 가장 낮은 등급으로 알려져 있으며, 형태적으로 균일하고, 변형하지 않고 번식시키기 적합하며, 표현형의 표현으로 정의될 수 있고, 최소한 하나의 유전되는 표현형에 의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는 식물군을 의미한다.
25. 보호증서는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상표 또는 지리적표시나 식물품종에 관한 권리에 대한 산업재산권을 설립하기 위하여 관할 국가 기관 조직 또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26. 생식 물질은 식물 또는 생식 또는 재배 시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식물로 자랄 수 있는 식물의 부분을 의미한다.
27. 수확된 물질은 식물 또는 생식 물질의 재배로부터 얻어진 식물의 부분을 의미한다.

제5조 (동법의 적용)

1. 동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민사적 사항은 민법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2. 동법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과 기타 법의 규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3.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의 규정이 동법의 규정과 다른 경우, 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6조 (지식재산권의 발생 및 성립의 근거)

1. 저작권은 내용, 품질, 형태, 표현 수단, 언어, 공표나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물이 창조되고 특정 유형으로 표현되는 순간에 발생한다.
2. 인접권은 공연, 음반, 영상 기록, 방송 또는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위성 신호가 저작권의 침해 없이 표현되거나 전시되는 순간에 발생한다.
3.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 a)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상표 또는 지리적표시에 대한 산업재산권은 동법에서 규정된 등록 절차에 따라 관할 국가 기관이 보호증서의 허여 결정을 근거로, 또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 하에서의 국제 등록의 승인 시에 발생하며, 주지상표의 경우, 산업재산권은 등록 절차와 무관하게 사용 절차를 근거로 성립된다.

- b) 상호에 대한 산업재산권은 상호의 합법적 사용을 근거로 성립된다.
 - c) 영업비밀에 관한 산업재산권은 영업비밀의 합법적 획득 및 비밀 유지를 근거로 성립된다.
 - d) 부정경쟁방지에 대한 권리는 사업상 경쟁을 근거로 성립된다.
4.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는 동법에서 규정된 등록 절차에 따른 관할 국가 기관의 식물품종 보호 증서에 대한 허여 결정을 근거로 발생된다.

제7조 (지식재산권의 제한)

1. 지식재산 소유권자는 동법에서 제공한 보호의 범위와 기한 이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지식재산권의 행사는 국익, 공익, 다른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다른 관련 법 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3. 국방, 안보, 국민생계목적 및 동법에 명시된 국가와 사회의 다른 이익의 달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는 소유권자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적절한 조처 하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에게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것을 강제할 수 있다. 국가비밀로 분류된 발명에 대한 권리의 제한은 정부 규정을 준수한다.

제8조 (국가 지식재산 정책)

1. 지식재산권 보유자와 공공의 이익 모두를 보장하면서 기관 및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승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도덕성,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국가 방위 및 보안에 해로운 지식재산 대상은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2. 창작 활동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재산 관련 자산의 개발 촉진 및 지원 그리고 인간의 물질적 및 정신적 생활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
3. 공공 이익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개발 및 양도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것이다; 내국 및 외국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창작 활동의 재정적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4. 지식재산권 보호와 과학 및 기술의 연구 및 적용에 관여하는 간부, 공무원, 공공부문 종사자 및 기타 관련 업무 종사자의 훈련 및 재교육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5.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역량 강화에 사회자원을 동원하여 사회경제적 발전과 국제경제통합 요건을 충족한다.

제9조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있어서의 조직 및 개인의 권리와 책임)

모든 조직 및 개인은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적절한 수단을 취할 수 있는 권리와 동법 및 기타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조직 및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제10조 (지식재산 국가 관리의 내용)

1.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전략 및 정책 실현의 구성 및 지시.
2.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 문서 시행의 공포 및 구성.
3. 지식재산 관리 기구의 구성, 지식재산 공무원의 훈련 및 육성.
4. 등록된 저작권 증명서, 등록된 인접권 등록 증명서, 산업재산권 대상의 보호증서 및 식물품종의 보호증서와 관련된 관련한 허여 및 기타 절차의 수행.
5. 지식재산법 준수의 조사 및 심사, 고소 및 항소 합의, 지식재산법과 관련된 위반에 대해 대처.
6. 지식재산의 정보 및 통계 활동 조직.
7. 지식재산 평가 활동에 대한 조직 및 관리
8.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 및 지식의 교육, 전파, 보급.
9.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적 협력.

제11조 (지식재산의 국가 관리 책임)

1. 정부는 일원화된 지식재산의 국가 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2. 과학기술부(Science and Technology Ministry)는 지식재산의 국가 관리 실시와 관련하여 문화정보부(Culture and Information Ministry) 및 농업지역개발부(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Ministry)와 협력할 책임이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국가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문화정보부는 그 책임과 권한 내에서, 저작권 및 인접권의 국가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농업지역개발부는 그 책임과 권한 내에서,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3. 부처, 부처 하위 기관 또는 청급 기관은 그 책임과 권한 내에서, 지식재산의 국가 관리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과학기술부, 문화정보부, 농업지역개발부 및 지역 및 시도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와 협력할 책임이 있다.
4. 모든 수준의 인민위원회는 그 권한 내에서 해당 지역에서 지식재산의 국가 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5. 정부는 과학기술부, 문화정보부, 농업지역개발부, 그리고 모든 수준의 인민위원회의 지식재산의 국가 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제12조 (지식재산 수수료 및 부과금)

조직 및 개인은 동법 및 다른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 관련 절차를 수행할 때 수수료 및 부과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2부 저작권 및 인접권

제1장 저작권 및 인접권의 보호 요건

제1절 (저작권의 보호 요건)

제13조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을 가지는 저자 및 저작권의 소유자)

1.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을 가진 조직 및 개인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사람 및 동법의 제37조 내지 제42조에 규정된 저작권 소유자를 포함한다.
2. 동조의 제1항에 규정된 저자 및 저작권의 소유자는 베트남 조직 및 개인, 저작물이 베트남에서 최초로 공표되고 기타 외국에서 공표되지 않았거나 기타 국가에서의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베트남에서 공표된 외국 조직 및 개인, 저작물이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보호되는 외국 조직 및 개인을 포함한다.

제14조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종류)

1.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문학, 예술 및 과학 저작물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문학 및 과학 저작물, 교과서, 교육 강좌 및 글로 작성된 언어나 다른 글자로 표현된 다른 저작물
 - b) 강의, 연설 및 다른 설교
 - c) 인쇄 저작물
 - d) 음악 저작물
 - e) 연극 저작물
 - f) 영화 저작물 및 영화와 유사한 과정으로 창작된 저작물(이하, 영화 저작물)
 - g) 조형 예술 저작물 및 응용 미술 저작물
 - h) 사진 저작물
 - j) 건축 저작물
 - j) 지형학, 건축학 또는 과학적 작업과 관련된 스케치, 계획, 지도 및 도안
 - k) 민속학 및 민속 문화의 민속 공예품
 - l)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 편찬물
2. 파생 저작물은 이러한 파생 저작물을 창출하는데 사용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동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된다.
3.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의된 보호받는 저작물은 저자들에 의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복제하지 않고 자신의 지적 노동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창출된 것이어야만 한다.
4. 정부는 동조 제1항에 명시된 저작물의 종류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규정한다.

제15조 (저작권 보호 제외 대상)

1. 언론 정보 항목만을 목적으로 한 그날의 뉴스
2. 법률 서류, 행정 서류, 기타 사법권역에 포함되는 서류 및 그 서류의 공공 번역물;
3. 프로세스, 시스템, 작동 방법, 개념, 원칙 및 데이터

제2절 인접권의 보호 요건**제16조 (인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직 및 개인)**

1. 배우, 가수, 연주자, 무용수, 그리고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을 공연하는 기타 공연자(이하, 공연자).
2. 동법 제44조 제1항에 정의된 공연의 소유자인 조직 및 개인.
3. 공연의 음향, 이미지 또는 기타 음향 및 이미지를 최초로 유형물에 고정한 조직 및 개인(이하, 음반 제작자).
4. 방송 개시 또는 실시를 행하는 기관(이하, 방송 기관).

제17조 (인접보호권의 대상)

1.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공연은 보호된다.
 - a) 베트남 국내 또는 해외에서 공연된 베트남 시민이 제작함
 - b) 베트남에서 공연된 외국인이 제작함
 - c) 동법의 제30조에 의해 보호되고, 음반 또는 영상 기록에 고정됨
 - d) 음반이나 영상 기록에 고정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방송되고 그러한 방송이 동법 제31조에 의해 보호됨
 - e)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보호됨
2.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음반 및 영상 기록은 보호된다.
 - a) 베트남 국적을 가진 음반 및 영상 기록의 제작자에게 귀속됨
 - b)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 및 영상 기록의 제작자에게 귀속됨
3.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방송 및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위성 신호는 보호된다.
 - a) 베트남 국적의 방송 조직에게 귀속됨
 - b)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 조직에게 귀속됨
4. 공연, 음반, 영상 기록, 방송 및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위성 신호는 저작권의 실시 영향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동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해 보호된다.

제2장 저작권 및 인접권의 보호 내용, 제한 및 기간

제1절 저작권의 보호 내용, 제한 및 기간

제18조 (저작권)

동법에 규정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포함한다.

제19조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다음 권리를 포함한다.

1. 저작자가 저작물을 명명할 권리
2.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필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이 출판되거나 사용될 때 저작자의 이름이나 필명이 언급되게 할 권리
3.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 또는 다른 사람이 출판하게 할 권리
4. 저작물의 완전성을 보호할 권리, 다른 사람이 저작자의 명예 및 명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변경, 손상, 변형, 또는 기타 개조를 하는 것을 방지할 권리

제20조 (저작재산권)

1. 저작재산권은 다음 권리를 포함한다.
 - a) 파생 저작물 창작 권리
 - b)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시할 권리
 - c) 저작물을 재생산할 권리
 - d)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사본을 배포하거나 수입할 권리
 - e) 유무선 수단에 의해, 전자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또는 기타 기술적 수단에 의해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송할 권리
 - f) 영화 저작물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대여할 권리
2. 동조 제1항에 기재된 권리는 저작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에 의해 또는 동법에 의해 소유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다른 사람에 의해 배타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3. 동법 제19조 제3항 및 동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 하나, 여러 개 또는 모두를 사용하거나 행사하는 조직 및 개인은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요청하고 이용료, 보상금 및 기타 물질적 이익을 저작권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21조 (영화 저작물 및 연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1. 감독, 시나리오 저자, 카메라맨, 몽타주 화가, 작곡가, 예술 디자이너, 음향, 조명 및 무대예술 디자이너, 스튜디오 장비 및 기술효과 디자이너 및 기타 영화 저작물과 관련된 창조적 직업에

- 종사하는 사람은 동법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권리와 달리 합의한 기타 권리를 가진다. 감독, 극저자, 안무가, 작곡가, 예술 디자이너, 음향, 조명 및 무대예술 디자이너, 무대 장비 및 기술효과 디자이너 및 기타 드라마 저작물과 관련된 창조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동법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권리와 달리 합의한 기타 권리를 가진다.
2. 영화 저작물 및 드라마 저작물 제작에 재정적 투자 그리고 기타 물질적 및 기술적 장비를 투자한 조직 및 개인은 동법 제19조 제3항 및 제20조에 명시된 권리 소유자이다.
 3.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조직 및 개인은 동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이용료, 보상금 및 기타 물리적 이익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제22조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 편집물의 저작권)

1.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정 결과를 위해 컴퓨터에 의해 판독할 수 있는 명령어, 코드, 도표 등의 형태로 표현된 지시의 집합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소스 코드 또는 기계 언어로 표현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문학 저작물과 같이 보호된다.
2. 데이터 편집물은 선택되거나 정렬된 데이터의 집합을 전자적 형태나 기타 형태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 편집물의 저작권 보호는 데이터 자체의 저작권 보호를 포함하지 않으며, 그 데이터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23조 (민속학 및 민속 예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1. 민속 예술 및 민속 예술 저작물은 공동체 또는 개인의 전통을 기초로 하고 그러한 공동체의 기대를 반영한 집합적 창작의 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문화적 및 사회적 캐릭터를 적절히 표현한 것이고, 특징 및 가치가 구두로 또는 모방 등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이며, 민속 예술 및 민속 문학 저작물을 다음을 포함한다.
 - a) 설화, 시 및 수수께끼
 - b) 민요 및 민속 경음악
 - c) 민속 무용, 연극, 의식 및 게임
 - d) 그림, 조각, 악기, 건축학적 모델 및 어떠한 물질적 형태로 표현된 기타 민속 예술 산물
2. 민속학 및 민속 예술 저작물을 이용하는 조직 및 개인은 그 기원을 표시해야 하고 그 진정한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

제24조 (문학적, 예술적 및 과학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동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문학적, 예술적 및 과학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는 정부에 의해 명시된다.

제25조 (이용료 또는 보상금의 지불 및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출판된 저작물의 사용)

1. 이용료 또는 보상금의 지불 및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출판된 저작물의 사용 사례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개인적 과학적 연구 또는 교육 목적의 저작물 복제
 - b) 논평 또는 설명적 목적을 위해 저자의 견해를 곡해하지 않는, 저작물의 합리적인 인용
 - c)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다큐멘터리 또는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에 출판된 기사에 있는 저자의 견해를 곡해하지 않는, 저작물의 인용
 - d) 상업적 목적이 없는, 저자의 견해를 곡해하지 않는, 학교에서의 강의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인용
 - e) 기록 및 연구 목적을 위해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의 복사 재생산
 - f) 어떠한 형태로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연극 공연 저작물 또는 대중문화, 의사소통 또는 신체 움직임에 의한 다른 공연 예술 저작물
 - g) 현재 시사 보고 목적 또는 교육 목적을 위한 공연의 시청각 음반
 - h) 저작물의 이미지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조형 예술, 건축, 사진, 공공장소에 설치된 응용예술 저작물의 방영 또는 사진 촬영
 - i)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른 언어로 저작물을 글로 옮긴 기록
 - j) 개인적 사용을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 복사본 수입
2. 동조 제1항에 정의된 저작물을 사용하는 조직 또는 개인은 이러한 저작물의 일반적 사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되며, 저자 또는 저작권 소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저작물의 저자명, 출처, 원작을 표시해야 한다.
3. 동조 제1항의 a와 e의 규정은 건축, 조형 저작물 및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없다.

제26조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이용료나 보상금의 지불이 필요한 출판된 저작물의 사용)

1. 후원을 받거나, 광고를 하거나 다른 형태로 요금이 부과되는 방송 제작에 출판된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송 조직은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사용 날짜부터 저작권 소유권자에게 이용료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용료, 보상금 또는 다른 물질적 혜택의 수준 및 지불 방식은 관련 당사자들이 합의한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정부 규정을 준수하거나 법률상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후원을 받거나, 광고를 하거나 다른 형태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방송 제작에 출판된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송 조직은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사용 날짜부터 정부 규정상의 이용료나 보상금을 저작권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2. 동조 제1항 상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은 이러한 저작물의 일반적 사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되며, 저자 또는 저작권 소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저작물의 저자명, 출처, 원작을 표시해야 한다.

3. 동조 제1항에 명시된 사례의 저작물 사용은 영화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7조 (저작권 보호 기간)

1. 동법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저작인격권은 영구적인 기간 동안 보호받는다.
2. 동법 제19조 제3항에 의한 저작인격권과 제20조에 의한 저작재산권은 다음 보호 기간을 누린다.
 - a) 영화 저작물, 사진 저작물, 응용미술 저작물 및 익명 저작물은 첫 출판일로부터 75년 동안의 보호 기간을 지닌다. 확정된 날 이후 25년 이내에 출판되지 않은 영화 저작물, 사진 저작물 및 응용미술 저작물의 경우, 보호 기간은 확정된 날짜로부터 100년이다. 익명 저작물의 경우, 저자에 대한 정보가 출판되었을 때, 보호 기간은 동항 b에 의하여 계산된다.
 - b) 동항 a에서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은 저자의 전생애 걸쳐 보호받으며, 저자의 죽음 이후 50년 동안 보호받는다. 공동 저자 저작물인 경우, 보호 기간이 가장 나중에 살아있는 공동 저자의 죽음 이후 50년 이후 만료된다.
 - c) 동항 a와 b에 명시된 보호 기간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12월 31일 자정에 만료된다.

제28조 (저작권 침해)

1. 문학, 예술, 과학 저작물의 저작권 점유
2. 저작물 저자의 명의 사칭
3. 저자의 허락이 없는 출판 또는 배포
4. 다른 공동저자의 허락이 없는 공동저자 저작물의 출판 또는 배포
5. 저자의 명예 및 명성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저작물 개조, 훼손 또는 변형
6. 동법 제25조 제1항 a, e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이 없는 저작물의 복제
7. 동법 제25조 제1항 i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파생 저작물의 창조에 사용된 저작물의 저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는 파생 저작물의 제작
8. 동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에 따른 이용료 및 보상금 및 기타 물질적 이익의 지급 없이,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이용
9. 저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에 대한 이용료 및 보상금 및 기타 물질적 이익의 지급 없이 저작물 임대
10.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대중에게 방송 네트워크 및 디지털 장치에 의해 저작물을 복사, 재생, 배포, 전시 또는 송신

11.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 출판
12. 저작권 소유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기술적 방법을 고의적으로 취소 또는 무효화
13. 저작물의 저작권 관리에 관한 전자 정보를 고의적으로 삭제 또는 수정
14. 저작권 소유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 소유자가 취한 기술적 수단을 무효화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장비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장비를 생산, 조립, 변형, 공급, 수입, 수출, 판매 또는 대여
15. 저작자의 서명이 위조된 저작물을 제조 및 판매
16.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사본을 수출, 수입 및 공급

제2절 인접권의 내용, 제한 및 기간

제29조 (실연자의 권리)

1. 실연자 겸 투자자는 그 공연에 대한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갖는다.
실연자가 투자자가 아닌 경우에, 그 실연자가 저작인격권을 가지며, 투자자는 그러한 실연과 관련된 저작재산권을 갖는다.
2. 저작인격권은 다음 권리를 포함한다.
 - a) 실연 시 또는 음반, 영상 기록 또는 실연 방송의 배포 시 실연자의 성명을 알릴 권리
 - b) 실연 이미지의 완전성을 보호할 권리 및 실연자의 명예 및 명성을 침해할 수 있는 실연의 개량, 훼손, 변형을 반대할 수 있는 권리
3. 저작재산권은 다음을 실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실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포함한다.
 - a) 실연자의 실황 실연을 음반이나 영상 기록에 고정
 - b) 실연자의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나 영상 기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생산
 - c) 방송 목적을 위한 실연을 제외하고, 실연자의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대중에게 방송 및 송신
 - d) 실연자의 실연이 원 실연 또는 그 사본을 기타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에 의해 판매, 대여 또는 배포
4.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 및 이용하는 조직 및 개인은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또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 경우 합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실연자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다.

제30조 (음반 및 영상 기록 제작자의 권리)

1. 음반 및 영상 기록 제작자는 다음 권리를 실시하거나 다른 사람이 실시하도록 승인할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 a) 음반 및 영상 기록을 직·간접적으로 재생산할 권리

- b) 판매, 대여 또는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적 방법을 통한 유통 방법으로 원 녹음 및 영상 기록과 그 사본을 수입하거나 대중에게 유통할 권리
2. 음반 및 영상 기록이 대중에게 유통될 때, 그 음반 및 영상 기록 제작자는 물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31조 (방송 조직의 권리)

1. 방송 조직은 다음 권리를 실시하거나 다른 사람이 실시하도록 승인할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 a) 방송을 방송 또는 재방송할 권리
 - b) 방송을 대중에게 배포할 권리
 - c) 방송을 유형물에 고정할 수 있는 권리
 - d) 방송이 고정된 유형물을 재생산할 수 있는 권리
2. 방송 조직은 그들의 방송 프로그램을 기록할 때, 그리고 대중에게 배포할 때 물질적 이익을 얻을 권리를 갖는다.

제32조 (허락 및 사용료 및/또는 보상금의 지불이 필요 없는 인접권의 행사)

1. 허락 및 사용료 및/또는 보상금의 지불이 필요 없는 인접권의 행사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저자가 저작물을 자가 복제
 - b) 교육 목적으로 출판된 공연, 음반, 영상 기록 또는 방송을 제외하고, 교육 목적으로 저자가 저작물을 자가 복제
 - c) 정보 제공 목적으로 합리적 인용
 - d) 방송할 권리가 있는 경우, 방송 목적으로 방송 조직이 스스로 저작물의 임시 사본 제작
2. 동조 제1항에 규정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조직 또는 개인은 공연, 음반, 영상 기록 또는 방송의 정상적인 실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공연자, 음반 및 영상 기록 제작자 및 방송 조직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33조 (허락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용료 또는 보상금의 지불이 필요한 인접권의 행사)

1. 후원을 받거나, 광고를 하거나 다른 형태로 요금이 부과되는 방송 제작을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이미 출판된 녹음 또는 영상 기록을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은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사용 날짜부터 저자, 저작권 소유권자, 음반이나 영상 기록의 실연자 또는 제작자, 혹은 방송 조직에 이용료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정부 규정을 준수하거나 법률상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후원을 받거나, 광고를 하거나 다른 형태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방송 제작에 출판된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송 조직은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사용 날짜부터 정부 규정상의 이용료나 보상금

을 저자, 저작권 소유권자, 음반이나 영상 기록의 공연자 또는 제작자, 혹은 방송 조직에 지불해야 한다.

2. 사업 또는 광고 활동에 이미 출판된 음반 또는 영상 기록을 사용하는 조직이나 사람은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사용 날짜부터 저자, 저작권 소유권자, 음반이나 영상 기록의 실연자 또는 제작자, 혹은 방송 조직에 이용료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정부 규정을 준수하거나 법률상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리를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은 실연, 녹음, 영상 기록 또는 방송의 일반적 사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되며, 실연자, 녹음 및 영상 기록의 제작자 및 방송 조직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34조 (인접권의 보호 기간)

1.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이 유형물에 고정된 해의 다음 연도부터 50년 동안 보호된다.
2. 음반 또는 영상 기록 제작자의 권리는 음반이 공표된 해의 다음 연도부터 50년의 기간 동안, 또는 음반이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 유형물에 고정된 해의 다음 연도부터 50년의 기간 동안 보호된다.
3. 방송 조직의 권리는 프로그램이 방송된 해의 다음 연도부터 50년 동안 보호된다.
4. 동조의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보호 기간은 인접권의 보호 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12월 31일 자정에 만료된다.

제35조 (인접권의 침해 행위)

1. 실연자, 음반 및/또는 영상 기록 제작자, 방송 조직의 권리를 도용하는 행위
2. 실연자, 음반 및 영상 기록 제작자, 방송 조직의 이름을 사칭하는 행위
3. 실연자, 음반 및 영상 기록 제작자, 방송 조직의 허락 없이 고정된 실연, 음반, 영상 기록 및 방송을 대중에게 공표, 제작 및 배포하는 행위
4. 실연자의 명예 및 명성을 침해하는 공연에 대한 모든 형태의 개량, 훼손, 또는 변형 행위
5. 실연자, 음반 및 영상 기록 제작자, 방송 조직의 허락 없이 고정된 실연, 음반, 영상 기록, 방송을 변형, 훼손, 왜곡하는 행위
6. 인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전자적 형태의 권리 관리 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7. 인접권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인접권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기술적 방법을 고의적으로 삭제 또는 무효화하는 행위;
8. 전자적 형태의 권리 관리 정보가 인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제거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공연, 유형물에 고정된 실연 또는 음반 또는 영상 기록의 사본을 대중에게 배포하기 위해 공표, 배포 또는 수입하는 행위

9.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위성 신호를 불법적으로 해독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장비를 생산, 조립, 변형, 배포, 수입, 수출, 판매 또는 대여하는 행위
10. 합법적 배급자의 허락 없이 신호가 해독된 경우,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위성 신호를 계속하여 고의로 송신 및 중계하는 행위

제3장 저작권 소유자 및 인접권의 소유자

제36조 (저작권 소유자)

저작권 소유자는 동법 제20조에 규정된 저작재산권 중 하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한 조직 및 개인이다.

제37조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자가 되는 경우)

자신의 시간, 재정 그리고 기타 물리적 및 기술적 기반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창조한 저작자는 동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명시된 권리를 갖는다.

제38조 (저작권 소유자가 공동 저작자가 되는 경우)

1. 자신의 시간, 재정 그리고 기타 물질적 조건들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공동 창조한 공동 저자는 동법 제1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인격권 및 제2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재산권을 갖는다.
2. 동조 제1항에 기재된 공동 저자에 의해 창조된 저작물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고, 각 부분이 서로 독립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 공동 저자는 독립적인 부분들에 대해 동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명시된 권리를 가진다.

제39조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거나 저자와 계약한 조직 또는 개인)

1.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저작물 창작 의무를 피고용자인 저작자에게 부여한 조직은 동법 제20조 및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권리의 소유자이다.
2.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와 계약한 조직 및 개인은 동법 제20조 및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권리의 소유자이다.

제40조 (저작권 소유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법에 따른 저작권 상속자인 조직 및 개인은 동법 제20조 및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권리의 소유자이다.

제41조 저작권 소유자가 권리 양수인(assignees)이 되는 경우

1. 계약에 의해 동법 제19조 및 제20조 제3항에 명시된 권리 하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받은 조직 및 개인은 저작권 소유권자이다.
2. 익명 저작물을 관리하는 조직 및 개인은 이러한 저작물의 저자명이 식별될 때까지 소유권자의 권리를 누린다.

제42조 (저작권 소유자가 국가가 되는 경우)

1. 다음 저작물에 관하여 국가가 저작권 소유자가 된다.
 - a) 동법 제41조 제2항에 명시된 것을 제외한 익명 저작물
 - b)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저작권 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할 권리를 박탈당한 저작물
 - c) 저작권 소유권자가 국가에게 저작권을 양수한 저작물
2. 정부는 국가 소유권 상 저작물의 사용을 명시해야 한다.

제43조 (공공 저작물)

1. 동법 제27조에 의한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공공의 저작물이 된다.
2. 모든 조직 및 개인은 동법 제19조에 규정된 저자의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 동조 제1항에 규정된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3. 정부는 공공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제44조 (인접권의 소유자)

1. 관련 당사자와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자신의 시간, 재정 그리고 기타 물리적 및 기술적 기반을 이용하여 공연을 제작한 조직 및 개인은 실연의 소유자가 된다.
2. 관련 당사자와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자신의 시간, 재정 그리고 기타 물리적 및 기술적 기반을 이용하여 음반 및/또는 영상 기록을 제작한 조직 및 개인은 그 음반 및/또는 영상 기록의 소유자가 된다.
3. 관련 당사자와 다른 합의가 없는 한, 방송 조직은 자신의 방송의 소유자가 된다.

제4장 저작권 및 인접권의 양도

제1절 저작권 및 인접권의 양도

제45조 (저작권 및 인접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 규정)

1. 저작권 및 인접권의 양도는 저작권 소유자 또는 인접권의 소유자가 관련 법 규정을 따르거나 계약에 의해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동법 제19조 제3항, 제20조, 제29조 제3항, 제30조 및 제31조에 명시된 권리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공표권을 제외하고, 저자는 제19조에 규정된 저작인격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공연자는 동법 제29조 제2항에 명시된 저작인격권을 양도할 수 없다.
3. 공동소유자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 공연, 음반, 영상 기록 또는 방송과 관련한 저작권 및 인접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기 저작물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고, 각 부분은 서로 독립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 저작권 및 인접권의 소유자는 자신의 저작권 및 인접권의 부분을 다른 조직 및 개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46조 (저작권 또는 인접권의 양도 계약)

1. 저작권 또는 인접권의 양도에 관한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a) 양도인 및 양수인의 성명 및 주소
 - b) 양도 근거
 - c) 지불 가격 및 방식
 - d) 관련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 e) 계약 파기 시의 책임
2. 저작권 및 인접권 양도 계약의 체결, 수정, 종료 및 취소는 민법전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절 저작권 및 인접권의 라이선스

제47조 (저작권 및 인접권의 라이선스에 관한 일반 규정)

1. 저작권 및 인접권의 라이선스는 저작권 및 인접권의 소유자가 동법 제19조 제3항, 제20조, 제29조 제3항, 제30조 및 제31조에 규정된 그들의 배타적 소유권을 다른 조직 및 개인이 제한된 시간 동안 또는 전체 보호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공표권을 제외하고, 저자는 제19조에 규정된 저작인격권을 이전할 수 없으며, 공연자는 동법 제29조 제2항에 명시된 저작인격권을 이전할 수 없다.
3. 공동 저자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 공연, 음반, 영상 기록 또는 방송과 관련된 저작권 및 인접권의 라이선스는 모든 공동 저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기 저작물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

고, 각 부분이 서로 독립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 저작권 및 인접권의 소유자는 자신의 저작권 및 인접권의 라이선스 부분을 다른 조직 및 개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저작권 및 인접권의 라이선스를 받은 조직 및 개인은 저작권 및 인접권 소유자의 허락에 따라 기타 조직 및 개인에게 다시 라이선스를 줄 수 있다.

제48조 (저작권 및 인접권의 이용 계약)

1. 저작권 및 인접권의 라이선스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a) 양도인 및 양수인의 전체 성명 및 주소
 - b) 양도 근거
 - c) 권리 양도의 범위
 - d) 지불 가격 및 방식
 - e) 각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 f) 계약 파기시의 책임
2. 저작권 및 인접권의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 수정, 종료 및 취소는 민법전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장 저작권 및 인접권의 등록 증명

제49조 (저작권 및 인접권의 등록)

1. 저작권 및 인접권의 등록은 저자, 저작물, 저작권 및 인접권 소유자의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저자 또는 저작권 및 인접권의 소유자가 출원서 및 첨부 서류를 관할 국가 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저작권 및 인접권 등록 증명을 위한 출원서 제출은 동법에 따른 저작권 및 인접권의 성립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다.
3. 저작권 및 인접권 등록 증명서를 하여받은 조직 및 개인은 반대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분쟁 시 그의 저작권 및 인접권을 입증할 의무가 없다.

제50조 (저작권 및 인접권의 등록출원)

1. 저작권 및 인접권의 소유자 및 저자는 저작권 및 인접권의 등록출원서를 직접 제출할 권리 또는 다른 조직 또는 개인이 제출하도록 위임할 권리를 갖는다.
2. 저작권 및 인접권의 등록출원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저작권 및 인접권의 등록을 위한 서면 선언서
 - 서면 선언서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저자, 저작권자 및 인접권 소유자 또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며, 출원인에 관한 정보, 저자, 저작권 및 인접권의 소유자에 관한 정보, 저작물, 공연, 음반, 영상 기록 또는 방송의 주요 내용의 요약, 저작물이 파생 저작물인 경우에 파생 저작물 제작에 이용된 저작물 및 저자 성명, 공표 시간, 장소 및 형태, 출원서에 기재된 정보에 관한 책임 및 서약을 포함해야 한다.
 - 문화정보부는 저작권 및 인접권의 등록을 위한 서면 선언서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 b) 저작권 등록을 위한 저작물의 사본 2부 또는 인접권 등록 대상이 고정된 사본 2부
 - c) 출원인이 위임받은 자인 경우에 위임장
 - d) 출원인이 상속, 이전 또는 양도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획득한 경우, 출원서 제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e) 저작물이 공동 저작물인 경우에, 공동 저자 모두의 동의서
 - f) 저작권 및 인접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에,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서
3. 동조의 제2항 제c, d, e 및 f에 규정된 이러한 서류들은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또는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제51조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인접권 등록 증명서 허여 관청)

1. 저작권 및 인접권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은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인접권 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다.
2.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인접권 등록 증명서 발급 권리를 갖는 저작권 및 인접권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은 또한 그러한 증명서의 재발급, 갱신 또는 무효화할 권한이 있다.
3. 정부는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인접권 등록 증명서의 발급, 갱신 및 무효화에 요구되는 조건, 순서 및 절차에 관한 특정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4. 문화정보부는 저작권 및 인접권에 대한 등록 증명서 형태를 제시해야 한다.

제52조 (저작권 및 인접권 등록 증명서 발행의 기간)

유효 출원서의 접수일로부터 15일의 근무일 내에, 저작권 및 인접권과 관련된 정부 기관은 관련 출원인에게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인접권 등록 증명서를 허여할 책임이 있다.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인접권 등록 증명서의 허여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국가 기관은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53조 (저작권 및 인접권 등록 증명서의 효력)

1.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인접권 등록 증명서는 베트남 영역 전체에서 유효하다.

2. 동법의 완전한 발효 이전에 저작권 및 인접권과 관련한 해당 정부 기관에 의해 발행된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인접권 등록 증명서는 그 효과가 유지된다.

제54조 (저작권 및 인접권의 공표 및 기록)

1.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인접권 등록 증명서는 저작권 및 인접권의 국가등기소에 기록된다.
2.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인접권 등록 증명서의 발행, 갱신, 변경 또는 무효화에 대한 결정은 저작권 및 인접권과 관련한 공보로 공표되어야 한다.

제55조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인접권 등록 증명서의 재발행, 교체 또는 무효화)

1.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인접권 등록 증명서의 분실, 손상 시에 또는 저작권 소유자 또는 인접권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동법의 제51조 제2항에 기재된 관할 기관은 그러한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인접권 등록 증명서를 재발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2. 저작권 및 인접권의 등록을 허여받은 개인이 저자, 저작권 또는 인접권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또는 그러한 저작물이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 동법 제51조 제2항에 기재된 관할 기관은 그러한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인접권 등록 증명서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
3. 저작권 등록 증명서 또는 인접권 등록 증명서의 허여가 동법의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조직 및 개인은 저작권 및 인접권과 관련한 해당 기관에 대해 증명서의 효력을 중단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저작권 및 인접권 분야의 대리, 자문 및 서비스 기관

제56조 (저작권 및 인접권의 집합적인 운영 기관)

1. 저작권 및 인접권의 집합적인 운영 기관은 저자, 저작권 소유자, 인접권 소유자의 동의하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며, 저작권 및 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법에 따라 운영된다.
2. 저작권 및/또는 인접권의 집단적 대리로 활동하는 조직은 저자, 저작권 및 인접권 소유자들의 승인에 의해 다음 활동을 수행한다.
 - a) 저작권 및/또는 인접권의 관리, 라이선스 협의, 승인된 권리 행사로부터 발생된 이용료, 보상금 및 기타 물질적 이익의 점유 및 분배
 - b) 회원의 이익 및 합법적 권리의 보호, 분쟁 발생 시 중재 조직
3. 저작권 및 인접권의 집단적 대리로 활동하는 조직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책임을 가진다.
 - a) 창작 활동 및 기타 사회적 활동의 장려
 - b) 저작권 및 인접권의 보호에 대한 관련 국제 및 국내 기관과 협력

- c) 관할 기관에 집단적 대리 활동에 대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보고서 제출
- d) 동법의 규정에 따른 기타 권리 및 의무.

제57조 (저작권 및 인접권의 자문 및 서비스 기관)

1. 동법에 따라 저작권 및 인접권의 자문 및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한다.
2. 저작권 및 인접권의 자문 및 서비스 기관은 저자, 저작권 소유자 및 인접권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활동을 실행한다.
 - a) 저작권 및/또는 인접권의 법과 관련한 문제의 자문 제공
 - b) 저작권 소유자 및 인접권 소유자의 허락 하에, 저작권 및 인접권의 등록을 위한 출원 절차 실행
 - c) 승인을 얻어 저작권 및 인접권 저자의 법적 권리 보호, 저작권 소유자 및 인접권 소유자와의 기타 법적 관계에 대해 참여

제3부 산업재산권

제7장 산업재산권의 보호 요건

제1절 발명의 보호 요건

제58조 (보호될 수 있는 발명의 일반적인 요건)

1.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발명은 발명 특허의 허여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 a) 신규성이 있을 것
 - b) 진보성과 관련될 것
 - c) 산업적 이용이 가능할 것
2. 일반 상식이 아닌 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발명은 실용신안의 허여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 a) 신규성이 있을 것
 - b) 산업적 이용이 가능할 것

제59조 (발명으로서 보호되지 않는 대상)

다음 대상은 발명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1. 과학적 발견 또는 이론, 수학적 방법
2. 정신적 활동 수행, 가축 훈련, 게임 수행, 사업 실행에 대한 기획, 계획, 규칙 그리고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3. 정보의 제시
4. 단지 미적 특성을 위한 해결책
5. 식물품종, 동물 종
6. 미생물학적인 절차가 아닌 것으로, 식물 및 동물의 번식을 위한 본질적인 생물학적 절차
7. 인간 및 동물에 대한 질병 예방, 진단 및 치료 방법

제60조 (발명의 신규성)

1. 발명 등록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우선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 또는 문서 또는 구두 설명 또는 기타 다른 형태에 의해 공지되지 않은 경우, 발명이 신규성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비밀 보장 의무가 있는 제한된 수의 사람만이 발명을 알고 있는 경우, 발명이 아직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3. 발명이 다음 사례와 같이 공표되고, 그 공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명 등록출원이 된 경우,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a) 동법의 제86조에 정의된 바에 따라 등록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 공표된 경우
 - b) 동법의 제86조에 정의된 바에 따라 등록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의해 과학 발표회 형태로 공표된 경우
 - c) 동법의 제86조에 정의된 바에 따라 등록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의해 베트남 국내 박람회 또는 공식 국제 박람회 또는 국가에서 인가한 국제 박람회에서 전시된 경우

제61조 (발명의 진보성)

발명 등록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우선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 또는 문서 또는 구두 설명 또는 기타 다른 형태에 의해 이미 공지된 모든 기술적 해결책을 기초로 판단할 때, 독창적인 발전을 이루고 또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없는 경우, 발명이 진보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2조 (발명의 산업적 이용 가능성)

발명의 청구대상인 제품의 대량 생산이나 제조 또는 공정의 반복적 적용이 가능하고 또 일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 발명은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절 산업디자인의 보호 요건

제63조 (보호될 수 있는 산업디자인의 일반적인 요건)

산업디자인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호될 수 있다.

1. 신규성이 있을 것
2. 창의적일 것
3. 산업적 이용이 가능할 것

제64조 (산업디자인으로 보호되지 않는 대상)

다음의 대상은 산업디자인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1. 제품의 기술적 특징에 의해 나타나는 제품의 외관
2. 민간 건축물 또는 산업 건축물의 외관
3. 제품의 사용 중에 보이지 않는 제품의 외관

제65조 (산업디자인의 신규성)

1. 산업디자인 등록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우선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 또는 서면 또는 기타 형태에 의해 이미 공지된 다른 산업디자인과 상당히 상이하다면 그 산업디자인은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두 개의 산업디자인의 특징의 차이가 그 산업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용이하게 인식하고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면, 그 두 개의 산업디자인은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 산업디자인은 비밀 보장 의무가 있는 제한된 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경우에 아직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4. 산업디자인이 다음 사례와 같이 공표되고, 그 공표일 또는 전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업디자인 등록출원이 되었다면, 그 산업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a) 동법의 제86조에 기재된 바와 같이 등록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 공표된 경우
 - b) 동법의 제86조에 기재된 바와 같이 등록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의해 과학 발표회 형태로 공표된 경우
 - c) 동법의 제86조에 기재된 바와 같이 등록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의해 베트남 국내 박람회 또는 공식 국제 박람회 또는 국가에서 인가한 국제 박람회에서 전시된 경우

제66조 (산업디자인의 창작성)

산업디자인 등록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우선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사용 또는 문서 또는 구두 설명 또는 기타 다른 형태에 의해 이미 공지된 산업디자인을 기초로 판단할 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없는 경우에, 그 산업디자인은 창작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7조 (산업디자인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디자인이 산업적 또는 수공 방법에 의해 산업디자인을 구현한 외관의 제품의 대량 생산 모델로서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산업디자인은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절 배치설계의 보호 요건**제68조 (보호받을 수 있는 배치설계의 일반적인 요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치설계는 보호받을 수 있다.

1. 독창적일 것일 것
2. 상업적으로 신규성이 있을 것

제69조 (배치설계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대상)

다음의 대상은 배치설계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1. 반도체집적회로에 의해 작동되는 원리, 공정, 시스템 또는 방법
2. 반도체집적회로 내에 포함된 정보 또는 소프트웨어

제70조 (배치설계의 독창성)

1. 배치설계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독창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 a) 저자의 창의적 노동에 의한 결과일 것
 - b) 창작 시 반도체집적회로의 제조업자 또는 배치설계 창작자 사이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것
2. 일반적인 요소 및 상호 연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배치설계에서 그 조합이 동조의 제1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전체적으로 독창적이라면, 그 배치설계는 독창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제71조 (배치설계의 상업적 신규성)

1. 배치설계가 등록출원의 출원일 이전에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상업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다면 그 배치설계는 상업적으로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동법의 제86조에 따른 등록할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의 실시권자에 의해 배치설계가 세계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실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배치설계 등록출원되었다면, 그 배치설

계는 상업적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3. 배치설계의 상업적 실시는 배치설계의 구현에 의해 제조된 반도체 집적 회로 또는 그러한 반도체 집적 회로를 포함하는 제품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대중에의 배포 활동을 의미한다.

제4절 상표의 보호 요건

제72조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일반적인 요건)

상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

1. 홀로그램을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색채로 표현된 문자, 단어, 그림 또는 그 조합으로 눈에 보이는 표시
2. 상표 소유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분할 수 있게 함

제73조 (상표로 보호되지 않는 사인)

다음 표시는 상표로 보호되지 않는다.

1. 국기, 국가 표상과 동일하거나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시
2. 국가 기관, 정책 기관, 정치사회적 기관, 정치사회적 전문 기관, 베트남 또는 국제기구의 사회 기관 또는 사회적 전문 기관의 허락이 없는 경우, 그 기관의 표상, 깃발, 문장, 전체 명칭 또는 약어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시
3. 베트남 또는 외국의 지도자, 국가적 영웅 또는 유명인의 실명, 가명, 필명 또는 이미지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시
4. 봉인이 국제기관에 의해 증명 상표로서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될 수 없는 사인으로, 국제기관의 증명 봉인, 확인 봉인 또는 보증 봉인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시
5.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 기능, 목적, 품질, 가치 또는 기타 특징에 관해 소비자를 현혹, 혼동 또는 기만할 수 있는 표시

제74조 (상표의 식별력)

1. 상표가 하나 이상의 용이하게 인식될 수 있고 기억될 수 있는 요소 또는 용이하게 인식될 수 있고 기억될 수 있는 조합을 형성하는 많은 요소로 이루어지고 동조의 제2항에 규정된 표식이 아닌 경우, 그 상표는 식별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2. 상표가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인 경우,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a) 표시가 널리 이용되고 상표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한 장치 및 기하학적 도형, 일반적이지 않은 언어의 숫자, 문자 또는 단어

- b) 널리 그리고 잦은 빈도로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품 또는 서비스로, 언어에 상관없이 표현된 표시, 상징, 그림 또는 공통 명칭
- c) 표시가 상표 등록출원 이전의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산 시간, 장소 및 방법, 분류, 수량, 품질, 특징, 재료, 기능, 가치 및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표시
- d) 사업 법인의 법적 지위 및 사업 분야를 나타내는 표시
- e) 사인이 널리 사용되고 상표로서 인식되는 경우 또는 사인이 동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집단 상표 또는 증명 상표로서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시
- f)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당사국인 조약 하에 출원된 상표 등록출원을 포함해, 출원일 또는 우선일이 있는 경우 그 우선일 이전의 등록출원을 근거로 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통합 상표가 아닌 표시
- g) 출원일 또는 우선일이 있는 경우에 그 우선일 이전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널리 이용되고 인식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시
- h) 상표 등록 증명이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종료된 동일 또는 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미 등록되었던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사인으로서, 이때 상기 종료의 이유는 동법 제95조 제1항 d에 기재된 바에 따른 상표의 미사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i) 주지 상표를 지닌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또는 그 상표의 사용이 주지 상표의 식별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표 등록의 목적이 주지 상표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주지 상표로 알려진 다른 사람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표시
- j)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시로, 그러한 표시의 이용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표시
- k) 보호되는 지리적표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시로, 그러한 표시가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표시
- l) 지리적표시를 포함하는 지리적 영역으로부터 기원하지 않는 와인 및 증류주의 이용을 위해 표시가 등록된 경우, 와인 및 증류주에 대하여 보호되고 있는 지리적표시와 동일하거나 그 지리적표시를 포함하거나 또는 그 지리적표시의 의미 또는 표시로부터 번역될 수 있는 표시
- n) 해당 상표 등록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지닌 산업디자인 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 보호되는 다른 사람의 산업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는 표시

제75조 (주지 상표의 인식 기준)

상표의 주지 여부를 고려할 때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상표를 포함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 또는 이용을 통해서 또는 광고를 통해서 상표를 인식하는 관련 소비자의 수
2. 상표를 포함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지역적 유통 범위
3. 상표를 포함하는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공급 매출 또는 판매되는 상품 또는 공급되는 서비스의 양
4. 상표의 연속적인 사용 시간
5. 상표를 포함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넓은 영업권 범위
6. 상표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의 수
7. 상표를 주지의 상태로 인지하고 있는 국가의 수
8. 상표와 관련한 양도 가격, 라이선스 가격 또는 투자 자본 분배 가치

제5절 상호의 보호 요건**제76조 (보호받을 수 있는 상호의 일반적인 요건)**

상호를 사용하는 사업체가 동일한 사업 분야 및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사업체와 구별될 수 있는 경우, 상호가 보호된다.

제77조 (상호로 보호될 수 없는 대상)

국가 기관, 정치 조직, 정치사회적 조직, 정치사회적 전문 조직, 사회 조직, 사회적 전문 조직 또는 사업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체의 이름은 상호로 보호될 수 없다.

제78조 (상호의 식별력)

상호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식별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사용을 통해 널리 알려진 것을 제외하고, 고유 명사로 구성될 것
2. 동일한 사업 분야 및 지역의 다른 사람에 의해 이전에 사용된 상호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을 것
3. 상호의 사용일 이전에 보호되고 있던 지리적표시 또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을 것

제6절 지리적표시의 보호 요건

제79조 (보호될 수 있는 지리적표시의 일반적인 요건)

지리적표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보호될 수 있다.

1. 지리적표시를 지닌 제품이 지리적표시에 대응하는 구역, 지역, 영역, 구역 또는 국가로부터 유래될 것
2. 지리적표시를 지닌 제품이 그러한 지리적표시에 대응하는 구역, 지역, 영역 또는 국가의 지리적 조건에 기인한 명성, 품질 또는 특징을 가질 것

제80조 (지리적표시로 보호되지 않는 대상)

다음의 대상은 지리적표시로 보호되지 않는다.

1. 베트남 내에서 상품의 일반 명칭이 된 표시 또는 명칭
2. 더 이상 보호되지 않는 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외국의 지리적표시
3. 사용 시 제품의 원산지와 관련하여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되고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지리적표시
4. 지리적표시를 지닌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지리적표시

제81조 (지리적표시를 지닌 제품의 명성, 품질 및 특성)

1. 지리적표시를 지닌 제품의 명성은 소비자에 의해 선택되고 알려진 정도를 통해 나타나는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결정한다.
2. 지리적표시를 지닌 제품의 품질 및 특성은 적절한 시험 방법에 의해 기술적 수단이나 전문가가 평가할 수 있는 정성적, 정량적 또는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으로 인식 가능한 하나 이상의 기준에 의해 규정된다.

제82조 (지리적표시와 관련한 지리적 조건)

1. 지리적표시와 관련된 지리적 조건은 지리적표시를 지닌 제품의 명성, 품질 및 특성에 기인하는 자연적 및 인간적 요소를 포함한다.
2. 자연적 요소는 기후, 수위, 지형, 지대, 생태학적 시스템 및 기타 자연 조건의 요소로 이루어진다.
3. 인간적인 요소는 지역의 전통적인 제조 공정 및 제조자의 숙련도와 경험으로 이루어진다.

제83조 (지리적표시에 대응하는 지리적 영역)

지리적표시에 대응하는 지리적 영역은 단어 및 지도에 의해 정확하게 결정된다.

제7절 영업비밀의 보호 요건

제84조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의 일반 요건)

영업비밀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보호될 수 있다.

1.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고 용이하게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2. 사업 과정에 사용되는 경우,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보다 이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3. 공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없도록 소유자가 필요한 수단을 이용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85조 (영업비밀로서 보호되지 않는 대상)

다음의 비밀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되지 않는다.

1. 개인적 신분상의 비밀
2. 국가 관리 비밀
3. 안보 및 국가 방위 비밀
4. 영업과 관련 없는 기타 비밀 정보

제8장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상표 및 지리적표시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성립

제1절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상표 및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86조 (발명, 산업디자인 및 배치설계를 등록할 권리)

1. 다음 조직 및 개인은 발명, 산업디자인 및 배치설계를 등록할 권리를 갖는다.
 - a) 자신의 노력 및 비용으로 발명, 산업디자인 및 배치설계를 창작한 저자
 - b) 직무 과제 또는 직무 고용 형태로 자금 및 물질적 설비를 저자에게 투자한 조직 또는 개인으로,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며 그러한 합의가 동조의 제2항에 반하지 않는 경우, 그 조직 또는 개인
2. 정부는 정부 예산의 자금, 물질 및 기술적 기반을 이용하여 창작된 발명, 산업디자인 및 배치설계를 등록할 권리를 갖는다.
3. 둘 이상의 조직 또는 개인이 협력하여 발명,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설계를 창작하거나 그 창작에 투자한 경우, 그러한 조직 또는 개인은 등록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권리는 합의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4. 동조에 기재된 등록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등록출원을 한 경우, 서면 계약, 법에 따른 유증 또는 상속에 의한 이전의 형태로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그러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제87조 (상표를 등록할 권리)

1. 조직 및 개인은 그들이 생산하거나 서비스하는 제품에 사용하려는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2. 합법적인 상업적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및 개인은, 제작자가 자기 제품에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등록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경우, 마케팅은 직접 하지만 생산은 다른 사람이 하는 상품을 위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3. 합법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그 구성원이 사용하는 단체표장을 등록할 수 있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지리적 원산지 표시하는 상징의 경우, 이를 등록할 수 있는 조직은 관련 지역에서 생산 또는 거래에 종사하는 조직 또는 개인의 단체이다. 베트남 지역 특산물의 지리적 원산지를 표시하는 다른 지리적 명칭 또는 상징의 경우, 그 등록은 반드시 관할 국가 기관에서 허가를 내야 한다.
4.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특성, 원산지 또는 다른 관련 기준을 규제하고 인증하는 기능을 지닌 조직은, 이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또는 거래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한, 인증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베트남 지역 특산물의 지리적 원산지를 표시하는 다른 지리적 명칭 또는 상징의 경우, 그 등록은 반드시 권한 국가 기관에서 허가를 내야 한다.
5. 다음 조건 하에 공동 소유권자가 되기 위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조직 또는 개인은 상표를 공동 등록할 수 있다.
 - a) 이 상표는 모든 공동소유권자의 이름으로 사용되거나 모든 공동소유권자가 참여하여 생산 또는 거래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된다.
 - b)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에 있어서 이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
6. 등록출원을 제출한 사람을 포함하여 동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정의된 등록권을 지닌 사람은 양도받은 조직 또는 개인이 등록권을 지닌 사람에 대한 관련 조건을 충족시키는 한, 법에 의한 서면 계약, 유증 또는 유산의 형태로 등록권을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7. 상표 소유권자의 대리인 또는 중개인에 의한 상표 등록을 제한하는 조약으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또한 계약 당사국인 조약의 계약 당사국인 국가에서 보호받는 상표의 경우, 상표 소유권자에 의해 동의되지 않는 한, 정당화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이 대리인 또는 중개인은 상표 등록을 허가받을 수 없다.

제88조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권리)

베트남의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권리는 국가에 귀속된다.

국가는 지리적표시를 포함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조직 및 개인, 그러한 조직 및 개인을 대표하는 집합적 조직 또는 지리적표시와 관련된 지역의 공공 기관이 그러한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그러한 지리적표시의 소유자가 되지 못한다.

제89조 (산업재산권의 설정을 위한 등록출원 방법)

1. 베트남의 조직 및 개인, 베트남에 영구 거주하는 외국인 및 베트남 내의 제조 및 교역 회사를 가지는 외국 조직 및 개인은 직접적으로 또는 베트남 내의 법률적 대리인을 통해 산업재산권의 설정 등록을 위한 출원을 할 수 있다.
2. 베트남에 영구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및 베트남 내의 제조 및 교역 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 조직 및 개인은 베트남 내의 법률적 대리인을 통해 산업재산권의 설정 등록을 위한 출원을 할 수 있다.

제90조 (선출원 원칙)

1. 동일한 발명 또는 유사한 발명의 등록에 대해 여러 개의 출원이 제출된 경우, 또는 서로 동일하거나 서로 무의미할 정도로 다른 산업디자인을 등록하는 경우, 보호증서 부여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출원 가운데 가장 이른 우선권 또는 출원일을 지닌 유효한 출원에만 보호증서가 부여될 수 있다.
2.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혼동이 발생할 정도로 유사한 상표 등록에 관한 여러 건의 출원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제출된 경우, 또는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상표 등록에 관한 여러 건의 출원이 같은 사람에 의해 제출된 경우, 보호증서 부여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출원 가운데 가장 이른 우선권 또는 출원일을 지닌 유효한 출원에만 보호증서가 부여될 수 있다.
3. 동일한 가장 이른 우선권 또는 출원일을 지녔으며 보호증서 부여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등록출원이 많은 경우, 모든 출원인들의 합의 하에 이러한 출원들 중 하나의 출원의 대상에만 보호증서가 부여될 수 있다. 이러한 합의가 없는 한, 이러한 출원의 모든 관련 대상에 대한 보호증서 부여를 거절한다.

제91조 (우선권 원칙)

1. 발명, 산업디자인 또는 상표의 등록을 위한 출원인은 다음의 조건을 완전히 만족하는 경우, 동일한 대상의 보호를 위한 최초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a) 베트남에서 또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한 우선권에 관한 규정을 가지는 국제 조약의 가입국에서, 또는 그러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베트남과 합의한 국가에서 최초로 출원되어야 한다.
 - b) 출원인은 베트남 국민 또는 동조 a에 기재된 국가의 국민이거나, 베트남 또는 동조 a에 기

재된 국가에 거주하거나 그 곳에 사업체 또는 제조업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c) 우선권의 주장은 출원서에 명백히 기재해야 하고, 수리관청이 증명한 최초 출원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d)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기간 내에 출원되어야 한다.
2. 하나의 발명, 산업디자인 또는 상표출원에서 출원인은 여러 가지 선행 출원을 기초로 다수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때 그러한 선행 출원 및 해당 출원의 대응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3. 우선권을 향유하는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은 최초 출원일과 동일한 우선일을 가진다.

제92조 (보호증서)

1. 보호증서는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상표의 소유자(이하 보호증서 소유자라 함), 발명, 산업디자인 및 배치설계의 창작자, 보호 대상, 범위 및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2. 지리적표시의 보호증서는 지리적표시 관리 기관, 지리적표시의 사용권을 지닌 조직 및 개인, 보호되는 지리적표시, 지리적표시를 포함하는 제품의 특징, 지리적 조건 및 해당 지리적표시를 포함하는 지역을 기재해야 한다.
3. 보호증서는 발명 특허, 실용신안 특허, 산업디자인 특허,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등록 증명서, 상표 등록 증명서 및 지리적표시 등록 증명서를 포함한다.

제93조 (보호증서의 효력)

1. 보호증서는 베트남 전체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
2. 발명 특허는 특허 허여일로부터 시작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 이후에 만료되는 유효기간을 갖는다.
3. 실용신안 특허는 허여일로부터 시작하여 출원일로부터 10년 이후에 만료되는 유효기간을 갖는다.
4. 산업디자인 특허는 허여일로부터 시작하여 출원일로부터 5년 이후에 만료되는 유효기간을 가지며, 5년의 기간 동안 2번 연속하여 갱신할 수 있다.
5.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등록 증명서는 허여일로부터 시작하여 다음 중 가장 빠른 날짜에 만료되는 유효기간을 갖는다.
 - a) 출원일로부터 10년 이후
 - b) 등록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 실시권자가 배치설계를 세계적으로 최초 상업 실시한 날로부터 10년 이후
 - c) 배치설계의 창작일로부터 15년 이후
6. 상표 등록 증명서는 허여일로부터 시작하여 출원일로부터 10년 이후에 만료되는 유효기간을

가지며, 10년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한히 갱신할 수 있다.

7. 지리적표시 등록 증명서는 허여일로부터 시작하여 무한한 유효기간을 갖는다.

제94조 (보호증서의 유지 및 갱신)

1. 발명 특허 또는 실용신안 특허의 유지를 위해서는 소유자가 유지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2. 산업디자인 특허 또는 상표 등록 증명서의 갱신을 위해, 소유자는 갱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3. 보호증서의 유지 및 갱신에 관한 요금 및 절차는 정부가 정한다.

제95조 (보호증서의 효력의 종료)

1. a) 소유자가 규정된 유지비용 또는 갱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b) 소유자가 수여된 보호증서의 포기를 선언한 경우
 - c) 소유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또는 상표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가 법적 승계인이 없거나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d) 중단 신청 전의 3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사용을 시작하였거나 재사용한 경우는 제외하고, 상표가 보호기간 중단 신청에 앞서서 5년의 연속적인 기간 동안 소유자나 실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
 - e) 집단 상표와 관련한 상표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가 집단 상표의 사용에 관한 규정의 실시를 관리하지 못하거나 또는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 f) 증명 상표와 관련한 상표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가 증명 상표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러한 규정의 실행에 대해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 g) 지리적표시를 포함하는 제품의 명성, 품질 또는 특징에 기여하는 지리적 조건이 변화되어 제품의 명성, 품질 또는 특징을 상실한 경우
2. 보호증서의 소유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유지비용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기간의 만료 시, 보호증서의 보호기간이 연차료가 납부되지 않은 최초일로부터 직권에 의하여 중단될 것이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은 산업재산권 등기소에 그러한 사실을 기록해야 하고 산업재산권 공보에 기재해야 한다.
3. 보호증서의 소유자가 동조 제1항 b에 기재된 바에 따라 산업재산권을 포기하였을 때,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은 소유자의 포기서 접수일로부터 보호증서의 보호기간이 종료되었음을 결정한다.
4.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수수료 및 요금을 납부한 경우에, 동조의 제2항 c, d, e, f 및 g에 규정된 보호증서의 보호기간을 중단할 것을 산업재산권을 담당하는 국가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보호증서의 보호기간의 중단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기초로, 산업재

산권을 담당하는 국가관리기관은 보호증서의 보호기간의 중단에 대한 결정 또는 거절 결정을 한다.

5. 동조의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상표의 국제 등록의 보호기간 중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96조 (보호증서의 무효)

1. 보호증서는 다음의 경우에 전부 무효화될 수 있다.
 - a) 등록출원인이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및 상표를 등록할 권리를 가지지 않거나 그 권리를 양도받지 않은 경우
 - b) 산업재산권의 대상이 보호증서의 허여일에 보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2. 그 일부가 보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보호증서는 부분적으로 무효화된다.
3. 수수료 및 요금을 납부한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보호증서의 무효화를 산업재산권을 담당하는 국가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보호증서의 무효화 신청 기간은 그 보호증서의 지속 기간에 해당한다. 상표의 경우, 보호증서가 출원인의 기만행위로 인해 허여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간은 허여일로부터 5년이다.
4. 보호증서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기초로, 산업재산권을 담당하는 국가관리기관은 보호증서의 전체 또는 부분적 무효화에 대한 결정 또는 거절 결정을 한다.
5. 동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상표에 관한 국제 등록의 무효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제97조 (보호증서의 보정)

1. 보호증서의 소유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보호증서에 관한 다음 정보의 보정을 산업재산권을 담당하는 국가관리기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 a) 소유자 또는 저자의 이름 및 주소에 대한 변경, 오류 정정
 - b) 지리적표시를 포함하는 지역, 품질, 또는 특성에 관한 설명의 보정, 단체 상표에 관한 규정 또는 증명 상표의 이용에 관한 보정.
2. 보호증서 소유자의 요청 시, 산업재산권을 담당하는 국가관리기관은 보호증서 내의 흠결에 의한 오류를 정정할 의무가 있다. 그 경우, 보호증서의 소유자는 수수료 납부 의무가 없다.
3. 보호증서의 소유자는 산업재산권의 범위 축소를 산업재산권을 담당하는 국가관리기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그 경우, 신청의 요지 및 신청자와 관련하여 각각의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에 대해 재심사해야 하고, 그러한 신청은 실질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98조 (산업재산권의 국가 등록)

1. 산업재산권의 국가 등록은 동법에 의한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상표 및 지리적표시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성립, 변경 및 이전에 관한 서면 기록이다.
2. 보호증서 허여에 관한 결정, 보호증서의 주요 내용 및 보호증서의 보정, 보호증서의 무효화 및 중단에 대한 결정, 산업재산권 이전 계약에 관한 결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등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3. 산업재산권의 국가 등록은 산업재산권을 담당하는 국가관리기관에 의해 설립 및 유지된다.

제99조 (보호증서와 관련한 결정의 공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호증서의 허여, 보정, 중단, 무효화, 이전에 관한 모든 결정은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산권을 담당하는 국가관리기관에 의해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고되어야 한다.

제2절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제100조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에 대한 일반 요건)**

1.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은 다음 서류로 구성된다.
 - a) 규정된 형태로 작성된 신청서
 - b) 동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에 명시된 보호를 요청하는 산업재산권 대상을 나타내는 서류, 샘플 및 정보
 - c)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위임장
 - d) 다른 사람으로부터 출원인에게 양도된 경우에, 등록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e)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 그 우선권을 증명하는 서류
 - f) 수수료 및 비용의 영수증
2. 산업재산권을 담당하는 국가관리기관과 출원인 사이의 통신 서류 및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출원인이 동의한 경우에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다른 언어로 작성될 수 있으나 산업재산권을 담당하는 국가관리기관의 요청 시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 a) 위임장
 - b) 등록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c) 우선권을 증명하는 서류
 - d) 출원서를 보충하는 기타 서류
3.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의 우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수리관청에 의해 증명되는 최초 출원서 사본
- b) 다른 사람으로부터 획득한 경우에, 우선권의 양도증

제101조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의 단일성에 대한 요건)

1. 각각의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은 동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의 산업재산권 대상에 대해서 하나의 보호증서만을 신청해야 한다.
2.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하나의 공동적인 발명 사상을 형성하는 발명 그룹에 대한 하나의 발명 특허 또는 실용신안 특허를 각각의 등록출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다음의 경우, 각 등록출원은 몇 개의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나의 산업디자인 특허에 대해 각각의 등록출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 a) 하나의 공통적인 발명 사상을 나타내고 공통되는 목적 또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몇 개의 제품으로 이루어진 물품 세트의 산업디자인
 - b) 하나 이상의 다른 변형 예를 수반하는 산업디자인, 즉, 해당 산업디자인과 큰 차이가 없는 공통적인 하나의 발명 사상을 나타내는 산업디자인
4. 각각의 등록출원은 하나 이상의 서로 상이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상표와 관련된 하나의 상표 등록 증명서에 대해 각각의 등록출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2조 (발명 등록출원 요건)

1. 발명 등록출원에서 보호를 청구하는 발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발명의 보호 범위를 포함하는 발명의 명세서 및 요약서를 포함해야 한다.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내용을 충분하고도 명료하게 기재해야 한다.
 - b) 발명의 내용을 보다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첨부한 도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야 한다.
 - c)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명료하게 설명해야 한다.
3. 발명의 보호 범위는 발명의 권리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충분하고 필수적인 기술적 특징들의 조합 형태로 표현되어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과 일치되어야 한다.
4. 요약서는 발명 내용의 필수적인 특징들을 기재해야 한다.

제103조 (산업디자인 등록출원 요건)

1. 산업디자인 등록출원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산업디자인을 기재한 서류는 산업디자인의 명세서 및 산업디자인의 사진이나 도면을 포함해야 한다. 산업디자인의 명세서는 산업디자인의 상세

한 설명 및 산업디자인의 보호 범위로 구성된다.

2. 산업디자인의 상세한 설명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산업디자인의 내용을 나타내는 특징들을 완전히 기재해야 하고, 신규성 및 차이가 가장 적은 공지된 산업디자인과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특징들을 기재해야 하며, 사진 또는 도면과 일치해야 한다.
 - b) 산업디자인 등록출원이 변형 예를 포함하는 경우에, 상세한 설명은 이러한 변형 예를 완전히 설명해야 하고 주요 변형 예와 기타 변형 예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히 기재해야 한다.
 - c) 산업디자인 등록출원이 제품 세트인 경우에, 상세한 설명은 제품 세트의 각각의 특징 전부를 설명해야 한다.
3. 산업디자인의 보호 범위는 유사한 공지된 산업디자인과의 차이점 및 신규성에 관한 특징을 포함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특징을 기재해야 한다.
4. 사진, 도면 세트는 산업디자인의 특징을 완전히 특정해야 한다.

제104조 (배치설계 등록출원 요건)

배치설계 등록출원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배치설계를 나타내는 서류, 재료 및 정보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배치설계의 도면 및 사진
2. 배치설계의 구현에 의해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의 구조 및 작용에 관한 정보
3. 배치설계가 상업적으로 실시된 경우, 배치설계의 구현에 의해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의 샘플

제105조 (상표 등록출원 요건)

1. 상표 등록출원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를 나타내는 서류, 샘플 및 정보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a) 상표의 샘플 및 상표를 포함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목록
- b) 단체 상표의 이용에 관한 규정 또는 증명 상표의 이용에 관한 규정
2. 상표의 샘플은 상표의 요소 및 상표의 포괄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게 기재되어야 하고, 상표가 상형 문자의 단어나 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그 단어나 문구는 전사해야 하며, 상표가 외국어의 문자의 단어나 문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단어나 문구는 베트남어로 번역해야 한다.
3. 상표 등록출원에 나열된 상품 또는 서비스는 산업재산권 관련 국가 기관이 발행한, 니스 국제상품분류 협약에 따른 분류 목록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4. 단체 상표의 이용에 관한 규정은 다음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 a) 상표의 소유자인 집단적 조직의 명칭, 주소, 설립 근거 및 운영

- b) 집단적 조직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조건
 - c) 상표의 사용이 허락된 조직 및 개인의 목록
 - d) 상표 이용에 관한 조건
 - e) 집단 상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
5. 증명 상표의 이용에 관한 규정은 다음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 a) 상표 소유자인 조직 또는 개인
 - b) 상표 이용 조건
 - c) 상표에 의해 증명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징
 - d) 상표의 이용을 감독하기 위한 방법 및 상품 및 서비스의 평가 방법
 - e) 상표 보호 및 증명을 위해 상표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그 비용

제106조 (지리적표시 출원 요건)

1. 지리적표시 출원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지리적표시를 나타내는 서류, 샘플 및 정보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a) 지리적표시의 명칭 또는 표시
 - b) 지리적표시를 지닌 제품
 - c) 지리적표시를 지닌 제품의 특정 특성(peculiar characteristics) 또는 품질, 또는 명성에 관한 설명 및 제품의 특정 특성 또는 품질, 또는 명성에 기여하는 자연적인 조건의 특징 (이하 특정 특성의 설명이라 함)
 - d) 지리적표시에 대응하는 지역의 지도
 - e) 원산지가 외국인 경우, 지리적표시가 원산지 국가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 특성에 대한 설명은 다음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 a) 제품의 원료, 그리고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으로 인식 가능한 특성을 포함하는 제품에 관한 설명
 - b) 지리적표시에 대응하는 지역을 결정하는 방법
 - c) 동법 제79조에 의한 각각의 의미를 가지는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거
 - d) 지역적 및 안정적 제조 및 공정 방법에 관한 설명
 - e) 동법 제79조에 의한 자연 조건과 제품의 특정 특성이나 품질 또는 명성 사이의 관계에 관한 정보
 - f) 제품의 특정 특성이나 품질의 자기관리 체계에 관한 정보

제107조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대표 권한)

1. 보호증서의 성립, 유지, 연장, 보정, 중단 및 무효화와 관련한 절차를 실행할 권한은 서면 형식 위임장으로 작성해야 한다.
2. 위임장은 다음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 a) 본인 및 대리인의 전체 성명 및 주소
 - b) 위임 범위
 - c) 위임장의 유효 기간
 - d) 위임장의 일자
 - e) 본인의 서명 및 봉인(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3. 유효기간이 없는 위임장은 무한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종료된다.

제3절 산업재산권 등록출원 절차 및 보호증서 허여 절차**제108조 (산업재산권 등록출원 접수, 출원일)**

1.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은 적어도 다음의 서류 및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산업재산권을 담당하는 국가관리기관에 의해서 접수된다.
 - a) 출원인 및 상표의 샘플, 상표 등록출원되는 상표를 포함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목록을 식별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를 포함하는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상표 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 신청서
 - b) 발명 등록출원에 대한 보호 범위, 산업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사진 또는 도면 세트를 포함하는 명세서, 지리적표시 등록출원에 대한 특정 특성의 설명
 - c) 규정된 수수료 및 비용의 영수증
2. 출원일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이 출원을 접수한 날 또는 국제조약 하에서 출원된 출원의 경우에는 그 국제 출원일이 된다.

제109조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의 방식 심사)

1.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은 방식 유효성의 입증을 위해 형식에 대해 심사를 받는다.
2. 다음 사항의 경우,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이 공식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a) 출원이 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b) 출원 대상이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 c) 등록받을 권리가 둘 이상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들 중 일부가 출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해, 출원인이 등록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은 경우
 - d) 동법 제89조에 규정된 출원 방식에 반하여 출원된 경우

- e) 출원인이 수수료 및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동조의 제2항에 해당되는 산업재산권 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산업재산권의 국가관리기관은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 a) 흠결 치유 또는 불복의 기한 및 이유가 명확하게 기재된 출원 불수리 통지서 발송
 - b) 동조 a에 규정된 바와 같은 불수리에 대한 정당한 불복을 하지 않거나 출원인이 흠결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에 불수리 통지서 송달
 - c) 집적회로 등록출원의 경우,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등록 증명서의 허여를 거절하는 통지서 송달
 - d) 동조 a에 규정된 바와 같은 불수리에 대해 정당하게 불복하였거나 출원인이 흠결을 치유했을 때, 동조 제4항에 규정된 절차 실행
 4. 동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 또는 동조 제3항 d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재산권 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산업재산권의 국가관리기관은 방식으로 유효한 출원의 접수 통지서를 제공해야 하며, 또는 배치설계 출원의 경우에는 보호증서를 허여하고 또 동법 제11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산업재산권에 대한 국가 등기소에 통지해야 한다.
 5.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조 제3항에 따라 거절된 상표 등록출원은 출원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10조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의 공표)

1. 산업재산권의 국가관리기관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접수된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은 동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권 공보로 공표된다.
2. 발명 등록출원은 적용 가능한 우선일 또는 출원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또는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가급적 조속히 공표되어야 한다.
3. 산업디자인 등록출원, 상표 등록출원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출원은 그 출원이 공식적으로 유효하게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표되어야 한다.
4.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배치설계 등록출원은 산업재산권의 국가관리기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표되어야 하며, 그 출원에 포함된 비밀 정보와 관련된 접근은 권리 침해 관련 절차 완료 또는 보호증서의 무효 절차 완료와 관련한 당사자 및 관할 당국에게만 허락된다.
배치설계에 대한 보호증서 및 배치설계 등록출원에 관한 기본 정보는 보호증서 허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표되어야 한다.

제111조 (공표 전에 발명 등록출원, 산업디자인 등록출원의 비밀 유지)

1. 발명 등록출원 또는 산업디자인 등록출원이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표되기까지, 산업재산권의

국가관리기관은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2. 발명 등록출원 또는 산업디자인 등록출원의 정보를 공개한 산업재산권의 국가관리기관의 직원은 징계를 받을 것이며 동법에 따라 그러한 공개에 의해 출원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제112조 (보호증서 허여에 대한 제3자의 의견)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이 산업재산권 공보로 공표된 날로부터 보호증서의 허여가 결정되는 날 이전까지, 제3자는 출원과 관련된 보호증서의 허여 또는 거절에 관해 산업재산권의 국가관리기관에게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고 증거를 첨부할 수 있으며 또는 입증을 위해 사용된 정보의 공급원을 기재해야 한다.

제113조 (발명 등록출원의 실질 심사 청구)

1. 우선일이 적용되는 경우에 우선일로부터 또는 출원일로부터 42개월 이내에, 출원인 또는 제3자는 실질 심사 청구료를 지불하고 출원의 실체에 대해 출원을 심사할 것을 산업재산권의 국가관리기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실용신안 특허 청구를 위한 발명 등록출원의 실질 심사 청구에 대한 기한은 출원일로부터 또는 우선일이 있는 경우에 그 우선일로부터 36개월이다.
3. 동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기한 내에 실질 심사 청구가 없는 경우에, 각 발명 등록출원은 기한의 만료 시에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4조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의 실질 심사)

1. 다음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은 출원에서 청구된 대상의 보호 요건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위해서 또는 각각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실질 심사가 이루어진다.
 - a) 공식적으로 유효하게 접수되고 실질 심사에 대한 청구가 규정대로 이루어진 발명 등록출원
 - b) 공식적으로 유효하게 접수된 산업디자인 등록출원, 상표 등록출원 및 지리적표시 등록출원
2. 배치설계 등록출원은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115조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의 보정, 보충, 분할 및 변경)

1. 산업재산권의 국가관리기관이 보호증서에 대해 허여 결정 또는 거절 결정을 할 때까지, 출원인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a) 출원에 대해 보정 또는 보충을 할 수 있는 권리

- b) 출원을 분할할 권리
 - c)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기록 변경을 요청할 권리
 - d) 상속, 유증,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계약에 따른 양도에 의해서, 출원인에 관한 기록 변경을 요청할 권리
 - e) 발명 특허를 위한 발명 등록출원을 실용신안 특허를 위한 발명 등록출원으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로 변경할 권리
2. 동조 제1항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요청을 하는 자는 수수료 및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3.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에 대한 보정 또는 보충은 공개된 또는 출원에서 특정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으며, 출원 시의 등록 청구 대상의 실체를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출원을 단일성을 충족해야 한다.
 4. 분할 출원의 경우에, 분할된 출원의 출원일은 최초 출원의 출원일이 된다.

제116조 (산업재산권 등록출원 취하)

1. 출원의 취하 권능에 대해 위임장에 명백히 기재된 경우, 산업재산권의 국가관리기관이 보호증서의 허여 또는 거절을 통지하기 전까지, 출원인은 자신의 명의로 또는 산업재산권 대리인을 통해서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의 취하를 할 수 있다.
2. 출원인이 등록출원의 취하를 하는 순간, 출원에 관한 모든 추가적인 절차는 중단될 것이며, 아직 실행되지 않은 절차에 대해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및 비용은 요청에 의해 출원인에게 환급될 것이다.
3. 공표 전에 취하된 또는 취하 간주되는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등록출원 및 취하된 상표 등록출원은 우선권의 기초로 이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한다.

제117조 (보호증서 허여 거절)

1. 다음의 경우, 발명, 산업디자인, 상표 또는 지리적표시에 대한 출원의 보호증서 허여가 거절된다.
 - a) 출원에서 청구된 각각의 청구대상이 보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확신에 근거가 있는 경우
 - b) 출원이 보호증서 허여에 대한 모든 조건은 만족하나, 동법 제90조 제1항에 기재된 경우와 같은 최선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가진 출원이 아닌 경우
 - c) 출원은 동법 제90조 제1항에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나, 모든 출원인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2. 동법 제109조에 규정된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치설계 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보호증서가 거절된다.

3.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이 동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재산권의 국가관리기관은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 a) 보호증서 허여 거절의 통지를 하며, 이때 그러한 거절에 대해 출원인이 불복할 기간과 함께 거절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b) 동항 a에 규정된 거절에 대해 출원인이 불복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하지 않게 불복하는 경우에, 보호증서 허여에 대한 거절 통지를 한다.
 - c) 출원인이 동항 a에 기재된 거절에 대해 정당하게 불복하였다면, 보호증서를 허여하고 그러한 보호증서 허여를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권 국가 등기소에 통지한다.
4. 보호증서 허여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된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을 재심사한다.

제118조 (보호증서 허여, 등기부예의 기입)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이 동법 제117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3항 b에 속하지 않고 출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산업재산권의 국가관리기관은 보호증서 허여를 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을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등기소에 통지한다.

제119조 (산업재산 등록출원 처리에 대한 기간)

1. 산업재산 등록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해야 한다.
2. 산업재산 등록출원은 다음 시한 이내에 실질심사를 받는다.
 - a) 발명의 경우, 실질심사 요청이 출원 출판일 이전에 제출된 경우 공개일로부터 18개월, 또는 출원 공개일 이후에 요청이 제출된 경우 실질심사 요청의 수령일로부터 18개월
 - b) 상표의 경우, 출원 공개일로부터 9개월
 - c) 산업디자인의 경우, 출원 공개일로부터 7개월
 - d) 지리적표시의 경우, 출원 공개일로부터 6개월
3. 산업재산 등록출원의 재심사에 대한 기간은 첫 심사의 기간의 3분의 2와 같다. 복잡한 사례의 경우, 시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첫 심사의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출원인에 의한 출원의 수정 또는 추가 기간은 동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명시된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출원의 수정 또는 추가 처리에 대한 기간은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명시된 기간의 3분의 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4절 국제 출원 및 그 처리

제120조 (국제 출원 및 그 처리)

1.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 하에 출원된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은 국제 출원이라고 한다.
2. 국제 출원 및 그 진행은 관련 국제 조약에 따른다.
3. 본 장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정부는 국제 출원에 대한 규정의 실행, 진행의 절차 및 순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제4장 산업재산권의 소유권자, 범위 및 제한

제1절 산업재산권의 소유권자 및 범위

제121조 (산업재산권 소유권자)

1. 발명,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설계의 소유권자는 관할 기관에 의한 관련 산업재산권 대상의 보호증서의 양수인인 조직 또는 개인이다.
상표의 소유권자는 그 상표의 보호증서를 관할 기관에 의해 허여받거나 합법적인 대리인에 의해 인정되는 국제 등록된 상표 또는 주지 상표를 갖고 있는 조직 또는 개인이다.
2. 상호의 소유권자는 영업 활동에서 그 상호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조직 또는 개인이다.
3. 영업비밀의 소유권자는 법적으로 영업비밀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조직 또는 개인이다. 양도된 업무의 이행 동안 양도된 업무를 실행하는 일방 또는 종업원에 의해 획득된 영업비밀은 당사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업무 양도인 또는 고용인에 귀속된다.
4. 베트남의 지리적표시의 소유권자는 국가이다.
국가는 관련 지역의 지리적표시를 보유되는 물품을 생산하고 시장에 그 물품을 방출하는 조직 또는 개인에게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다. 국가는 지리적표시를 관리할 권리를 직접 실시하거나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권리가 허여된 모든 다른 조직 또는 개인을 대표할 자격을 갖는 조직에게 그 권리를 허여해야 한다.

제122조 (발명, 산업디자인 및 배치 설계의 창작자 및 이들의 권리)

1. 발명,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설계의 저자는 산업재산권 대상을 직접 창안하였던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 이상의 사람이 산업재산권 대상을 직접 공동으로 창안하였다면, 이들이 공동 소유권자가 된다.
2. 발명,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설계의 저자의 저작인격권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관련 발명 특허, 실용신안 특허,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설계 등록 증명서에 저자로서 명기될 권리

- b) 발명,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설계가 공표되거나 소개된 문서에서 저자로서 명기될 권리
3. 발명,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설계의 저자의 저작재산권은 동법 제135조에 따른 보상에 대한 권리이다.

제123조 (산업재산권 소유자의 권리)

1. 산업재산권 대상의 소유권자는 다음의 재산권을 갖는다.
 - a) 동법 제10장 및 제124조에 따라 산업재산권 대상을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 b) 동법 제125조에 따라 산업재산권 대상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
 - c) 동법 제10장에 따라 산업재산권 대상을 처분할 권리
2. 동법 제121조 제4항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사용 또는 관리할 권리를 국가에 의해 허여받는 조직 또는 개인은 다음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a) 지리적표시를 사용 또는 관리할 권리를 국가에 의해 허여받는 기관은 동조 제1항 a에 의해 이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할 권리를 갖는다.
 - b) 지리적표시를 사용 또는 관리할 권리를 국가에 의해 허여받는 조직 또는 개인은 동조 제1항 b에 의해 이러한 지리적표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

제124조 (산업재산권의 행사)

1. 발명의 사용은 다음의 행위의 실시를 의미한다.
 - a) 보호받는 물품의 제조
 - b) 보호받는 공정의 적용
 - c) 보호받는 공정에 의해 얻어지는 물품 또는 보호받는 물품의 사용을 개발
 - d) 유통, 광고, 대여, 동항 c에 언급된 제품을 유통시키기 위한 보관
 - e) 동항 c에 언급된 제품의 수입
2. 산업디자인의 사용은 다음의 행위의 실시를 의미한다.
 - a) 보호받는 산업디자인을 구현하는 외형을 지닌 물품의 제조
 - b) 유통, 광고, 대여, 동항 a에 언급된 제품을 유통시키기 위한 보관
 - c) 동항 a에 언급된 제품의 수입
3. 배치설계의 사용은 다음의 행위의 실시를 의미한다.
 - a) 배치설계의 복제, 보호받는 배치설계에 의한 반도체집적회로의 제조
 - b) 보호받는 배치설계의 복제물, 보호받는 배치설계에 의해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이 반도체집적회로를 포함한 물품의 판매, 양도, 광고, 대여 또는 보관
 - c) 보호받는 배치설계의 복제물, 보호받는 배치설계에 의해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이

반도체집적회로를 포함한 물품의 수입

4. 영업비밀의 사용은 다음 행위의 실시를 의미한다.
 - a) 물품 제조, 공급 서비스 또는 상품 거래에 영업비밀 적용
 - b) 판매, 판매를 위한 광고, 판매를 위한 보관, 영업비밀에 의해 획득되는 물품 수입
5. 상표의 사용은 다음 행위의 실시를 의미한다.
 - a) 상품, 상품 패키지, 영업 또는 공급 서비스의 수단 및 영업 활동의 통신 서류에 보호받는 상표 적용
 - b) 보호받는 상표를 지닌 상품을 유통, 또는 대여, 광고, 판매를 위한 보관
 - c) 보호받는 상표를 지닌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입
6. 상호의 사용은 영업 활동에서 그 명칭 자체에 상호를 사용하고 거래 서류, 상점 간판, 물품, 상품 및 상품 패키지 및 서비스와 광고 수단에 그 상호를 표현함으로써 상업적 목적을 위해 임의의 행위를 실시를 의미한다.
7. 지리적표시의 사용은 다음의 행위의 실시를 의미한다.
 - a) 영업 활동에 상품 또는 상품 패키지, 사업 및 거래 서류에 보호받는 지리적표시를 부착시키는 것
 - b) 보호받는 지리적표시를 지닌 상품의 유통 또는 대여, 광고, 판매를 위한 보관
 - c) 보호받는 지리적표시를 지닌 상품의 수입

제125조 (산업재산권 대상의 행사를 금지하는 권리)

1. 산업재산권 내용의 소유권자 및 지리적표시를 사용 또는 관리할 권리를 허여받은 조직 또는 개인은 이러한 사용이 동조의 제2항 및 제3항에서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산업재산권 내용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2. 산업재산권 내용의 소유권자 및 지리적표시를 사용 또는 관리할 권리를 허여받은 조직 또는 개인은 다른 사람이 다음의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 a) 제품의 생산, 수입 또는 유통을 위한 출원 라이선스의 절차를 수행하려는 정보 수집 목적, 평가, 분석, 연구, 교육, 실험, 시험 생산 목적, 개인적 필요 또는 비상업적 목적을 위해 발명,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설계를 사용
 - b) 물품이 상표 소유자 또는 그 라이선스 사용권자 이외의 사람에 의해 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외하고, 외국 시장을 포함한 시장에 합법적으로 진입한 물품의 유통, 수입, 사용 개발
 - c) 베트남 지역에 단지 일시적으로 체류하거나 또는 통행하는 외국 차량의 작동을 유지시킬 목적만을 위해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 사용
 - d) 동법 제134조에 따른 선사용자 권리를 갖는 자가 발명,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설계 사용
 - e) 동법 제145조 및 제146조에 따라 국가 기관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발명 사용

- f) 배치설계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 의무가 없으면서 배치설계 사용
 - g) 상표가 지리적표시의 등록출원일 전에 진정한 방식으로 보호받는 경우, 보호받는 지리적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사용
 - h) 종류, 수량, 품질, 활용, 가치, 지리적 기원 및 상품 또는 서비스의 다른 특성에 대한 형상 상표와 사람의 이름을 진정한 방식으로 사용
3. 영업비밀의 소유권자는 다른 사람이 다음의 행위의 실시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 a) 불법으로 타인에 의해 획득되었음을 알 의무 없이 또는 알지 못하고 획득한 영업비밀 공개하거나 사용
 - b) 동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 공개
 - c) 비상업적 목적으로 동법 제128조에 따라 영업 자료 사용
 - d) 다른 사람이 독립적으로 창안한 영업비밀 공개 또는 사용
 - e) 법률상 배분된 물품을 분석하거나 또는 평가함으로써 영업비밀 공개 또는 사용

제126조 (발명, 산업디자인 및 배치설계에 대한 권리의 침해행위)

다음의 행위는 발명,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설계의 소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보호받는 발명을 사용하는 행위, 보호받는 산업디자인 또는 이와 충분히 상이하지 않은 다른 산업디자인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소유권자의 허락 없이 보호증서의 유효 기간 내에 보호받는 배치설계 또는 그 원래 부분을 사용하는 행위
2. 동법 제131조의 잠정조치에 대한 조항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발명,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설계를 사용하는 행위

제127조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를 침해행위)

1. 다음의 행위는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a) 영업비밀의 합법적 관리자에 의해 취해진 영업 유지 방법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영업비밀에 구현된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획득하는 행위
- b) 영업비밀의 소유권자의 허락 없이 영업비밀 내에 구현된 정보를 공개 또는 사용하는 행위
- c) 비밀유지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 또는 영업비밀에 접근, 획득 또는 공개하기 위해 비밀 유지 책임자의 신뢰를 사기, 유도, 매수, 강압, 유혹 또는 남용하는 행위
- d) 관할 기관이 적용한 비밀 유지 조치를 반하는 행위를 통해 제품 유통 또는 거래를 위한 라이선스 출원인의 영업비밀에 적용되는 정보에 접근하거나 정보를 획득하는 행위
- e) 동항 a, b, c 및 d에 명시된 행위 중 하나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이 획득하였음을 알 의무가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 f) 동법 제128조에서 제공하는 비밀 유지의 의무를 실행하는데 실패한 행위

2. 동조 제1항에서 언급된 영업비밀의 합법적 관리자는 영업비밀의 소유권자, 합법적인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관리자를 포함한다.

제128조 (시험 데이터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

1. 상당한 노력 또는 비용을 수반하는 시험 데이터 또는 다른 기타 영업비밀의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의약품 또는 농화학품에 관한 영업 또는 마케팅의 라이선스를 출원인에게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와 출원인이 이러한 데이터가 비밀 유지되기를 요청하는 경우, 라이선스 관할 기관은 공중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데이터가 불공정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의무를 가진다.
2. 동조 제1항에서 제공되는 바와 같이 출원 시 관할 기관에 비밀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부터 출원인에게 라이선스가 허여되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 말까지, 관할 기관은 동법 제125조 제3항 d에서 언급한 경우들을 제외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제출하는 자의 허락 없이 출원 비밀 데이터가 사용되는 후속 출원에 이러한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129조 (상표, 상호 및 지리적표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 다음의 행위가 상표 소유권자의 허락 없이 실시된다면 상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a) 상표와 함께 등록된 목록 내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보호되는 상표와 동일한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 b)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원에 대한 혼동을 야기하는 사용인 경우, 상표와 함께 등록된 목록 내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보호받는 상표와 동일한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 c)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원에 관하여 그 사용이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상표와 함께 등록된 목록 내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연관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호받는 상표와 동일한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 d) 주지 상표를 지닌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거나, 관련성이 없는 것을 포함하여, 주지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 또는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주지 상표를 번역하거나 전사한 형태의 표시의 사용(단, 그러한 사용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원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표시 및 주지 상표 소유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일으키는 경우)
2. 그 상호에 의한 사업체, 사업 기반 또는 사업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먼저 사용된 다른 사람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업적 표시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는 상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다음의 행위는 보호받는 지리적표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 a) 지리적표시를 지닌 지리적 영역에서 물품이 기원하더라도, 지리적표시를 지닌 물품의 특성 및 질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물품에 대해 보호받는 지리적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 b) 명성 및 신용을 이용할 목적으로 지리적표시를 지닌 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보호받는 지리적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 c) 지리적표시를 지닌 지리적 영역에서 기인하지 않아서, 지리적 영역에서 기인하는 물품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물품에 보호받는 지리적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 d) 상품의 진정한 기원이 표시되거나 또는 지리적표시가 ‘종류’, ‘유형’, ‘스타일’, ‘모방’ 등과 같은 말이 수반되거나 또는 번역되어 사용되는 경우일지라도, 지리적표시에 대응하는 지방에서 기원하지 않는 와인 또는 증류주에 대해 와인 또는 증류주의 보호받는 지리적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제130조 (부정경쟁행위)

1. 다음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한다.
- a) 사업체 또는 사업 활동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업적 공급처에 관하여 혼동을 야기하는 상업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 b)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원, 제조 방법, 특성, 품질, 양, 또는 기타 특성에 관하여 또는 상품 및 서비스의 규정의 조건에 관하여 혼동을 야기하는 상업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 c) 상표 소유권자의 대표 또는 대리인이 사용자이고, 그러한 사용이 상표 소유권자에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상표의 소유권자의 대표 또는 대리인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 받았으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약당사국인 조약의 체약당사국에서 보호받는 상표 사용
 - d) 보호받는 다른 사람의 상호 또는 상표, 각각의 상표, 상호 및 지리적표시의 명성 및 신용을 침해하거나, 이익을 얻거나, 또는 도메인명을 소유할 목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없는 지리적표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명을 사용하는 행위 및 사용할 권리를 등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2. 동조 제1항에서 언급된 상업적 표시는 상표, 상호, 영업 상징, 영업 슬로건, 지리적표시, 포장 디자인, 레이블 디자인 등을 포함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정보 표시를 의미한다.
3. 동조 제1항에서 언급된 상업적 표시의 사용은 상품, 포장, 서비스 수단, 영업 거래 서류 및 광고 수단에 상업적 표시를 부착하는 것을 포함한다. 판매, 판매를 위한 광고, 판매를 위한 보관 및 이러한 상업적 표시가 고정된 물품을 수입하는 것.

제131조 (발명, 산업디자인 및 배치 설계의 잠정조치)

1. 선사용자 권리 없이 상업적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이 그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이 사용한 것을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의 등록출원인이 알게 된 경우, 출원인은 산업재산권 관청 관보에 나온 출원일과 출원의 공보발행일을 명확히 명시한 출원 제출을 사용자에게 서면 통지로 보내 사용을 종료하거나 지속하도록 한다.
2. 반도체 집적 회로 등록 인증서의 등록일 이전에, 등록할 권리를 갖는 자 또는 라이선스 사용권자에게 상업적으로 사용되었던 배치설계의 경우, 등록할 권리를 갖는 자는 이러한 배치 설계가 상업적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에 의해 사용되었음을 알고 있다면, 그의 등록권에 대해 사용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 사용을 종료하거나 지속하도록 한다.
3.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통지를 받은 사람이 그 발명,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설계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발명 특허, 실용신안 특허, 산업디자인 특허 또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등록 인증서가 발행된다면, 이러한 발명,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설계의 소유권자는 발명,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설계의 사용자에게 이러한 발명,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설계를 위한 수수료에 동등한 보상금을 사용 범위 및 기간 내에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2절 산업재산권의 제한**제132조 (산업재산권을 제한하는 요인)**

동법에서 산업재산권은 다음의 요인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1.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의 선사용자의 권리
2. 소유권자의 의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발명,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설계의 저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의무
 - b) 발명 또는 상표를 사용할 의무
3. 관할 국가 기관의 결정에 의한 발명의 라이선스 부여

제133조 (국가를 대리하여 발명을 사용할 권리)

1.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은 동법 제145조 및 제146조에 따라 배타적인 계약(발명을 사용할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로서 지칭되는)의 발명 소유권자 또는 그 라이선스 사용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공중의 비상업적 목적, 국방, 안보, 재해예방 및 다른 긴급한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안에 대해 국가를 대신하여 각각의 관리하에 다른 조직 또는 개인이 그 분야 내의 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동조 제1항에 의한 발명의 사용은 국가 기금의 재정, 재료 및 기술적 시설을 사용해서 창작된 발명을 제외하고 동법 제146조 제1항에서 제공된 라이선스 부여의 범위 및 조건에 제한된다.

제134조 (발명 및 산업디자인의 선사용권)

1.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 등록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권 날짜(우선권이 있는 경우) 이전에, 그 등록출원에 명시되었으나 독립적으로 창출된 보호받는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과 동일한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을 사용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준비하거나 사용한 사람의 경우(이하 선사용권 사용자), 보호증서가 부여된 후에, 선사용권 소유권자는 그러한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을 사용 범위 및 용량 이내에서 계속해서 사용하거나, 보호받는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의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지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준비를 사용할 수 있다.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의 선사용권 소유권자의 권리 행사는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 소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2.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사업 또는 생산 설비 이전과 함께 권리가 양도된 경우가 아닌 한,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의 선사용권 소유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 소유권자가 허가하지 않는 한, 선사용권 소유권자는 사용 범위와 용량을 확장할 수 없다.

제135조 (발명, 산업디자인 및 배치 설계의 창작자에 대한 보상 의무)

1. 당사자들이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한, 소유권자는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창작자에게 보상할 의무를 가진다.
2. 소유권자가 창작자에게 보상하는 최소 수준은 다음과 같다.
 - a)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설계의 사용으로부터 소유권자가 얻는 이익의 10%
 - b)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 설계의 라이선스의 허여에 대한 각 지불금에 대해 소유권자가 받는 총금액의 15%
3. 1인 이상의 창작자에 의해 발명,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 설계가 창안되는 경우 동조 제2항에서 제공되는 보상은 모든 창작자에게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이들 창작자는 소유권자가 지불한 그 보상금의 배당액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4. 발명,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설계의 창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이 발명,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설계의 전체 기간에 대해 지속된다.

제136조 (발명 및 상표를 사용할 의무)

1. 발명의 소유권자는 국방, 보안, 질병예방상의 요구, 국민의 대우 및 영양을 만족시키기 위해 보호받는 방법을 적용하거나 기타 사회적 긴급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호받는 물품을 제조할 의무가 있다. 상기 필요 중 어느 것이 발생될 때 발명의 소유권자가 그러한 의무를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 기관은 동법 제145조 및 제146조에 제공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발명의 라이선스를 허여할 수 있다.

2. 상표의 소유권자는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상표의 소유권의 유효성은 동법 제 95조에 따라 5년 이상의 계속된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면 종결된다.

제137조 (종속 발명을 사용하기 위해 주 발명의 사용을 허락할 의무)

1. 종속 발명은 다른 발명에 근거하여 창안된 발명(이하에 기본발명)으로서 주 발명을 사용하는 조건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종속 발명은 원칙 발명과 비교할 때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거나 또는 상당한 경제적 중요성을 가짐이 증명된다면, 종속 발명의 소유권자는 상업적 가격 및 조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본발명의 라이선스를 허여하도록 기본발명의 소유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주발명의 소유권자는 적법한 이유 없이 이러한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독립 발명의 소유권자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할 국가 기관은 동법 제145조 및 제146조에 의한 주발명의 라이선스를 종속 발명의 소유권자에게 허여할 수 있다.

제10장 산업재산권의 이전

제1절 산업재산권의 양도

제138조 (산업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 규정)

1. 산업재산권의 양도는 산업재산권 소유권자가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산업재산권의 양도는 서면 계약의 형식으로 실행되어야 한다(이하 산업재산권의 양도 계약이라 함).

제139조 (산업재산권의 양도에 대한 제약)

1. 산업재산권 소유권자는 보호의 범위 내에서만 그의 권리를 양도한다.
2. 지리적표시의 권리는 양도하지 못한다.
3. 상호에 대한 권리는 상호 하에서의 전체 영업 부동산 및 영업 활동의 이전을 함께 양도해야 한다.
4. 상표에 대한 권리의 양도는 상표를 갖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원 또는 특성에 관한 혼동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5. 상표에 대한 권리는 그 상표에 관한 등록에 대한 권리를 갖는 자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조직 또는 개인에게만 양도될 수 있다.

제140조 (산업재산권의 양도를 위한 계약의 내용)

산업재산권의 양도를 위한 계약은 다음의 실질적인 규정을 가진다.

1. 양도인 및 양수인의 전체 성명 및 주소
2. 양도의 근거
3. 양도 가격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2절 산업재산권의 라이선스 부여**제141조 (산업재산권의 라이선스 부여에 관한 총칙)**

1. 산업재산권의 라이선스 부여는 소유권자의 사용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조직 또는 개인이 산업재산권 대상을 사용하는 것을 그 산업재산권 소유권자가 허락함을 의미한다.
2. 산업재산권의 라이선스 부여는 서면 계약의 형태로 실행되어야 한다(이하 산업재산권 대상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이라 함).

제142조 (산업재산권 대상의 라이선스 부여에 대한 제약)

1. 지리적표시 또는 상호를 사용할 권리는 라이선스할 수 없다.
2. 단체 상표의 사용에 대한 권리는 단체 상표 소유권자의 일원이 아닌 조직 또는 개인에게 라이선스하여서는 안 된다.
3. 라이선스 사용권자는 라이선스 허여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와 하위 라이선스 계약을 할 수 없다.
4. 라이선스 사용권자는 상품 및 상표의 사용을 위한 계약 하에서 상품이 제조되었던 그 포장에 나타낼 의무를 가진다.
5. 배타적인 계약 하에서의 발명 라이선스는 동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 발명 소유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 발명을 사용할 의무를 가진다.

제143조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계약 유형)

산업재산권 대상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은 다음의 유형이다.

1. 배타적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스의 범위 및 기간 내에서 라이선스 사용권자가 산업재산권 대상을 사용할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한편, 라이선스 허여권자는 제3자와 산업재산권의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결정할 수 없고, 라이선스 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산업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는 계약을 의미한다.
2. 비배타적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스 부여의 범위 및 기간 내에 라이선스 허여권자가 산업재산권을 사용하고 또한 다른 사람과 비배타적 라이선스 계약을 결정할 모든 권리를 가지는 계약

을 의미한다.

3. 산업재산권의 사용을 위한 서브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스 허여권자가 다른 계약 하에서 산업재산권의 라이선스 사용권자인 계약이다.

제144조 (산업재산권의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 내용)

1. 산업재산권의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은 다음의 원칙적 규정을 따른다.
 - a) 라이선스 허여권자 및 라이선스 사용권자의 전체 성명 및 주소
 - b) 라이선스의 근거
 - c) 계약의 유형
 - d) 라이선스의 범위(사용 제한, 지역 제한)
 - e) 라이선스 기간
 - f) 라이선스 가격
 - g) 라이선스 허여권자 및 라이선스 사용권자의 권리 및 의무.
2. 산업재산권의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스 사용권자의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조문, 특히 다음과 같이 라이선스 허여권자의 권리로부터 도출되지 않는 규정들은 가지지 않는다.
 - a) 상표 이외의 산업재산권을 라이선스 사용권자가 향상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 무료 라이선스를 허여하거나 또는 허여권자에게 산업재산권 등록 또는 그 개선에 관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 사용권자를 강요하는 것
 - b) 허여권자가 각 산업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거나 이러한 상품을 수입할 배타적 권리를 가지지 않는 지역에 산업재산권의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제조되는 상품을 사용권자가 수출하게 하는 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지하는 것
 - c) 사용권자 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제조되는 상품의 품질을 보장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허여권자가 지정한 자 또는 허여권자로부터 원재료, 성분 또는 장비 전부 또는 특정 비율을 사용권자가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것
 - d) 산업재산권 또는 라이선스에 대한 권리의 유효성을 사용권자가 시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3. 동조 제2항의 경우를 참조하면 계약의 임의 기간은 직권상 무효가 될 수 있다.

제3절 발명의 강제실시

제145조 (발명의 강제 실시부여 기본)

1. 다음의 경우, 발명을 사용할 권리는 그 발명을 사용하는 배타적인 권리의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얻지 않고 동법 제147조 제1항에 의한 관할 국가 기관의 결정에 따라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사용권을 이전한다.

- a) 국방, 안보, 국민의 건강 및 영양의 필요 또는 기타 사회의 긴급한 요구와 같은 공중의 비상업적 목적을 위한 발명의 사용
 - b) 발명을 사용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가 발명 특허의 허여일로부터 3년의 시효만료 및 이러한 발명에 대한 등록출원의 출원일로부터 4년의 시효 만료까지 동법 제136조 제1항 및 제142조 제5항에 의한 발명을 사용할 의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 c) 발명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자가 적절한 가격 및 상업적 고려에 대한 협상에 대한 합리적인 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명의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의 결정 시 발명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 d) 발명을 사용할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가 경쟁법 하에서 금지하는 반경쟁의 행위를 실시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2. 발명을 사용할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는 동조 제1항에서 제공하는 강제적 라이선스 부여의 기본이 존재하고 그 종료가 발명의 라이선스 사용권자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용권의 종료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제146조 (강제 결정 하에서 이전되는 발명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제한 조건)

1. 관할 국가 기관의 결정 하에서의 이전은 다음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 a) 이러한 사용권은 비배타적이다.
 - b) 이러한 사용권은 동법 제145조 제1항에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적으로 외국 시장의 공급을 위해 그리고 강제적인 라이선스 부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범위 및 기간에만 제한된다. 반도체 기술에 관한 강제적 라이선스 부여는 경쟁법에 의해 반경쟁 행위를 다루거나 공중의 비상업적 목적만을 목적으로 한다.
 - c) 라이선스 사용권자는 양도가 그의 사업 기반의 양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러한 권리에 대한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없다.
 - d) 라이선스 사용권자는 정부가 제시하는 보상 수준을 준수하여, 사용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각 특수한 경우의 환경에서 적절한 보상금을 발명의 배타적 사용권의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2. 동조 제1항에서 제공하는 조건에 추가로, 동법 제137조 제2항에 의해 라이선스하는 발명을 사용할 권리는 다음의 조건 역시 충족해야 한다.
 - a) 주요 발명을 사용할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는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종속적인 발명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한이 있다.
 - b) 주요 발명을 사용할 권리의 라이선스 사용권자는 종속적인 발명이 속하는 전체 권리의 양도를 제외하고, 이러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47조 (강제 결정 하에 발명의 라이선스 부여를 위한 절차 및 권한)

1. 과학기술부는 동법 제145조 제1항의 하위절 b, c 및 d에 의한 라이선스에 대한 요청의 고려에 근거한 발명의 라이선스 부여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2. 발명의 라이선스 부여에 대한 결정은 동법 제146조에 따른 적절한 사용의 조건과 범위를 제공한다.
3. 라이선스 부여에 대해 결정한 국가 기관은 그 결정을 발명의 배타적 권리 소유권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4. 라이선스 부여에 대한 결정과 라이선스 부여의 거절에 대한 결정은 동법에 따라 행정소송 또는 법률상 재판에서 다룬다.
5. 정부는 동조에 언급되는 본 발명의 강제적인 라이선스 부여의 과정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제4절 산업재산권의 이전 계약의 등록**제148조 (산업재산권 이전 계약의 효과)**

1. 동법 제6조 제3항 a에 의한 등록에 근거하여 성립된 산업재산권에 대해 산업재산권의 양도를 위한 계약은 산업재산권의 행정 관청에 등록된 경우에만 유효하다.
2. 동법 제6조 제3항 a에 의한 등록에 근거하여 성립된 산업재산권에 대해 산업재산권의 양도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유효하며 산업재산권의 행정 관청에 의한 등록 시에 제3자에게 유효하다.
3.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부여 계약의 유효성은 허여권자의 산업재산권의 종결 시에 종결된다.

제149조 (산업재산권의 이전 계약의 등록에 대한 사건 서류)

산업재산권의 이전을 위한 계약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를 위한 계약의 등록에 대한 사건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상기 양식으로 만들어진 계약의 등록 요청서
2. 계약의 원본 또는 유효 사본
3. 보호증서의 원본(산업재산권의 양도의 경우)
4. 산업재산권이 공동 소유권 하에 있는 경우 다른 공동 소유권자의 비동의에 대한 이유의 서면 설명서 및 공동 소유권자의 서면 동의서
5. 수수료 및 부과금의 영수증
6. 사건기록이 대표를 통해 제출되는 경우, 위임장

제150조 (산업재산권의 이전 계약의 등록에 대한 사건 기록의 처리)

산업재산권의 이전을 위한 계약의 등록에 대한 사건 기록의 수용 및 처리의 순서 및 절차는 정부가 제공한다.

제11장 산업재산권 대리인**제151조 (산업재산권 대리 업무)**

1.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는 다음의 유형을 포함한다.
 - a) 산업재산권의 성립 및 시행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 기관 앞에서 조직 및 개인을 대표한다.
 - b) 산업재산권의 성립 및 시행을 위한 절차에 관한 발행에 대한 조언을 한다.
 - c) 산업재산권의 성립 및 시행에 대한 절차에 관한 기타 서비스.
2. 산업재산권 대표는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의 영업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산업재산권 대행사) 및 이러한 기관의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를 실시하는 개인(이하 산업재산권 대리인)을 포함한다.

제152조 (산업재산권 대리인의 권리 범위)

1. 산업재산권 대리기관은 권리 부여된 측의 서면 동의에 의해서만 다른 산업재산권 대리기관에 재위임을 부여할 권한을 가지며 권리화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만을 가진다.
2. 산업재산권 대리기관은 모든 계류 중인 현안 업무를 다른 산업재산권 대리기관에 적법하게 이전한 후에 그 산업재산권 대리 업무를 포기할 권리를 가진다.
3. 산업재산권 대리기관은 다음의 활동을 실시할 수 없다.
 - a) 산업재산권의 충돌 시에 동시에 쌍방 대리
 - b) 권리부여한 측의 동의 없이 산업재산권의 성립에 대항한 소송을 철회하거나 보호의 철회를 주장하면서 보호 타이틀에 대한 출원의 철회
 - c)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결정하고 실행하도록 고객을 기만하거나 강요

제153조 (산업재산권 대리인의 책임)

1. 산업재산권 대리인은 다음의 책임을 갖는다.
 - a) 산업재산권의 국가 행정 관청에 등록된 서비스 부과금 하에서 서비스 요금 및 항목, 산업재산권의 성립 및 시행에 대한 절차에 관한 수수료 및 부과금의 항목 및 비율을 명확히 통지하는 것
 - b) 그 대표의 사건에 관련된 문서 및 모든 정보의 비밀 유지하는 것

- c) 산업재산권의 성립 및 시행의 국가 관청의 모든 통지 및 요구에 대해 대표 측을 진정으로 완전하게 알리는 것, 보호증서 및 기타 결정을 제 때에 전달하는 것
 - d) 산업재산권의 성립 및 시행의 국가 관청의 대표 측에 대한 모든 요청을 제때에 만족시킴으로써 대표 측의 합법적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는 것
 - e) 필요한 경우, 대표 측의 성명, 주소 및 다른 정보의 모든 변화를 산업재산권의 성립 및 시행의 국가 관청에게 통지하는 것
2. 산업재산권 대리기관은 해당 대리기관의 대리로서 해당 공업소유권 대리인에 의해 정해진 대리활동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54조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를 실시하는 조건)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관은 산업재산권 대리기관으로서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의 영업을 실시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1. 법률상 설립되어 활동하는 기업, 로펌 또는 과학기술 서비스 기관일 것
2. 작업 등록의 인증서 또는 영업 등록 인증서(이하 영업 등록 증명서)에 기록된 산업재산권 대표 서비스의 영업을 실시하는 기능을 갖는 것
3. 기관의 장 또는 장에 의해 권리 부여된 자는 동법 제155조 제1항에 의한 산업재산권 서비스 실시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155조 (산업재산권 대리인으로서 실시하기 위한 조건)

1.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개인은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를 실시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 a) 산업재산권 대리인의 서비스 실시 인증서가 있을 것
 - b) 하나의 산업재산권 대리기관을 위해 업무하고 있을 것
2.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개인은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를 실시하는 인증서를 허여받아야 한다.
 - a) 민사적 행위에 대한 모든 능력을 가진 베트남 시민일 것
 - b) 베트남 내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것
 - c) 대학 학위가 있을 것
 - d) 적어도 5년 연속 산업재산권의 입법에 직접적으로 종사할 것, 또는 국내 또는 국제 산업재산권 기관에서 적어도 5년 연속 동안 산업재산권 출원의 심사에 직접적으로 종사할 것, 또는 관청에 의해 인식되는 산업재산권 법 및 규정에 대한 교육 과정으로부터 교육 인증서를 받을 것
 - e) 산업재산권의 성립 및 실시의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간부 또는 공무원이 아닐 것
 - f) 관청에 의해 조직된 산업재산권 대표 전문 분야에 대한 심사를 통과할 것

3. 정부는 산업재산권법 및 규정의 교육 프로그램, 산업재산권 대리 전문 분야 및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를 실시하는 인증서의 허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제156조 (산업재산권 대리인의 명의의 기록, 삭제, 산업재산권 대리인의 실시 인증서의 폐기)

1. 동법 제154조 및 제155조에 의한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를 시행 또는 실시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조직 또는 개인은, 그들에 요청에 의해 산업재산권 대리인의 국내 등록원부에 기록되고 산업재산권의 국가 행정 관청에 의해 산업재산권 사무소 공보에 공표된다.
2. 동법 제154조 및 제155조에 의한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를 시행 또는 실시하기 위한 조건들을 산업재산권 대표가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음을 알고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의 행정 관청은 산업재산권 국내 등록 원부로부터 이러한 산업재산권 대리인의 성명을 삭제하고 산업재산권 사무소 공보에 그 사실을 공표한다.
3. 동법 제152조 및 제15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산업재산권 대리기관은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4. 동법 제153조 제1항 및 제152조 제3항 하위절 c의 규정을 실시 또는 위반하는 동안 전문적 실수를 저지른 산업재산권 대리기관의 실수 또는 위반의 성격 및 중대성에 따라 경고, 벌금 또는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 실시 인증서의 철회를 받을 수 있다.

제4부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

제12장 식물품종의 보호를 위한 조건

제157조 (보호받는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를 지닌 조직 및 개인)

1. 보호받는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를 지닌 조직 및 개인은 식물품종을 선택, 재배 또는 발견, 개발하거나 식물품종의 발견 및 개발 또는 선택 및 재배에 투자하거나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은 사람들이다.
2. 동조 제1항에 정의된 조직과 개인에는 베트남 조직 및 개인, 베트남과 식물품종의 보호에 대한 협약을 맺은 외국의 조직 및 개인, 베트남에 영구적 사무소나 거주지가 있거나 베트남에서 식물품종 거래 또는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외국 조직 및 개인, 베트남과 식물품종의 보호에 대한 협약을 맺은 국가에 영구적 사무소나 거주지가 있거나 식물품종 거래 또는 생산 시설을 갖고 있거나 외국 조직 및 개인을 포함한다.

제158조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식물품종에 대한 일반 조건)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는 식물품종은 증식 또는 발견 및 발전되는 품종이며, 농업지역개발부에 의

해 공표된 국가 보호 식물 중 목록에 속하며, 적절한 명칭에 의해 지정되는 새롭고, 특징적이고, 균일하고, 안정된 것을 의미한다.

제159조 (식물품종의 신규성)

품종은 그 품종의 번식 재료 또는 수확된 재료가 동법 제164조에 의한 등록권의 소유자 또는 그 라이선스 사용권자에 의해 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전에 베트남 영역에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거나 판매되지 않은 경우, 또는 다른 식물품종의 경우 4년, 목재용 나무 혹은 포도나무의 경우 등록출원 출원일로부터 6년 전에 베트남 영역 밖에서의 활용을 위해 유통되지 않았거나 판매되지 않은 경우, 신규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60조 (식물품종의 특성)

1. 식물품종은 경우에 따라서, 우선일 또는 제출하는 시기에 그 존재가 일반적인 상식인 다른 식물품종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경우, 독특하다고 간주한다.
2. 동조 제1항에 정의된 그 존재가 일반적인 상식인 식물품종은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
 - a) 보호 등록출원의 제출 시기에 그 어떠한 국가의 시장에서 그 식물품종의 생식 또는 재배 원료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
 - b) 식물품종이 그 어떠한 국가에서 식물품종의 목록에 등록되었거나 보호받고 있음
 - c) 식물품종이 출원이 거절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식물품종의 목록에 등록출원 또는 보호 등록출원의 주제임

제161조 (식물품종의 균일성)

식물품종은 번식의 특정 특징으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변이를 조건으로, 관련 특성에 있어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 균일성이 있다고 간주한다.

제162조 (식물품종의 안정성)

식물품종은 품종의 관련 원래의 표현된 특성이 반복된 번식 또는 특정한 증식 사이클의 경우, 각 사이클의 종료 이후에도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면 안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제163조 (식물품종의 명칭)

1. 등록인은 식물품종권을 책임지는 국가관리기관에 식물품종의 적절한 명칭을 지정해야 한다. 이 등급은 베트남과 식물품종 보호에 대한 협약을 맺은 그 어떠한 국가에서 이미 보호를 등록한 명칭과 동일해야 한다.
2. 식물품종의 명칭은 일반 상식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의 다른 식물품종과 구별할 수 있는

- 경우, 적절하다고 간주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식물품종의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간주한다.
 - a) 품종의 특성 또는 재배에 숫자가 연관 있지 않는 한, 숫자만 포함하는 경우
 - b) 사회윤리를 위배하는 경우
 - c) 그러한 품종의 특성이나 특징을 오해하기 쉽게 하는 경우
 - d) 재배자의 식별을 오해하기 쉽게 하는 경우
 - e) 그러한 식물품종의 보호 등록출원의 출판일 이전에 보호 받고 있는 상표, 상표명 또는 지리적표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경우
 - f) 다른 조직 또는 개인의 우선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식물품종의 재배 원료를 판매하거나 마케팅하는 조직 또는 개인은 보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식물품종의 보호증서에 명시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5. 판매나 마케팅을 위해 이미 등록된 식물품종의 명칭과 유사한 상표, 상표명 또는 표시가 식물품종의 명칭과 결합된 경우, 이러한 명칭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장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성립

제1절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성립

제164조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등록)

1. 새로운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보호를 획득하기 위해, 조직 및 개인은 산업재산권의 국가 행정 관청에 보호를 위한 등록을 제출해야 한다.
2. 식물품종의 보호를 등록하기 위한 권리를 가지는 조직 및 개인(이하 등록인)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그 자신의 노력 및 비용에 의해 품종을 직접 증식하거나 발견하고 그 자신의 비용으로 품종을 개발하는 재배자
 - b) 계약에 의해 그렇지 않다고 합의하지 않았다면 식물품종을 증식하거나 발견하고 개발하기 위해 투자하는 조직 또는 개인
 - c) 식물품종 보호에 대한 등록의 권리를 이전 또는 상속받은 조직 및 개인
3. 국가의 예산 또는 국가 관리하는 프로젝트 하에 선택되고 재배되었거나, 발견되어 개발된 식물품종의 경우, 그러한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는 국가에게 귀속된다. 정부는 동항에 언급된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등록을 명시해야 한다.

제165조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 등록)

1. 동법 제157조에 정의된 조직 및 개인은 직접 또는 베트남에 있는 합법적 대리인을 통해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 등록을 위한 출원(이하 보호 등록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2.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조직은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 대리 서비스 조직의 역할을 하여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 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a)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외국 법무 조직을 제외한, 베트남 법무법인, 기업 또는 조직,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과학기술 서비스 조직
 - b) 사업 등록증 또는 운영 등록증(이하 모두 사업 등록증)에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 대리 서비스 제공을 기능으로 명시함
3. 동조 제4항 및 제5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이러한 조직의 장 또는 이러한 조직의 장이 승인한 사람은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 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은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 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a)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 대리 서비스 수행 인증서 소지
 - b)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 대리 서비스 조직에서 근무
5.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개인에게는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 대리 서비스 수행 인증서를 부여한다.
 - a) 민법상의 능력을 완전히 갖춘 베트남 시민
 - b) 베트남에 영구 거주하고 있음
 - c) 대학 학위를 소지하고 있음
 - d) 연속 5년 또는 그 이상 동안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법적 행위를 개인적으로 수행했거나, 연속 5년 또는 그 이상 동안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에 관한 국내외 사무소에서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 등록을 위한 다양한 출원을 개인적으로 검토했거나, 관할 기관에 의해 인정받은,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에 관한 법 교육 과정을 졸업함
 - e)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집행을 수립하고 확립하는 관할 국가 기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또는 공공 근로자가 아닌 자
 - f) 관할 기관에 구성된,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를 대리하는 직업에 관한 시험을 통과한 자
6. 정부는 출원 제출 및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 대리 서비스 조직의 합법적인 대리인을 명시한다.

제166조 (식물품종에 대한 최초 출원서 제출의 원칙)

1. 상이한 날에 보호 출원을 제출하는 당사자가 독립적인 2인 이상인 경우, 식물품종 보호 인증서는 가장 이른 유효 등록을 한 출원인에게 주어진다.
2. 동일한 날에 제출된 동일한 품종의 보호 인증서에 대한 다수의 출원서가 존재하는 경우, 식물품종 보호 인증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한 등록인에게 주어진다. 모든 등록인이 합의하지 못한

경우, 국가관리기관은 식물품종 인증서는 증식 또는 발견 및 개발하는 최초 재배자에게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

제167조 (신청서에 대한 우선권 원칙)

1. 동일한 품종의 출원서가 일국에 제출되었던 날짜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베트남에 제출되고 식물품종에 대한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등록인은 우선권을 요청할 수 있다. 최초 출원의 출원일은 이 시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 등록인은 최초 출원서가 거절 또는 반려된 후, 우선권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또는 출원에 기재된 식물품종의 종에 따라 적절한 시간 이내에 동법 제176조 및 제178조에 의해 식물품종 심사를 담당하는 권리의 국가 감독 관리 기관에 필요한 정보, 서류 또는 재료를 제공할 수 있다.
3. 보호 등록출원이 우선권의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으면, 최초 출원서가 제출되었던 날짜가 우선일이 된다.
4. 동조 제1항에서 언급한 시한 이내, 다른 출원의 제출이나 공보 또는 최초 출원의 주제가 되는 식물품종의 사용은 우선권 자격이 있는 보호 등록출원의 근거로 고려되지 않는다.

제168조 (식물품종 보호 인증서 및 보호받는 식물품종의 국가 등록 원부)

1. 보호 인증서의 내용은 품종 및 종의 이름, 권리 소유자(이하 인증서 소유자) 및 재배자의 성명과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보호의 존속기간을 포함한다.
2.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관리기관은 식물품종의 국가관리기관이 제작하고 보관하는 국내 등록 원부에 보호하는 식물품종에 대해 보호 인증서의 내용을 기록할 것이다.

제169조 (식물품종 보호 인증서의 유효성)

1. 식물품종 보호 인증서는 베트남의 전체 지역에서 적용될 것이다.
2. 식물품종 보호 인증서는 목재 나무 및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권리부여일로부터 25년의 기간, 기타 종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유효할 것이다.
3. 식물품종 보호 인증서는 동법 제170조 및 제171조에 따라 취소 또는 무효화될 수 있다.

제170조 (식물품종 보호 인증서의 유효성의 취소 및 회복)

1. 식물품종 보호 인증서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의 경우에 취소될 수 있다.
 - a) 보호되는 품종의 균일성 및 안정성이 인증서 허여 시와 같은 조건을 더이상 충족하지 않는다.
 - b) 인증서 소유자가 규정에 의한 타당한 유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 c) 인증서 소유자가 상술한 바와 같은 유지를 위한 번식 재료 및 필요한 서류를 공급하지 않는다.
 - d) 인증서 소유자가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관리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대로 식물품종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다.
2. 동조 제1항 하위절 a, c 및 d에 규정된 경우에는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관리기관은 식물품종 보호 인증서의 취소 결정을 발행할 수 있다.
 3. 동조 제1항 b에 규정된 경우에는 타당한 유지 수수료 납부 기한의 만기일에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관리기관이 연금이 납부되지 않은 다음 유효 년의 제1일로부터 식물품종 보호 인증서의 취소 결정을 발행할 수 있다.
 4. 동조 제1항 a에 규정된 경우에 조직 및 개인은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관리기관에 식물품종 인증서의 유효성을 취소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식물품종 보호 인증서의 취소 및 관련 당사자의 의견들을 요청하는 신청의 결과에 근거해서,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관리기관은 인증서를 취소 결정하거나 보호 인증서의 취소를 거절할 수 있다.
 5. 동조의 제1호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관리기관은 특수 공보에 그 취소를 공표하고 이러한 취소의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인증서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서 소유자는 식물품종 보호 인증서가 취소된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관리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식물품종 보호 인증서를 회복하기 위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출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호 인증서 소유자는 동조 제1항의 하위절 b, c 및 d에 규정된 경우에 관하여 인증서가 취소된 사유를 해소해야 한다. 그러면,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관리기관은 보호 인증서의 유효성을 회복하고 특수 공보에 공중이 열람하게 한다.
- 동조 제1항 (a)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식물품종 보호 인증서의 유효성은 소유자가 식물품종이 균일성 및 안정성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였고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관리기관에 의해 상당히 인증되었음을 증명하는 데에 성공한다면 회복될 것이다.

제171조 (식물품종 보호 인증서의 유효성의 무효)

1. 식물품종 인증서의 유효성은 다음 경우 무효화된다.
 - a) 식물품종 보호 등록출원서가 등록권이 없는 사람의 이름으로 제출된 경우(단, 식물품종이 등록권의 소유자에게 양도되었던 경우 제외)
 - b) 보호되는 품종이 식물품종 보호 인증서를 허여할 때에 신규성 또는 구별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c) 등록자에 의해 제공되는 기술적 시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식물품종 보호 인증서가 허여되는 경우, 보호되는 품종이 균일성 또는 안정성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

2. 조직 또는 개인은 식물품종 보호 인증서가 유효한 동안 이 식물품종 인증서를 무효화하도록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 행정 관청에 요청할 수 있다.
무효화의 요구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심사한 결과에 근거하여,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관리기관은 식물품종 보호 인증서의 유효성을 무효화하는 결정 또는 이러한 무효화를 거절하는 결정을 발행할 수 있다.
3. 식물품종 보호 인증서가 무효로 되는 경우, 식물품종에 근거한 모든 거래가 무효 및 취소된다. 이러한 무효 및 취소 거래는 민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172조 (식물품종 보호 인증서의 보정 또는 재발행)

1. 보호 인증서의 소유권자는 정해진 수수료 및 부과금이 납부되었다면 보호 인증서의 소유자의 성명 및 명칭과 관련한 실수를 변경 또는 수정하기 위해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관리기관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실수가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관리기관에 의한 것이라면,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 관리기관이 이러한 실수를 수정하고 이러한 보호 인증서의 소유자가 수수료 및 부과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2. 보호 인증서의 소유자는 그 식물품종 보호 인증서를 분실 또는 손상한 경우 정해진 수수료 및 부과금이 납부되었다면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관리기관에 그 보호 인증서를 재발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3조 (보호 인증서 관련 결정의 공고)

품종 보호 인증서의 허여, 재발행, 취소, 무효, 보정에 관련된 모든 결정은 결정이 발행된 날로부터 60일 이후 특화된 공보에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관리기관에 의해 공고되어야 한다.

제2절 보호 등록출원 및 그 처리 절차

제174조 (보호 등록출원)

1. 새로운 식물품종을 위한 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출원은 다음 서류를 포함한다.
 - a) 정해진 양식에 의한 등록 선언 양식
 - b) 정해진 양식에 의한 사진 및 기술 선언
 - c) 출원서가 대표를 통해 제출되는 경우 권리부여 증서
 - d) 등록인이 등록을 받을 권리를 이전받은 자인 경우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들
 - e)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우선권 증명 서류
 - f) 수수료 영수증
2. 다른 언어로 기재되어 있어 식물품종의 국가관리기관의 요청으로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만 하는 다음의 서류를 제외하고,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관리기관과 등록인 사이의 거래

문서와 보호를 위한 등록출원은 베트남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 a) 위임장
 - b) 등록권을 증명하는 서류
 - c) 우선권을 증명하는 서류
 - d) 기타 서류들
3. 보호를 위한 출원서의 등록을 위한 우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권리 부여된 기관에 의해 인증된 1차 출원서 또는 출원서의 사본
 - b) 권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전된 경우, 우선권에 대한 권리의 이전 또는 상속의 서류

제175조 (보호 등록출원서 수리, 출원일)

1. 보호 등록출원은 동법 제174조 제1항에 의한 모든 서류에 의해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관리기관에 의해 승인될 것이다.
2. 출원서의 출원일은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관리기관에 의해 출원서가 수리된 날이다.

제176조 (보호 등록출원의 공식 심사)

1. 출원서를 받은 이후 출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원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해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관리기관은 출원을 공식 심사한다.
2. 보호 등록출원은 다음 경우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a) 출원서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b) 출원서에 포함된 품종이 보호 종 목록에 기재된 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c) 등록 권리가 복수의 조직 또는 개인에게 속하고 그들 중 하나가 등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해 등록권이 없는 사람이 제출한 경우
3.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관리기관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한다.
 - a) 동조 제2항 b 및 c에 규정된 경우에 출원서 접수의 거절을 통지한다.
 - b) 동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실수를 정정하도록 등록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의 시간을 정정 기간으로 등록신청자에게 통지한다.
 - c) 등록신청자가 실수를 정정하지 않거나 등록신청자가 동조 제2항 b에 기재된 통지서에 대해 정당한 불복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 출원서의 거절을 통지한다.
 - d) 출원서가 유효하거나 등록신청자가 실수를 정정하였거나 또는 동항 b에 규정된 바에 따라 통지에 대해 타당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출원서의 접수를 통지하고, 등록신청자가 기술적 테스트를 관장하는 기관에 품종샘플을 제출하게 하고 동법 제178조에 규정된 절차를 수행한다.

제177조 (보호를 위한 출원서의 공개)

1. 출원서가 유효하다면,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관리기관은 그러한 출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식물품종에 관한 특별 공보에서 공개해야 한다.
2. 공보는 출원서 번호, 출원일, 대리인(있는 경우), 등록신청자 성명, 소유자 성명, 품종 이름, 종, 출원서가 유효하게 접수된 일자를 포함한다.

제178조 (식물품종 보호 등록을 위한 출원서의 내용 심사)

1. 식물품종에 관한 권리의 국가관리기관은 유효하게 접수된 출원서의 내용을 심사한다. 심사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신규성 및 적절한 명명법의 심사
 - b) 품종의 기술적 테스트 결과 심사
2. 기술적 테스트는 품종의 식별력, 균일성 및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성장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적 테스트는 농업지역개발부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는 담당 기관 또는 조직 또는 개인에 의해 실시된다.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관리기관은 종전의 기술적 테스트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3. 기술적 테스트 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테스트 결과를 심사한다.

제179조 (출원서의 수정 및 보완)

1.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관리기관이 식물품종 보호증명서의 허여 또는 허여 거부 또는 허여 결정 전 등록신청자는 다음을 실시할 권리를 갖는다.
 - a) 보호를 위한 등록출원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출원서의 수정 또는 보정 권리
 - b) 등록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통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c) 계약에 의한 또는 상속이나 유증에 의한 출원서의 이전으로 인한 등록신청자의 변경 통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동조 제1항에 기재된 절차 규정을 요청하는 자는 수수료 및 연차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80조 (등록을 위한 출원서의 취하)

1.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관리기관이 보호증명서의 허여 또는 허여 거부를 결정하기 전에 등록신청자는 보호를 위한 출원서를 취하할 수 있다. 그러한 취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2. 등록신청자가 보호를 위한 출원서의 취하를 요청한 시점부터 출원과 관련한 모든 후속 절차가 중단될 것이며, 아직 진행되지 않은 절차에 대한 납부된 수수료는 등록신청자의 청구에 따라 환급될 것이다.

제181조 (식물품종 보호증명서의 허여에 대한 제3자의 의견)

전문 공보에서 식물품종 보호에 대한 등록출원을 공표한 날로부터 식물품종보호증명서의 허여에 대한 결정 전까지 제3자는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관리기관으로 식물품종 보호증명서의 허여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 의견은 의견내용 및 의견 지지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182조 (식물품종 보호증명서 허여 거절)

보호를 위한 출원서는 품종이 동법 제176조 및 제178조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식물품종 보호증명서의 발행을 거절해야 한다. 거절을 하는 경우에,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관리기관은 다음의 절차를 밟는다.

1. 거절 이유 및 등록신청자가 오류를 보정하거나 통지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기재된 기간보호증명서 허여 거절 통지서를 통보한다.
2. 등록신청자가 오류를 보정하지 않거나 동조의 제1항에 규정된 통지서에 대해 불복하지 않은 경우에, 보호증명서 허여의 거절을 통보한다.
3. 등록신청자가 오류를 보정하거나 동조 제1항에 규정된 허여 거절 통지서에 대해 유효한 의견으로 불복한 경우에, 동법 제183조에 규정된 절차를 실시한다.

제183조 (식물품종 보호증명서의 허여)

1. 보호를 위한 등록출원이 동법 제18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거절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등록신청자가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관리기관은 식물품종 보호증명서의 허여 결정서를 송부하고 보호 식물품종의 국가 등기에 기록한다.
2. 출원인에게 보호증명서를 허여한다.

제184조 (식물품종 보호증명서의 허여 거부 또는 허여에 관한 고소)

1. 등록신청자 및 기타 제3자는 식물품종 보호증명서의 허여 또는 허여 거절에 대한 결정에 대해 고소할 수 있다.
2. 식물품종 보호증명서의 허여 또는 허여 거절 결정에 대한 고소는 고소 및 고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될 수 있다.

제14장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내용 및 제한

제1절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내용

제185조 (재배자의 권리)

식물품종의 재배자는 다음 권리를 갖는다.

1. 재배자의 성명은 식물품종 보호증명서 및 보호 식물품종에 대한 국가 등기에 그리고 식물품종에 관한 모든 공보에 기록될 권리
2. 동법 제191조 제1항 a에 규정된 보상을 받을 권리

제186조 (보호증명서 소지자의 권리)

1. 보호증명서 소지자는 보호받는 식품 품종의 생식 원료에 대한 다음 권리를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이 행사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 a) 생산 또는 번식 수행
 - b) 번식을 목적으로 식물품종을 처리
 - c) 팔려고 내놓음
 - d) 판매하거나 다른 마케팅 활동을 수행
 - e) 수출
 - f) 수입
 - g) 동항 a, b, c, d, e 및 f에 명시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보관
2. 동조 제1항에 의한 식품다양성 보호증명서 소지자의 권리는 보호증명서 소지자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배 원료에 대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한, 보호받는 식물품종의 재배 원료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수확한 원료에 적용된다.
3. 다른 사람이 동법 제188조에 의한 식물품종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4. 동법 제15장의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를 유산 또는 유증 또는 양도를 통해 물려주기 위하여

제187조 (보호증명서 소지자의 권리 범위)

보호증명서 소지자의 권리는 다음의 식물 품종에 미친다.

1. 보호받는 식물품종이 보호받는 다른 식물품종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면, 보호받는 식물 품종에서 주로 유래하는 식물품종
 보호받는 식물품종에 끼친 영향의 결과로 나타나는 상이함을 제외하면, 식물품종이 보호받는 식물품종의 유전자형 또는 유전자형의 결합의 결과로 나타나는 본질적 특성의 표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식물품종이 보호받는 식물품종으로부터 유래한다고 간주한다.
2. 보호받는 식물품종으로부터 확실히 구별되지 않는 식물품종

3. 보호받는 식물품종의 반복 사용을 필요로 하는 식물품종 생산

제188조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다음의 행위는 보호 인증서 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간주한다.

1. 보호 인증서 소유자의 권리를 그 소유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개발하는 행위
2. 동일 또는 다른 유사종의 식물품종의 보호받는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품종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3. 동법 제189조에 제공된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보호받는 식물품종을 사용하는 행위

제189조 (식물품종에 대한 잠정조치)

1. 식물품종에 대한 잠정조치는 보호를 위한 등록출원의 공표일로부터 식물품종 보호 인증서의 등록일까지 발생하는 식물품종의 보호에 대한 등록인의 권리이다.
등록인은 품종 보호 인증서가 허여되지 않은 경우 잠정조치를 가지지 않는다.
2. 다른 사람이 상업적 목적을 위해 식물품종을 개발하였음을 등록인이 알고 있다면, 그 등록인은 등록인에 의해 보관되는 식물품종의 보호에 대한 등록출원의 존재를 기술하는 글을 그 다른 사람에게 보낼 권리가 있으며, 그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개발하고 계속 사용하는 것을 종료하게 하도록 출원일, 보호를 위한 등록출원이 공표된 날을 명시해야 한다.
3.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미 고지받은 사용자가 식물품종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소지자를 부여받은 식물품종 보호 인증서 소유자는 사용 범위와 기간에 따라 그러한 식물품종의 라이선스 가격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제한

제190조 (식물품종 보호증명서 소지자의 권리 제한)

1. 다음 행위는 보호받는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
 - a) 개인적 및 비상업적 목적으로 식물품종 사용
 - b) 시험 목적으로 식물품종 사용
 - c) 동법 제187조에 명시된 사례를 제외하고, 신식물품종 창출을 위해 식물품종 사용
 - d) 자신이 소유하는 땅에서 다음 계절에 번식 및 경작을 위해 개인 생산 가구의 보호받는 식물품종의 수확 원료를 사용
2. 다음 행위를 제외하면, 보호증명서 소지자 또는 그 라이선스 소지자에 의하여 베트남 또는 외국 시장으로 들여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판매된, 보호받는 식물 품종의 원료와 관련된 행위에는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를 적용할 수 없다.
 - a) 그러한 식물품종의 추가 번식과 관련된 행위

- b) 소비 목적을 위해 그러한 원료를 수출하는 것이 아닌 한, 식물품종의 속(屬) 또는 종(種)이 보호받지 못하는 국가로 식물품종의 생식 원료를 수출하는 것과 관련된 행위

제191조 (소유자 및 재배자의 의무)

1. 보호증명서의 소유자는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a) 합의대로 재배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의무, 합의가 없는 경우 보상금 수준은 동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b) 이 규정에 따라 식물품종 보호 인증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
 - c) 보호받는 식물품종을 보존할 것과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 행정 기관에 보호받는 품종의 번식 물질을 공급하고 규정에 따라 보호받는 품종의 안정성을 유지시킬 의무
2. 식물품종의 재배자는 보호받는 품종의 번식 물질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 인증소유자를 도울 의무를 갖는다.

제15장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이전

제192조 (식물품종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 이전)

1. 식물품종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는 식물품종의 소유자가 식물품종 이용 권리 중 하나의 행위 또는 일부 행위를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식물품종 이용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는 공동 소유의 경우에 모든 소유자가 동의해야 한다.
3. 식물품종 이용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는 서면 계약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식물품종의 이용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계약은 라이선스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규정, 특히 식물품종에 대한 실시권자의 권리로부터 유래되지도 않고 그 권리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규정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제193조 (라이선스 허여 계약에서 당사자들의 권리)

1. 라이선스 허여권자는 라이선스 사용권자가 이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허용하거나 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라이선스 사용권자는 다음 권리를 갖는다.
 - a) 라이선스 허여권자가 동의한 경우, 이용권을 제3자에게 라이선스할 권리
 - b) 라이선스 사용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제3자에 의한 침해에 대해 필요한 수단을 허여권자에게 요청할 권리
 - c)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허여권자가 동항 b에 따라 요청한 대로 실행하지 못한 경우에, 제3자의 침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제194조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양도)

1.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양도는 식물품종 보호 인증서 소지자가 그 식물품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가 공동 소유권인 경우, 이러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면 반드시 모든 공동 소유권자가 합의해야 한다.
3.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양도는 반드시 서면 계약의 형태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4. 국가 예산 기금으로 창출된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양도는 기술이전에 관한 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195조 (식물품종의 이용에 대한 강제실시권 부여의 근거 및 조건)

1. 다음 경우, 식물품종 이용 권리는 명의자 또는 보호증명서 소유자(이하 식물품종의 이용에 대한 독점권의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도 동법 제196조 제1항에 의한 관할 국가 기관의 결정에 따라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라이선스가 부여될 것이다.
 - a)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상업적 목적을 위해, 국가 방위, 국가 보안, 재난방지, 인간에 대한 처치 및 영양 공급 필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또는 다른 사회적 긴급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식물품종의 이용
 - b) 가격 및 기타 상업적 조건에 대해 합리적인 기간 동안 협의를 위한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품종의 이용에 대한 독점권 소유자와 라이선스 부여 계약에 합의하지 못한 자로서 식물품종의 이용을 요구하고 이용할 능력을 가진 사람
 - c) 식물품종 이용에 대한 독점권의 소유자는 경쟁법 하에서 경쟁 제한 행위를 실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동조 제1항에 의한 라이선스 부여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고 그러한 사용권 중단이 라이선스 사용권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식물품종의 배타적 사용권 소유자는 사용권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3. 식물품종의 이용에 대한 권리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관할 국가 기관의 결정에 따라 이전될 수 있다.
 - a) 그러한 이용권이 비독점적일 것
 - b) 동조 제1항 c)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이용권이 주로 국내 시장을 위해, 라이선스 부여 목적을 획득하기 충분한 범위와 기간 이내에 제한되어 있을 것
 - c) 라이선스 사용권자의 사업 전체의 양도를 제외하고, 라이선스 사용권자는 그러한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아야 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하위 라이선스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 d)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적 보상안에 맞춰 각각의 특정한 경우에 따라 이용권의 경제적 가치

를 고려하여, 라이선스 사용권자는 식물품종의 이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의 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4. 정부는 식물품종에 대한 이용에 대한 권리의 강제실시권 부여의 경우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하며, 동조 제3항 d에 기재된 기본 보상안을 제공해야 한다.

제196조 (강제 결정에 따른 식물품종 이용 권리에 대한 라이선스 허여의 권한 및 절차)

1. 농업지역개발부는 동법 제195조 제1항에 의한 관련 요청의 기본사항에 대해 국가 관리 범위 하에서 해당 분야의 식물품종 이용 권리의 라이선스 부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부처 및 부처의 하위 기관들은 동법 제195조 제1항에 의한 경우에 대하여 농업지역개발부의 컨설팅을 기초로 국가 관리 범위 하에서 해당 분야의 식물품종 이용 권리의 라이선스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2. 라이선스 부여 결정은 동법 제195조 제3항에 따라 이용의 범위 및 조건을 특정해야 한다.
3. 식물품종의 이용 권리 라이선스 부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관할 정부 기관은 그러한 결정을 식물품종의 이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식물품종의 이용 권리 라이선스 부여 또는 식물품종의 이용 권리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거절에 대한 결정은 동법에 따라 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
5. 정부는 동조에 기재된 식물품종 이용 권리의 라이선스 부여 절차에 대한 특정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제197조 (강제실시권 부여의 경우에 보호증명서 소유자의 권리)

식물품종 이용 권리의 강제실시권 부여 대상의 보호 인증서 소유자는 다음 권리를 갖는다.

1. 이용 권리에 경제적 가치에 따라 또는 유사한 범위 및 기간의 권리에 관한 계약 라이선스 부여의 가격과 균등하게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2. 강제실시권 부여를 초래한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강제실시권에 대한 보정, 삭제 또는 무효화가 강제실시권 사용권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국가 관리기관에게 강제실시권의 보정, 삭제 또는 무효화를 요청할 권리

제5부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6장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일반 규정

제198조 (지식재산권 보호 권리)

1.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자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 수단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a)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권리
 - b)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해 침해 행위의 중단, 사과, 공개적 사과 및 손해 배상을 요청할 권리
 - c) 동법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국가 기관에게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
 - d) 법적 권리 및 이익 보호를 위해 중재소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
2.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었거나, 사회에 대해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발견한 조직 및 개인은 동법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들에 따라 침해 행위에 대해 처분해 줄 것을 관할 국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손해를 입거나 부정한 경쟁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조직 및 개인은 동법 제202조에 기재된 민법상 배상을 관할 국가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법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 행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9조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

1.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조직 및 개인은 그러한 침해의 특성 및 범위에 따라 민사적, 행정적 또는 형사적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2. 필요한 경우, 관할 국가 기관은 임시 수단, 수입 및 수출에 관한 지식재산 관련 제어 수단 및 예방 수단을 적용할 권리를 가지며, 동법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들에 규정된 바에 따라 행정적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제200조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취급하는 기관)

1. 법원, 조사관, 시장 관리 기관, 세관, 경찰 및 모든 수준의 인민위원회는, 그들의 의무와 권한 내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민사적 구제 및 형사적 구제의 적용은 법원의 권한이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동법 및 규정에 따른 임시 수단을 적용할 권한을 갖는다.
3. 행정적 구제의 적용은 조사관, 경찰서, 시장 관리 기관, 세관 및 모든 수준의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포함된다. 필요한 경우에, 상기 국가 기관들은 예방적 수단을 적용할 권한을 가지며, 행정적 벌칙을 동법 및 규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4.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국경 통제 수단의 적용은 세관의 권한 범위에 포함된다.

제201조 (지식재산 평가)

1. 지식재산 평가는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의된 조직 또는 개인이 그들의 전문적 지식 및 전문성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조직 또는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외국 법무조직을 제외한 법무조직은 지식재산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 a) 법에서 지정한 평가 작업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 및 물리적·기술적 기반을 소지함
 - b) 지식재산 평가를 수행한다는 기능을 사업 등록 인증서 또는 운영 등록 인증서에 명시함
 - c) 조직의 장 또는 장이 인증한 사람이 지식재산 평가사 카드를 소지함
3. 다음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개인은 관할 정부 기관으로부터 지식재산 평가사 카드를 부여받을 수 있다.
 - a) 민법상의 권리 능력을 완전히 갖춘 베트남 국민
 - b) 베트남 영구 거주자
 - c) 우수한 윤리적 자질을 갖춘 자
 - d) 평가사 카드가 적용되는 분야와 관련된 전공에 대하여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이러한 분야에서 5년 또는 그 이상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했으며 전문 자격 심사를 통과한 자
4.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담당하는 관할 정부기관은 수락한 사안 또는 사건을 담당할 때, 지식재산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5. 지식재산권 소유권자 및 다른 관련 조직 및 개인은 그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6. 정부는 지식재산 평가 조직 및 활동을 명시해야 한다.

제17장 민사적 구제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침해 취급

제202조 (민사적 구제)

법원은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한 조직 및 개인을 다름에 있어 이하의 민사적 구제를 취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침해의 강제적 중단
2. 공개적 교정 및 사과의 강제
3. 민사적 채무 이행의 강제
4. 손해에 대한 강제 배상
5. 파기, 유통 또는 사용이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권리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생산이나 거래에 주로 사용된 원재료, 재료 및 수단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파기, 유통 또는 사용하도록 강제

제203조 (소송관계자의 입증책임 및 권리)

1.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의 원고 및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79조 및 동조에 기재된 바에 따라 입증책임 및 권리를 가진다.
2. 원고는 다음 중 하나의 증거를 이용하여 지식재산권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 a) 저작권 등록 증명서, 인접권 등록 증명서나 보호증서의 사본 또는 저작권 및 인접권의 국가 등기소, 산업재산권의 국가 등기소 또는 보호받는 식물품종의 국가 등기소로부터의 발췌문
 - b) 저작권 설정을 증명하는 필수 증거, 저작권 등록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 인접권 증명서, 영업비밀, 상호 또는 공지된 상표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필수 증거
 - c) 이용 권리가 계약에 의해 라이선스가 부여된 경우, 지식재산권 대상의 이용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계약서 사본
3. 원고는 지식재산권의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4. 제조 공정에 관한 특허 발명의 권리 침해 소송에서, 다음의 경우 피고는 그의 제품이 보호 공정 이외의 공정으로 제조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a) 보호 공정에 의해 제조된 제품이 신규한 경우
 - b) 보호 공정에 의해 제조된 제품이 신규하지 않으나, 보호 공정의 소유자는 피고의 제품이 보호 공정에 의해 제조된 것으로 믿고 있고 합리적인 수단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용한 공정을 입증하는데 실패한 경우
5.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의 당사자가 그의 주장의 입증에 관한 증거가 다른 당사자의 제어 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따라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소송의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법원이 강제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6.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원고는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동법 제205조에 따라 그의 주장의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제204조 (지식재산권 침해에 의한 손해 산정 원칙)

1. 침해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재산상의 손실, 수입 및 이익의 감소, 영업 기회의 상실, 손실의 방지를 위해 지출한 합리적 비용, 합리적인 대리인 비용 및 기타 명백한 손실을 포함하는 물리적 손실
 - b) 문학, 예술 및 과학 저작물의 저자,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디자인의 저자, 공연자, 그리고 재배자에게 입힌 명예, 존엄성, 명성, 신망 및 기타 정신적 침해를 포함하는 정신적 침해
2. 손해의 정도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인해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입은 실제 손실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제205조 (지식재산권 침해에 의한 손해 산정 근거)

1. 원고가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물리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 그 원고는 다음 들 중 하나를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 a) 금액으로 결정된 총 물리적 손실에 더하여 원고의 이익 감소가 총 물리적 손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침해 결과로서 피고가 얻은 이익을 합산한다.
 - b) 파기, 유통 또는 사용이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권리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생산이나 거래에 주로 사용된 원재료, 재료 및 수단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파기, 유통 또는 사용하도록 강제
 - c) 동항 a 및 b에 따른 보상 금액의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금액은 손실 정도에 따라 법원이 결정해야 하며, 이때 5억 VND를 초과할 수 없다.
2. 지식재산권 침해로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한 경우, 그 원고는 손해 정도에 따라 5백만 내지 5천만 VND의 보상금을 결정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손해에 추가하여,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대리인 고용에 대한 합리적 비용을 침해자가 지불할 것을 법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제206조 (잠정조치의 적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소송 시작 또는 그 후에,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다음의 경우에 잠정조치를 적용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a) 지식재산권 소유자에 대한 복구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b) 적절한 시간에 보호되지 않는다면,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상품 및 관련 증거를 파기 또는 폐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원은 잠정조치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에 앞서서 동조 제1항에 의한 지식 재산권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07조 (잠정조치)

1. 다음의 잠정조치는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상품, 재료, 원료 또는 그러한 상품의 제조나 거래를 수단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 a) 압류
 - b) 차압
 - c) 봉인, 원 상태 변경 금지, 이동 금지
 - d) 소유권 이전 금지
2. 다른 잠정조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적용된다.

제208조 (잠정조치 적용 청구인의 의무)

1. 잠정조치 적용의 청구인은, 동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자료 및 증거 제출을 포함하여, 동법 제206조 제2항에 의한 청구권을 증명해야 한다.
2. 잠정조치 적용의 청구인은 잠정조치의 채무자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채무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잠정조치 적용의 청구인은 다음 형태들 중 하나로 보장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 a) 잠정조치 적용 대상 상품 가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그러한 상품을 평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2천만 VND 이상의 금액을 예치
 - b) 은행 또는 기타 신용 기관에 의해 발행된 보증 서류의 제출

제209조 (잠정조치의 적용 종료)

1. 민사소송법의 제122조 제1항에 기재된 경우 또는 잠정조치의 채무자가 그러한 잠정조치의 적용이 이유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을 때, 법원은 잠정조치 적용의 종단을 결정해야 한다.
2. 잠정조치 적용을 중단한 경우, 법원은 동법 제208조 제2항에 의한 예치 금액의 청구인에게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잠정조치 적용의 청구가 이유 없고, 잠정조치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청구인이 손해를 보상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제210조 (잠정조치 적용 기관 및 절차)

잠정조치 적용 기관 및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8장 제1부의 규정을 따른다.

제18장 행정적·형사적 구제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침해 취급 : 지식재산 관련 수출입의 통제

제1절 행정적·형사적 구제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침해 취급

제211조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1.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다음 행위를 하는 조직 또는 개인은 행정적 제재를 받는다.
 - a) 저자, 소유권자, 소비자 또는 사회에 침해를 야기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
 - b) 동법 제21조에 정의된 지식재산 위조 상품을 생산, 수입, 운송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 c) 위조 상표 또는 지리적표시를 붙인 도장, 라벨 또는 다른 물품을 생산, 수입, 운송, 거래 또는 보관하는 행위
2. 정부는 행정적 제재를 받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 제재 형태 및 수준, 그리고 제재 질

차를 명시해야 한다.

3. 지식재산에서 불공정 경쟁의 행위를 하는 조직 또는 개인은 경쟁법에 의해 행정적 제재를 받는다.

제212조 (형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를 가지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하는 개인은 형법 및 규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제213조 (지식재산 위조 상품)

1. 동법에서 지칭하는 지식재산 위조 상품은 동조 제2항에 기재된 위조 상표 상품 또는 위조 지리적표시 상품(이하, 위조 상표 상품이라 한다) 그리고 동조 제3항에 기재된 약탈 상품을 의미한다.
2. 위조 상표 상품은 지리적표시의 운영 기관 또는 상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상품의 보호를 위한 상표 또는 지리적표시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또는 사인을 포함하는 상품 또는 그 포장이다.
3. 약탈 상품은 저작권 소유자 또는 인접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조된 사본이다.

제214조 (행정적 제재 및 구제의 형태)

1. 동법 제211조 제1항에 정의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하는 조직 및 개인은 침해 행위를 강제적으로 종료해야 하며 다음 기본적 제재 중 하나를 부과받는다.
 - a) 주의
 - b) 벌금
2. 침해의 성격과 심각성에 좌우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직 또는 개인은 다음 추가적 제재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다.
 - a) 지식재산 위조 상품, 원재료, 재료, 지식재산 위조 상품 생산 또는 거래에 주로 사용한 수단의 압수
 - b) 침해가 발생한 분야의 사업 활동의 무기한 정지
3.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제재에 더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자는 다음 구제 방법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
 - a) 파괴, 유통 또는 사용이 지식재산권 소유권자의 권리를 지식재산 위조 상품, 원재료, 재료 및 지식재산 위조 상품 생산 또는 거래에 주로 사용한 수단의 파괴 또는 유통 또는 비상업적 목적의 사용을 강제함
 - b) 상품에서 침해 요소를 제거한 이후, 지식재산 위조 상품, 원재료, 재료, 지식재산 위조 상

품 생산 또는 거래에 주로 사용한 수단의 강제 재수출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통과 화물을 베트남 영역에서 강제 이송

4.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행정적으로 제재할 권한 및 행정적 제재는 행정 위반을 다루는 법을 준수한다.

제215조 (예방조치의 적용)

1. 다음 경우, 조직 및 개인은 동조 제2항에 명시된 행정적 제재를 확보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의 적용을 권한 있는 기관에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 a)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가 소비자 또는 사회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 b) 침해 행위를 하는 조직 또는 개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징조가 보이는 경우 또는 침해 수단이 분배될 위험이 있는 경우
 - c) 행정위반에 대한 제재의 결정 시행을 확보하기 위해
2. 행정적 절차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행정적 예방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관련된 개인의 일시적 억류
 - b) 침해에 이용된 수단 및 기구, 상품의 임시 거치
 - c) 관련된 개인의 신체 수색
 - d) 침해 대상 및 이송 수단 수색, 침해 상품, 물적 증거 및 수단이 숨겨진 장소 수색
 - e) 행정위반 취급에 대한 법 규정에 의한 기타 행정적 예방 조치

제2절 지식재산권 관련 수입 및 수출 통제

제216조 (지식재산 관련 수입 및/또는 수출의 통제 조치)

1. 지식재산 관련 수입 및 수출의 통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에 대한 통관 절차의 중지
 - b) 지식재산권 침해의 징조를 나타내는 상품을 탐지하기 위한 조사 및 감독
2.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에 대한 통관 절차의 중지는,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침해 행위 취급을 요청하고 행정적 제재를 확보하기 위한 잠정조치나 예방적 조치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제시되는 상품 품목에 대한 정보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조치를 의미한다.
3. 지식재산권 침해의 징조를 나타내는 상품을 탐지하기 위한 조사 및 감독은 통관 절차의 중지 요청 권리의 실행을 위한 정보 수집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청구하였을 때 취해지는 조치이다.

4.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 기재된 조치의 적용 중에, 동법 제213조에 따라 지식재산 위조 상품으로 탐지된 상품이 있다면, 세관은 동법 제214조 및 제215조에 기재된 행정적 구제를 부과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217조 (지식재산 관련 수입 및/또는 수출의 통제 조치 적용 청구인의 의무)

1. 지식재산 관련 수입 및 수출의 통제 조치 적용 청구인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 a) 동법 제203조 제2항에 기재된 증거 및 자료를 제출하여 지식재산권 소유자임을 증명할 의무
 - b)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의 입증 또는 침해 상품을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증명할 의무
 - c) 세관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법규정에 기재된 요금 및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
 - d) 통제된 상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러한 조치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입힌 손해 및 기타 발생 경비를 지급할 의무
2. 동조 제1항 d에 명시된 의무 실시를 담보하기 위해, 통관 절차의 중지 수단의 적용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 a) 통관 절차 중단 대상 상품 가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그러한 상품을 평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2천만 VND 이상의 금액을 예치
 - b) 은행 또는 기타 신용 기관에 의해 발행된 보증 서류의 제출

제218조 (세관 절차 정지 조치의 적용 절차)

1. 세관 절차의 정지를 요청한 사람이 동법 제217조에 명시된 그의 의무를 충족한 경우, 세관 사무소는 문제시되는 상품 품목과 관련된 세관 절차의 정지에 대한 결정을 발행해야 한다.
2. 세관 절차 정지의 지속 기간은 세관 절차 정지를 요청한 사람이 세관 사무소의 세관 절차 정지 고지를 수령한 날 이후 10일의 영업일이다. 동법 제217조 제2항에 명시된 보증금을 내는 한, 세관 절차 정지를 요청한 사람이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지속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나 20일의 영업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동조 제2항에 명시된 지속기간의 종료 시, 세관 절차 정지를 요청한 사람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세관 사무소에서 행정적 절차에 따라 상품 품목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행정적 위반을 한 사례가 아니라고 결정하는 경우, 세관 사무소는 다음 책임을 지는다.
 - a) 문제시되는 상품품목에 대한 세관 절차를 계속 수행
 - b) 세관 절차 정지 요청을 한 사람에게 그의 불합리한 요청으로 인하여 상품품목 소유자에게 끼친 모든 침해를 보상하고, 세관법에 의해 창고보관비 및 세관 사무소와 다른 관련 기관, 조직 및 개인에게 발생한 기타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함

- c) 동항 b에 명시된 보상금 및 비용 지불 의무가 끝난 이후에, 남아 있는 보증금 액수를 세관 절차 정지 요청을 한 사람에게 환불

제219조 (지식재산권 침해 사인을 포함하는 상품을 검출하기 위한 심사 및 감독)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지식재산권 침해 사인을 포함하는 상품을 검출하기 위한 심사 및 감독을 청구하였을 때 그리고 그러한 다량의 상품이 검출되었을 때, 세관은 그러한 심사 및 감독을 청구한 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그러한 통지일로부터 3일의 작업일 내에, 청구인이 검출된 다량의 상품에 대한 통관절차 정지 청구를 하지 않고 또 세관이 동법 제214조 및 제215조에 따른 행정적 절차에 따라 다량의 상품의 수입업자를 취급해야 할 경우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 세관은 그러한 다량의 상품에 대한 통관 절차의 완료를 계속해야 한다.

제6부 시행 규정

제220조 (경과규정)

1. 동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효력을 발휘한 법적 서류에 의하여 보호받았던 저작권 및 인접권은 그 날짜에 보호 기간이 남아 있는 한, 동법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2. 동법이 효력을 발휘한 날짜 이전에 관할 기관에 제출한 저작권, 저작 관련권,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 상품 원산지의 명칭, 배치설계 또는 식물품종 등록출원은 제출 시 효력이 있는 법적 서류에 의하여 계속 처리된다.
3. 이러한 보호증서의 부여 시점에 효력을 발휘한 법 조항에 적용을 받는 보호증서의 실효 근거를 제외하고, 동법이 효력을 발휘한 날짜 이전에 효력이 있었던 법조항에 의해 부여된 보호증서에 의하여 부여된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보호증서와 관련된 관리 절차, 갱신, 수정, 실효, 라이선스, 소유권 양도, 분쟁의 해결은 동법의 지배를 받는다. 동조항은 동법이 효력을 발휘한 날짜 이전에 효력이 있는 법 조항에 의하여 발행된 상품 원산지의 명칭에 대한 결정에도 적용된다. 지식재산권을 담당하는 국가관리기관은 상품 원산지의 명칭에 관한 지리적표시 등록 인증서 부여 절차를 수행한다.
4. 영업비밀, 지리적표시, 상표명 및 산업재산 관련 불공정 경쟁을 억압할 권리의 보호에 대한 2000년 10월 3일 정부법령 제54)2000)ND-CP번에 의해 존재하고 보호받는 영업비밀 및 상표명은 동법에 의해 계속 보호를 받는다.
5. 동법이 효력을 발휘한 날짜부터 동조 제4항에 언급된 법령에 의한 보호 대상을 포함한 지리적 표시는 동법에 의해 등록된 이후에만 보호를 받는다.

제221조 (시행 효력)

동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있다.

제222조 (시행 지침)

정부 및 대법원은 동법의 시행에 관한 상세한 규정 및 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2009년 6월 19일 재가의 법률]

제1조

지식재산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해 추가한다.[개정 추가 부분은 위에 포함 완료]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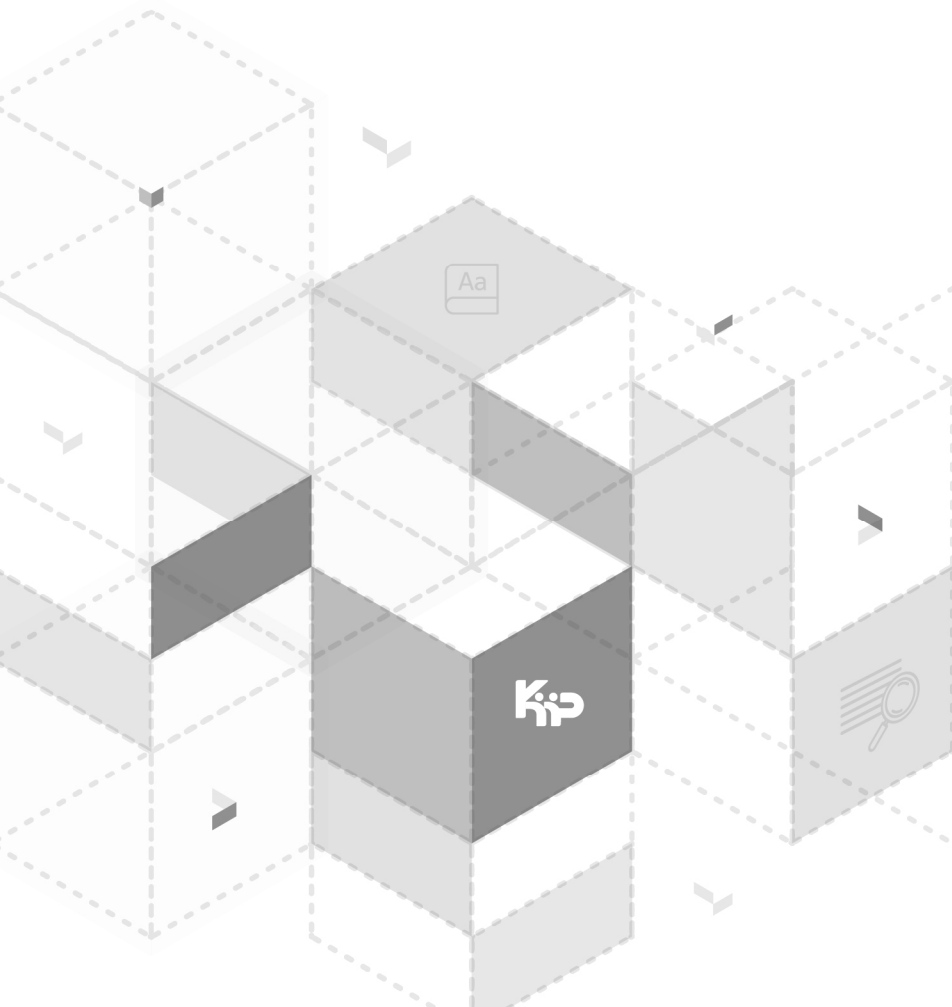
50/2005/QH11호의 지적재정법 제11조 (2)(3)(5) 및 제50조(2)(a), 제51조(4)에 기술한 '문화정보부'를 '문화스포츠관광성'으로 변경한다.[위에 포함 완료]

제3조

1. 본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효력을 갖는다.
2. 정부는 본법에 규정하는 조항의 상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국가관리 면에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법의 다른 필요한 내용에 대해 안내한다.

제3장

결론



본 연구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의 지식재산 법률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연구되었다. 먼저, 국내·외 지식재산 최신 법률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후속 연구와 법 개정 등의 대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 정책, 연구 및 사업수행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현행 법률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2019년은 해외 주요국 중 먼저 미국, 독일, 영국, 중국, 일본의 2019년 기준 최신 산업재산권법의 번역을 실시하였고, 2020년은 프랑스, 인도, 베트남의 최신 산업재산권법의 번역을 실시하였다. 번역시 용어의 통일성을 위하여 법률용어를 재정비하였고, 필요한 경우 번역문에 원문을 병기하였다. 한편, 기존 세계법제정보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IP NAVI, 로앤비 등에서 해외 주요국의 산업재산권법의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였지만, 최신 법률 개정사항을 담지 못하거나 일부 번역본만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지식재산 법령 서비스를 제공받으려 하는 이용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한 최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0년 연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프랑스, 인도, 베트남의 산업재산권법 법령 번역 서비스가 공개될 예정이며, 향후 해당 국가의 법률이 개정될 경우 연구자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개정 사항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를 설계하였다. 또한 법률 용어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업데이트가 필요한 국가, 법령에 대하여 이용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예정이다.

향후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정확한 지식재산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요국의 지식재산 관련 최상위법 이외에 시행령, 시행규칙, 심사기준 등의 번역 및 분석을 통한 법령정보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법·제도 분석 - 법령비교

주요국의 지식재산권법 비교 분석: 국가별 법령분석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발행인 권택민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3, 9층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화 02-2189-2600
홈페이지 www.kiip.re.kr
디자인/인쇄 (주)케이에스엔씨이션 02-761-0031

법·제도분석

법령비교 ...

주요국의 지식재산권법 비교 분석 : 국가별 법령분석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대전 서구 청사로 189
Tel : 1544-8080 Fax : 042)489-0194
<http://www.kipo.go.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Tel : 02)2189-2600 Fax : 02)2189-2694
<http://www.kiip.re.kr>

ISBN : 979-11-91116-26-7
DOI : 10.8080/P9791191116267